

軍

2024. 6. 제131호
Military History

史

- 세종 시기 '講武'의 시행과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 조선후기 蛟龍山城의 修築과 運營의 實際
- 조선후기 佛狼機砲의 제조와 배치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설치와 변천
-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
-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
-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딜레마

[서 평]

- 6·25전쟁 기간 실시된 상륙작전을 집대성한 결정판
- 박종상 지음, 『6·25전쟁 시 상륙작전』
(군사편찬연구소, 2023) -

[자료소개]

- 더글러스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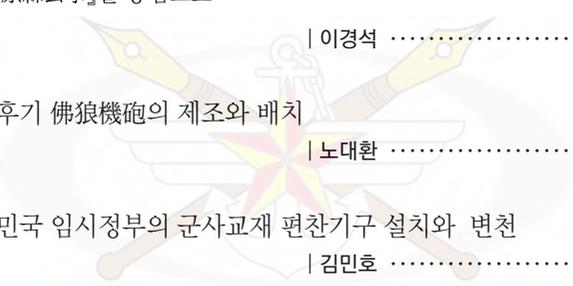
軍史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31호 | 2024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세종 시기 ‘講武’의 시행과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 최형국 1
- 조선후기 蛟龍山城의 修築과 運營의 實際
- 『南原縣公事』를 중심으로 -
| 이경석 37
- 조선후기 佛狼機砲의 제조와 배치
| 노대환 75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설치와 변천
| 김민호 115
-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 이호준 147
-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
| 서치종 183
-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
| 장재규 225
-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딜레마
| 김경민 267

軍史

[서 평]

- 6·25전쟁 기간 실시된 상륙작전을 집대성한 결정판
- 박종상 지음, 「6·25전쟁 시 상륙작전」(군사편찬연구소, 2023) -
| 임명수 309

[자료소개]

- 더글러스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 박종래 325

[부 록]

- 신간 도서 소개 347
- 연구소 동정 350
-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354
- 『軍史』誌 投稿案内 356
- 연구윤리예규 359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35
<https://doi.org/10.29212/mh.2024..13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세종 시기 ‘講武’의 시행과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최형국 | 수원시립공연단

목 차

1. 머리말
2. 태조~태종 시기 강무의 성격과 위상 변화
3. 세종 시기 강무의 의례화와 철원 講武場 특성
4. 강무를 활용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초기 강무의 변화상과 본질적 의미를 짚어 본 논문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 공식적인 강무장으로 확정된 강철원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강무는 사냥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가미한 국가의 중요 의례였다. 그러나 태조부터 태종까지는 ‘사냥을 위한 의례’적 요소가 많았다. 사냥을 통해 국왕의 개인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형태였다. 반대로 세종대에는 합당한 의례 속에서 사냥을 펼치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위해 군사들의 복장이나 표식을 통일된 군사훈련형태로 안정화시켰다. 세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가장 두드러진 지역적 특징은 철원 강무장의 확정이었다. 특히 철원 강무장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관할도가 바뀌는 등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의 강무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 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사냥, 강무, 철원, 삼갑사, 문화콘텐츠



1. 머리말

1392년 조선의 개국 후 초기 100년의 상황은 새로운 왕조가 추구하는 이념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타협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전 왕조인 高麗와는 다른 조선만의 색깔이 있어야만 왕조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중 軍事와 관한 정책과 의례의 변화는 가장 현실적인 '고려와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방 호족들과 중앙 귀족들이 거느리는 私兵은 중앙군을 능가하는 숫자와 군사력이었다. 조선의 개국 후 사병 혁파에 대한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李居易와 李佇 부자를 비롯한 개국 공신들의 반발로 太祖代에는 쉽게 公兵化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종 2년에 司憲府와 門下府의 상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의 사병은 혁파되었다.¹⁾ 그 과정에서 사병 혁파에 불만을 표시한 參判三軍府事 趙英茂를 黃州에 귀양 보내거나, 知三軍府事 李天祐와 參贊門下府事 趙溫을 파면하는 등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종친과 훈신을 위하여 부귀를 보전하게 하고 길이 尊榮을 누리게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과 함께 일단락되었다.²⁾

이와 함께 새롭게 고려시대에는 시행하지 못했던, 공식적인 武人 관료를 배출하는 시험인 武科시험을 시행하여 武官의 안정

1)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6일(신축).

2)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계축).

적인 정계 진출이 가능해졌다.³⁾ 어찌보면 단순한 무예적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계급상승이 가능했던 고려시대의 군사조직과는 다른 조선만의 공병화된 군사조직의 기틀이 武科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과시험에는 무예 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四書三經을 비롯한 儒教 經書와 武經七書를 비롯한 병학 이론 시험을 함께 치렀기에 관직에 출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을 수양해야만 조선의 官職에 오를 수 있었다.⁴⁾

고려시대의 경우 병학이론을 비롯한 武學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文學하는 사람들과 마찰될 수 있다는 지극히 文治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武科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⁵⁾ 고려 말인 공양왕 2년(1390)에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무과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긴 했으나, 곧바로 왕조가 패망하면서 실질적인 제도의 안착이 어려웠다. 특히 고려말 당시 무과시험을 추진했던 신진사대부들이 그대로 조선왕조의 관직에 등용되면서 무과시험이 조선초기부터 안착될 수 있었다.

이처럼 私兵혁파와 武科의 제도적 실행은 조선의 군사관련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선의 군사관련 의례 중 ‘講武’는 당대의 군사적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강무는 국왕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일정한 구획 내에서 사냥을 통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력을 점검

3)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6일(기축).

4) 윤훈표, 「조선전기 兵書의 강익과 무학교육」 『역사문화연구』 49집, 역사문화연구소, 2014, pp.31-35.

5) 『고려사』 권74, 지 권28, 선거 2, 학교, 인종 11년 정월. ; 이날의 내용을 보면, 「武學이 점차 번성하여 장차 文學하는 사람들과 각을 세워 불화하게 되면 매우 편치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들은 文士와 함께 모두 敍用하되, 武學으로 武士를 선발하는 일과 武學齋의 호칭은 모두 혁파한다.’고 하여 武士는 과거시험을 통한 공식적인 관료진입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지방이나 중앙의 호족 私兵으로 근무하다가 무예적 능력이 출중하다면 내부 승진을 통해 장수까지 올라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는 軍務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의 大禮 중 軍禮의 핵심 의례로 정착시켰기에 더욱 유의미하다. 이 또한 고려의 군사 의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조선만의 색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무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이현수는 「조선 초기 강무 시행 사례와 군사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강무의 군사 훈련적 의미에 대해 짚어 보았다.⁶⁾ 당시 강무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시행했는지에 대해 가장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김동진은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포호정책」이라는 주제로 강무정책과 호랑이 사냥을 연동하여 捕虎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⁷⁾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사냥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미시적 관점으로 살펴본 심승구의 연구와⁸⁾ 조선초기 사냥과 講武의 의례화에 대한 허대영의 최근 연구도⁹⁾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강무를 의례적 관점에서 살펴본 정재훈의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강무를 중심으로」는 오례의 중 軍禮 속에서의 의미와 본질을 잘 접근하였다.¹⁰⁾ 이와 함께 강무의 메가 이벤트적 가치에 주목한 이규철의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과 후속 연구는 최근 역사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

6)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7) 김동진,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8)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9)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 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10)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심을 잘 담고 있다.¹¹⁾ 이 밖에도 강무에 대한 안보적 함의에 대한 논고를 비롯하여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 강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¹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대 강무의 의미와 그것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강무는 태조와 태종시대의 선행 형태가 세종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세종시대 오례의 중 하나인 군례의 강무의로 확정된 형태와 이후 세조시대 이후에는 급격히 시행횟수와 의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강무의 조선초기 변화상과 본질적 의미를 짚어 보고, 세종시대 군사의례로 확정된 강무장인 철원의 역사·지리적 의미의 고찰과 강무를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¹³⁾ 이를 통해 향후 의례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지속가능성 혹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11) 이규철,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5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 이규철·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12) 김지동, 「조선전기 세종의 강무시행 평가와 안보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21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13.

13) 철원의 경우 현재 'DMZ 꽃송이 축제' 중 하부 행사로 '세종대왕 강무행차'라는 행사명으로 지속해서 강무를 지역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931>, 2022.09.09일자)

2. 태조~태종 시기 강무의 성격과 위상 변화

講武는 일정한 기간 국왕이 직접 군사들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 사냥과 함께 군사훈련을 지휘했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¹⁴⁾ 강무의 핵심 내용인 사냥은 그 자체로 충분히 군사훈련과 유사했다. 가상의 적을 노루나 사슴과 같은 움직이는 사냥감으로 대체하고 군사들을 통제하여 효율적으로 몰이하여 타격하는 전투방식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강무는 조선초기에 급격하게 늘어 국가의 핵심 의례인 군례 중 '講武儀'라는 독자적인 의례의 영역으로 구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中宗代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의 의례였다.¹⁵⁾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不殺生'이라는 대명제로 인해 의례에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사냥은 터부시되었다.¹⁶⁾ 그래서 사냥대신 특정한 敎場에서 군사들을 사열하는 방식의 閱兵이나 習陣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¹⁷⁾ 이처럼 고려와 조선을 구분 짓는 가장 차이 나는 국가의례가 강무였다.¹⁸⁾

14)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235.

15) 宣祖 28년 9월 10일에 講武를 한 기록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西郊에서 사냥을 중심으로 한 강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훈련모습을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0일(기묘).

16)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P.175.

17)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 149호, 육군군사연구소, 2020, pp.33-45.

18) 고려시대 제정된 軍禮로는 遣將出征儀·師還儀·救日月食儀·季冬大儺儀가 있으며, 講武儀는 조선의 개국 후 새롭게 정착된 의례였다. (『고려사』 「예지」 군례.)

강무를 조선의 국가의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인물은 鄭道傳이었다. 그는 고려왕조와는 다른, 고려왕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선만의 유교적 의례 확립이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무의 의례화를 위해 春夏秋冬 사시의 사냥하는 그림인 「四時蒐狩圖」를 직접 고려 국왕에게 받칠 정도로 정도전은 의욕적이었다.¹⁹⁾ 이후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六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法典인 『朝鮮經國典』을 펴낼 때에도 사냥을 국가의례로 지정하기 위해 논리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兵이란 흉한 일이니 공공연히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聖人이 부득이 마련한 것이니 연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周禮에서는 大司徒가 春蒐·夏苗·秋獮·冬狩를 함으로 武事를 연마하였다. 그러나 가끔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에게 해가되는 폐단이 있는 일인 까닭에 한가한 때에 강습하게 하였다. 또한 畋獵은 짐승을 쫓는 유희에 가깝고 자신을 봉양하기 위한다는 혐의를 받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聖人은 이점을 염려하여 蒐狩之法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짐승 중에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잡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宗社와 生靈을 위한 계책이니, 그 뜻이 이토록 깊도다.²⁰⁾

위의 사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周禮를 기준으로 하여 원래는 사시사철에 한 번씩 진행되는 春蒐·夏苗·秋獮·冬狩의 네 가지 국가 공식 사냥의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일년에 네 번 정도를 공식적으로 사냥을 가면 농사에 방해가 되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점이다. 셋째, 사냥이 국가의 의례적 기능이 아닌 국왕 개인의

19)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20일(계사).

20) 『조선경국전』 하, 정전 전렵.

사사로운 유희의 일종으로 백성들의 눈에 비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도전은 '蒐狩之法'이라고 하여, '짐승 중에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골라서 잡게 하는 것'과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 등,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사냥을 국가의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근원이 라고 짚어냈다.²¹⁾

정도전이 제시한 사냥의 의례화 즉, 講武儀로의 확대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서로 충돌해가며 더디게 제도화되어 갔다. 조선 초기의 경우 대부분 고려시대의 왕실 의례를 기본 골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사냥을 의례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太祖代부터 시작된 사냥의 의례화는 중앙군의 핵심기관이었던 三軍府를 통해 사냥 중심의 「蒐狩圖」와 군사훈련 중심의 「陣圖」의 간행을 통해 기준점이 만들어졌다.²²⁾ 이후 太祖 5년인 1396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역대의 講武 制度를 인용하여 공식적으로 御駕가 거동하는 국가의식의 일종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이에 대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義興三軍府에서 상소하였다. 삼가 역대의 講武制度를 상고하옵건대, 주나라 시대에는 봄과 여름에는 軍幕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군사를 크게 查閱했다 하오니, 사철 언제나 교련하므로 그 익히는 것이 정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기가 이로웠으니, 이것이 주나라가 나라 지키는 도리를 얻은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는 神武의 자질로 王業의 터전을 처음 마련하시와 禮文의 일은 차례로 마련하시면서 講武의 일만은 오직 행하

21)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강무를 역사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고 풀어가야 관련 콘텐츠가 지역민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2)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갑자).

지 않으시니, 어찌 盛代의 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앞드려 바라옵건대, 中外에 講武의 일을 명령하시어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계책을 보이시어, 그 강무의 제도와 드물게 하고 자주 하는 절목은 시대와 事勢가 다르오니,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蒐狩講武圖」를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사철의 끝 달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宗廟와 社稷에 제물로 올리며, 외방에서는 봄·가을 양철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사지내게 하면, 武事가 익숙해지고 神과 사람이 和할 것입니다. 강무할 때를 당해서는 御駕가 친히 거동하시는 것과 대리로 행하는 儀式이며,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禮官으로 하여금 詳定하여 아뢰게 하소서.²³⁾

위의 기록을 보면, 조선초기 추구했던 강무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핵심은 祭儀的 요소 즉, 중앙에서는 종묘와 사직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을 보살피는 귀신들을 위무하는 祭物을 확보하는 의례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武事가 익숙해지고 神과 사람이 和하는 것’이 강무를 국가의례로 지정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의례 특성이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냥을 ‘강무’라는 군례의 일종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조선초기의 본질적 한계이자, 특수성이었던 太祖 이성계부터 太宗 이방원까지 3代는 어릴 적부터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적인 武將에서 국왕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²⁴⁾

왕도 사람이다.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십 수년간 자유롭게 말을 달리며 사냥했던 일상이자 취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매일같이 같은 신하들과 동

23)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30일(갑신).

24)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54호, 동양고전학회, 2014, pp.330-331.

일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록 왕이라는 절대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삶을 지루하게 만들 뿐이었다.²⁵⁾ 이런 이유로 都城 근처인 東郊나 西郊에서 매사냥을 비롯한 소소한 취미형태의 사냥은 太祖代와 定宗代에 자주 진행되었다.

특히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후 아직 체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신하들이 국왕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女色에 미치고, 사냥에 미치게 된다.’²⁶⁾라는 부분을 지속해서 언급하였다. 정종대의 경우도 ‘遊獵을 경계하여 감히 遊樂하지 말며, 혹 사냥을 한다면 반드시 위로는 종묘를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업을 도와 향락을 탐닉하는 길을 따르지 마소서.’²⁷⁾라는 간언이 이어졌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황제가 사냥하는 지역을 ‘苑囿’라고 하여 항구적으로 운영했지만,²⁸⁾ ‘조선은 땅이 좁고 鐵原 이북에서부터 漢陽 이동에 대개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없어서 국왕이 사냥하려면 반드시 禾穀을 손상하게 되므로’²⁹⁾ 강무를 의례화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원래는 사시사철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기본 형태였지만, 백성들의 농업과 관련해 지장을 주므로 春秋 강무만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았다.³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강무는 태조대와 정종대에 공식적으로는 1회씩 밖에 시행되지 못하였다.³¹⁾

25) 太宗은 직접 “나는 구중궁궐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武家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소연을 할 정도로 武的기질을 감추기 어려웠다.(『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일(을사).

26)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7일(기미).

27)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갑진).

28)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0월 11일(을묘).

29)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16일(기유).

30)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6일(갑인).

이후 太宗代의 강무는 前代와는 다르게 횡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성이었다. 이는 사병 혁파와 함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그나마 왕권에 대한 기초가 차츰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 보면, 春等강무 13회, 秋等강무 10회 등 태종 재위 18년간 모두 23회의 공식적인 강무를 시행하였고, 이후 세종대에 상왕으로 물러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무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군사를 대동하고 매사냥에 나선 사례까지 합친다면 거의 해마다 4-5회 이상을 사냥하러 궁궐을 비웠다.

태종은 안정적인 강무시행을 위하여 禮曹를 통해 蒐狩法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여 좀 더 의례답게 운영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병조에서 나누어 田畝를 펴고, 마침내 빙 둘러서서 사냥을 시작한다. 左右兩翼의 장수는 모두 기를 세우고 빙 둘러선다. 대궐 앞에 大駕가 나와 출발하고 인도하며 쉬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냥하는 곳에 장차 이르면 대가가 북을 치며 圍內로 들어간다. 有司가 大駕앞에서 북을 울리면, 동남에 있는 사람들은 서향하고, 서남에 있는 사람들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북을 치며 포위해 나간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몰이하는 騎軍을 배치한다. 임금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가 따르고, 諸君 이하가 모두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大駕의 앞뒤로 벌여서고, 有司가 또 따른다. 이에 짐승을 임금 앞으로 몰이를 하는데, 初一驅가 지나가면, 유사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再驅가 지나가면, 兵曹가 활과 화살을 받들어 올리고, 三驅가 지나가면, 임금이 곧 짐승의 왼쪽으로부터 쏜다. 每驅마다 반드시 세 마리 이상이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왕자들이 이를 쏘고 여러 장수들도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면 반대쪽에서 몰던 기군도 멈춘다. 이런 연후에야 백성들의 사냥을 허용한다. 무릇 짐승

31)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을 쏘는데 있어서는 왼쪽 갈비뼈 부위로부터 쏘아 오른쪽 어깨쪽지에 이른 것을 上으로 삼아, 乾豆로 하여 宗廟에 이바지하고, 왼쪽 귀 밑에 이른 것은 그 다음으로 삼아 賓客에게 이바지하고, 왼쪽 넓적다리 부분에서 오른쪽 갈비뼈에 이른 것은 下로 삼아 요리에 사용한다. 여러 짐승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다 죽이지 아니하며,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아니하며, 또 그 얼굴을 쏘지 아니하며, 그 털도 깎지 아니하며, 標識 밖으로 나간 것은 쫓지도 아니한다. 장차 그치려 하면 承樞府에서 사냥터 안에다 깃발을 세우고, 우레와 같이 大駕의 북과 여러 장수의 북을 치며, 군졸들은 급하게 소리쳐 부른다. 여러 장수로서 짐승을 잡은 사람은 깃발 아래에 바치되, 그 왼쪽 귀를 바친다.³²⁾

위의 사료를 보면 사냥을 통한 강무 의례의 확립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무시 특정한 圍를 정하고 이곳으로 驅軍들이 3차례 몰이를 하면 말을 달리며 병조에서 받들어 올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임금이 가장 먼저 쏘고, 이후 왕자들과 장수들이 차례로 짐승을 향해 화살을 쏜다.

이때 짐승을 쏘아 맞힐 때도 정확하게 왼쪽 갈비뼈 부위에서 오른쪽 어깨쪽지까지 관통한 것을 최상으로 하였다. 정밀하게 심장을 단번에 관통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사냥감만 종묘의 제사용으로 활용했다. 만약 다른 곳에 화살이 맞으면 빈객에게 선물로 주거나 당일 요릿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이미 화살을 맞은 짐승은 다시 쏘지 않고, 그 얼굴을 쏘지 않으며, 圍 밖으로 나간 것은 더 쫓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유용하도록 정밀한 무예 실력을 사냥이라는 특수상황을 통해 국왕의 지위를 의례 속에서 외부에 드러내 고자 했던 것이 강무였던 것이다.

32)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1일(계해).

이러한 태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또 하나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臺諫과의 마찰이었다. 거의 매해 강무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대간들은 집단적으로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상소를 올렸다. 태종은 이에 대해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講武하는 것뿐이다.’³³⁾라고 에둘러 말하기 바꿨다.

그러자 대신들은 강무장에 대간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신들을 참석시켜야만 ‘言路가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³⁴⁾는 내용의 상소를 다시 올렸다. 대간들은 ‘舉動은 임금의 大節이고, 誠信은 정치의 大寶’³⁵⁾이기에 사냥이나 강무를 국왕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의례의 일종으로 확립시키고자 했다. 당시 대간들이 국왕이 궁궐을 떠나 사냥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군사반란에 대한 문제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방금 신하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무지한 武인이 틈을 타서 일을 꾸민다면 禍가 不測한 데에 있을 것이다. 내가 前日에 海州·任實·泰安에 간 것을 후회한다.³⁶⁾

위의 사료는 태종 자신이 사냥이나 강무를 통해 궁 밖으로 나갔을 때, 혹시 모를 군사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음을 국왕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국왕이 직접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流矢에 맞아 상처를 입을 경우에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강무를 비롯한 여타의 궁궐 밖 출입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33)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9일(기해).

34)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0일(을미).

35)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2일(계유).

36)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갑오).

에 없는 상황이었다.³⁷⁾

특히 강무는 보통 6-10일 정도를 궁밖에 머무르며 군사들과 사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태종의 경우는 여기에 매사냥 등을 더해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쫓 밖에서 지낸 것도 자주 있었기에 이러한 신하들의 지적은 현실적인 것이었다.³⁸⁾

또한 일반적으로 강무는 도성에서 하루 이틀 거리인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인근이나 강원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태종은 평안도 海州와 전라도 任實까지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짐승을 쫓았기에 신하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³⁹⁾

그리고 강무 때 꼭 필요한 물이꾼인 驅軍이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인원이었기에 군사들의 피로도 역시 높았다.⁴⁰⁾ 비록 강무에 동원된 군사들에게는 특별히 근무일수를 3배로 더 쳐주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⁴¹⁾ 그만큼 워낙 고된 일이었기에 한번 강무에 참여한 군사들은 이후에는 가능하면 빠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37) 고려 말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사냥은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과 이를 위한 측근 군사세력을 양성하는 정치 도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왕의 사냥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사냥이 단순히 국왕의 사적인 정치 도구에서 벗어나 공적인 명분과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태조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고계의 명분을 되살려 군사훈련의례로서 국왕의 사냥을 지향하였으나 이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이후 태종은 국왕의 사냥 명분을 위하여, '사냥이 아니라 講武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왕의 사냥을 군사훈련 의례로 인식하도록 변화시켰다. 이에 대한 조선초기 강무에 대한 인식변화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38) 대표적으로 태종 5년(1405년) 2월의 경우 동교에서 매사냥을 시작으로 광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경기도 양주로 강무를 진행했다. 바로 이어 임강과 마전에서 사냥을 참관하다가 개성까지 행차가 이어져 한달내내 쫓 밖에서 지낸 경우도 잦았다.

39)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병신).

40)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일(계묘).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8일(경인).

41)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계사).

었다.

지방관들의 경우도 국왕이 인근 지역으로 강무를 나갈 경우 ‘別進上’이라고 하여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비롯한 토산물을 받쳐야 했기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⁴²⁾ 여기에 원래 각도의 지방관들은 원칙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道の 경계를 넘는 越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진상을 이유로 사사롭게 월경하는 일이 잦아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기까지 하였다.⁴³⁾

백성들은 강무장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을 금하는 곳이 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⁴⁴⁾ 특히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평지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져 강무장으로 조성된 곳이 火田을 일구기가 좋은 지역이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강무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경기인근의 지역을 해마다 임시로 강무장으로 지정하고, 동원되는 군사들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하였다.⁴⁵⁾ 그러나 태종대까지는 국가의례라고 보기보다는 국왕의 유희적 성격인 ‘사냥을 위한 강무’라는 구색맞춤 정도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사냥이나 강무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절에 가기 위험이다.’ 혹은 ‘세자에게 사냥하는 법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陪奉하러 간다.’는 식으로 말을 둘러대며 지속적으로 궁궐을 떠나 말을 타고 달렸다.⁴⁶⁾ 이후 세종대에 들어와서 강무의

42)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2월 17일(임진).

43)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4일(정유).

44)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5일(계사).

45)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갑오).

46)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25일(병진).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4일(임진).

軍禮的 속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3. 세종 시기 강무의 의례화와 철원 講武場 특성

단순한 유희로서의 사냥을 넘어서 국왕이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군례의 일환으로 가야만 의례화가 가능했다. 태종대에도 지속적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소가 이어졌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講武는 다만 말 달리고 활 쏘고 치고 찌르는 것만을 급무로 삼는 것이 아니라, 車徒를 點考하고 器械를 검열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坐作進退의 절차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⁴⁷⁾

위의 사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무는 전차와 보병의 움직임을 확인 및 무기를 검열하여 진법운용시 나아가고 물러섬을 익히는 군사훈련의 목적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태조부터 태종대까지의 강무는 군사훈련보다는 '사냥' 그 자체에 대한 유희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궁궐을 장시간 벗어나는 환경이었기에 정치적 공백감이 컸던 것이 우려의 지점이었다.

세종대에는 이러한 유희적 사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강무를 하기 전에 항상 국왕이 직접 祝文을 지어 종묘에 고하고,⁴⁸⁾ 궁궐을 벗어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종대처럼 전라도 임실 등 먼 거리의 강무장은 제외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기나 강원도 일부로 강무장

47)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23일(갑인).

48)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29일(신미).

을 한정하였다.⁴⁹⁾

그리고 강무의 횡수도 봄·가을에 매년 2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1회 정도로 줄여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시 爲民의 정책으로 풀어냈다.⁵⁰⁾ 또한 강무 중晝停 때에 賓客을 위로하기 위해 대동했던 광대인 倡優와 女妓도 데려가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켰다.⁵¹⁾

이러한 세종대의 강무형태 변화는 禱祭의 시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세종대에는 국왕이 강무장에 도착한 이후에 軍神에 대한 예우를 軍禮의 차원에서 蚩尤에게 올리는 禱祭를 반드시 진행하였다. 원래 마제는 ‘만일 征伐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사 지낼 때는 黃帝와 蚩尤로 하고, 또 田狩하는 때는 다만 치우만 제사한다.’라는 고대 법제에 따라 군사 의례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⁵²⁾ 이후 예조에서 禱祭儀注를 정하여 춘추의 강무할 때에 하루 전 行祭하는 것으로 의례화시켰다.⁵³⁾

그리고 세종대 강무의 의례 중 또 하나의 특징은 세자가 강무를 대신하여 수행했다는 것이다.⁵⁴⁾ 이는 그 정도로 세종대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및 군권 장악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자의 위상 강화라는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다.⁵⁵⁾ 강무는 軍權과 관련되었기에 세자가 대신 수행할 경우 반란을 비롯한 혼란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하들은 연이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⁵⁶⁾ 그러나 강무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

49)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2월 10일(임술).

50) 세종대에는 31년의 재위 기간 동안 모두 30회 정도의 강무가 진행되었다. 세종초기 상황이었던 태종의 병이 깊어질 때와 세종의 재위 말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2-3년 정도는 강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51)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6일(신사).

52)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7일(계축).

53)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22일(갑오).

54)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7일(갑오).

55)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3일(갑자).

행하는 것 또한 의례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에 국왕이 병이 나거나 궤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자가 강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다.⁵⁷⁾

이렇게 세종대 강무를 의례화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군사훈련의 모습을 강화하는 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강무때에 군사들이 입는 옷을 甲冑로 통일화시켜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몸가짐을 단속하도록 하였다.⁵⁸⁾

특히 물이꾼을 비롯하여 강무에 참가한 군사들의 경우 각각의 소속이 모두 달라 軍令을 안정적으로 통일화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들의 복장에 특정한 표식을 달아 지휘계통을 시각적으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더해졌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 講武로 거동할 때에 호종하는 3품 이하의 군사 및 각 사람들에게는 모두 標章을 주되, 司禁·司僕·三軍鎮撫·내금위·충의위·속고차·鷹師·向化人·隨駕吹螺赤 및 침총제 이상 각 품의 伴人은 모두 중군에 예속시켜 붉은 표장을 써서 가슴에 붙이게 합니다. 중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와, 좌일번 감사·우일번 감사·시위패·별시위·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붉은 표장을 등에 붙이게 하며, 좌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좌이번 감사·시위패·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푸른 표장을 왼쪽 어깨에 붙이게 합니다. 우군에 속한 상호군·대호군·호군·별시위·우이번 감사·시위패·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취라취·태평소는 흰 표장을 오른쪽 어깨에 붙이게 하되,

56)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6일(계해).

57)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8일(을축).

58)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8월 23일(갑신). ; 다만, 갑주로 완전무장할 경우 전투마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함께 수행되었다.

이 세 가지의 표장은 모두 명주로 꿰매어 네모진 표장을 만들되, 길이는 4치 5푼, 너비는 3치로 하고, 각각 衛號를 쓰고 篆書로 ‘兵曹’ 두 글자의 도장을 만들어 표에 찍습니다.⁵⁹⁾

위의 기록을 보면, 강무에 투입된 군사들의 복장에 각 소속 부대에 따라 특정한 표식을 부착하여 군사 훈련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군 중 내금위를 비롯한 각 품의 수행원이었던 伴人은 붉은 표장을 가슴에 부착하고, 중군 중 상호군을 비롯하여 절제사의 수행원들은 붉은 표장을 등에 부착하고, 좌군에 속한 군사는 푸른 표장을 왼쪽 어깨에 부착하고, 우군에 속한 군사는 흰색 표장을 오른쪽 어깨에 부착시키는 방식이었다.

그 표장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아무 軍 아무 番 아무’라 직접 쓰고,⁶⁰⁾ 병조에서 도장을 만들어 찍어 하나씩 부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강무에 사용할 화살에도 정확하게 소속 부대와 이름을 화살 깃간에 표시하여 혹시 모를 流矢로 인한 사고를 막도록 하였다.⁶¹⁾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군사들 중 수가군사·내사금·사복·삼군 진무·내금위 1번과 충의위 1, 2번은 紅肖旗, 내금위 2번과 충의위 3번은 靑肖旗, 내금위 3번과 충의위 4번은 白肖旗로 구분하여 각 軍旗에 따라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무 중 짐승이 갑자기 국왕을 향해 돌진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백 명을 ‘獅子衛’라는 이름으로 편성하여 국왕 친위군처럼 활용하였다.⁶²⁾

또한 강무를 담당하던 임시 직책인 講武支應使를 통해 강무할 때의 禁습을 따로 만들어 의례화를 위한 준거 기준을 엄격히 시

59)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임진).

60)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24일(갑자).

61)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30일(경오).

62)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8일(갑술).

행하였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하나. 侍衛 大小 군사의 마필을 먹일 乾草는 각 숙소에 미리 積置하여 놓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말게 할 것.’⁶³⁾ 하나. 그 도의 감사와 首領官 및 지나가는 지경 내의 守令 이외에 각 고을의 수령은 越境하지 못하게 할 것.⁶⁴⁾ 등 강무시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와 군령을 통해 각 지방관들의 越境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세종대에는 군기를 통한 군령의 전달과 안정적인 지휘 통제가 강무 속에서 이뤄졌으며, 군례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五禮儀 중 군례의 한가지로 講武儀가 확정된 것이다.⁶⁵⁾ 그 과정에서 철원은 도성과 가장 가깝고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들이 많아 세종대 최적의 강무장으로 부각되었다. 세종대에 강무장은 경기도의 鐵原을 제외하고 漣川·安峽·朔寧·臨江과 강원도의 金化·金城·淮陽 및 황해도의 牛峯 강무장을 모두 혁파하고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⁶⁶⁾

강무장 축소 과정에서도 군사적·의례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았던 鐵原은 세종대에 가장 의미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도승지를 비롯한 예조판서까지도 ‘경기 鐵原府가 講武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⁶⁷⁾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세종대 지리지에 철원에 대한 설명에 ‘講武場이 부 북쪽에 있다.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물고 새와 짐승이 함께 있으므로, 講武하는 곳으로 삼고 지키는 사람과 網牌 90명을 두었다.’⁶⁸⁾라고 적시한 것이다.

63)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4일(병술).

64)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임진).

65)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1일(병진). 『세종실록』 「오례의」 군례 강무의.

66)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2월 22일(경신).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9일(신묘).

67)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5일(무진).

68)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철원도호부.

철원의 강무장은 너른 들과 산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이 풍부하고 비교적 적은 숫자의 물이꾼으로도 강무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태종대부터 철원은 강무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⁶⁹⁾ 조선초기 철원이 강무장으로 지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7) 전일에 政府에서 仁州·安山·富平·廣州 등지를 講武하는 장소로 삼도록 청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토질이 진흙이며 산과 골이 험하고 막혀서 달리고 쫓는 데 불편하고, 또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으나, 땅이 평탄하여 달리고 쫓기에 편리함이 鐵原만 못하다. 또 철원 등지는 禾穀이 풍년이 드니, 그 芻藁를 이바지하는 데 백성들이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⁷⁰⁾

이러한 철원에 대한 강무장으로서의 가치는 세종대에도 지속되었는데, ‘平康·鐵原과 같은 새와 짐승이 번성한 곳이 강무장으로 적격이다.’⁷¹⁾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강원도 평강과 경기도 철원을 연결하여 수일동안 강무장을 이동하며 군사 훈련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표적으로 세종 16년의 강무 기록을 보면, 강원도 평강을 시작으로 경기도 연천과 철원 언덕과 평야를 거쳐 포천 매장원까지 유숙을 하며 경북궁으로 돌아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⁷²⁾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도성 주변의 핵심 道라서 수많은 역이 부과되는 지역이라 철원을 강무장으로 지정할 경우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높아지는 우려가 생겼다. 이후 철원 백성들의 강무의 역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철원부는 강원도 철원부

69)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계유).

70)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0일(신사).

71)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6일(병술).

72)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1일(갑진)/4일(정미)/25일(무신).

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까지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지금 講武場 때문에 경기도의 철원과 安峽을 강원도로 옮겨 붙이고, 충청도의 죽산현을 경기도로 옮겨 붙이고, 철원과 안협 두 고을의 各品科田·守信田·別賜田·功臣田을 죽산현의 풍저창과 광홍창의 位田과 가까운 곳의 軍資田으로 주었습니다. 죽산현의 兩倉 위전을 만일 철원과 안협으로 옮긴다면 두 고을의 軍需의 수가 적으니, 전라도 초입의 礪山縣을 충청도로 베어 붙이고, 죽산현의 양창 위전을 여산으로 옮겨 붙이고, 여산현에 원래 속해 있는 양창의 위전은 전라도의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소서.⁷³⁾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강무장 지정으로 인해 철원이 강원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도 철원은 강원도로 편입되어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청도의 죽산현이 경기도로 옮겨붙고, 전라도 여산현이 충청도로 변경되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종대 '철원'은 강무장이라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행정구역을 변경시키는 특수한 상황까지 이끈 사냥과 군사훈련의 핵심공간이었다.

4. 강무를 활용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세종대 확정된 五禮儀 중 講武儀는 大閱儀와 함께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의례화한 행사였다. 그 중 강무의는 사냥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의 군례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대 최고의 강무장 입지로 활용되었던 곳이 철원이

73)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2월 24일(정묘).

었다.

지금도 철원은 DMZ를 품고 있는 군사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부전선 최대 군사요충지로 휴전선 249km 중 86km인 35%를 담당하고 있어 3사단과 6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역시 군장병들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현재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3사단 사령부를 경기 포천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원의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철원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태봉제’다. 신라말기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가 철원이었기에 이에 대한 역사성을 확보하여 철원의 대표 축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한탄강 트래킹, 다슬기 축제, 오대쌀 축제 등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시기별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특수한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DMZ 평화관광’을 군부대와 상호협동하여 관광 상품화시키고 있다.

각 시기별로 문화관광콘텐츠를 차별화시키려는 모습이 돋보이지만, 철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한 가지 테마로 묶어내고 이미지를 통일시켜 각각의 소규모 콘텐츠들이 융합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부족해 보인다. 지역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출발하지만, 지역 산업과 연동된 산업적 기반을 갖지 못하면 문화가치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⁷⁴⁾

철원군의 경우는 전체 인구 5만명 정도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앞서 제기한 평화관광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콘텐츠, 그리고 태봉국의 수도라는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74)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철원의 전략적 핵심 문화콘텐츠에 '세종대 講武 콘텐츠'가 새로운 대안일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⁷⁵⁾

특히 2023년 '철원역사문화공원'이 7월 개장을 했고, 그 안에 역사문화전시관이 9월에 전시를 시작했다. 개장 이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철원·동송읍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되고 있다. 인력거를 비롯한 근대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뤄 여전히 핵심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철원 역사문화공원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세종시대 강무이야기로 추가하여 풀어낸다면 안정된 거점의 확보 함께 다양한 지역 연관 콘텐츠 개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의 강무 관련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강무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무 준비 단계 콘텐츠는 강무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祭儀' 부분을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다. 국왕이 강무를 하기 위해 궁궐을 떠나기 전 반드시 진행했던 것이 종묘와 사직에 관련한 축문을 올리는 것이었다.⁷⁶⁾ 세종은 직접 강무와 관련한 제문을 지어 종묘에 고한 후 강무장으로 군사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이와 함께 강무 때 좋은 날씨가 계속되도록 祈晴祭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군례의 시작을 알리는 禡祭를 강무장을 중심으로 미리 지내어 전쟁의 신을 달래고 백성들

75) 강무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이규철, 이종오에 의해 대규모 인력 동원행사인 메가 이벤트의 형태로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지자체에서 이를 수행하고, 장기 지속적으로 콘텐츠화시키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된다.(이규철·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76)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29일(신미).

에게 강무소식을 전하는 시작으로 삼았다.⁷⁷⁾

이러한 다양한 제의공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이다. 실제로 기청제나 마제와 같은 의례에서는 국왕이 하늘에 술을 올리는 것이 기본이었다. 현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철원 오대쌀 축제’가 해마다 10월 말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바로 오대쌀 축제의 중심에 강무에서 사용하는 술빚기 관련 행사를 추가하여 세종시대 철원의 강무를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미리 참가자를 모집하여 철원 오대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축제의 현장에서 오대쌀 막걸리를 담가보는 체험형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탁주뿐만 아니라 제사용 청주로 술 도수를 높여 사시사철 철원 오대쌀로 만든 술을 홍보 및 보급하는 것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철원 講武酒-세종대왕이 즐겨 찾은 강무장에서 빚은 제수용 술’처럼 오대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연관성을 증폭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빚은 술로 해마다 신년하례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만들어 철원군수가 제사장을 맡고 인근 군부대 장이 헌관과 축관으로 참가하여 철원 군민들과 함께 강무의를 응용한 제의를 지내며 그해 문화적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철원의 차별화된 문화전략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세종은 철원으로 강무를 왔을 때, 귀한 손님들 뿐만 아니라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게도 술을 내려 그들의 노고를 달래기도 하였다.⁷⁸⁾

둘째, 강무 실행 단계 콘텐츠는 모의 사냥훈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세조대에 완성된 三甲射 형태의 교전형 활쏘기 축제와 대회를 풀어가는 것이다. 삼갑사는 4-9명 정도를

77)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22일(갑오).

78)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9일(기묘);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8일(갑자).

한 조로 만들어 甲·乙·丙조가 서로 활을 쏘아 맞혔던 군사훈련이자 경기로 활용한 무예였다.⁷⁹⁾

조선초기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날카로운 화살촉을 제거하고 가죽으로 끝을 감싼 皮頭箭으로 삼갑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붉은색 물감을 붙여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상대방 몸에 붙은 붉은색 점의 숫자와 위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이었다. 요즘 예비군 훈련 중 모의 시가지전투에서 활용하는 페인트 탄과 비슷한 장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때에는 가족단위로 팀을 구별하거나 특정한 이동형 목표물을 배치하여 흥미성을 유발시키는 서바이벌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철원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이나 한탄강 둘레길 걷기 등의 행사와 연동시켜 일정 구간을 트래킹 형태로 걸어서 이동 후 특정한 공간에서 강무의 사냥을 체험하는 Field Archery 형태의 경기를 접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⁸⁰⁾ 또한 특정한 공간에서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강 건너편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거나 다슬기를 쫓는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와 연동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강무에 등장했던 騎射를 비롯한 다양한 마상무예나 겨륜형 무예들을 중심으로 ‘(가칭) 철원 세종 강무대회’를 개최하여 드넓은 철원 평야에서 말을 달리며 펼치는 새로운 무예스포츠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의 경우도 말을 타고 일정구간을 이동하는 체험형 승마와 연동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79)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8일(신해).

80) Field Archery는 특정한 지역에 다양한 과녁을 세워놓고 이동하며 활을 쏘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이다. 마치 골퍼들이 다양한 홀을 이동하며 홀컵에 공을 넣듯이, 다양한 위치에서 활을 쏘아 맞히는 형태의 경기로 해외에서 잘 보급되고 있는 중이다.

승마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물이나 마장마술 형태의 경기가 주를 이루지만, 전통시대 파발마처럼 한라마 혹은 조랑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이어달리기 경주와 같은 새로운 승마경기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군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강무시 활용했던 다양한 陣法을 무예시범과 함께 진행시킨다면 철원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을 것이다.⁸¹⁾ 또한 文宗代에는 강무장의 위용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인 內四門과 外八門 좌우에 火車를 배치하였듯이, 인근 군부대의 장갑차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함께 전시하여 안보관광콘텐츠와 軍의 대국민홍보 활동과 연계해도 좋을 것이다.⁸²⁾

셋째, 강무 실행 후 단계 콘텐츠로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다. 강무의 핵심에는 사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을 다양하게 가공하여 제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냥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말리거나, 고기젓갈로 만드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다.⁸³⁾

현재 철원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 ‘철원 쿨포크’로 이름 붙여 청정지역으로 오염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맛이 뛰어나고 신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⁸⁴⁾ 이를 강무와 연동시켜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81) 현재 <DMZ평화 꽃송이 축제>의 부대 행사로 ‘세종대왕 강무행차’가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한 역사적 고증과 다양한 연동콘텐츠를 구상한다면 철원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민일보 2022.09.08일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812>)

82)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임오).

83)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6일(기미).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0일(병오).

84) 철원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철원쿨포크(<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657>)

를 육포로 만들어 '철원 세종 강무 육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드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인 포천의 경우 '이동갈비'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인데, 철원의 경우도 강무의 의미를 갈비에 투영시켜 '철원 세종 강무 갈비'라는 형태로 역사성을 음식 문화콘텐츠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철원군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들을 '講武'라는 하나의 역사문화적 코드로 연결하여 문화정책들을 풀어간다면 더욱 차별화된 철원만의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뛰어난 사냥 실력은 곧 전투에서 발휘된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사냥능력은 무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조선의 개국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냥이자 강무였다. 세종대에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위업을 알리고자 만들었던 「龍飛御天歌」의 핵심에도 다양한 무예능력이 잘 담겨져 있다. 그런 이유로 세종대에 주변 신하들이 강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울 때, 세종은 태조의 위업을 가장 잘 의례화 시킨 것이 강무라고 강변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선초기 강무의 특성과 철원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부터 태종대까지의 강무는 의례적 형태라기보다는 '사냥'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국왕의 개인적 움직임이 강하다.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십 수년

간 자유롭게 말을 달리며 사냥했던 일상이자 취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신하들과 비슷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록 왕이라는 절대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삶을 지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都城 근처인 東郊나 西郊에서 매사냥을 비롯한 소소한 취미형태의 사냥은 태종대까지 자주 진행되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강무를 이유로 국왕이 장기간 궁궐을 비우는 일은 심각한 국정공백을 의미했다. 특히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후 아직 제대로 체제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강무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되었다. 혹시 모를 군사 반란 뿐만 아니라 국왕이 직접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流矢에 맞아 상처를 입을 경우에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태종대까지 사간원을 비롯한 臺諫들이 강무를 반대하거나 강무시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세종대에 치러진 강무는 합당한 의례 속에서 사냥을 펼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강무에 투입된 군사들의 복장에 각 소속 부대에 따라 특정한 표식을 부착하여 군사 훈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禱祭를 비롯한 강무와 연관된 의례를 강화하여 오례의 중 軍禮의 핵심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세종대 강무의 의례화 과정 중 가장 두드러진 지역적 특징은 철원 강무장의 확정이었다. 도성에서 하루 만에 도착할 단거리, 사냥에 적합한 지형적 특징과 노루를 비롯한 사냥감이 풍부해서 철원은 세종대 가장 합리적인 강무장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그 공간에서 세자가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강무를 수행했던 것도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세종대 철원은 강무장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원의 강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특성은 현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철원군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역사 문화콘텐츠들을 '講武'라는 하나의 역사문화적 코드로 연결하여 문화정책들을 풀어간다면 보다 차별화된 철원만의 문화콘텐츠구축이 가능하다.

세종의 강무 콘텐츠를 철원의 핵심 역사 문화콘텐츠로 진행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무 준비 단계 콘텐츠로는 '祭儀'를 비롯한 의례 부분의 콘텐츠와 의례에 반드시 활용되는 철원 오대쌀을 활용한 술 콘텐츠다. 이를 통해 세종대 철원의 역사성을 강무를 통해 알려 나가고, 오대쌀의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강무 실행단계 콘텐츠로는 모의 사냥훈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삼갑사나 다양한 마상무예 및 승마 콘텐츠를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이나 한탄강 둘레길 걷기와 연동시키는 전략이다.

세 번째, 강무 실행 후 단계 콘텐츠로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다. '철원 쿨포크'로 만든 육포나 장조림 등은 지역농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지역 문화콘텐츠의 한계점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역 차별화보다는 관람객 모집 즉, 흥행에만 집중하여 대부분의 지역축제를 비롯한 콘텐츠들은 마치 유명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장처럼 변해버렸다. 또한 비슷비슷한 지역축제가 계속 만들어졌다가, 지자체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문화콘텐츠는 서로 상생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어내는 것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1회성으로 행사를 치르고 사라지는 것이나 오래도록 해당 지역민들과 함께 가꾸고 성장시켜야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세종대 ‘강무’를 중심으로 한 철원의 역사문화콘텐츠 전략은 기존의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낼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화 속에서 가장 ‘철원다운 것’이 철원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 중심에 세종의 ‘철원 강무’가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徑國典』

『朝鮮王朝實錄』

권기현,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149호, 육군군사연구소, 2020.

김동진, 「朝鮮前期 講武의 施行과 捕虎政策」 『조선시대사학보』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UCI : G704-000303.2007..40.003)

김지동, 「조선전기 세종의 강무시행 평가와 안보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21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13.

(UCI : G704-001325.2013.21.2.010)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54호, 동양고전학회, 2014.

(UCI : G704-001739.2014..54.003)

이현수, 「조선 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45호, 군사편찬연구소, 2002.

(UCI : G704-001528.2002..45.003)

이규철, 「조선시대 강무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5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DOI : 10.17070/aeaas.2018.12.52.505)

이규철 · 이종오, 「조선시대 강무의 메가이벤트적 성격과 강무콘텐츠 제작·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37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DOI : 10.32611/jgcc.2018.12.37.25)

윤훈표, 「조선 전기 兵書의 강의와 무학교육」 『역사문화연구』49호, 역사문화연구소, 2014.

(UCI : G704-000940.2014..49.004)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UCI : G704-000849.2007..24.011)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UCI : G704-000697.2009..50.021)

허대영, 「조선 초기 국왕의 사냥에 대한 인식 변화와 '講武'의 의례화」 『조선시대사학보』106집, 조선시대사학회, 2023.

(UCI : I410-ECN-151-24-02-088923795)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93호, 군사편찬연구소, 2014.

(UCI : G704-001528.2014..93.001)

최형국, 「조선후기 야간군사훈련 '야조'를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수원 화성 향토문화연구』6집, 수원문화원, 2019.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철원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철원쿨포크

(<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657>)

강원도민일보 : 2022.09.08/09일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931,](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931))

<Abstract>

The Gangmu(講武) in King Sejong's Era & Its historical content use plan in the Cheorwon(鐵原)

Choi, hyeong guk

(Director-Martialarts, Suwon City Performance Company)

This research paper summarizes the changes and essential meaning of The Gangmu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 considered the question of how to utili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of Cheorwon, which was confirmed as an official training site. First, Gangmu was an important national ritual that included military training centered around hunting. However, there were many private factors from Tejo to Tejong. It became a form of solving the king's own personal desires through hunting. On the contra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t became stable in the form of hunting in a proper rite. The most prominent regional feature in the process of ritualizing Gangmu was the confirmation of the military training site in Cheorw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Several plans for advancing Gangmu contents to the core cultural contents of Cheorwon are summarized in three stages.

Keywords: Hunting, Gangmu, Cheorwon, Samgapsa, Cultural conte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7-73
<https://doi.org/10.29212/mh.2024..13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蛟龍山城의 修築과 運營의 實際

- 『南原縣公事』를 중심으로 -

이경석 | 남원시청 관광시설사업소 학예연구사

목 차

1. 머리말
2. 교룡산성 修築의 추이
3. 교룡산성의 軍事 編制 및 軍器
4. 교룡산성 운영의 실제
 - 가. 산성 수축 절차의 검토
 - 나. 산성 經營의 문제
 - 다. 그 밖의 산성 수호의 검토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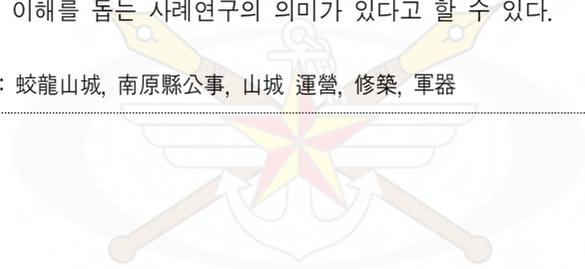
초 록 조선후기 남원은 내륙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고대 관방시설로서 주목을 받아 왔고, 조선후기에는 교룡산성이 여러차례 수축되었다. 본고는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관하여 군사사적 측면에서 군사편제와 규모,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을 고찰하고자한 글이다. 조선전기에 퇴락하였던 남원의 교룡산성은 선조 27년(1594) 처영에 의해 수축되었다. 그 후 국방위기에 따라 숙종대에 산성은 2차례 대대적으로 수축되었고, 수성장은 지방 수령이 겸하여 지역 수호의 거점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군기와 집물은 차례로 갖춰졌다.

18세기 교룡산성의 군사편제를 보면 수성장겸부사(守成將兼本府使), 별장(別將) 1명, 승장(僧將) 1명, 대장(代將) 1명, 수첩군관(守堞軍官) 500명, 군병 1천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8세기 전기 교룡산성의 군병은 1천여명 정도였으나 그 성격은 속오군이였다. 이는 전라도 군현 중 남원 본현과 속현인 인근의 곡성, 구례에서 충원된 보인(保人)이였다. 교룡산성의 속오군은 실제 군역에 종사하는 군인이 아닌 납포군이였다. 산성 유지를 위한 재정원이었던 것이다.

산성 운영의 실제에서는 첫째, 산성 수축의 과정에서 관찰사와 수령의 갈등이 문서 행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산성의 경영에 있어 남원현 수령과 별장의 관계, 군기와 집물 보수의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산성 수축의 실제, 즉 입번(入番)의 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 산성인 교룡산성의 운영 실재를 고찰함으로써 여타 지방 산성 운영의 이해를 돕는 사례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蛟龍山城, 南原縣公事, 山城 運營, 修築, 軍器



1. 머리말

본 논고는 조선후기 남원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¹⁾ 기존 산성 연구는 관방시설의 현황 및 조사에서 기능적, 역사적 측면으로, 그리고 중앙 중심에서 지방사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지역 산성 수축과 운영의 실제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룡산성은 남원의 대표적 산성이며, 읍치로부터 서북쪽으로 5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옛 산성으로 조선시대에는 호남 인근 성 중에 제일(第一)이며, 영호남의 인후지지(咽喉之地)에 위치한 방비가 견고한 성으로 잘 지켜야 하는 요새²⁾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동문(東門)을 비롯하여 성곽의 일부 구간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교룡산성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 매우 드물어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³⁾ 교룡산성

-
- 1) 나경준, 「조선 숙종대 관방시설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차용걸,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中原文化財研究』 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황부연,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운영의 재정구조」,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 『龍城誌』 城郭 蛟龍山城
- 3) 강원중, 「남원지역의 산성 소고」, 『연구논문집』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김세중, 「남원 교룡산성의 변천 과정과 고고학적 가치」, 『선사와 고대』 70, 한국고대학회, 2022.

에 대한 관심도 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관련하여 남원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다룰 때 일부 언급되는 정도였고 고고학 측면에서의 성과라면 지금까지 산성의 북문지(北門址)와 군기터 발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⁴⁾ 이곳에서 삼국시대 기와 등이 확인되었고, 발굴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본 논고의 연구 자료는 고지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관찬 사서 및 『용성지(龍城誌)』를 비롯한 남원 관련 각종 읍지, 그리고 보첩류(報牒類) 자료 등이다. 위 자료의 검토를 통해 산성 수축의 추이와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군사사(軍事史) 측면에서는 조선후기 교룡산성의 위상을 파악하고, 지역 산성 운영의 실재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지방 사회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산성에 대한 사료를 검토하고, 교룡산성 수축의 추이, 산성의 규모, 병력의 편제 및 군기의 규모, 산성 운영의 실제 측면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룡산성 修築의 추이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고지도를 보면 교룡산성은 남원의 읍치 서북쪽에 그려져 있는데, 이 산성은 해발 518m인 험준한 교룡산을 에워싼 것으로 둘레는 3.1km 가량이다.

4)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남원 교룡산성 군기터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傳 군기고터 건물지 1차 발굴조사』, 2019.

성을 처음 쌓은 내력은 분명치 않으나, 그 터와 형식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그 후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축성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정확한 초축 시기를 전하는 기록은 없으며, 고고학적 발굴도 미진한 상황이어서 창건 시기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 침공 시 검교(檢校) 유인궤(劉仁軌)를 검교 대방주 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근거하여 유인궤가 남원에 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성이 교룡산성인지는 확실치 않다.⁵⁾

교룡산은 산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유사시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였다. 임진왜란 때 승병대장 처영(處英)이 산성을 고쳐 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고 하는데, 교룡산성의 축성과 수축에 관한 사서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이 있으며 각 사서에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교룡산성 수축 관련 주요 기록⁶⁾

사 료	내 용	비고
고려사절요 제31권 1380년(우왕 1)	왜적이 南原山城을 공격	

5)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南原都護府 古跡 劉仁軌城에 ‘지금 부의 치소(治所)이니 둘레가 몇 리나 되는데 옛 터가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후자는 남원읍성을 유인궤가 쌓았다고 보기도 한다.

『龍城誌』 古跡 舊志 劉仁軌城 및 井田遺基의 기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이 있다. 그러나 『龍城誌』 성곽 구지 교룡산성에서는 유인궤성이 아니라고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6) 남원시·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남원 교룡산성 종합정비계획』, 2013.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교룡산성-傳 근기고터 건물지 1차 발굴조사』, 2019.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2월 29일	慶尚道全羅道 여러 고을에 山城을 수축, (그중 하나가) 南原府의 蛟龍山城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7일	山城 수축도 백성을 보전하는 방도인데 南原山城은 그 역사를 중 지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9일	남원산성을 義僧將 處英에게 승병을 거느리고 형편에 따라 수축하게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6월 18일	정유재란 당시 당나라 장수 楊元이 산성의 군기와 군량을 본성으로 옮겨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1월 23일	전라 감사 민진원이 교룡산성의 修繕을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승정원일기 1704년(숙종 30) 9월 10일	李濡 등이 입시하여 교룡산성의 수축에 대해 논의하다	
승정원일기 1705년(숙종31) 6월 9일	정유난에 당장 양원이...적이 城 점거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철거하여../ 보수하여 사찰 등 여러 건물을 세울 것, 수첩군관 5백명 良役 총당 건의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712년(숙종38) 6월 14일	南原府의 교룡산성을 重修하고 府使를 守城將으로 삼으라 명함	
교룡산성중수비 1712년(숙종 38)	임진년(숙종38, 1712) 부사 李聖漢이 교룡산성을 중수하자는 狀啓를 巡營의 觀察使 柳鳳輝에게 올려 청하였다. 이 해 9월부터 필요한 양곡과 군사를 모으고 修築하기 시작하여 계사년(숙종 39, 1713) 5월에 공사를 마쳤다. 4면을 모두 고쳐 쌓으니 그 길이가 합 552파(把)였다. 西門은 고쳐 만들고 東門은 虹蜺로 새로 만들었다.	
승정원일기 1731년(영조 7) 9월 25일	교룡산성 수축 건으로 加資	

관련 사료들을 보면 처음 기록은 고려말 왜구와 관련하여 ‘남원산성(南原山城)’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며, 이후 교룡산성에 대

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수 나타난다. 먼저 조선 초기 태종 때 교룡산성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⁷⁾, 이후 선조 대에 전란과 관련해 다시 기록이 보인다. 1594년 승장 처영이 교룡산성을 수축하였으나⁸⁾, 1597년 명나라 장수 양원에 의해 산성은 철거된다.⁹⁾ 즉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은 본성(本城, 南原城)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고집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본성을 수축한 후 일본군과의 전투에 대비하는 동시에 교룡산성의 군기와 군량을 모두 철수시키고, 적이 교룡산성을 점거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철거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¹⁰⁾ 무엇보다도 교룡산성에 대한 언급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와 연관하여 집중되고 있으며, 남원성이 함락된 후 조정에서는 왜 교룡산성에 근거하여 전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의 논의가 벌어지는 지경이었다.¹¹⁾

그 뒤 18세기 초 숙종 대 교룡산성의 수축이 두 차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숙종 대 북방으로는 청나라에 의한 위기 고조와¹²⁾ 함께 남쪽으로는 해적의 약탈로 호남과 연해 포구 등이 약탈을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¹³⁾ 조정을 긴장시키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대비로서 숙종은 전국 주요 거점의 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케 하였고, 교룡산성도 이에 따라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숙종 대 산성의 첫 수축 과정을 살펴보면 1704년에 수

7)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2월 29일

8)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7월 19일

9)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6월 18일

10)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6월 9일

11) 『朝鮮王朝實錄』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8월 18일

12) 하우범·복기대, 「'영고담회귀설'로 살펴본 18~19세기 조선의 서북 경계」, 『몽골학』 70, 2022.

13)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5월 17일

축 논의가 나타나는데, 1월 23일에 전라감사 민진원(閔鎭遠)이 숙종에게 장계를 올려 교룡산성의 형편을 알리고 수선(修繕)할 것을 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는다¹⁴⁾. 그러나 왕의 허락은 얻었으나 바로 산성의 수리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시 조정의 의논이 일었던 듯하다. 민진원이 장계를 올린 후 한참이 지난 9월 10일에 우의정(右議政) 이유(李濡)가 전라감사 민진원의 장계에 대해 왕에게 아뢰어 그의 장계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숙종은 그의 주장대로 할 것을 허락한다.¹⁵⁾ 이후 산성의 수리는 다음 해인 1705년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1705년 6월 9일 강화유수 민진원의 계에 “... 신이 교체되어 돌아온 뒤 이미 모두 수축되었다고 하니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당시 수선은 산성 외곽 중심의 공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수축은 1712년에 시작되어 1713년에 마무리되었다. 당시 교룡산성은 다시 큰 파손을 당하여 긴급히 수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1712년 6월 14일 숙종은 교룡산성을 중수하도록 하고 부사(府使)를 수성장(守城將)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¹⁷⁾ 당시 남원부사는 이성한(李聖漢)이었고, 전라감사는 유봉휘(柳鳳輝)였다. 중수의 과정을 보면 1712년 9월부터 필요한 양곡과 군사를 모으고 수축을 시작하여 다음 해 1713년 5월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의 규모는 산성의 동서남북 4면을 모두 고쳐 쌓았는데 그 길이는 552파(把)였다. 또한 서문(西門)은 고쳐 만들었고 동문(東門)은 홍예(虹蜺)로 새로 만들었다.¹⁸⁾ 당시 교룡산성의 중수를 기록한 산성중수비가 산성의 동

14)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1월 23일

15)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4년(숙종 30) 9월 10일

16) 『承政院日記』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6월 9일

17)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712년(숙종 38) 6월 14일

문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다.

그 이후에도 산성의 수축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나 『승정원일기』에서 1731년 영조 때 교룡산성 수축의 공이 있는 한량(閑良) 남민석(南震錫)을 특별히 가자(加資)하라는 영조의 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 기록에 근거한다면 산성의 수축은 영조 대에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3. 교룡산성의 軍事 編制 및 軍器

조선 초기의 기록과 『여지도서』, 『용성지』 및 각종 『읍지』와 『사례안』 등을 통해 산성의 규모와 군사 편제 및 병력, 군기(軍器)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교룡산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우선, 교룡산성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당시 남원현의 역사, 인문, 지리 등 전반에 대해 기록한 각종 읍지로는 아래 <표 2>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표 2> 18세기 현황 관련 남원 읍지

구분	제 목	시 기	작자	성격	서 지	판본	비 고
1	용성지	1701 - 1752년	사찬	읍지	이도, 최여천 등	목판	
2	여지도서	1760년경	관찬	총지	왕실 주도	필사	
3	남원부읍지	1787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규장각 소장
4	호남읍지_남원	1787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전북대 소장
5	읍지	1791년경	관찬	읍지	미상	필사	고궁박물관소장

18) 「蛟龍山城重修碑」, 1712년(숙종 38)

19) 「承政院日記」 영조실록 1731년(영조 7) 9월 25일

교룡산성의 시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인데, 이 지리지에는 교룡산 석성의 둘레가 1,125보(步)이며, 성안에 우물이 6개이고, 군창(軍倉)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교룡산성의 둘레는 5,717자, 높이 10자, 성안에는 99개의 우물과 군창이 있다고 하였다.²¹⁾

남원의 대표적 읍지인 『용성지』를 보면 용성지 성곽 구지(舊志)에 교룡산성은 ‘석축 둘레가 5,717척(尺)이고, 높이가 10척이며, 성(城) 안에는 99개의 우물(井)과 하나의 작은 시내(小溪)가 있다. 그리고 군창(軍倉)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용성지』 신증(新增)에 ‘마면(馬面)이 일곱이고, 치첩(雉堞)이 1,016척이며 … 순영(巡營)이 있고, 대나무 밭(竹田)이 두 곳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용성지의 편찬자는 ‘실제 산성의 둘레는 7,600척이라 하며, 지금은 승려들이 말하기를(僧說) 둘레가 15여리(餘里)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그 후 18세기의 기록인 『여지도서』 남원 진보조(鎭堡條)에 따르면 ‘교룡산성은 둘레가 5,717척이며, 높이가 11척’이라 하였고, 수성장은 ‘守成將兼本府使’이라 하여 남원부 부사가 수성장을 겸하며 교룡산성의 편제는 ‘별장(別將) 1명, 승장(僧將) 1명, 감영자벽군관(監營自辟軍官) 2명을 대신한 장(將) 1명, 수성자벽수첩군관(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이라 하였다. 소속 읍은 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창평(昌平)·장수(長水)이며, 성 안에 사는 승려들은 13명이며, 거주하는 민호(民戶)는 18호(戶)’라 하였다.²³⁾

20) 『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남원도호부

21) 『新增東國輿地勝覽』 남원도호부

22) 『龍城志』 城郭 蛟龍山城

23) 『輿地圖書』 南原 鎭堡

다음으로 고궁박물관 소장 『읍지』 남원을 보면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 군기 등에 대해 『여지도서』에 비해 상세히 알 수 있다. 먼저 교룡산성은 남원부로부터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며 석축(石築)의 둘레가 2,477보, 높이가 10척, 여첩(女堞)이 1,016처, 성문(城門)은 4개 처라 하였다.²⁴⁾

그리고 교룡산성의 편제를 보면, 별장 1인, 수첩군관(守堞軍官) 311인, 승장 1인, 대장(代將) 1인, 군병은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이라 하였다. 군량미를 의미하는 군향(軍餉)은 미(米)가 5,902석(石) 2두(斗) 5승(升) 8홉(合) 6사(勺)이라 하였다. 그리고 속읍(屬邑)은 곡성이 미(米) 777석(石) 2두(斗) 9승(升) 4사(勺), 구례가 미(米) 804석(石) 5두(斗) 1승(升) 2홉(合) 2사(勺)이라 하였다.²⁵⁾

그리고 편제상의 차이를 보면 『여지도서』는 별장, 승장, 대장, 수첩군관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읍지』는 위 내용에 군병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는 수첩군관을 5백명으로 기록하였다면, 『읍지』에는 수첩군관을 311인이라 하였고, 군병은 1,542명이라 기록하고 있다.

속읍도 『여지도서』는 구례, 곡성, 옥과, 창평, 장수라 하였는데, 읍지에는 곡성, 구례 두 곳을 적고 있다. 그리고 성내 거주하는 승려와 민호의 숫자를 보면 『여지도서』 상에는 승려가 13명, 민호는 18호라 하였는데, 1787년 『호남읍지』에는 승려가 47명, 성내 거주하는 민호는 38호라고 기록하고 있어, 승려와 민호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산성의 군사 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 『邑誌』 南原 官厄(고궁박물관 소장)

25) 상동

〈표 3〉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와 군병의 수

구 분	여지도서 (1760)	호남읍지 (1787) ²⁶⁾	읍지 (1791) ²⁷⁾	비변사인방안지도 (18c)
守成將兼本府使	1명	1		
別將	1명	1	1인	
僧將	1명	1	1인	
監營自辟軍官2명 代身 將	1명	1	1인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5백명	311인	5백명
軍兵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	

위 자료를 근거로 편제를 살펴보면 산성의 수성장(守성장)은 부사(府使)가 겸했으며, 별장 1명, 승장 1명, 대장(代將,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1명, 성을 수비하는 수첩군관 500명, 군병은 1,54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794년(정조 18)의 『군국총목(軍國總目)』에서는 교룡산성의 군총(軍摠)은 2,103명 내(內)라고 하고, 그 군사편제를 ‘별장 1인, 천총(千摠) 1인, 파총(把摠) 2인, 초관(哨官) 12인, 지곡관(知穀官) 2인, 기고관(旗鼓官) 2인, 기패관(旗牌官) 24인, 수첩군관 500인, 병방(兵房) 1인, 감관(監官) 8인, 수직군(守直軍) 7명, 승대장(僧代將) 3명, 군졸 1,540명’이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²⁸⁾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룡산성의 규모 및 시설 등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자료가 18세기 중반의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이다. 이 지도에는 교룡산성의 둘레가 5,171척, 높이가

26) 교룡산성의 기록은 『湖南邑誌』 남원(전북대 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南原府邑誌』(奎1740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내용이 동일하다.

27) 『邑誌』 남원(고궁박물관 소장)

28) 『軍國總目』(奎12195) 軍摠에서 守城將卒이 63명, 納布軍官 500인, 作隊軍卒 1,540명이라 하였다.

10척, 곡성(曲城)이 7척, 여첩(女堞)이 1,016척, 치첩(雉堞)이 1,016척, 포를 쏠 수 있게 성벽에 뚫은 구멍인 포혈(砲穴)이 1,088혈, 방축(防築)이 2, 우물(泉)이 99개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성 내 시설물로는 장대(將臺) 3칸, 염산(鹽山)이 2칸, 사찰이 1, 별장아사(別將衙舍)가 8칸, 승장청(僧將廳)이 10칸, 군기고(軍器庫) 8칸, 군향고(軍餉庫) 20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산성 내에 곡성의 군량미 약 701석을 보관하는 고사(庫舍)가 10칸, 군기고 2칸, 그 외 구례의 군량미 약 598석을 보관하는 고사 4칸과 군기고 3칸이 있다고 하였다.²⁹⁾

위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교룡산성 내 주요 시설물로는 장대, 별장아사, 승장청, 군기고, 군향고, 사찰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성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군량미를 비축하고 군기를 보관·유지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룡산성의 규모와 편제 등 비교

구분	여지도서 (1760)	용성지 (1701~1752)	호남읍지 (1787) ³⁰⁾	읍지 (1791) ³¹⁾	비변사인방안지도(18c)
둘레	5,717척(尺)	5,717척(尺)	5,717척(尺)	2,477보(步)	5,171척(尺)
높이	11척	10척	10척	10척	10척
편제	守成將兼本府使 別將 1명 僧將 1명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將 1명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守成將兼本府使 別將 1명 僧將 1명 監營自辟軍官 2명을 代身하는 將 1명 守城自辟守堞軍官 5백명	別將 1인, 守堞軍官 311인 僧將 1인 代將 1인 軍兵 三局 保人 1,542명	守堞軍官 5백명

29) 비변사인방안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

속읍	求禮, 谷城, 玉果, 昌平, 長水		求禮, 谷城, 玉果, 昌平, 長水	谷城, 求禮	
군량미				5,902石2斗 5升8合6勺 곡성米 777石 구례米 804石	4,199石3斗9升4勺4里2分 곡성米 701石3斗3升6合 구례米 598石
시설		馬面 7 雉堞 1,016 巡營 軍倉 우물 99 작은 시내 1		女堞 1,016 처 城門 4처	曲城 7처 女堞 1,016처 雉堞 1,016처 砲穴 1,088혈 防築 2 泉 99개소 將臺 3칸 塩山 2칸 寺刹 1 別將衙舍 8칸 僧將廳 10칸 軍器庫 8칸 軍餉庫 20칸 谷城 庫舍 10칸 谷城 軍器庫 2칸 求禮 庫舍 4칸 求禮 軍器庫 3칸 僧房 ³²⁾ 醬庫 ³³⁾
기타	성내 僧侶 13명 성내 民戶 18戶		居僧 47명 居民 38戶		

30) 교룡산성의 기록은 『湖南邑誌』 南原(전북대 도서관 소장)의 내용과 『南原府邑誌』 (奎1740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내용이 동일하다.

31) 『邑誌』 남원(고궁박물관 소장)

32) 『南原縣公事』 1736년 2월 초9일

33)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그리고 교룡산성의 군기(軍器)를 살펴보면 교룡산성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군기란 군의 기물(器物)로 전쟁에 쓰이는 무기류나 도구를 의미하며, 종류로는 무기류, 군악기, 깃발, 군용 도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룡산성의 군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1791년 『읍지』가 비교적 상세하다. 용성지에는 읍성 내 군기청(軍器廳)이 있다고 하였는데, 읍지를 살펴보고, 이웃 군현인 곡성·구례 등과 여타 산성과도 비교하여 산성의 군기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1791년 『읍지』의 교룡산성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黑角弓) 121장(張), 교자궁(交子弓) 274장, 궁현(弓鉉) 405개(箇), 궁가(弓家) 405개, 궁룡(弓籠) 3건(件), 장전(長箭) 639부(部), 시룡(矢籠) 9건, 조총(鳥銃) 81명(柄, 자루), 화약(火藥) 1,600근(斤), 연환(鉛丸) 59,455개, 환도(環刀) 2명(柄), 통아(筒兒) 205개, 남비개(南飛蓋) 66개, 이약통(耳藥桶) 66개, 화철(火鐵) 66개, 화승(火繩) 198사리(沙里), 약승(藥升) 66개 등 모두 17종이다.³⁴⁾

읍성의 군기에 대해서는 『용성지』와 1791년 『읍지』에 기록이 보인다. 먼저 『용성지』 공서조 신증을 보면 읍성의 군기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흑각궁 469장, 상각궁(常角弓) 917장, 교자궁 85장, 장전 1,274부 27개(介), 편전(片箭) 605부 25개, 통아 760개, 등자유조총(騰子鎗鳥銃) 6자루(柄), 정철조총(正鐵鳥銃) 1,704자루, 정철삼혈조총(正鐵三穴鳥銃) 6자루, 행고(行鼓) 18건, 나팔(喇叭) 3쌍, 동구(銅口) 1건, 소쟁(小錚) 15건, 편곤(鞭棍) 122자루, 거마조(拒馬柵) 156좌(坐), 중군대기치(中軍大旗幟) 1면(面), 삼지창(三枝槍) 36자루, 능철(菱鐵) 18,070개, 창도(槍刀) 1쌍, 발라(哮囉) 5건, 명라(鳴囉) 1건, 철갑주(鐵甲冑) 각 12부, 화약 113근, 연환 23,000개 등 모두 24종이다.³⁵⁾

34) 『邑誌』 關陞 軍器(고궁박물관 소장)

35) 『龍城誌』 公署 軍器

그리고 1791년 『읍지』에 기록된 읍성의 군기를 보면 장편전룡(長片箭籠) 24건, 통아 989개, 정철조총 1,842명, 천보총(天步銃) 64명, 정철삼혈총 6명, 승자유조총(勝字鎗鳥銃) 6명, 조총찬혈찬(鳥銃鑽穴鑽) 2개, 삼지창 28명, 담쟁(擔鎗) 1쌍, 남비개 1,802건, 기가피(旗家皮) 91개, 화철 254개, 연환 584,324개, 행고 29좌, 대정(大鉦) 2건, 소쟁 16건, 동구 1건, 명라 1건, 발라 5건, 나팔 3쌍, 태평소(太平簫) 1쌍, 철갑주(鐵甲冑) 각 20건, 화승 5,328사리, 이약통 1,756개, 약승 48,270개, 능철 18,177개, 화약 9,039근 7냥 7전 8푼, 장막(帳幕) 185건, 구축철말휘장(具竹鐵抹揮帳) 24건, 동로구(銅爐口) 185좌, 구아리금환도(具阿里金環刀) 2,517명, 편담(扁擔) 185개, 부자(斧子) 185개, 초자(鋤子) 185개, 철등(鐵燈) 324건, 편곤 122명, 거마조 171기, 인기(認旗) 23면, 령기(令旗) 10면, 순시기(巡視旗) 10면, 신기(神旗) 17면, 고초기(高招旗) 8면, 총기(摠旗) 58면, 대장기(大將旗) 173면 등으로 총 44종이다.

이에 반해 같은 『읍지』에 곡성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 23장, 교자궁 52장, 장전 62부, 편전 25부, 통아 22개, 환도 1자루, 연환 1,805개, 조총 1자루, 남비개 1개, 이약통 1개, 화승 3사리, 화철 1개 등 총 12종이다. 그리고 구례의 군기를 보면 흑각궁 30장, 교자궁 45장, 장전 63부, 편전 2부, 통아 20개, 연환 1,805개, 환도 1자루 등 총 7종이다.³⁶⁾

또한 용성지 공서 금성산성(金城山城) 군기를 보면 담양의 금성산성 내 군기의 규모를 볼 수 있는데, 흑각궁 230장, 교자궁 115장, 장전 270부, 편전 125부, 통아 80개, 환도 2자루, 연환 12,000개, 조총 1자루 등 총 8종이다.³⁷⁾

36) 『邑誌』 關陞 軍器(고궁박물관 소장)

37) 『龍城誌』 公署 金城山城 軍器

곡성현과 구례현의 군기의 종류와 수량은 1791년 읍지인 남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고궁박물관 소장 곡성현과 구례현 읍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곡성현의 군기를 살펴보면 장전 86부 11개, 편전 81부 18개, 흑각궁 18장, 교자궁 68장, 궁현 8개, 통아 82개, 창도구(槍刀具) 26병, 거마조 41병, 능철 2,430개, 능철관승(菱鐵串繩) 233파(杷), 삼혈총 1병, 대고(大鼓) 2좌, 쟁(錚) 1좌, 행고 2좌, 편곤 22병, 수은갑주(水銀甲冑) 1건, 정철조총 353병, 왜조총(倭鳥銃) 3병, 천보조총(天步鳥銃) 16병, 평조총(平鳥銃) 70병, 남비개 106개, 화승 318사리, 이약통 106개, 화약 2,022근 15냥 8전 6푼, 연환 1,805개 등으로 총 15종이다.³⁸⁾

그리고 구례현의 군기를 살펴보면 상각궁 7장, 흑각궁 58장, 교자궁 207장, 황각궁(黃角弓) 20장, 궁현 130개, 별대전(別大箭) 7부, 편전 58부 15개, 통아 278개, 삼혈총 6병, 삼지창 1좌, 중고(中鼓) 2좌, 장전 341부, 유라도(柳羅韜) 3좌, 면포후(綿布幘) 1건, 능철 700개, 거마조 40좌, 행고 1좌, 소쟁 1좌, 철갑주 1건, 편곤 20병, 혁갑주(革甲冑) 1건, 화철 126개, 수철환(水鐵丸) 16,523개, 남비개 76개, 소고 1좌, 이약통 91개, 화약 1,711근 6냥 3전, 연환 15,775개, 화승 398사리, 정철조총 311병, 천보조총 16병, 환도 13병, 나팔 1쌍, 면포소후(綿布小幘) 1건, 순시(巡視) 1쌍, 령기 1쌍 등 총 36종이다.³⁹⁾

위 내용을 정리하면 각 현(縣)의 군기 규모를 비교할 때 남원 읍성이 군기의 종류나 규모에서 교룡산성이나 곡성현, 구례현, 담양 금성산성 등에 비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흑각궁, 교자궁, 궁현, 궁가, 장전, 편전, 삼지창, 능철, 조

38) 『邑誌』 곡성현(고궁박물관 소장)

39) 『邑誌』 구례현(고궁박물관 소장)

총, 통아, 화약, 연환, 화철, 화승, 약승, 행고, 나발 등 각종 악기, 남비개, 이약통, 각종 군용 도구 등에서 수량이 가장 많고 종류도 51종에 달한다.

그리고 용성지의 기록과 1791년 읍지의 기록을 보아도 그 수와 종류가 매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조총의 종류나 수량, 화약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남원읍성의 군기의 수량이 교룡산성이나 곡성, 구례, 금성산성 등에 비해 종류와 수량에서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룡산성의 군기의 종류는 17종으로, 구례현과 비교하면 구례현이 정철조총을 비롯해서 모두 36종의 군기를 기록하고 있어, 군기의 종류가 교룡산성의 종류보다 2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으나, 교룡산성의 군기 중 흑각궁, 교자궁, 궁현, 궁가, 장전, 연환 등이 구례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화약은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곡성현 및 담양의 금성산성 등과 비교한다면 교룡산성의 군기가 상대적으로 종류나 수량에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 비교를 통해 남원읍성과 교룡산성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⁴⁰⁾

40) 『龍城誌』建置沿革 舊志 鎭管 都護條에 속현 9곳이라 하여 임실, 무주, 곡성, 진안, 용담, 옥과, 운봉, 창평, 장수라 하였고, 新增에는 軍卒은 곡성, 옥과, 운봉, 창평, 장수, 구례 6읍이 남원부에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관방체계가 진관체제에서 영장체제로 바뀌면서 소속 읍이 변화했음을 이와 같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4. 교룡산성 운영의 실제

가. 산성 수축 절차의 검토

지금까지 교룡산성의 연혁과 수축의 추이, 교룡산성의 규모와 편제 및 군기의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어떠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사료로 『남원현공사』와 『남원현첩보이문성책』이 있다.⁴¹⁾ 위 보첩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산성의 실제 운영상에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산성의 수축 과정이 어떠한 문서 행정적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군기(軍器) 유지의 문제, 산성 수호의 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숙종은 당시 남원부사를 수성장으로 삼아 산성의 수축을 명한 바 있었다. 그리고 두 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기술하였다. 이후 영조 대에도 수축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수선은 진행되었다. 숙종 대의 수축에도 불구하고 교룡산의 지세가 험하여 산성을 견고하게 쌓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었던 듯하며,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산성이 자연적 재해를 입어 파손되거나 ‘비가 오면 (죽죽) 흙이 허물어짐으로써’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⁴²⁾

먼저 산성의 피해 상황을 보면 1734년(영조 10)에 산성 4면의

41) 『南原縣公事』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K2-3639)이며, 『南原縣牒報移文成冊』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규25033, 규26030)이다. 이하에서는 위 두 자료를 중심으로 교룡산성 운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검토하겠다. 또한 남원부는 당시 현으로 강등된 상태였으므로 이하 남원현으로 표기한다.

42)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체성(體城) 141파(把) 반(半), 여첩(女堞) 34파가 우수(雨水)에 무너졌으며, 1735년에는 봄이 되자 얼음이 풀리며 체성 2곳 40파에 더해 여첩 33파가 무너졌다.⁴³⁾ 그리고 다음 해인 1736년에는 피해가 더욱 누적되었다. 전년 여름철에 남원현은 여러 차례 장마를 겪으며 산성의 성벽 등이 무너져 나가, 그 규모가 3백파(把) 정도에 달하였는데 제대로 수리를 못하였고, 1736년 그때까지의 피해 상황을 척량(尺量)하니 산성의 피해 규모가 ‘동문에서 남문까지 무너진 곳은 1곳인데, 길이는 7파, 남문에서 서문까지 무너진 길이는 95파, 여첩은 무너진 곳이 15곳, 길이는 34파, 서문에서 북문까지 무너진 곳은 17곳으로 77파 반이고, 여첩은 무너진 길이가 4파, 북문에서 동문까지 무너진 곳은 14곳인데 길이가 62파, 도합 체성이 241파 반, 여첩은 38파’라고 남원현감은 병영에 보고하였다.⁴⁴⁾

즉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남원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병영에 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성 보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병영에 알리고 있다. ‘산성의 수선은 임자년(1732년) 가을에 무너졌던 산성 140파를 보수했던 전례에 의거하여 본읍에 소속된 승군 2백, 곡성의 승군 1백, 구례에 소속된 승군 1백, 도합 400여명을 동원하여 보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들) 순영의 관찰사에게(도) 논보하겠다’고 병영에 보고를 올렸다.⁴⁵⁾

43)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 本縣蛟龍山城四面體城一百四十一把半女堞三十八把昨年雨水後頽破·縣監親往摘奸則前日摘奸尺量者外體城兩處四十把頽破是遭女堞之間間頽破者合爲三十三把是乎

44)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自東門至南門一處七把自南門至西門九十五把女堞二十四把十五處自西門至北門十七處七十七把半女堞四把自北門至東門十四處六十二把合體城二百四十一把半女堞三十八把是乎

45)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병영에 보고

당시 남원부는 부(府)에서 현(縣)으로 읍호가 강등된 상태였으며, 당시 현감은 박용수(朴龍秀)였다.⁴⁶⁾ 그가 병영에 보고를 올리기 전 ‘비변사 관문에 근거한 관찰사의 관문’이 도착한 상황이었고, 내용은 ‘산성의 성첩이 무너졌거나, 수축했는데 튼튼하지 않으면 엄히 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었다.⁴⁷⁾ 이런 정황이 어우러져서 그는 일을 서두른 듯하다. 즉 군현에 있어서는 산성수호의 담당자인 별장(別將)이 있었음에도 당시 수령에게 산성 수호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남원현감은 병영에 보고 후 8일 뒤, 정월 18일에 같은 내용으로 순영에 보고를 올리면서 위 보고 내용과 수축 계획과 같이 순영은 관문을 함께 곡성과 구례에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편비를 보내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후 병영에 관문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주었다.⁴⁸⁾

여기까지가 남원현감이 양영(兩營, 兵營과 巡營)에 올린 산성의 피해 상황과 수리 계획에 대한 보고이다. 피해 보고 이후 진행 절차를 본다면 전해인 1735년의 기록이 자세하다.

다시 1735년의 산성 피해 상황에 대한 살펴본다면, 당시 병영

46) 읍호 강현(降縣)의 사유는 萬北寺掛書事件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이 궤사사건에 대한 연구로는 조운선의 논문이 있다. 만복사는 萬北寺, 百福寺라고도 불리었는데 지금은 폐사지이다.

조운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궤서 사건의 정치적, 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2008.

현감의 명단은 다음 자료가 있다.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전북편-』, 전라문화연구소, 1995, 57~65쪽

박용수의 재임기간은 1735년 6월부터 1737년 8월까지였고, 또한 당시 순영의 관찰사로는 서종옥(徐宗玉)이 1735년 3월부터 1736년 2월까지였고, 그 후 윤득화(尹得和)가 1736년 2월부터 1737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그리고 서종옥 이전 관찰사는 유복명(柳復明)이었다. 그는 1734년 7월부터 1735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47)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48)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18일

에 현감이 보고를 이미 한 이후에 별장의 뒤늦은 보고가 있었다. 즉 봄이 되어서 산성이 더 무너진 정황을 뒤늦게 보고 했고, 현감이 직접 나가 확인해보니 피해 규모는 더 컸던 것이다. 현감이 확인해 보니 무너진 체성이 2곳 40파였고, 추가로 무너진 여첩이 모두 33파였던 것이다.⁴⁹⁾ 이에 현감은 조사한 내용을 기존에 당한 산성의 피해에 더하여 추가 피해 상황을 2월 초2일 동일일에 다시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였다. 이에 병영은 당시 산성의 피해 상황 조사를 위해 군관을 파견했었고, 그 보고에 따라 순영에 논보하겠다고 답변을 주었고,⁵⁰⁾ 순영에서는 남원현감의 보고에 대해 비장(裨將)을 보내 피해 상황을 조사케 해야하나 본현은 수성장을 겸하니 친비(親裨)를 보낼 필요가 없이 산성 수축에 들어갈 인부와 물자를 [역부(役夫)와 역량(役糧)을] 잘 헤아려 성책(成冊)을 할 것과 현감이 직접 나가 (감독하여) 실행하라고 답변하였다.⁵¹⁾

즉 현감의 보고를 받은 병영은 군관을 파견하여 산성의 피해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순영에 다시 논보하겠다고 하였고, 현감이 병영에 보고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순영은 비장을 파견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남원 본현이 수성장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성 수축에 필요한 성책을 수정할 것과 현감이 공사를 직접 거행하도록 판단을 내렸다. 현감의 요청대로 순영은 관문(關文)을 곡성과 구례에 보냈음은 물론이다.

이후 2월 29일에 남원현감은 전례에 따라 속읍(屬邑)인 곡성과 구례에 승군(僧軍) 징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곡성과 구례는 산성수축을 위해 필요한 각 1백의 승군을 제대로 뽑아 대기토록 하라는 것이었다.⁵²⁾ 동시에 남원현 또한 승군 2백을

49)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50)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병영에 보고

51)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순영에 보고

준비해야 했다.

산성 수축을 위해 현감은 3월 초6일 곡성과 구례에 이문(移文)하기를 ‘산성을 수축하되 튼튼히’ 할 것과 갑인년 「산성절목」에 개축한 곳에 그 해 날짜, 감독한 자의 성명을 적어 넣어 3년 안에 다시 무너질 경우 잘 감독하지 못한 자를 책벌하라 하였음을 주지시킨다.⁵³⁾ 또한 솜씨가 뛰어난 석수 2명씩을 각각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⁵⁴⁾

남원현감은 이와 아울러 산성 수축에 들어가는 비용 추산을 3월 초6일에 순영과 병영에 함께 보고하였다. 일정은 16일까지 두 읍의 역군(役軍)을 인계 받아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과 산성 보수(補修)의 고가(雇價)는, 갑인년(甲寅年, 1734년) 영문에서 내려 준 「산성절목(山城節目)」에 의거하여, 계산한 결과가 백여 석, 승군에게 줄 곡식은 쌀 40여 석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보낸 ‘산성 수축 소홀시 주청하여 엄한 죄로 다스리겠다’는 관문⁵⁵⁾과는 다르게 순영은 남원현감의 이 같은 비용 추산 보고를 받자 곧 바로 ‘농사에 방해’가 되니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도록 공사의 중지를 명했다.⁵⁶⁾

이후 남원현감은 순영의 지시에 따라 ‘산성 성역(城役)을 가을로’ 미루라는 지시를 3월 14일 도착한 패자(牌字)에 의거하여 그 날 바로 곡성과 구례에 이문하였다.⁵⁷⁾

또한 같은 날 남원현감은 순영에서 ‘농사철이라’ 성역 중지 지시를 하였다는 것과 성역이 늦어져 중지된 책임이 남원현에게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를 병영에 보냈다. 즉 순영에 보고한

52)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29일

53)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6일

54)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8일

55)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정월 초10일

56)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초6일

57)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14일 곡성과 구례에 이문함

이후 순영에서는 봄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휘가 없었고, 순영에서 파견한 편비(編裨)의 상황 조사 후에도 순영과 남원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도 보고하였다. 또한 현감은 농사철로 인해 성역을 중지시킨 관찰사의 지시에 대해 승군은 농민이 아니며, 가을은 오히려 분주한 때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현감은 상급 기관인 순영의 지시를 따라 속업에 승군 징발의 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병영에 보냈다.⁵⁸⁾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 문서의 왕복을 살펴보면 현감은 수시로 병영에 보고를 했으며, 순영에 보고하기 전 먼저 병영에 문서를 발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현감은 피해 규모에 따른 동원 인력의 규모 및 소요 경비의 산출도 아울러 양영(兩營,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병영은 사실 유무와 피해의 규모 등을 따지기 위해 군관을 파견했고, 그 결과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순영도 편비를 보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⁵⁹⁾ 양쪽의 보고가 맞는지를 순영 관찰사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남원현과 순영의 산성 수축 협의가 완료된 후 순영은 관문을 곡성과 구례에 내려 남원현감의 수축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승군 징발을 명했다. 순영의 관문에 의거 남원현감은 두 속현에 이문(移文)하고 3읍이 회동하

58)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3월 14일 병영에 보고함

59)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초2일 순영에 보고에서 남원현감이 성역(城役)의 일을 거행토록 지시하면서도 이후 2월 29일까지도 협의를 끝냈던 것으로 보인다. 감영은 그즈음에 구례와 곡성에 승군 동원을 명하는 관문을 발송함으로써 다시 수축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당시 관찰사는 유복명(柳復明)에서 서종옥(徐宗玉)으로 1735년 3월에 교체되면서 산성 수축을 농번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다. 또한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정월 초 10일 보고에는 순영의 관찰사가 '직접 행차하여 순찰하면서 조사하겠다'는 제사(題辭)가 있으나 관찰사는 순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관찰사는 산성 수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듯하다.

여 산성의 각 구역을 나누어 역을 맡도록 추진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관찰사의 교체로 인해,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산성 수축의 중지를 지시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이와 같이 이전에 빈빈히 이루어졌던, 그러나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교룡산성 수축의 행정 절차적 진행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겠다.

나. 산성 經營의 문제

1) 산성 군사 편제의 검토

위에서 남원의 각종 읍지류를 근거로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교룡산성의 수성장은 본현의 수령(守令)이 겸하였고, 별장 1명, 승장 1명, 감영자벽군관 2명을 대신하는 대장(代將) 1명, 수성자벽수첩군관 5백명, 군병은 3국보인(三局保人) 1,542명이었다고 정리하였다.

별장은 조선시대 산성(山城)·도진(渡津)·포구(浦口)·보루(堡壘)·소도(小島) 등의 수비를 맡은 종구품(從九品) 무관직이다.⁶⁰⁾ 『속대전』에 의하면 전라도는 6명이고, 『대전회통』에 의하면 전라도는 7명이라 하였다.⁶¹⁾

별장은 산성 경영의 책임을 맡았던 군관으로 당시 교룡산성 별장은 순영 관찰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추천되어 임명되었던 듯하다. 이로 인해 산성 경영은 그 직임에 적절하지 못한 정실인사(情實人事)에 의한 폐단이 예상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산성을 수호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별장은 수성장이었던

60)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61) 『續大典』兵典 外官職 全羅道 別將六員增置。○ 格浦, 黑山島, 古突山, 威鳳山城, 笠巖山城, 金城山城。

『大典會通』兵典 外官職 全羅道 別將七員。從九品。續 增置。○黑山島·古突山·威鳳山城·笠巖山城·金城山城·南固山城, 補加。·所安島, 補加。○ 格浦, 補革。

남원현 수령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산성의 이상 유무 및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야 했다.⁶²⁾ 그러나 당시 별장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즉 봄이 되어서야 산성이 더 무너진 정황을 뒤늦게 보고 했고, 현감이 직접 나가 확인해보니 피해 규모는 더 컸던 것이다.⁶³⁾ 그리고 별장은 무엇보다도 번을 서는 산성 수첩군관의 직무 관리를 해야 했다.⁶⁴⁾ 그 밖에 수령이 별장에게 내린 지시로는 별장에게 황폐해진 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할 것과 산성 내 민(民)들의 범작(犯斫) 근절, 즉 산성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였다.⁶⁵⁾ 또한 복무 기강을 세워 제대로 일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⁶⁶⁾

그런데 현감이 별장에게 보낸 전령(傳令)을 보면, 산성 번의 교체 입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별장은) 이런 실태를 현고(現告)하여 조치함이 마땅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별장이) 산성 피해를 살피지 않고 보고도 소홀히 한 점, 그 외에도 별장이 산성을 왕래할 때 승려들에게 여(輿)⁶⁷⁾를 요구하여 (가마를) 메게 한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감은 별장에게 산성 내 백성들의 범작(犯斫) 방지하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백성들의 범작이 빈번하였음도 불구하고 별장은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감은 여를 메게 한 것에는 순영에 보고하여 별장을 치죄하겠음과 아울러 번 문제의 폐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62)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14일

63) 상동

64) 상동

65)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2월 초9일

66) 『南原縣公事』 1735년(영조 11) 2월 14일

67) 輿는 수레, 마차를 의미하지만 위에서는 가마를 승려들에게 메도록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명했다.⁶⁸⁾ 별장의 업무 태만에 대해 수령은 별장의 교체까지 고려할 만큼 불만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사 측의 인사라 할 수 있는 별장이 현감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을지 의구심이 든다. 현감은 당시 산성별장을 ‘외지인 와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떠나버려’ 산성 수축의 공무를 거행할 틈이 없다고 지적하고, 별장의 근무태도와 성과에 따라 상벌을 엄격히 하여 산성 일에 실효가 있도록 해야 함과 아울러, 처음 규례는 이 지역 사람을 차출하여 정했던 것처럼 ‘이 지역 사람으로 별장을 차출해 줄 것’을 감영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감영은 이런 요구를 바로 거절해 버린다.⁶⁹⁾

또한 감영자벽군관(監營自辟軍官)에서 ‘자벽(自辟)’이란 조선시대, 각 관아의 장(長)이 임의로 추천하여 벼슬을 시키던 일을 말하며⁷⁰⁾ 교룡산성에 감영의 관찰사가 벼슬을 시킨 군관이 2명이었는데 이를 대신하는 장(代將)이 1명, 또한 수성자벽수첩군관이란 수성장(守城將)이 임의로 벼슬을 시킬 수 있는 수첩군관으로 정원이 5백인이라는 뜻인데, 원래 수첩군관(守堞軍官)이란 조선시대 수어청(守禦廳), 총융청(摠戎廳) 등의 군영에 속했던 군관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미(米)를 납부하였고, 전시나 변란 시에 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군관인데, 1677년(숙종 3) 남한산성을 수호하는 수어청에서 군관을 설치하였다.⁷¹⁾ 수어청의 수첩군관은 최대 500명이 정원이었고, 대상은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중에 모집하였다고 하는데,⁷²⁾ 이처럼 교룡산성의 산성 수호를 위한 수첩군관 500인의 정원은 수어청의 정원 500인과 같다. 물론

68) 상동

69) 『南原縣公事』 1736년(영조 12) 4월 26일

70)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71) 『朝鮮王朝實錄』, 숙종실록 1677년 숙종 3년 5월 28일. 1677년(숙종 3) ‘守禦廳에 500명을 정원으로 守堞軍官을 선발’ 하였다고 하였다.

72) 서태원, 수첩군관, 위키실록사전(<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守堞軍官>)

수어청의 수첩군관의 정원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 했음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1791년 『읍지』에는 교룡산성의 수첩군관의 수가 311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수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남원현공사』에 의하면 이 수는 남원현의 수첩군관이고, 나머지 189명은 당시 남원진(南原鎭)의 속읍인 옥과, 창평, 구례, 곡성, 장수 등 5읍에 배정한 인원이었음⁷³⁾을 읍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500인으로 『여지도서』나 『호남읍지』의 500인과 동일한 숫자이다.⁷⁴⁾

그리고 이들 수첩군관의 성격은 군보(軍保)를 겸(兼)한 수첩군관이였다. 그 수는 500명 정원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남원 본현에 311명, 옥과, 창평, 구례, 곡성, 장수 등 5읍에 모두 189명을 두어, 한해에 1차례씩, 5일 동안 산성의 번(番)을 서도록 「절목(節目)」을 만들어 산성을 수호하도록 규칙으로 준수케 하였다.⁷⁵⁾

그러나 실제 군관들은 본래 취지와 규정대로 번을 서게 하는 대신 차사(差使)를 보내 방번(防番)을 고용하여 세운다는 명목으로 1인당 4~5전씩을 거두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번을 대신 서기도 하고, 거두어 들인 방번가(防番價)를 군관들이 다 써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또한 방번가를 거두는 차사들이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⁷⁶⁾

이에 대해 남원현감은 ‘번을 폐지하면 방번가를 거두는 폐단은 없앨 수 있겠지만 번을 서는 것을 빼버릴 수 없으니, (본현과 속현에서) 모든 번가(番價)를 1명당 3전(錢)씩으로 수합하여 산성에

73) 『邑誌』各縣 자료를 조사하면 장수 42, 곡성 42, 구례 42, 창평 21, 옥과는 미상이나 총계가 189명 배정으로 볼 때 옥과도 42라고 추정된다. 이후 18세기말~19세기 자료에도 배정 몫이 보이지 않는다.

74)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75) 상동

76) 상동

보내 성(城) 중 군관들에게 대가를 주어 번을 서게 하도록' 건의를 순영에 올렸고, 이에 순영 관찰사는 '보고가 합당하다' 하고 '소속 고을과 상의하여 시행하라'고 판단하였다.⁷⁷⁾ 이러한 남원현의 군정에 대한 첩보류의 내용은 군역제의 변화상을 그대로 잘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1791년 『읍지』에 기재된 군병 3국보인(三局保人)이란 삼국(三局) 즉,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에 속한 보인(保人)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정에서 남원현의 산성 수호 명목으로 남원현에 배정한 몫이었다.⁷⁸⁾ 이는 정규군이 아닌 속오군(束伍軍)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를 입은 교통산성의 수축을 위해 '조정에서 급박하게 떼어준 몫'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2) 산성의 군기(軍器)와 집물(什物)의 관리

다음으로 산성의 군기와 집물의 관리 측면을 검토해보겠다. 앞서 관련 읍지를 근거로 산성과 속현의 군기와 집물의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살폈으며, 군기와 집물의 관리 또한 수성장인 수령(守令)이 점검하고 이를 병영과 순영에 보고하고 있다.

'정유재란의 화를 당한 후 모든 기구는 수리하고 모양을 갖추어 갔으나, 이 중 상태가 심한 것이 군기'라고 하면서 이 군기는 '활과 화살은 태반이 훼손되었고, 총약(銃藥)도 대부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⁷⁹⁾ 산성의 무기는 옛적에 다른 산성에서 이관된 것도 많았고, 세월이 흐르며 총포, 활 등의 무기가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이다.

77) 상동

78) 『南原縣公事』 1736년 4월 26일

79) 상동

군기 중 총기의 관리와 수선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있는 현감의 보고로는 1736년 3월 8일 병영에 보낸 것이 있다. 현감이 조사해 보니 총기류 중 조총(鳥銃) 30자루가 철(鐵)만 있고 집(나무 자루)이 없었다. 연유를 파악해 보니 나무가 불에 타거나, 깨져서 손상을 당한 것이었다. 수리를 위해 총집의 재료로 '가시목(柯時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육지에는 없는 것이어서 순영에 요청해 허락을 얻었다. 이에 현감은 다시 병영에 가시목을 요청하였고, 병영에서는 '남당포(南塘浦)에 있는 가시목 4토(吐)를 제곱하니 받아 갈 것'이라고 답변을 주었다.⁸⁰⁾ 가시목은 남도의 해안가에 주로 자라며 목재가 매우 단단한 것으로 공구의 자루로 사용되었다. 남당포는 조선시대 강화도에 있었던 포구였다. 이처럼 관내에서 재료를 구해서 수선할 수 없는 경우는 순영과 병영에 요청하여 군기를 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듯 산성 내 군기의 종류와 수량이 많았다는 것은 군기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겠다. 그렇다면 수령은 과연 어떻게 그 비용을 처리하였을까? 이를 알려주는 『남원현공사』의 보고가 있다. 현재는 「절목」 자료가 전하지 않아 각 소요 경비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36년 3월 초10일 보고에 흑각궁 6장, 교자궁 3장, 궁현 8개 등을 수리했고, 그 값이 4종 쌀 2석 10두였다고 한다.⁸¹⁾ 그리고 당시에 「절목」이 있어 군기를 고치는 값이 항식으로 만들어져 「절목」 내에 죽 나열하고 있다⁸²⁾고도 하여 매우 치밀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요 경비의 처리 절차는 먼저 현감이 훼손된 군기물(軍器物)을 수선하고 「절목」에 의거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회외모미(會外耗

80) 『南原縣公事』 1736년 3월 초8일 병영에 보고

81) 『南原縣公事』 1736년 3월 초10일 순영에 보고

82) 상동

米)를 지급한 후 「세말성책(歲末成冊)」 가운데 회감(會減)하는 방식이었고, 그 외에 「절목」에 규정된 값이 없을 경우 「절가성책(折價成冊)」을 작성하여 순영에 보고한 후 순영의 승낙을 받아 일을 처리⁸³⁾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령은 군기 집물의 수량 파악, 군기의 수선을 포함한 유지 관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군기는 수령 교체시 인수인계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실무자인 ‘군기색(軍器色)’을 두어 관리케 했고, 주의를 기울여 수량 및 상태 파악 등 군기를 점검해야 했다.

다. 그 밖의 산성 수호의 검토

또한 『남원현공사』 1736년 9월 초3일 남원현의 감영에 올린 첩보에 의하면 교룡산성의 수호를 위해 의승(義僧)이 입번(入番)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성 내 의승번방(義僧番防)⁸⁴⁾에 대한 사실과 정액 등 그 추이 등을 짐작케 하는 자료이다.

9월 초3일 첩보에 의하면 ‘교룡산성을 수축하던 초기 의승의 인원은 40명이었고, 이를 각 고을에 분정하였다. 중년(中年)에 10명을 줄여 30명이 되었고, 연전(年前)에 또 10명을 감하였다’고 하였다.⁸⁵⁾ 30명이었을 때는 매달 3명씩 돌아가며 번을 썼으며, 10명을 감하여 매달 2명씩 번을 서니 번역(番役)이 몹시 힘들어 원통함을 의승들이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30명으로 원래대로 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보고를 순영에 올렸다. 이에 대

83) 상동

84) 의승번방(義僧番防)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선기,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화와 운영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승군의 확대와 조방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85) 『南原縣公事』 1736년 9월 초3일

해 관찰사는 ‘승통(僧統)에게 물어서 편한 대로 처리하라’고 판단하였다.⁸⁶⁾ 이후 결과를 전하는 첩보는 없으나 1787년 『호남읍지』에 성내(城內) 거(居)하는 승려가 47인이라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의승의 정액이 다시 초기의 인원 수 대로 복구 또는 더 증가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다.

아울러 승대장(僧代將)이 입번한 의승들의 아침, 저녁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장고(醬庫)의 주관 및 관리는 승장(僧將)이 하여야 했으므로 입번에서는 제외되었다⁸⁷⁾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번을 서는 수첩군관과 입번하는 의승에 대한 기록이 같이 첩보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성의 입번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1735년 11월 당시 첩보에 입번을 빼먹은 박문삼, 박영백 등을 붙잡아 신문(訊問)하고 신장(訊杖)을 가하는 등 치죄하였음을 순영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 당시 입번이 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⁸⁾ 그러나 이 문제는 현감이 순영에 보고하였듯이 수첩군관의 번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추후에 더 검토해 볼 사안이다.

5.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남원 교룡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18세기 전기를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지역 산성의 수축 과정과 운영의 실재를 밝히기 위해 첩보류 자

86) 상동

87) 상동

88) 『南原縣報移文成冊』 1735년 11월 27일 순영에 보고

료를 활용하여 교룡산성의 군사 편제와 군기의 실제, 그리고 산성 운영의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지방군현의 군사행정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먼저, 산성 수축의 추이에서는 고려 말 사서에서 교룡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거쳐 빈번한 수축이 있었음과 숙종 대 국방 위기의 고조에 따른 대응으로 거점 산성의 수축과 아울러 교룡산성의 수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성의 군사적 편제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다음으로 남원 관련 각종 읍지들을 통해 산성 내 군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살펴봄으로써 산성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산성의 수성장을 본부사가 겸하고, 그 외 별장, 승장, 대장, 수첩군관, 군병인 삼국보인(三局保人) 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덧붙여 산성 내의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성 운영의 실제에서는 위 각종 기록과 운영상의 차이와 실제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산성 수축의 과정이 문서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둘째, 산성의 경영에 있어 남원현 수령과 별장의 관계, 군기와 집물 보수의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산성 수호의 실제, 즉 입번(入番)의 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본 논고는 첩보자료인 『남원현공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던 남원현 수령의 군사행정을 산성의 수축과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reality of Fo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Namwonhyeongonsa(南原縣公事)』 –

Lee, Gyeong-se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Namwon(南原) was a strategic inland military location. Since ancient times, it has received attention as an ancient government facility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was rebuilt several tim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military organization, scale, and practical aspects from a military history perspective regard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

Afterwards, due to the national defense crisis, the fortress was massively rebuilt twice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and Suseongjang(守城將) served as a local governor(守令) and the fortress was considered a base for regional defense.

Looking at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in the 18th century, the Fortress had about 1,000 soldiers, but its character was Sogogun(束伍軍). The Sogogun(束伍軍)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was a Nappogun(納布軍), not a soldier engaged in actual military service. It was a source of finance for the maintenance of the fortress.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ortress, firstly, in the process of fortress construc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Gwanchalsa(觀察使) and Sulyeong(守令) appears in documents and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management of the for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ulyeong(守令) of Namwonhyeon and Byeoljan(別將), the procedures and cases of Gungi(軍器) and Jibmul(什物), in addition, the reality of protecting the fortress, that is, the problem of

Ibbeon(入番), was reviewed in tur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as a case study that helps understand the operation of other local fortresses by examining the actual operation of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a local fortress.

Keywords : Gyoryongsanseong Fortress(蛟龍山城), Namwonhyeongongsa(南原縣公事), Managemen of Fortress, Fortification(修築), military equipment(軍器)



〈참고문헌〉

1. 사료

『軍國總目』
『南原縣公事』
『南原縣雜報移文成冊』
『大典會通』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龍城誌』
『邑誌』
『朝鮮王朝實錄』
『湖南邑誌』

2. 단행본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 2001.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제사』, 한국군사연구실, 1977.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5.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3. 학위논문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정찬훈, 「南漢山城 義僧軍制의 성립과 운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황부연,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운영의 재정구조」,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연구논문

김세중, 「남원 교룡산성의 변천 과정과 고고학적 가치」, 『先史와 古代』 70, 한국고대학회, 2022.

문광균, 「조선후기 쌍수산성의 군사편제와 병력운영」, 『사학연구』 121, 한국사학회, 2016.

박세연, 「17~18세기 승군역(僧軍役)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번제(義僧防番錢制)의 시행」, 『불교학보』 9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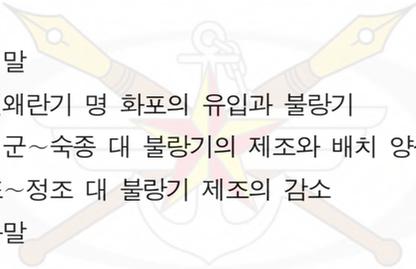
신주엽, 「조선 후기 성주(星州) 독용산성(禿用山城)의 기능과 운영」, 『조선사연구』 31, 조선사연구회, 2022.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75-114
<https://doi.org/10.29212/mh.2024.131.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佛狼機砲의 제조와 배치*

노대환**

- 
- 목 차
1. 머리말
 2. 임진왜란기 명 화포의 유입과 불랑기
 3. 광해군~숙종 대 불랑기의 제조와 배치 양상
 4. 영조~정조 대 불랑기 제조의 감소
 5.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에서는 佛狼機砲(Frankish gun)가 조선에 도입되어 어떻게 제조되고 배치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불랑기포는 유럽의 최신 화포로 16세기에 중국에 전래되었다. 중국의 전통 대포보다 안전했고 적중률도 높았으며 무엇보다 子砲를 교체하여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중국에서도 불랑기포를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불랑기포는 임진왜란 때 출정한 명군을 통해 조선에도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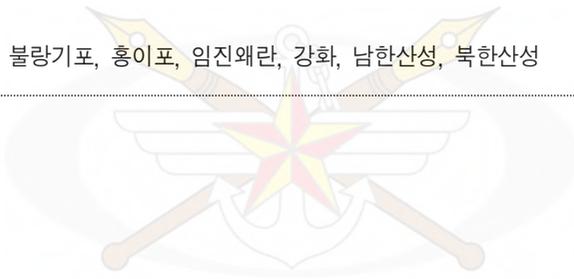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 사학과 교수

평양성 전투에서 불랑기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에서도 곧바로 제조에 나섰다.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불랑기포는 조선군의 주축 화포 역할을 담당했다.

오랜 시간 조선군의 전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불랑기포는 조선 후기 군사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랑기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임진왜란기의 火器를 다루면서 단편적으로 다루었을 뿐 불랑기포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17~18세기 불랑기포의 제조와 배치 과정을 검토하여 당시의 국방 정책 및 국방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불랑기포, 홍이포, 임진왜란, 강화, 남한산성, 북한산성



1. 머리말

佛狼機砲(Frankish gun)는 16세기에 유럽에서 전래된 후장식 대포를 말한다. 동아시아에 건너온 유럽인들을 중국인들이 불랑기라고 불렀던 데서 그들의 대포를 불랑기포(이하 불랑기)로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母砲와 子砲로 구성된 불랑기는 자포를 모포에 삽입하여 발사하는 특이한 형태의 화포였다. 1510년을 전후하여 중국 상인들이 유럽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불랑기는 점차 중국 본토에 전해졌다.¹⁾ 불랑기는 명의 대포와 비교하여 포신의 벽이 두꺼워 발사 시 압력에 견딜 수 있어 안전했고, 조준구(가늌자와 가늌쇠)가 갖추어져 있어 명중률이 향상되었으며, 나무틀에 장착하여 발사 각도도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개의 자포를 교체하여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²⁾ 고유의 화기 기술의 전통을 지닌 중국은 유럽식 불랑기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불랑기를 제작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불랑기는 북방의 명군에 보급되어 대몽골 전선에서 사용되었다.

불랑기는 16세기 중반 일본에도 전래되었다. 일본에서는 1551년 현 오이타 현의 그리스도교 다이묘 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이 포르투갈에 2좌의 불랑기를 발주하면서 도입의 단초가 열렸다. 당시 주문한 불랑기는 운송선이 도중에 난파되는 바람에 유실되었지만, 포르투갈령인 인도의 고어에서 다시 제조한 2좌의 불랑

1) 郑诚, 『明清火器史丛考』, 上海三联书店, 2022, 95~96쪽.

2) 기시모토 미오 저·노영구 역, 『동아시아의 근세』, 와이즈플랜, 2018, 85~86쪽.

기가 1576년 일본에 도착했다. 이 포를 오토모의 성을 따서 ‘大友砲’라고 했는데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하여 ‘国崩し(쿠니구즈시)’라고도 불렀다. 오토모는 불랑기를 입수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에게 대포 제조 기술을 배운 와타나베 소오가쿠(渡辺宗覚)라는 장인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와타나베의 주조 기술은 이후 일본의 화포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³⁾

조선은 임진왜란 때 출전한 명군을 통해 불랑기를 접한 후 곧바로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중국의 경우 불랑기에 이어 더 최신 대포인 紅夷砲가 소개되면서 불랑기는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산성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조선은 불랑기가 성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판단했다. 조선에서는 홍이포를 거의 만들지 않았고 불랑기 제조에 전념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도 불랑기는 조선의 주축 화포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오랜 시간 조선군의 주축 화포 역할을 했던 불랑기는 조선 후기 군사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불랑기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여러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불랑기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이강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불랑기와 관련된 문헌 자료와 현존 유물을 소개했고 이후 논문과 저서에서도 불랑기를 다루었다.⁴⁾ 박재광도 임진왜란기의 화약 무기를 검토하는 가운데 불랑기에 대해 고찰했으며, 단행본에서는 불랑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서술

3) 中江秀雄, 「わが国の鉄製大砲の科学的考察」, 『ぶらすとす』 제2권 제17호, 2019, 290~291쪽; 上野淳也, 「ウィーン軍事博物館所蔵佛朗機砲の文化財科学的調査と歴史考古学的検討-黒田長政の佛朗機砲について-」, 『別府大学紀要』 60, 2019, 60~61쪽.

4) 이강철, 『佛狼機의 實態 小考: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5,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1997; 이강철, 『한국의 화약병기』, 『학예지』 9, 2002; 이강철, 『한국의 화포』, 동재, 2004, 143~152쪽.

했다.⁵⁾ 최근에는 이수나가 불량기의 제작기준인 견양을 검토하면서 화약무기의 제작체계를 밝혔으며,⁶⁾ 김병륜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불량기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는 무기로 부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⁷⁾ 이밖에 임진왜란기의 火器를 다루면서 불량기를 언급한 여러 연구가 있고,⁸⁾ 숙종 대 국방강화책을 검토하며 불량기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⁹⁾

이들 연구를 통해 불량기의 도입과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불량기관련 연구는 대부분 임진왜란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 통제영을 중심으로 화포제작이 이루어진 과정에 불량기를 조망한 연구도 있다.¹⁰⁾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불량기의 제조와 배치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불량기는 조선후기 내내 최고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었으므로 불량기에 대한 고찰은 조선 후기 군사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朴哲暉,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擦」, 『군사』 30, 국방군사연구소, 1995, 117쪽; 박재광, 『화염 조선』, 글항아리, 2009, 142~159쪽.

6) 이수나, 「조선 중기 불량기포(佛狼機砲)의 견양(見樣)」, 『한국전통문화연구』 28, 2021.

7) 金炳崙, 「조선후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운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3, 71~77쪽.

8)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508~512쪽; 鄭長旭, 「壬辰倭亂 時期의 火器研究」,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4~35쪽;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223~226쪽; 유은선, 「임진왜란 시기 조선군 화기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5~47쪽; 이내주, 『한국무기의 역사』, 살림, 2013, 85~88쪽; 조영준, 「임진왜란 시기 조선군 화포 연구에 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6~18쪽.

9) 김우진, 『숙종대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2002, 185~186쪽.

10) 김현구, 「17세기 후반 통제영의 화포 제작과 감조군관의 궤적」, 『지역과 역사』 49, 부경역사연구소, 2021;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군비 체계와 실태-통제영 산 일 중기의 검토와 더불어」, 『한국문화』 100,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2. 임진왜란기 명 화포의 유입과 불량기

조선에 불량기가 유입된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다. 현존하는 불량기 유물 가운데는 1563년(명종 18)에 주조된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1982년 강서구 목동 지하철 매립장에서 발견된 자포 3점과 2010년 서울 중구 태평로 군기시 터에서 출토된 자포 1점이 그것이다. 포신에 ‘嘉靖癸亥’라는 제작연도와 함께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1563년에 자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¹⁾ 불량기는 크기에 따라 1호에서 5호로 구분되는데 후일 주로 제조되는 4호의 자포 무게가 10kg 정도이다. 계해년 자포는 46kg에 달해 거의 1호 불량기용이 아닐까 추정된다. 명종 대는 왜구의 침략이 잦았으며 특히 1555년에는 을묘왜변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대형 총통의 제작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 왜선이 견고해지고 왜구도 총통을 사용하고 있어 소형 총통으로 상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 정부는 민간의 동철까지 강제로 징수하는 등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대형 총통의 제작에 나섰다. 불량기 자포의 제작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포가 만들어졌으므로 당연히 모포도 있었을 텐데 명종 대에 모포가 제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모포의 제작 여부는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이다.

조선에서 불량기가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임진왜란

11) 이강칠, 앞의 논문, 19~20쪽.

12) 『明宗實錄』 권18, 明宗 10년 5월 16일(己酉).

때이다. 명군은 참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화포를 가지고 왔는데 이들 화포는 명군의 중요한 전력이었다. 李如松은 柳成龍에게 왜군은 조총만을 믿을 뿐이지만 명군의 대포는 포탄이 5, 6리를 날아가므로 왜군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¹³⁾ 실제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명군의 화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군이 평양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냐는 선조의 물음에 李德馨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佛狼器·虎蹲砲·滅虜砲 등의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서 여러 포를 일시에 발사하니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 같았는데 이윽고 불빛이 하늘에 치솟으며 모든 왜적들이 붉고 흰 깃발을 들고 나오다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병사들이 우르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¹⁴⁾

류성룡도 『懲毖錄』에서 명군이 대포와 불화살로 왜군을 공격했는데 대포 소리가 땅을 울려 몇 십 리 안의 산이 모두 흔들릴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¹⁵⁾ 류성룡은 명군이 보유하고 있던 화포로 大將軍·佛狼機砲·霹靂砲·子母砲·火箭百子銃 등을 들었다.¹⁶⁾ 韓致滯은 『海東釋史』에서 명군이 大將軍砲 1,244대를 비롯하여 三眼銃·鐵鬚箕·鐵悶棍·火砲·火筒·團牌·佛郎機 등의 병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¹⁷⁾ 大將軍砲·滅虜砲·霹靂砲·虎蹲砲·子母砲·佛狼機砲 등이 명군이 보유한 주요 화포였다. 그러면 이들 화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장군포는 명에서 16세기에 개발된 전장식 대형 화포이다. 1,244문을 가져왔다는 『해동역사』의 기록에 나타나듯 대장

13) 류성룡 저·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아가넷, 2013, 374쪽.

14) 『宣祖實錄』 권49, 宣祖 27년 3월 20일(戊戌).

15) 류성룡 저·김시덕 역해, 앞의 책, 376쪽.

16) 『西厓集』 권16, 雜著 「記鳥銃製造事」 a052-320a.

17) 『海東釋史』 권63, 本朝備禦考 三 「馭倭始末 三」.

군포는 명군의 주축 화포였다. 명은 15세기에 장군포라는 대형 화포를 제작한 바 있는데 크기에 따라 '大將軍', '二將軍', '三將軍'의 세 종류가 있었다. 이어 戚繼光이 기존의 대장군포를 유럽의 불랑기 양식으로 개조했는데 이것이 후장식 대표인 '無敵大將軍'이다.(그림 1) 한편 명의 葉夢熊(1531~1597)은 척계광의 무적 대장군포를 참조하여 훨씬 큰 전장식 대형화포를 개발했다. 이를 '葉公砲'라고 하는데 무게 대략 150kg, 길이 2m, 사정거리 1.3km 정도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명군이 투입한 대장군포는 바로 엽공포였다.¹⁸⁾ 한편 엽몽태는 엽공포와 함께 멀로포로 불리는 경량 화포도 제작했다.(그림 2) 길이는 대략 60cm 정도였고 산탄을 발사했으며 사정거리는 750~900미터 정도였다.¹⁹⁾ 수레에 3문의 멀로포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평양성전투도」에도 3문으로 이루어진 멀로포가 발사되는 장면이 들어 있다.

벽력포(一名 飛雲霹靂砲)는 송 대에 만들어진 화포이다.(그림 3) 송의 벽력포와 같은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에도 일찍 벽력포가 소개되어 1521년(중종 16) 직제학 徐厚가 수전에 유용하다며 시험 삼아 써보도록 건의했다. 이에 중종이 군기시에 벽력포를 만들도록 지시하여²⁰⁾ 이듬해 3월에 완성하여 시험한 바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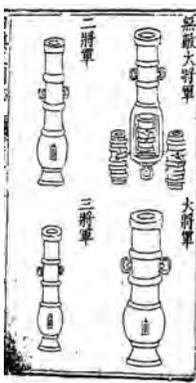
호준포는 호랑이가 앉아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호준포라는 이름이 붙은 화포이다.(그림 4) 명초에 있던 포를 개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무게가 가벼워 기동성이 좋았고, 철이나 납으로 만든 탄환 수십 개를 장전하여 발사했다. 선조는 호준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²²⁾ 1597년 9월에는 명군이 호준포를

18) 鄭誠, 앞의 책, 122~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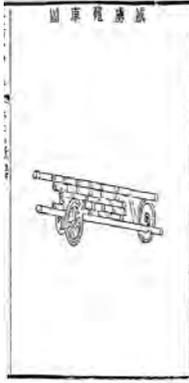
19) 鄭誠, 위의 책, 125~126쪽.

20) 『中宗實錄』 권41, 中宗 16년 1월 16일(己巳).

21) 『中宗實錄』 권44, 中宗 17년 3월 9일(丙辰).



[그림 1]
『四續三關志』의
대장군포



[그림 2]
『登壇必究』의 滅虜砲



[그림 3]
『武備志』의 霹靂砲



[그림 4]
『練兵雜記』의 호준포

발사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그 위력을 칭송하기도 했다.²³⁾ 1598년 노량해전에서는 명 수군이 호준포를 사용하여 일본 선박을 격파한 적도 있다.²⁴⁾

자모포는 불랑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군이 가져온 자모포는 불랑기와 다른 종류의 화포이다.²⁵⁾ 화약을 넣은 小炮에 점화한 후 大炮에 넣어 발사를 하는데 발사 형식이 조선의 震天雷와 비슷하다. 1596년 선조는 우의정 李元翼에게 자모포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軍中에 두고 도둑에 대비하면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²⁶⁾

불랑기는 모포의 뒷부분에 자포를 끼워 발사하는 후장식 화포

22) 『宣祖實錄』 권35, 宣祖 26년 2월 20일(乙巳). 李康七, 「虎蹲砲의 實態小考: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2,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1991; 朴皙暎,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火藥兵器를 중심으로-」, 『군사』 51,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2004. 141~14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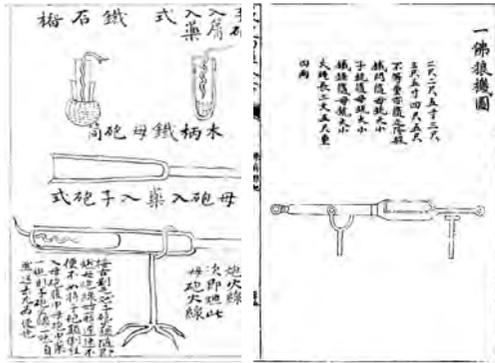
23) 『宣祖實錄』 권92, 宣祖 30년 9월 12일(己亥).

24) 『象村稿』 권38, 志 「天朝先後出兵來援志」 a072-267d. 황경원은 명군이 호준포로 왜선을 격파했다고 밝혔다.(『江漢集』 권2, 詩 「攄矛行」)

25) 자모포에 대해서는 鄭誠, 앞의 책, 40~46쪽 참조.

26) 『宣祖實錄』 권82, 宣祖 29년 11월 17일(己酉).

이다.(그림 6) 모포에 여러 발의 자포를 준비하여 한 발의 소형탄환 내지 여러 발의 철환을 발사했다. 크기에 따라 1호에서 5호까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1호와 2호는 대형에 속한다. 위력면에서는 장군포에 뒤지지만 상대적으로 이동이



[그림 5] 『城書』의 子母砲

[그림 6] 『練兵雜記』의 佛狼機

쉽고, 자포를 교체하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활용성이 좋았다. 그래서 척계광도 『紀效新書』에서 불랑기가 가장 예리하며, 편하고 빠르기가 다른 무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²⁷⁾

임진왜란은 각종 화포의 전시장이었다. 조선 측은 명군의 화포에 큰 자극을 받아 자체적으로 제작할 방안을 모색했다. 류성룡은 특히 화포에 관심이 많아 제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명병이 평양의 왜적을 공격하여 파괴할 때 대포로 성을 공격했는데, 그 종류는 대장군·불랑기·霹靂·子母 등의 포와 火箭·百子銃 등이 모두 우수한 무기였고, 왜적 진영에서 얻은 초총이 많았었다. 이제 장인으로 하여금 그 양식에 의거하여 만들고, 그 만드는 법과 쓰는 법을 기록해서 군기시에 보관하도록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급할 때라도 각기 그 힘을 입어 사용하는 방법에 어둡지 않을 것이다.²⁸⁾

27) 『紀效新書』『佛狼機解』, “此器最利 且便速無比 但其體重 不宜行軍”.

28) 『西厓集』 권16, 雜著 『記鳥銃製造事』 a052-319d

화포 제작 사업은 1593년부터 시작되었다. 류성룡에 따르면 교서 정자 李自海가 개성부에서 조총 제작을 감독했는데 그 정교함이 일본 조총과 차이가 없었고, 또 호준포 역시 중국 대포와 비슷했다고 한다. 權慄은 파주에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 남쪽으로 가서 火輪砲 제조법을 배우게 했다.²⁹⁾ 화륜포는 수레에 화포를 탑재하고 쏘는 방식을 말하는 듯하다. 명측 인사들도 조선에 화약 무기를 제조하도록 독려했다. 이여송은 선조에게 화약이 있어야만 왜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³⁰⁾ 1593년 8월 척계광의 조카 戚金은 조선의 사정 상 당장은 무비를 닦을 수 없지만 眼鏡·火箭·虎蹲砲나 화약의 제조법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화포에 관심이 많았던 류성룡은 척금으로부터 『기효신서』를 받아 화포 제작을 시도했다. 척금에게 성벽과 함선을 격파하는 六合砲의 제조법을 배워 대포를 만들었는데 시험 도중 터져 쓰지 못했고 다시 만들고자 했지만 척금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다. 육합포는 만들지 못했지만 자모포 제작에 성공했다. 류성룡은 『기효신서』에 자모포 제조법이 있는 것을 보고 군기시 주부 이자해에게 주조하게 했는데 제조법을 바꾸어 비격진천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류성룡은 개량 결과 조선의 자모포가 더욱 편리해져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줄 우수한 무기라고 자평했다.³¹⁾

29) 『西厓集』 권6, 書狀 「再乞練兵且倣浙江器械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辰巳錄』 三에도 같은 서장이 실려 있는데 1593년 5월 25일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애집』에는 권율이 배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사록』에는 사람을 보내 배워오게 했다고 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1593년 8월 당시 戚金은 경상도로 내려가 화약을 만드는 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雲川先祖廬從日記』 天, 1593년 8월 14일, 89쪽) 이를 보면 권율도 척금에게 사람을 파견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30) 『雲川先祖廬從日記』 天(한국국학진흥원, 1593년 8월 14일, 89쪽).

31) 『西厓集』 권16, 雜著 「記火砲之始」.

전쟁을 치르면서 화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선전관으로 활동했던 吳克成은 1594년 2월 선조에게 왜적의 장기는 조총뿐이므로 숨씨 좋은 장인으로 하여금 화륜포나 호준포와 같은 병기를 많이 만든 후 군사들에게 연습시켜 왜군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1595년 비변사에서서는 거북선이 부족하면 밤낮으로 더 만들어 대포·불랑기·火箭 등을 많이 신고 바닷길을 끊는 것이 왜적을 막는 가장 좋은 계책이라고 밝혔다.³³⁾ 비상시였던 만큼 화포 제작에 박차를 가해 1595년에는 크고 작은 포 190여 문을 제작했다. 재료 확보를 위해 檜巖寺의 종까지 깨서 사용하는 한편 咸興·安邊·端川 등 鉛鐵이 생산되는 곳의 각도 감사에게 채굴해서 올려 보내도록 독려했다.³⁴⁾ 다행히 殷栗에서 다량의 철을 확보하여 군기를 제작할 수 있었는데 1595년 11월부터 1596년 6월 사이에 주조한 화포 가운데 불랑기와 호준포가 각각 2좌였다.³⁵⁾ 적은 숫자지만 불랑기 주조에 나선 것이다.³⁶⁾

화포의 제작과 함께 포수들이 화포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596년 포수들이 화포를 두루 익혀야 한다면서 대포 이하 모든 포를 試放하도록 했다.³⁷⁾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에도 불랑기와 호준포 등을 시방하여 우열을 가린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서 이들 대포를 돌려가며 시험하도록 건

32) 『問月堂集』 권3, 雜著 「壬辰日記」下, 1594년 2월.

33) 『宣祖實錄』 권68, 宣祖 28년 10월 27일(丙寅).

34) 『宣祖實錄』 권71, 宣祖 29년 1월 28일(乙未).

35) 『軍門謄錄』, 丙申(1596) 6월 23일. 불랑기를 세는 단위는 기록에 다양하게 나온다. 본고에서는 모포는 '座', 자포는 '門'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6) 조선의 불랑기 역시 1호에서 5호로 구분되었는데 제조된 것들은 대부분 4호 이하의 소형 불랑기였다. 4호는 길이 1m 내외, 부리 직경 40mm 내외이며 5호는 길이 80cm 내외, 부리 직경 25mm 내외이다.(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510~512쪽) 중량은 4호가 60kg 내외, 5호가 35kg 내외인데 편차가 있다.(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조선무기 조사연구 보고서Ⅱ : 대형 화약무기』, 2023, 74~99쪽 실측도 참조)

37) 『宣祖實錄』 권83, 宣祖 29년 12월 5일(丁卯).

의하여 허락을 받았다.³⁸⁾ 이러한 조치에도 훈련도감의 포수들이 화포를 익히려 하지 않자 1599년 호준포·불랑기·三眼銃·小勝字銃 네 가지 포를 모두 시험하도록 했다.³⁹⁾

화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점차 불랑기가 주목을 받았다. 1603년(선조 36) 함경도순찰사 韓孝純은 1565년에 인간된 『銃筒式』에 『기효신서』의 화기류 내용을 첨부하여 『神器祕訣』을 편찬했다. 임진왜란의 경험이 화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것인데 여기에서 간단하지만 불랑기의 특성과 발사법을 소개했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무기체계 내에 새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3. 광해군~숙종 대 불랑기의 제조와 배치 양상

1) 광해군·인조 대의 불랑기 제조와 북방 배치

임진왜란기에 누르하치가 이끄는 건주여진의 성장은 조선의 또 다른 고민거리였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의 대부분을 통일한 후인 1589년 스스로 왕을 칭하고 이어 다른 부족과 대결에 나서 1593년 해서여진이 주축이 된 여진 연합군을 격퇴했다.⁴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이덕형은 1595년 北虜를 막는데 화포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군기시에 소장하고 있는 호준포 등의 화포를 평안도에 많이 보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세력을 확장한 누르하치는 1605년 건주국으로 국호를 바꾸었

38) 『宣祖實錄』 권83, 宣祖 29년 12월 8일(庚午).

39) 『宣祖實錄』 권113, 宣祖 32년 5월 29일(丙子).

4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25~227쪽.

41) 『漢陰文稿』附錄 권1, 年譜 「乙未 四月」.

다. 건주여진의 흥기하면서 만주 지역은 혼란스러웠다. 1603년 9월 해서여진 계통의 忽賊이 종성의 부락들을 분탕질하고 갔으며 1605년 7월에도 군대를 끌고 온성 경내를 침략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강원도와 황해도 등지로 화기를 보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여 수원의 禿城과 江華에 비축해 놓은 것까지 이송했다. 또 비변사 내에 기구를 설치하여 화기를 주조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도의 鎭堡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화기를 개조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장인 2명을 선발하여 불량기 견본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도록 요청했다.⁴²⁾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605년 8월에 제작된 4호 불량기가 소장되어 있는데 출토지가 황해도 장면이다.⁴³⁾ 여진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불량기를 긴급히 만들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광해군 대에 들자 건주여진의 동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는 누르하치가 선박을 건조해서 조선을 치려고 한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⁴⁴⁾ 1609년 도체찰사 李恒福은 여러 도에서 성을 수축하고 있지만 기계가 없어 우려된다고 하며 원료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로 守城의 기구로는 오로지 대포를 중시하는데, 우리나라의 千字銃이나 地字銃 같은 대포는 제도가 지나치게 크고 장치하는 화약도 너무 많이 들어가 화력은 대단히 맹렬하나 화살이 끈게 나가지 않으므로, 水戰이나 성을 지키는 데 모두 알맞지 않습니다. 오직 玄字銃 및 새로 제조한 5호 불량기포만이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여러 제도에서 수다하게 청해 오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42) 『宣祖實錄』 권189, 宣祖 38년 7월 6일(戊寅)

43)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 74쪽.

44) 『光海君日記』 권7, 光海君 즉위년 8월 13일(丁卯)·14일(戊辰). 한명기, 앞의 책, 229쪽 참조.

데, 武庫에 저장된 것이 극히 약소하여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銃材인 동철이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일본과 화친을 끊은 지가 거의 20년이나 되어 동철이 평상시보다 갑절이나 귀해져 마련하기 어려워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⁴⁵⁾

이항복은 궁궐도감의 소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왜관에서 구리를 사다가 화포를 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⁶⁾ 광해군이 사행을 떠나는 신료들에게 화약 원류인 염초를 구입해오라고 각별히 당부하는 등 염초 확보에도 주력했다.⁴⁷⁾ 선조 대에 이어 포수들이 불량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광해군 대 당시 무과 초시 砲手事目 가운데 鳥銃·佛狼機·百字銃 등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불량기와 백자총을 빼고 조총만 시험하자 시관을 파직하고 합격도 취소해버렸다.⁴⁸⁾

1614년 7월에는 대포 제조를 위해 각처의 鳥銃廳을 火器都監으로 개편했다.⁴⁹⁾ 화기도감에서 1614년부터 1615년까지 사이에 각종 총포를 제조했는데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불량기였다. 16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 불량기 60좌

45) 『白沙別集』 권2, 啓辭 「請鑄大砲啓」(己酉) a062-372bc, “蓋守城之具 專以大砲爲重 本國大炮如天地字銃 則制度過大 藏藥過多 火力激猛 箭發不直 水戰城守 俱不中用 唯玄字銃及新制五號佛狼機砲 竝關於用 諸道請之者 不勝其紛紛 而武庫所儲 極略 不能應副 緣銃材銅鐵非本國所產 日本絶和幾二十年 銅鐵之貴 比平時倍之 無力可辦 以至於此”.

46) 『白沙別集』 권2, 啓辭 「請鑄大砲啓」(己酉) a062-372b.

47) 『光海君日記』 권24, 光海君 2년 1월 26일(癸卯). 한명기, 앞의 책, 241쪽. 조선의 염초 확보책에 대해서는 許泰玖, 「17세기 朝鮮의 炤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 『한국사론』 47, 2002 참조.

48) 『光海君日記』 권34, 光海君 2년 10월 14일(乙酉).

49) 화기도감에 대해서는 李旺茂, 「광해군대 火器都監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21, 1998 참조. 일반적으로 조총청은 화기도감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637년 기사에 훈련도감 조총청이 나오는 것으로(『承政院日記』 仁祖 15년 4월 10일) 완전 흡수된 것은 아닌듯하다.

(4호 50좌 / 5호 10좌)와 자포 300문(4호 자포 250문 / 5호 자포 50문)이 제조되었다.⁵⁰⁾ 반면 호준포나 벽력포 등의 화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랑기가 화포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북변 지역에서는 불랑기를 빨리 배치해줄도록 요청했다. 1619년 함경 감사 沈悅은 서쪽 지역만 급하게 보고 북쪽은 대수롭지 않게 봐서는 안 된다면서 京砲手 1哨와 불랑기 십여 좌를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간청했다.⁵¹⁾ 1619년 2월에 제조된 5호 불랑기 실물이 남아 있는데 제조 연도로 보아 서북 지방에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²⁾ 화포 제작의 필요성을 커졌지만 재료 조달이 쉽지 않자 동서반의 정직으로 6품 이상인 자가 동 2백 근을 바치거나 정철 7백 근을 바치면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시행했다.⁵³⁾

1623년 인조가 집권하면서 화기도감이 폐지되었지만 불랑기는 계속 제작되었다. 1624년 도체찰사 張晩은 평양성의 축성 공사가 끝났는데 성에 배치할 대포가 부족하다면서 別造都監과 軍器寺에서 20~30문을 급히 제조해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했다.⁵⁴⁾ 장만의 요청에 따라 불랑기 12좌(5호 10좌 / 4호 2좌)와 자포 50문 등을 주조하여 보냈다.⁵⁵⁾ 1625년에는 황해 감사가 平山城에 필요한 화기와 화약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군기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포가 매우 적어 비변사에서 현자총통 5좌, 황

50) 『火器都監儀軌』(奎 14596), 2b.

51) 『南坡相國文集』 권5, 書狀 「咸鏡監司時書狀」 a075-525a, “伏願朝廷 一視西北 無謂西急而北緩 添兵繼餉等事 另議處置 善手京砲手一哨 佛狼機數十餘位 急急下送”.

52)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 76쪽. 18세기 중반의 『輿地圖書』에는 함경도의 불랑기만 표시되어 있는데 鏡城에 13좌, 吉州에 5좌, 明川에 9좌, 慶興에 3좌, 茂山에 7좌의 불랑기가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온다. 17세기 전반기에 주로 배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3) 『光海君日記』 권143, 光海君 11년 8월 18일(戊辰).

54) 『仁祖實錄』 권7, 仁祖 2년 11월 2일(壬子).

55) 『啓本謄錄』(규장각 古4255-17) 권1, 058a.

자총통 10좌, 4호 불랑기 2좌 등을 변통하여 보냈다.⁵⁶⁾

불랑기 제조에 나섰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변방 지역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1630년 함경도 안찰어사 沈之源은 육진 여러 고을의 기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특히 화포가 매우 적다고 하소연했다.⁵⁷⁾ 제조된 불랑기의 품질도 문제가 있었다. 1630년 사간원의 보고에 따르면 군기시에서 주조한 불랑기 3좌 가운데 2좌가 시험 발사 도중 파열되었다.⁵⁸⁾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청동의 품질을 높이고 총신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이 부족하여 불량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 내에 별조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31년 군기시 내에 별조청을 설치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한편 인조 때에는 당대 최신 화포인 홍이포의 존재가 조선에 알려졌다. 1627년 제주에 표류했던 네델란드인 벨테브레(Jan Janse Weltevree)는 兵書에 재주가 있고 火礮를 매우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어 홍이포의 제도를 소개했다고 전해진다.⁶⁰⁾ 명에 사신으로 갔던 鄭斗源은 1631년 「紅夷砲題本」을 가져왔으며 인조에게 서양 홍이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⁶¹⁾ 袁崇煥이 홍이포를 활용해 후금군을 격퇴했던 寧遠城 전투가 있고나서 5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홍이포의 위력을 실제 확인했다. 청병은 남한산성 바깥에 홍

56) 『承政院日記』 仁祖 3년 11월 18일(癸亥).

57) 『仁祖實錄』 권23, 仁祖 8년 9월 16일(壬辰).

58) 『承政院日記』 仁祖 8년 8월 5일(壬子).

59) 『仁祖實錄』 권25, 仁祖 9년 8월 6일(丁未). 훈련도감에 별조청이 있었던 것은 『光海君日記』 권149, 光海君 12년 2월 25일(癸酉)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0) 尹行恁, 『碩齋稿』 권9, 海東外史 「朴延」.

61) 『大東野乘』續雜錄 三, 「辛未 下 : 七月」. 정두원이 홍이포를 소개한 데 대한 내용은 안상현, 「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I. 鄭斗源의 西洋國奇別狀啓」, 『한국우주과학회지』 25, 2009, 253~255쪽 참조.

이포 4문을 설치하고 밤낮으로 쏘아댔는데 성에 맞으면 성이 바로 파손되어 수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⁶²⁾ 1637년에 강화도를 공격할 때는 갑곶진에서 홍이포를 연달아 발사하여 조선군을 압박하면서 염하를 건너 강화로 들이닥쳤다.⁶³⁾ 홍이포의 위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홍이포에 무관심했다. 후일 黃胤錫은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에서 나온 후 청병이 수레로 운반해가기 힘들다고 하여 홍이포를 버리고 갔는데 그때 그 제작법을 자세히 살펴 그 운용술을 배워야 했지만 등한히 했고 몇 년 후 청인들이 홍이포를 싣고 돌아갔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⁶⁴⁾

여진족의 동향을 경계하여 광해군 대와 인조 대에 불랑기를 제조해 북쪽 지방에 배치했지만 정작 호란 때는 사용하지 못했다. 가정이지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에 불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전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2) 효종·현종 대의 불랑기 제작과 강화부 배치

효종 대에는 집권 전반기에 불랑기가 집중 제작되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에 불랑기를 주조하면서 자포는 吹鐵所에서 薪鐵을 강화부로 옮겨와 제조했다. 자포를 제조하고 신철 1만여 근이 남자 군기시에서는 이것을 별조청으로 가져다가 조총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효종은 강화도에 있는 것을 다시 물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면서 강화의 신철을 쓰지 말도록 지시했다.⁶⁵⁾ 강화도의 국방 강화에 효종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

62) 『訓局事例撮要』上, 仁祖 14년 12월 11일, “自二十五日清 兵擺列紅衣砲四柄於囊城外 晝夜放砲之聲振天 丸大如鉢 來觸城堞 輒爲頽破 卽令收聚空石五百餘 盛以土石築作城堞 以防其砲”.

63) 『仁祖實錄』권34, 仁祖 15년 1월 22일(壬戌).

64) 『頤齋亂藁』庚寅 6월 8일.

65) 『備邊司謄錄』孝宗 3년 2월 4일. 철광석을 가공하여 熟鐵을 만드는데 처음 만들어진 숙철이 薪鐵이며 이를 다시 정련한 것이 正鐵이다.

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불랑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653년에 들어서였다. 이해 봄에 강화유수 李冕가 동래에 남아 있는 동철 1만근과 1653년에 각 관서에 납부할 동철 전량을 비변사로 이송하여 불랑기를 만들도록 건의하여 142좌를 주조했다. 불랑기 제작에 많은 동철을 투입하다보니 호조를 비롯한 다른 관서에서 쓸 동철을 없는 상황이 되었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4년 조의 동철도 불랑기 주조에 쓰자는 의견이 있자 비변사에는 이렇게 되면 다른 호조 등에서 동철과 납철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대포는 이미 많이 주조하였으니 1만근은 호조에 보내고 2만근만 대포 주조에 사용하도록 하며 대포는 금년까지만 주조하자는 의견을 냈다. 효종은 해마다 많은 동철을 받아들이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나면서 동철 전부를 대포 주조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다.⁶⁷⁾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불랑기를 제조하고 있던 것이다. 효종은 이를 후에는 호조의 경비가 염려된다면서 3만근은 대포 주조에 쓰고 나머지는 호조에서 가져가도록 최종 결정했다.⁶⁸⁾ 호조로 일부를 돌리기는 했지만 불랑기 주조에 동철을 상당 부분 투입했던 것이다.

효종 대 특징적인 점은 불랑기가 강화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1654년 강화부 경력 韓敬男은 효종이 환란에 대비하는 대책을 묻자 불랑기를 많이 제조하여 나룻가로 돌격해 오는 군사를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⁶⁹⁾ 같은 해 鄭世規는 강화유수로 부임하자 불랑기 자포 700여 문을 만들었다.⁷⁰⁾ 인조 대

66) 『備邊司謄錄』, 孝宗 4년 12월 14일.

67) 『備邊司謄錄』, 孝宗 5년 1월 8일.

68) 『備邊司謄錄』, 孝宗 5년 1월 10일.

69) 『明齋遺稿』 권43, 行狀 「尙州牧使韓公行狀」(壬子 1672).

70) 『松坡集』 권17, 行狀 「故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鄭公行狀」 b041-347a.

까지 북방 지역에 주로 설치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효종 대 불랑기가 어느 정도 제조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700문의 자포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강화도에 불랑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강화로 피신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강화도 연변에堡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화도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다.⁷¹⁾ 방비 강화를 위해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고 있던 불랑기의 배치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효종이 과연 북벌을 실제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북벌을 구상했다면 적어도 불랑기포를 강화도에 집중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종 대에도 효종 대와 마찬가지로 제조된 불랑기를 주로 강화에 배치했다. 1664년(현종 5) 강화 유수 趙復陽은 강화부에 비치된 화기 가운데 불랑기가 小砲처럼 자주 쏠 수 있어 가장 뛰어나다면서 동래에 비축해놓은 동철로 몇 백 좌를 더 만들자고 건의했다. 또 화기는 쏘는 방법을 계속 익혀두어야 하는데 화약을 대기 어려우므로 동래부에 있는 유황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⁷²⁾ 유황의 경우 정부의 목인 하에 밀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입수된 유황의 상당량이 효종 대부터 강화부로 이송되고 있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황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던 것을 보면 불랑기를 비롯한 화기의 시험 발사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1664년 6월 강화도 어사 閔維重이 군기를 점검하고 돌아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강화도에 배치된 불

71) 『孝宗實錄』 권14, 孝宗 6년 1월 17일(壬人).

72) 『顯宗實錄』 권8, 顯宗 5년 3월 3일(乙丑).

73) 金東哲,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 관논총』 61, 1995, 254~255쪽.

량은 총 244좌였다.⁷⁴⁾ 군기를 점검한 후 올린 별단에서 민유중은 특히 불량기를 넉넉하게 주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⁷⁵⁾ 민유중의 요청이 수용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듬해인 1665년 4호와 5호 불량기 50좌와 자포 2백 문 등을 주조하여 강화도에 보내도록 지시했다.⁷⁶⁾ 말년에는 강화에서 불량기 제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1673년 8월에 주조된 연번 147의 4호 불량기가 소장되어 있는데 강화에서 만들어 것 가운데 하나이다.⁷⁷⁾ 연번으로 보아 다량의 불량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종 대에는 강화부 외에 산성에도 화포가 배치되었다. 광해군과 인조 대에 주로 북쪽 산성 지역에 불량기를 배치했다가 효종 대에 들면서 강화에 집중시켰는데 현종 대에는 또 다른 보장처인 남한산성에도 화포를 설치했다. 광주 부윤 金壽興은 병자호란 때 대포를 산성에 두지 않고 甲士倉에 보관하는 바람에 적들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남한산성에 南蠻砲를 옮겨오자고 건의했다. 남만포 9좌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데 貢船으로 실어오자는 것이다.⁷⁸⁾ 남만포에 대한 언급은 1658년에 보인다. 대신 등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화포용 탄환의 부족 문제가 거론되자 효종은 남만대포 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형조 판서 李浣은 그곳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⁷⁹⁾ 정확

74) 『顯宗改修實錄』 권11, 顯宗 5년 6월 22일(癸丑).

75) 『顯宗改修實錄』 권11, 顯宗 5년 6월 23일(甲寅).

76) 『顯宗實錄』 顯宗 6년 5월 8일(癸巳).

77) 『承政院日記』 顯宗 14년 1월 11일(壬午) ; 『承政院日記』 顯宗 14년 8월 23일(庚申). 유물은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 82쪽에 실려 있다.

78) 『承政院日記』 顯宗 2년 6월 17일(甲午). 남만포가 있던 곳은 '凶州'인데 앞 글자가 결락되어 있다. 이곳을 광주 남한산성으로 단정한 연구도 있다.(金柄崙, 앞의 논문, 80쪽) 그러나 공선을 통해 남만포를 남한산성으로 옮겨오자는 것이므로 남만포가 있던 곳이 남한산성으로 보기 어렵다. 남만포에 대해서는 金柄崙, 위의 논문, 79~83쪽이 참조된다.

79) 『承政院日記』 孝宗 9년 9월 18일(壬子).

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효종 대에도 남만포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 이후 남만포에 대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현종 대에 들어 남한산성으로 이송하자는 요청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듯 1705년 당시 남한산성에 남만포가 배치되었다.⁸⁰⁾ 산성으로 1좌를 끌어 올리는 데만 백 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남만포의 이송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산성 방비를 위해 가져온 것이다. 당시 이 남만포는 표류인들이 두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표류인이라면 1653년(효종 4)의 하멜(Hendrik Hamel) 일행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남만포는 네델란드의 홍이포로 추정된다.⁸¹⁾ 남만포 배치와는 별도로 산성에서 불량기도 직접 제작했다. 1669년(현종 10) 1월 당시 현종과 신료의 대화에 따르면 모포 55좌를 산성에서 주조했다고 한다.⁸²⁾ 남한산성 방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며 이후 불량기 배치는 확대된다.

3) 숙종 대의 불량기 제조와 배치 확대

숙종 대에 들자 효종 대부터 시작된 강화도 요새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679년(숙종 5) 강화도 방어를 위해 요충지에 48개의 돈대를 설치하고 돈대에는 불량기를 배치했다. 2017년 강화도 건평돈대에서 불량기가 출토되었는데 명문에 따르면 1680년 삼군수군통제사 兪東屹 등이 강화 돈대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한 152번째 불량기이다. 연번이 115로 되어 있고 명문 내용은

80) 『承政院日記』 肅宗 31년 8월 24일(乙卯).

81) 1664년 당시 강화도에도 남만포가 있었다. 실록에는 12좌(『顯宗改修實錄』 顯宗 5년 6월 22일 癸丑), 1696년 진상된 李衡祥의 『江都志』에는 16좌로 나와 있다. 강화부에 있던 남만포는 박연이 개량한 홍이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는데(신동규, 『訓練都監의 신식 무기 개발과 西洋 異國人 등용정책』, 『향토서울』 63, 2003, 238쪽) 이형상은 표류인들이 두고 간 것이라고 했다.

82) 『承政院日記』 顯宗 10년 1월 4일(戊戌).

같은 불랑기가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⁸³⁾ 이를 보면 강화에 배치하기 위해 1680년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최소 150좌의 불랑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현종 대 244좌가 있었으므로 1680년 당시 강화도에만 대략 400좌의 불랑기가 있었던 것이다. 1681년 강화유수 李選은 불랑기가 사정거리는 길지만 적중률이 높지 않아 근거리의 적을 상대할 때는 작은 탄알을 많이 발사해야 한다면서 兩南의 兵營·水營·統營 및 兩西의 병영으로 하여금 격년으로 돌아가며 불랑기 등에 사용할 合丸 5백 개, 鳥卵丸 5천 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⁸⁴⁾ 낮은 적중률은 화포로서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전까지 이 문제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불랑기는 관성적으로 제조되었다.

1696년에 진상된 李衡祥의 『江都志』에 따르면 각 돈대에 기본적으로 4호 불랑기 8좌와 자포 40문을 비치하였고, 월곶돈대에 2호 불랑기 2좌, 갑곶돈대에 38좌(3호 2좌 / 4호 8좌 / 5호 38좌)를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⁵⁾ 또 鎭과 堡에 97좌(1호 6좌 / 2호 5좌 / 3호 3좌 / 4호 51좌 / 5호 32좌)가 있다고 했다.⁸⁶⁾ 이형상은 강화에 49개 돈대가 있다고 했으므로 설명대로라면 돈대의 불랑기는 총 442좌이고 여기에 진보의 97좌를 합하면 강화의 총 불랑기 숫자는 539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돈·진·보의 군기를 모두 합쳐 계산했다는 「군기」조에는 총

83) 명문은 다음과 같다. '康熙十九年二月日 統制使全等造江都墩台上佛狼機百十五重一百二斤 監鑄軍官折衝申清 前權管崔以厚 前萬戶姜俊 匠人千守仁'. 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립박물관, 「건평돈대 발굴 조사 보고서」, 2017, 151쪽.

84) 『肅宗實錄』 권11, 肅宗 7년 5월 21일(癸酉); 『芝湖集』 권2, 疏劄 「進江都事宜別單疏」(1681년 5월 20일), a143-376cd.

85) 『譯註 江都志』(上),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5, 244쪽.

86) 『譯註 江都志』(上), 178~191쪽을 참조하여 각 진보에 설치된 불랑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4좌(1호 5좌 / 2호 7좌 / 3호 6좌 / 4호 416좌)로 나와 있다.⁸⁷⁾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적지 않는 숫자이며 대형 포인 1호와 2호까지 있었던 데서 나타나듯 강화도 방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형상은 불랑기가 연달아 발사할 수 있어 성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기로 이만한 것이 없다면서 화포 가운데 으뜸이라고 평했다.⁸⁸⁾

불랑기의 산성 배치도 계속 이루어졌다. 1682년에는 수어사 金錫胄의 주도로 長連에서 구리를 채굴하여 자모포와 대포 수백 좌를 주조하게 하여 강화도 뿐 아니라 남한산성과 백마산성에도 배치했다.⁸⁹⁾ 1692년 군기시 제조를 맡고 있던 좌의정 睦來善이 대궐에서 포를 쏠 때 사용하는 正鐵子砲 170문 가운데 60문과 군기시에 있는 불랑기 12좌를 남한산성으로 옮기도록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⁹⁰⁾ 이해 12월 수어사 吳始復은 산성에 2백여 좌의 불랑기가 있지만 수량이 부족하다고 보아 동래에서 구리를 구입하여 추가 제작에 나섰다.⁹¹⁾ 그간 불랑기는 주로 統營에서

진보 불랑기	1호	2호	3호	4호	5호
月串鎗	2	2		10	32
濟物鎗	2	2			
龍津鎗	2		3	14	
花島堡		1		9	
廣城堡				9	
德津鎗				9	
계	6	5	3	51	32

87) 『譯註 江都志』(上), 382~383쪽.

88) 『譯註 江都志』(上), 394쪽.

89) 『承政院日記』 英祖 5년 8월 23일(乙丑). 이조 판서 이인엽은 김석주가 금위영에 불랑기 40좌를 비치했다고 했는데(『備邊司謄錄』 肅宗 34년 8월 8일) 이는 1682년 당시 제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90) 『南漢謄錄』(奎15065), 壬申(1692년) 5월 18일 027ab. 1696년 영의정 南九萬이 군기시에 불랑기 등의 병기가 전혀 비축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 뒤에 제조할 때 견본이 있어야 하므로 남한산성으로 옮긴 군기 가운데 1~2개씩은 도로 가져오도록 요청하여 숙종의 재가를 받았다. 『南漢謄錄』, 丙子(1696년) 2월 5일 027b.

만들어왔는데 남한산성 근처의 松坡倉에 제작소를 설치하여 모포 50좌와 자포 250문을 주조했다.⁹²⁾ 1706년에도 남한산성의 화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여 동래에서 구리를 구입해 화포 50좌를 만들기로 했다.⁹³⁾ 이듬해 5월 수어청에서 남한산성에 보낼 불랑기를 송파창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50좌의 주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⁹⁴⁾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1707년 당시 남한산성에 배치된 불랑기는 대략 300여좌 정도였다.

1711년에 새로이 북한산성이 축조되자 이곳에도 긴급히 불랑기를 배치했다. 금위영에서 관할구역의 지형이 평탄하고 들레도 넓은데 본영의 군기 가운데 대포가 극히 적다면서 상주에 보관 중인 불랑기 1백여 좌를 북한산성에 옮기자고 건의했다. 상주의 불랑기는 鳥嶺山城에 비치하기 위해 閔鎭厚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총 수량은 모포 250좌, 자포 1,260문이였다.⁹⁵⁾ 금위영의 건의에 따라 1712년 250좌 가운데 100좌와 자포 503문은 조령의 조령산성에 배치하고, 그 나머지 모포 150좌와 자포 757문을 북한산성으로 옮기기로 했다.⁹⁶⁾ 이에 150좌와 자포 757문을 먼저 옮겼는데 그 후에 완공되지도 않은 산성에 만들기 힘든 불랑기를 두지 말고 모두 북한산성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나머지도 북한산성에 비치하기로 결정했다.⁹⁷⁾ 장연에

91) 『備邊司謄錄』 肅宗 18년 12월 4일. 내용상 산성은 남한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2) 『承政院日記』 肅宗 19년 5월 18일(辛酉).

93) 『備邊司謄錄』 肅宗 32년 4월 29일.

94) 『承政院日記』 肅宗 33년 5월 11일(壬戌).

95) 『備邊司謄錄』 肅宗 37년 10월 24일. 상주에 보관되어 있던 것은 鎬佛狼機였다. (『禁衛營謄錄』 壬辰 1712년 10월 14일) 정부는 구리 구입의 어려움 때문인지 재료를 다변화하여 鎬佛狼機, 鐵佛狼機 등을 주조했다.

96) 『禁衛營謄錄』 壬辰(1712) 2월 18일.

97) 100좌는 훈련도감에 30좌, 어영청 30좌에, 금위영에 40좌를 분배했다. 『訓局謄錄』 癸巳(1713) 3월 16일.

서 만든 木母砲 60좌와 자포 300문도 북한산성으로 옮겼다.⁹⁸⁾ 강화에 비치하기 위해 장연에서 만들었던 목모포 109좌와 자포 545문을 북한산성으로 가져가려다가 반대가 있자 두 곳에 반반씩 두도록 결정하여 절반 정도를 가져간 것이다. 또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에서 각각 모포 20위와 자포 100문씩을 각출했다.⁹⁹⁾ 북한산성을 중시하여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당수의 불량기를 가져간 것이다. 그만큼 불량기를 중요한 무기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숙종 대에는 주요 보장처인 강화도, 남한산성, 북한산성 세 곳에 상당수의 불량기포가 비치되었다. 합산하면 1712년 당시에만 해도 1,100좌에 달한다.

4. 영조~정조 대 불량기 제조의 감소

18세기에 들어 조선과 청과의 관계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세기 말 청은 중국의 전 지역을 통합하자 조선에 대해 여유 있는 태도를 취했다. 조선도 내부적으로 여전히 청에 강한 적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청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양국의 원만한 관계는 1706년(숙종 32) 청의 강희제는 조선이 청조를 섬김에 성심성의를 다해 공경하고 명을 배반하지 않았던 점을 본받아 할 것을 강조했던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¹⁰⁰⁾ 영조 대

98) 木母砲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떤 화포인지 불분명하다. 자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포신을 나무로 만든 불량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한 분께서 목모포는 훈련용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목모포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99) 『承政院日記』 肅宗 38년 10월 10일(庚申) ; 『禁衛營稽錄』 壬辰(1712) 10월 14일.

100) 『淸聖祖實錄』 권227, 康熙 45년 10월 丁未, “諭大學士等曰 觀朝鮮國王凡事 極其敬慎 其國人亦皆感戴 (중략) 且彼更有可取者 明之末年 彼始終未嘗叛之 猶爲重禮義之邦也”.

에는 집권 초인 1726년(영조 2) 그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거부되어 왔던 조선 측의 辨誣 요청 건이 전격적으로 수용되는 등 한층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대청 관계가 안정되었지만 불랑기를 제작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다. 영조 초반 어영청에서는 화포 가운데 대포 및 불랑기자 모포가 으뜸인데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생산되지 않아 왜관에서 구입해야 해서 가격도 비싸고 운반도 힘들어 군문에서 이러한 병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광맥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다. 伊川과 安邊 두 고을의 사이에 있는 광맥에서 구리가 채굴되고 있는데 품질이 왜관에서 사 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백반과 연철을 혼합하여 제련해본 결과 유연해져 부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淮陽에서도 납 광맥이 있다면서 이들 광산에서 채굴해오면 화포 등의 무기를 만들어 훗날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¹⁰¹⁾ 실제 구리 광맥이 발견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료를 확보해 각 군문에서 불랑기를 제작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대의 화포 제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1731년에 홍이포 2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¹⁰²⁾ 홍이포는 숙종 때까지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화포였다. 1705년(숙종 31) 수어사 金佐明은 남한산성에 비치되어 있던 홍이포를 가져다가 시험 발사해봤는데 총신이 파열되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오래 전 표류인들이 두고 간 것으로 관리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김좌명은 설령 홍이포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해도 불랑기나 玄字砲처럼 긴요하지 못한데다 발사법도 모르는 무용한 물건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녹여서 불

101) 『承政院日記』英祖 5년 8월 23일 ; 『備邊司謄錄』英祖 5년 8월 23일.

102) 『承政院日記』英祖 7년 8월 2일(壬辰).

랑기와 현자포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허락을 받았다.¹⁰³⁾ 1707년 趙泰采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있던 남만포는 3문이었는데 그 가운데 2문을 해체했고 1문은 파괴해서 다른 병기를 주조해봤자 대수롭지 않고 혹 그 제도를 상고하여 원용할 일이 있을지 몰라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¹⁰⁴⁾

영조 대의 홍이포는 훈련도감에서 權和經이란 이에게 의뢰하여 주조한 것인데 남한산성에 있던 것을 참고하여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권화경은 어영대장 張鵬翼의 의뢰를 받아 이전에도 다른 대포를 만들어 납품한 경력도 있던 인물이다.¹⁰⁵⁾ 홍이포 제작 당시 장봉익이 훈련대장이었으므로 영조 대의 홍이포 역시 장봉익과 권화경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훈련도감에서는 홍이포를 시험해본 결과 탄환이 10여 리까지 나갔다면서 위급한 때에 사용할 만하다고 영조에게 보고했다.¹⁰⁶⁾ 하지만 이후 홍이포는 방치되었는데 장봉익은 연철이 산출되는 곳이 없어 탄환을 주조하지 못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¹⁰⁷⁾ 1743년(영조 19) 영조가 군문에서 보유한 홍이포 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부사직 金聖應은 각 군문에 있지만 홍이포는 주조한지 오래되었다고 답했다. 영조는 어느 포의 적중률이 가장 높으냐고 물었고 김성응은 불랑기가 1,000보를 날아가며 잘 맞는다고 답하자 앞으로 불랑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¹⁰⁸⁾

103) 『承政院日記』 肅宗 31년 8월 24일(乙卯). 김우진, 앞의 책, 191쪽.

104) 『備邊司謄錄』 肅宗 33년 2월 21일.

105) 『承政院日記』 英祖 10년 9월 24일(丙申).

106) 『英祖實錄』 권30, 英祖 7년 9월 21일(辛巳). 시험 발사를 했는데 포신이 파열되어 개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訓局謄錄』 英祖 7년 8월 1일) 전통적인 화포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포신이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포신의 두께도 일정치 않아 발사 시 포신 파열의 위험성이 상존했다.

107) 『訓局事例撮要』 英祖 16년 1월 20일.

108) 『承政院日記』 英祖 19년 8월 26일(丙子). 『만기요람』에는 훈련도감에 홍이포 2좌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1731년에 주조한 제품이었을 것이다.

홍이포는 불량기의 벽을 넘지 못했고 영조의 지시를 기점으로 불량기만이 제조되었다. 1745년 慶尙道審理使 金尙迪은 동래부에 대포나 불량기 등이 비치된 것이 전혀 없다면 만약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비변사에서 대포와 불량기는 매우 긴요한 것이라며 통제영에서 제작해 보내도록 건의했다.¹⁰⁹⁾ 군문에서도 불량기 제조에 나섰다. 1747년 훈련도감에서 불량기 65좌(4호 15좌 / 5호 50좌)와 자포 325문,¹¹⁰⁾ 어영청에서 불량기 60좌(4호 10좌 / 5호 50좌)와 자포 300문, 목모포 10좌, 鐵母砲 1좌와 자포 5문을 주조했다.¹¹¹⁾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량기는 적중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제조 작업을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1751~2년 경 경주 부윤 黃景源이 불량기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훈련도감에서 聖旨를 받들어 佛狼機를 만들어 本州(필자 주 : 경주)에 내려 보내 兵器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화포를 다루는 기술자가 없어 병기 가운데 사용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중략) 지금 훈련도감에서 만드는 불량기는 그 배 부분을 크게 만들고 배 부분에 子砲 5개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내니 힘센 장사도 그것을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기고 속에 두고는 백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쏘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¹¹²⁾

109) 『御營廳叢錄』 乙丑(1745) 7월, 일본이나 쓰시마와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지 동래부의 군비는 상당히 취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0) 『訓局叢錄』 丁卯(1747) 11월 4일.

111) 『御營廳叢錄』 丁卯(1747) 9월 27일.

112) 『江漢集』 권4, 狀 「上政府論佛狼機狀」 a224-092ac, “訓鍊都監奉聖旨 作佛狼機下本州以壯兵器 然本州近無砲工 雖武庫有佛狼機 軍民不知佛狼機之爲何砲也 故本州兵器之中 佛狼機最爲難用也 (중략) 今都監造佛狼機 鉅其腹 腹有修孔可以容子砲五介 而力士莫之能動 惟藏之武庫之中 積百年不可一發 府尹所謂難用者非謬論也”. 황경원은 1751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경주 부윤으로 재직했다.

화포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하고, 무게가 무거워 실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전부터 이야기돼오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숙종 초반 비변사에서는 관리와 장졸이 불량기 등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군기시에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과 『火砲式』을 평안도로 보내 책을 간행하고 군사들에게 기술을 익히게 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¹¹³⁾ 반면 두 번째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았던 것인데 황경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단단한 나무로 포신을 만들어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여 불량기가 화약을 담아두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¹⁴⁾ 포신을 목재로 만들면 위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량기의 적중률이 낮다는 것은 진작 제기된 문제인데 위력까지 약해진다면 화포로서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황경원은 명 말의 馮應京이 목재 포신의 제조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황경원의 제안은 불량기가 방치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런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것이기도 했다.

영조 대 중반은 불량기가 도입된 지 15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17세기에 불량기를 집중적으로 제조한 결과 상당수의 불량기가 주요 보장처에 배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황경원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 보유한 불량기의 운용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778년(정조 2) 反庫御史로 강화부의 각 창고를 점검했던 沈念祖는 강화부 연안에 13진이 있지만 전선과 수군이 없어 적이 건너오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¹¹⁵⁾ 또 고지기들이 명색을 구분하지 않고 화기를 관리하고

113) 『肅宗實錄』 권12, 肅宗 7년 8월 2일(壬午). 『화포식』은 1635년 李暉의 저술 『火砲式諺解』를 말한다. 불량기조에불량기의 장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114) 5호 불량기의 중량이 35kg 내외였던 것을 고려하면 작은 것도 150근이 나간다고 한 것은 혹 5문의 자포 무게까지 포함해서 말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있으며 군사들은 『화포식』을 읽지만 쓰는 방법을 몰라 허다한 화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실정이라고 밝혔다.¹¹⁶⁾

불랑기의 제작 사업 자체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 1786년(정조 10) 군기시 주부 韓德亮은 장군전, 불랑기를 번갈아 쓰는 것이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군기시에 비치된 장군전과 불랑기의 수요가 극히 적다며 증산을 요청했다.¹¹⁷⁾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불랑기를 많이 주조하면 좋겠지만 재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정조는 차차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¹¹⁸⁾ 정조 대에 불랑기가 어느 정도 제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제작 사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불랑기에 관한 한 『만기요람』의 기록은 거의 정조 대까지의 제조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각 군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불랑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萬機要覽』에 표시된 각 군영의 불랑기 비치 현황

군영	불랑기	모포	자포	
훈련도감	佛狼機	65좌(4호 15좌, 5호 50좌)	335문	
금위영	佛狼機	60좌	300문	
어영청	鎗佛狼機	60좌(4호 10좌, 5호 50좌) / 鐵母砲 2좌		
총융청 관할 북한산성	훈련도감창	鎗佛狼機	80좌	400문
	금위영창	鎗母砲	120좌	966문
	어영청창	鎗母砲	105좌	550문
	승창	鐵佛狼機母砲	60좌 / 鎗佛狼機 110좌	2,066문

115) 『書啓輯錄』(奎15083) 제1책, 「江華各庫反庫御史沈念祖書啓」 039a.

116) 『書啓輯錄』 제1책, 「江華各庫反庫御史沈念祖書啓」 036b~037a, “本府軍器中 至於火砲諸器 庫子典守 不分名色 武士雖讀火砲式 不知試放之規 本府各鎮許多火器 皆作無用之物”.

117) 『日省錄』 正祖 10년 1월 22일(丁卯). 본문에 ‘불랑기와 자모포(佛狼機與子母砲)’로 되어 있는데 불랑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118) 『日省錄』 正祖 10년 1월 22일(丁卯).

앞서 살폈듯이 1747년에 훈련도감에서 65좌(4호 15좌 / 5호 50좌), 어영청에서 60좌(4호 10좌 / 5호 50좌)의 불랑기를 각각 제조한 바 있는데 이는 『만기요람』 상의 불랑기 숫자와 일치한다. 금위영의 불랑기 60좌와 자포 300문 역시 1709년에 제조했던 것과 수량이 같다.¹¹⁹⁾ 북한산성의 경우 1712년 상주에서 유불랑기 250좌를 옮겨왔는데 『만기요람』 상에는 유불랑기가 415좌로 나와 있다. 정조 대에 삼군문의 불랑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고 북한산성에만 유불랑기를 추가 배치한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불랑기를 대체할 새로운 화포 개발에도 관심이 적었다. 정조 대에 소수의 지식인들이 홍이포에 주목했다. 홍이포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은 李德懋였다. 그는 네델란드 인들이 믿는 것은 큰 배와 대포인데 그들의 홍이포는 한번 쏘면 석성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어서 여러 나라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밝혔다.¹²⁰⁾ 丁若鏞은 특히 홍이포를 주목했다. 정약용은 세도가 날로 타락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이한 무기를 제조하는데 그 중 홍이포는 파괴력이 대단하여 중국과 일본도 오래전부터 사용했다면서 만일 남방과 북방에서 무인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홍이포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성을 바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약용은 현실이 이렇지만 조선에서는 활을 시험하여 무사를 선발하고 활을 절세의 妙技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²¹⁾ 유럽에서 18세기 중엽에 개

119) 『承政院日記』 肅宗 35년 7월 21일(庚寅). 환련 금위영 무기 가운데 鳥銃 안에 鎗佛狼機一柄 子砲五箇 鐵佛狼機一柄 子砲五箇 라는 내용이 있다. 조총으로 표시되고 단위인 자루(柄)인 철불랑기가 어떤 화기인지 분명치 않다. 불랑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후장식 字母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20) 『靑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 「兵志 備倭論」.

121) 『與猶堂全書』 文集 권11, 論 「軍器論」二. 정약용은 시에서도 ‘近聞紅夷砲 創制更

발되고 있던 새로운 화포에 비하면 홍이포는 구식 대포였는데¹²²⁾ 그나마 홍이포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정조도 홍이포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했다. 埋火를 설치한 것을 보고 정조는 이것이 원숭환이 영원성에서 시험했던 홍이포의 유제라면서 병자호란 당시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아 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¹²³⁾ 하지만 아쉬움만 표했을 뿐 홍이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1796년 화성을 완공한 후 거기에 비치할 각종 군기를 제작했다. 대부분 전통적인 군기였고 가장 최신식 무기는 불랑기였는데 그나마 5좌(2호 1좌 / 4호 2좌 / 5호 2좌)에 불과했다.¹²⁴⁾ 새로운 무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데 불랑기도 제조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것이다. 동시기 청과 일본의 상황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세기에 들어 청에서도 화기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조되는 화기의 수량도 줄었으며, 일본에서도 화기 훈련은 줄고 칼이 무기의 주류가 되었다.¹²⁵⁾ 대외 관계가 안정적이었으므로 일종의 군축이 이루어진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서구에서는 새로운 군사 혁명을 통해

殘酷 坐守太古風 弓箭有課督 라고 조선의 군비 상황을 비판했다. (『茶山詩文集』 권4, 詩「古詩」27수)

122) 프랑스에서 대포를 거푸집에서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덩어리 형태로 만든 후 기계를 이용하여 포강을 뚫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어 조준장치가 도입되고, 포탄과 화약을 하나로 만드는 등 개량 작업이 진행되었다. 18세기 중반 대포의 발전에 대해서는 윌리엄 맥닐 저·이내주 감수·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225~229쪽 참조.

123) 『正祖實錄』 권8, 正祖 3년 8월 8일(己未). 매화와 홍이포는 다른 것이었지만 정조는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영원성 전투에서 명군은 성 밖에 화약을 매설해 두었다고 후금군이 접근하자 이를 터뜨리고 원거리에서 홍이포를 쏘았다. 강석화,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339쪽.

124) 『日省錄』 正祖 21년 8월 18일(甲寅). 자포는 385문(유철 175문 / 정철 210문)으로 모포에 비해 과도하게 주조되었다.

125) 기시모토 미오 저·노영구 역, 앞의 책, 102~103쪽.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머지않아 그런 서구와 마주해야 했다.

5. 맺음말

조선은 임진왜란 때 당시의 최신예 화포였던 명군의 불랑기를 도입했다. 불랑기 제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조선 정부는 불랑기의 제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랑기의 제조와 배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해군과 인조 때에는 북쪽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북쪽 산성을 중심으로 불랑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산성을 우회하여 곧바로 쳐내려 왔기 때문에 불랑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효종 대에 들어서서는 보장처인 강화부에 불랑기를 집중 배치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에 피신해 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던 개인적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강화에 불랑기를 배치하는 작업은 효종 대를 거쳐 현종 대까지도 이어졌다. 한편 현종 때에는 남한산성에도 불랑기를 설치했는데 남한산성을 또 다른 보장처로 삼기 위한 조치였다. 남한산성에는 홍이포로 추정되는 남만포도 설치했다.

숙종 때에는 강화의 요충지에 48개의 돈대를 설치하고 이곳에 불랑기를 배치함으로써 효종 대 이래 추진되어 온 강화의 방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산성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남한산성 근처에 송파창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불랑기를 주조해서 보냈으

며, 1711년에 새로 북한산성이 축조되자 여기에도 신속하게 불랑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숙종 대에는 강화도를 비롯하여 남한산성, 북한산성 등의 요해처에 상당수의 불랑기가 배치될 수 있었다. 17세기 말까지도 청과의 관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보장처 중심의 방어 체제를 구축했고 불랑기는 그런 체제에서 핵심 전력 역할을 했다.

영조 대는 청과의 관계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자 이전처럼 불랑기 제작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주력 화포로서 불랑기의 위상 자체가 약화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조 대 중반 이후에는 불랑기 제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조 대에도 이어졌다. 불랑기는 여전히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았고 불랑기를 제작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부담 등의 문제로 제조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력 화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불랑기가 도입된 지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랑기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적중률이 낮다든가 무거워 이동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불랑기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다. 낮은 적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산탄을 사용해야 한다든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모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불랑기에 대한 믿음이 여전했음을 보여준다. 정조 대 일부 지식인들이 홍이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주목하지 않았다. 새로운 무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불랑기의 제조도 부진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뒤 시기까지 이어졌다. 신미양요 때 미군이 광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으로 챙겨간 불랑기는 1680년에 제조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17~18세기 불랑기의 제조와 배치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불랑기 제조와 관련해 꼭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주로 왜관을 통해 구입했던 동철을 비롯한 원료의 조달인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배치된 불랑기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던가 하는 점도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살피지 못했으며, 제목은 조선후기이지만 세도정치기와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검토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당시 국방력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랑기 외에 다양한 무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개별 무기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Manufacturing and deployment of Bulanggi cannon(佛狼機砲)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h DaeHwan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Bulanggi cannon(佛狼機砲 : Frankish gun) was introduced to Joseon and how it was built and deployed. The Frankish gun was a modern European artillery piece that was introduced to China in the 16th century. It was also introduced to Joseon through the Ming army during the Imjin War. Bulanggi cannons were known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attle of Pyongyang, and Joseon began manufacturing them soon after. By the mid-19th century, they were the main guns of the Joseon army.

Bulanggi cannons are an important part of late Joseon military history, but there are virtually no full-scale studies on them.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hasn't been interest in them, and they have been mentioned in several papers. However, most of them dealt with the firearms of the Imjin War, but only in a fragmentary way, and did not specifically shed light on the Bulanggi.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manufacturing and deployment process of Bulanggi cannons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ere the period when Bulanggi cannons were mainly made in Joseon. I hope this paper will help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late Joseon military history.

Keywords: Bulanggi cannon, Hongi cannon, Imjin War, Ganghwa, Namhansanseong, Bukhansanseong

〈참고문헌〉

1. 원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輿地圖書』,
『萬機要覽』, 『火器都監儀軌』, 『軍門謄錄』, 『啓本謄錄』, 『訓局事例撮要』,
『南漢謄錄』, 『禁衛營謄錄』, 『訓局謄錄』, 『書啓輯錄』,

黃胤錫, 『頤齋亂藁』

李德懋, 『靑莊館全書』

丁若鏞, 『與猶堂全書』·『茶山詩文集』

戚繼光, 『紀效新書』

尹拯, 『明齋遺稿』

黃景源, 『江漢集』

李海昌, 『松坡集』

尹行恁, 『碩齋稿』

沈悅, 『南坡相國文集』

吳克成, 『問月堂集』

柳成龍, 『西厓集』

李恒福, 『白沙別集』

李德馨, 『漢陰文稿』

申欽, 『象村稿』

李選, 『芝湖集』

韓致瀛, 『海東釋史』

金涌, 『雲川先祖扈從日記』

『辰巳錄』

『譯註 江都志』(上),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5

류성룡 저·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아카넷, 2013

2. 연구서 및 연구 논문

- 郑诚, 『明清火器史丛考』, 上海三联书店, 2022.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1994.
- 기시모토 미오 저·노영구 역, 『동아시아의 근세』, 와이즈플랜, 2018.
- 김우진, 『숙종대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2002.
-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동재, 2004.
- 李伯重저, 이화승 역, 『조총과 장부: 경제 세계화시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와 상업』, 글항아리, 2017.
- 박재광, 『화염 조선』, 글항아리, 2009.
- 윌리엄 맥닐 저·이내주 감수·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 이내주, 『한국무기의 역사』, 살림출판사, 2013.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中江秀雄, 「わが国の鉄製大砲の科学的考察」, 『ぶらすとす』 제2권 제17호, 2019.
- 上野淳也, 「ウィーン軍事博物館所蔵佛朗機砲の文化財科学的調査と歴史考古学的検討-黒田長政の佛朗機砲について-」, 『別府大学紀要』 60, 2019.
- 강석화,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 김동우, 「문헌으로 본 조선시대 대형 화약무기」, 『국립진주박물관 조선무기 조사연구 보고서Ⅱ : 대형 화약무기』, 국립진주박물관, 2023.
- 金東哲,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 1995.
- 金炳崙, 「조선후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운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3.
- 李康七, 「虎蹲砲의 實態小考 :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2, 1991.
- 이강칠, 「佛狼機의 實態小考 :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5, 1997.
- 이강칠, 「한국의 화약병기」, 『학예지』 9,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2002.
- 朴晳暎,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火藥兵器를 중심으로-」, 『군사』 51, 2004.
- 朴晳暎,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察」, 『군사』 30, 1995.
- 신동규, 「訓練都監의 신식 무기 개발과 西洋 異國人 등용정책」, 『향토

- 서울』 63, 2003.
- 신영문, 「축성술을 통해 본 북한산성의 유산가치」, 『백산학보』 115, 2019.
- 안상현, 「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I. 鄭斗源의 西洋國奇別狀啓」, 『한국우주과학회지』 25, 2009.
- 이수나, 「조선 중기 불랑기포(佛狼機砲)의 견양(見樣)」, 『한국전통문화연구』 28, 2021.
- 이왕무, 「조선시대 軍器寺의 火器 제조와 관리」, 『조선시대사학보』 103, 2022.
- 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립박물관, 『진평돈대 발굴 조사 보고서』, 2017.
- 鄭長旭, 「임진왜란 시기의 화기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영창, 「화약무기의 기원과 발전」, 『국립진주박물관 조선무기 조사연구 보고서 I : 소형 화약무기』, 2019.
- 許泰玖, 「17세기 朝鮮의 焰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 『한국사론』 47, 2002.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15-146
<https://doi.org/10.29212/mh.2024..131.1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설치와 변천

김민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임시편집부의 설치와 임시편집위원부로 재편
3. 군사위원회의 설치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
4. 한국광복군 창설과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
5.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설치·운영한 편찬기구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920년 임시정부에 처음 군사교재 편찬기구가 조직되는 과정부터 1930년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40년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인적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군사교재 편찬기구 운영이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분석하

었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군사교재 편찬기구에 참여했던 인물의 회고록도 활용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의 존재를 증명하고, 활동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임시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와 그 변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해방되기 직전까지 군사교재 편찬 기구를 운영하였다. 비록 정식 편제된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유지·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보병조전초안』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발행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임시편집위원부, 군사학편수위원회, 군사학편찬위원회

1. 머리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외교·교육·문화·의열투쟁 등 독립을 위한 여러 방법과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군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은 한민족의 군대를 편성하여 일제와 독립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군사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실행한 독립운동 전략의 핵심을 이루었다. 군대조직을 위한 법규를 마련한 것, 육군무관학교 설립을 통해 군사간부를 양성한 것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영국 등과 대일전쟁을 수행한 것 등은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에서 군사 활동 정책을 수립하면서 추진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군사교재를 편찬·발행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군사간부와 병사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군사교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 편찬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1920년 임시편집부를 시작으로 임시편집위원부, 1930년대 군사학편수위원회, 1940년대 군사학편찬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다. 이 조직들은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5월,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은 군사교재 편찬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과 관련된 그동안의 관심과 연구는 『보병조전초안』에 집중되었다. 임시정부는 1924년 5월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¹⁾ 이를 통해 『보병조전초안』의 구성과 내용·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고, 임시정부 군사정책의 일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보병조전』과의 비교 연구²⁾, 일본 군사교재와 비교 연구³⁾, 현대 군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⁴⁾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군사교재에 대해 발전적이고 폭넓은 이해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의 연구·발행을 위해 설치한 기구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편찬의 결과물인 군사교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편찬기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⁵⁾ 이

1) 김민호, 『기록인(IN)』 3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5, 82~87쪽 ;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군사연구소, 2017, 151~175쪽 ; 김진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韓國老兵會의 『步兵操典草案』(1924)간행과 성격」, 『군사사 연구총서』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135~196쪽.

2) 조필균, 「항일무장독립군 군사교범 『보병조전초안』의 현대적 해석과 군사사학적 함의 : 『보병조전』과 『보병조전초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 통권 제14호, 2018, 185~215쪽.

3) 전호수,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의 탐색-『보병조전』의 한·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3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9, 73~124쪽.

4) 조필균,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현대적 해석』, 선인, 2021.

5)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필자는 이전에 『보병조전초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보병조전초안』의 구성

런 점에서 임시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에 대한 정리는 기존 연구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군사 활동 정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제작을 위해 설치·운영했던 편찬기구에 대해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운영되었던 편찬기구의 설치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그리고 편찬기구의 인적 구성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임시편집부의 설치와 임시편집위원부로 재편

임시정부에서 군사간부 양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군사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하는 일이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는 간부와 병사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근대적 군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병사들을 교육·훈련시킬 교재 제작은 필수적이었다.

임시정부는 군사교재의 편찬을 위해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임시편집부(臨時編輯部)가 그것이다. 임시편집부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1920년 5월 1일 조직한 기구이다.⁶⁾ 임시편집부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 당시 위원장

과 내용, 성격을 증점적으로 다루다보니 임시편집위원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언급하지 못했다. 둘째, 임시편집위원부와 같은 조직이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기구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싶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제작과 발행이 가지는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4쪽.

에는 윤기섭(尹琦燮)이 임명되었고, 위원에는 김근하(金根河)가 선임되었다.⁷⁾

임시정부에서 윤기섭을 위원장에 임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에서 학감·교감·교장 등을 맡아 학교를 유지·운영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남다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신흥무관학교에 10년 가까이 재직하며 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⁸⁾ 그는 신흥무관학교에 재직할 때, 『보병조전』이라는 군사교재를 만든 경험이 있었다.

김근하는 임시정부의 특파원과 조사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19년 재령지역 3·1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고,⁹⁾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몸담게 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황해도 지역 특파원과 조사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다.¹⁰⁾ 또한 연통제·교통국의 설치, 국내 유력 인물과의 관계 수립, 독립사상 고취, 정세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임시정부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¹¹⁾ 1920년 1월에는 임시정부 군무부 서기로 임명되어 군사관련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었다.¹²⁾

조직 초기 이들이 노력을 기울인 분야가 있다. 그것은 군사교재 발간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군사교재 발간과 관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8~9쪽.

8)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군사연구소, 2017, 159쪽.

9) 김병조 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76쪽.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2, 301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2008, 65쪽.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2, 305쪽.

1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67쪽.

련된 업무를 명문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920년 10월 8일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규정(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이 제정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9월, 임시편집부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근하가 1920년 9월 1일부로 면직되고, 같은 해 9월 29일부로 강영한(姜泳翰)과 오필영(吳弼泳)이 새롭게 임명된 것이다.¹³⁾ 기존의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체제에서 위원 1명이 더 증원된 체제로 발전한 것이었다. 김근하의 면직은 국내로의 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0년 10월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던 백운한·이명서·함일 등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평양의 일제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¹⁴⁾ 새롭게 영입된 강영한과 오필영은 임시정부에서 설립한 임시육군무관학교 제1회 졸업생 출신이었다.¹⁵⁾ 군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강영한과 오필영은 김근하가 추진하던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였다. 이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군사교재 발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이 그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군사교재 발간을 위해 1920년 10월 8일 교령 제11호로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을 발표하였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11쪽. 강영한은 대한적십자회 대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1, 2009, 98쪽), 오필영은 임시정부 재무부 서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2008, 88쪽).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1975, 301~302쪽.

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5, 42쪽.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教令 第11號：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

- 第1條 軍事教育에 必要한 教科用 圖書를 編輯하기 爲하여 臨時編輯委員部를 置함
- 第2條 臨時編輯委員部에 下の 職員을 置함
委員長 1人
委員 若干人
- 第3條 委員長은 軍務總長의 命을 承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委員을 監督함
- 第4條 委員은 上官의 指揮를 承하여 圖書編輯及 記錄編存과 其他 庶務에 從事함
- 第5條 委員長이 事故가 有한 時는 軍務總長이 指定한 委員으로 其事務를 代理케 함
- 第6條 委員長이 必要로 認하는 時는 軍務總長의 許可를 經하여 囑託員을 置함으로 得함

附則

- 第7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함¹⁶⁾

교령 제11호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임시편집부는 임시편집위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임시편집위원부로의 변화는 임시편집부의 역할과 기능이 공식적으로 확대·계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임시편집위원부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위원장에는 윤기섭이 임명되었고, 위원들이 선임되어 활동 중이었다. 설치 목적은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편집·발행하는데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임시편집위원부는

16)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264쪽.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편집위원부는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번 인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0년 11월 18일 위원 강영한이 면직되고, 1920년 11월 25일부로 장의주(張儀柱)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된 것이다.¹⁷⁾ 장의주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을사오적 처단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3·1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펼쳤다. 임시정부에서는 주로 밀정을 처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⁸⁾

1921년 5월에는 위원장 윤기섭의 전보가 있었다. 5월 7일부로 군무부 차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¹⁹⁾ 윤기섭이 군무부 차장으로 옮겨감으로써 임시편집위원부는 실질적으로 오필영과 장의주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장의주가 1926년 12월 13일 임시의정원 비서로 임명²⁰⁾되기 전까지 임시편집위원부를 유지·운영해 나갔다.

〈표1〉 임시편집부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재직기간	경력
위원장	윤기섭 (尹琦燮)	1920년 5월 1일 ~1921년 5월 7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위원	김근하 (金根河)	1920년 5월 1일 ~1920년 9월 1일	1919년 재령지역 3·1만세시위운동 주도, 임시정부 황해도 지역 특파원·조사원, 임시정부 군무부 서기

1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12쪽.

18) 장의주는 李鐸과 함께 활동하며 일제 밀정인 金秉憲을 처단하였다. 朝鮮總督府, 「上海假政府의 過激派 및 社會主義者와 提携件, 上海에서 爆彈破裂에 관한 佛國官憲의 의향, 密偵暗殺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과 過激派 1』, 1920.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06쪽.

2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69쪽.

위원	강영한 (姜泳翰)	1920년 9월 29일 ~1920년 11월 18일	임시육군무관학교, 대한적십자회 대원,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위원	오필영 (吳弼泳)	1920년 9월 29일~	임시육군무관학교, 임시정부 재무부 서기,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위원	장의주 (張儀柱)	1920년 11월 25일 ~1926년 12월 13일	1919년 3·1운동 참여, 중국 망명 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밀정처단 임무 수행,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임시의정원 비서

인적 변화와 함께 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1922년 2월 3일 교령 제3호를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敎令 第3號：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1922. 2. 3.)

第1條 軍事教育上 必要한 敎科用 圖書를 編輯하기 爲하여 臨時編輯委員部를 置한다.

第2條 臨時編輯委員部에 下의 職員을 置한다.

- 一. 委員長 1人
- 一. 副委員長 1人
- 一. 委員 5人

第3條 委員長은 軍務總長의 命을 受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副委員長 以下를 監督한다.

第4條 副委員長及 委員은 上官의 指揮를 受하여 圖書 編輯及 記錄 編纂 其他 庶務에 從事한다.

第5條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時는 副委員長이 代理한다.

第6條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할 時는 軍務總長의 認可를 得하여 囑託員을 置할 事를 得한다.

第7條 教育上 必要한 敎科書及 圖書는 露國 勞農政府의 軍事教育用 圖書 規定에 依하여 作製할 事

第8條 大韓民國 2年 10月 8日 敎令 第11條 委員規程은 茲에 廢止한다.²¹⁾

개정된 임시편집위원부규정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졌다.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1개조가 증가한 형태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2조 부위원장직의 증설과 위원수의 증가이다. 임시편집위원부를 효과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는 군무부에서 추진한 군사훈련 교재인 『보병조전 초안』의 편찬·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제7조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의 군사교육용 도서 규정에 따라 교재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초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는 다른 열강들보다 식민지·반식민지 해방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²⁾ 이러한 움직임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가 레닌(N. Lenin)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고, 레닌이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재정을 지원한 것,²³⁾ 1922년 1월 소비에트 러시아가 개최한 극동인민대표대회에 다수의 한국 대표들이 참석한 것²⁴⁾은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21)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278쪽.

22)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465쪽.

23) 한형권, 「臨時政府의 對俄外交와 國民代表會議의 顛末」, 『가톨릭靑年』 제6권 제7호 통권59호, 가톨릭청년사, 1948, 636~641쪽.

24) 임정석, 「극동민족대회와 조선대표단」,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44~51쪽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3·1운동과 국제사회』, 선인, 2020, 171~183쪽.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 입장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는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강대국이었고, 우리 민족문제를 이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다. 이러한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관계가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와 같은 인력의 변화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시편집위원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다.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고, 부서원의 증원을 통해 임무의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임시편집위원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교재 제작 업무 준비를 완비할 수 있게 되었다.

3. 군사위원회의 설치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 산하에 임시편집부와 임시편집위원부를 설치하여 군사교재의 편찬과 발행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증원하기도 하였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임시편집위원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보병조전 초안』이라는 군사교재를 편찬·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920년대 임시정부의 내부적 문제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대 중반 이래 뚜렷한 독립운동 방향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이념 차이·지역적 파벌·재정의 곤란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 1925년의 이승만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던 유일당운동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내홍(內訌)이었다.²⁵⁾

국제정세도 임시정부의 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1931년 일어난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일제는 허위보도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을 이간해 갈등을 부추겼고, 일부 친일 한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²⁶⁾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임시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군사정책을 진전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이 다시 활로를 찾기 시작한 건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1937년 7월 7일 일제는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을 일으켜 중국대륙을 침략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²⁷⁾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도 전시체제에 맞는 군사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설치였다.²⁸⁾

임시정부는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군무부 관할 하에 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²⁹⁾ 군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군사위원은 유동열(柳東說)·이청천(李青天)·이복원(李復源)·현익철(玄益哲)·김학규(金學奎)·안경근(安敬根)이 맡았다.³⁰⁾ 이들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실전경험을 쌓은

25)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53~242쪽.

26) 김용달,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130쪽.

27) 가토 요코 지음·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235~237쪽; 요시카와 요시히로 지음·손승희 옮김, 『중국근현대사』 3, 삼천리, 2018, 200~204쪽.

28)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5쪽.

29)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130쪽.

30) 군사위원 가운데 안경근을 제외한 유동열·이청천·이복원·김학규는 조선혁명당 출신의 군사간부들이었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민

군사전문가들이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군사위원회규정(軍事委員會規定)이 그것이다.

軍事委員會規定

第1條 大韓民國臨時政府는 軍務部 管轄下에 軍事委員會를 置함

第2條 軍事委員會는 獨立戰爭에 對한 計劃案을 研究 作成하고 軍事幹部 人材를 養成하며 軍事上 必要書籍을 研究 編纂함

第3條 軍事委員會 委員은 臨時政府에서 任命함

第4條 軍事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内外國 軍官學校 卒業生에 準하되 實地 戰鬪에 相當한 經驗이 有한 者도 委員됨을 得함

第5條 軍事委員會는 三人 以上 七人 以內의 常務委員을 置하고 그 中에서 一人을 選任함

第6條 軍事委員會는 每月 一回의 全委員會와 每月 二回의 常務委員會를 開하되, 開會時에는 臨時主席 一人을 互選함

第7條 軍事委員會는 相當한 資格者를 軍事委員으로 軍務部에 推薦함을 得함

第8條 軍事委員會 開會 時에는 必要에 應하야 國務委員이 列席함을 得함³¹⁾

군사위원회규정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제2조 군사위원회는 독립전쟁에 대한 계획안을 연구 작성하고 군사간부 인재를 양성하며 군사상 필요서류를 연구 편찬함”이 그것이다. 이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

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선혁명당 세력을 흡수하였다.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 온 조선혁명당 소속 군사전문가들과 제휴함으로써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역량 강화를 기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최기영, 「李復源의 유학과 재중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012, 190쪽).

3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96~199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52~55쪽.

가 새롭게 군사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인재 양성과 군사교재의 연구·편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점이라 할 수 있다.

군사위원회 설치 이후 임시정부는 새로운 기조에 맞춰 군사정책을 추진하였다. “속성군관학교를 설립하고, 초급장교를 한 기수에 2백 명 양성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것이었다.³²⁾ 이에 대한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이었지만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다.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임시정부도 진강(鎭江)·장사(長沙)·광주(廣州)·유주(柳州)·기강(綦江)으로 옮겨 다녀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임시정부는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1938년 장사에 피난해 있는 동안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수위원회(軍事學編修委員會)’를 조직한 것이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군사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임위원은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이 맡았고, 유동열·이청천·현익철·이복원·김학규 등을 위원에 임명하였다.³³⁾ 조성환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으로, 1920년대 대한군정서·대한독립군단·신민부 등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던 인물이다.³⁴⁾ 그리고 이청천과 이복원은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을 가졌다. 군사학 편찬 경험이 있는 군사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군사교재 편찬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였다.

3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2005, 305쪽.

33) 애국동지원호회편, 『한국독립운동사』, 1956, 370쪽.

34) 양태석, 「晴篔 曹成煥(1875~1948)의 抗日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7~31쪽.

〈표2〉 군사학편수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연령	출신	경력
주임위원	조성환 (曹成煥)	64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신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신민부,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장
위원	유동열 (柳東說)	60	일본 육군사관학교 대한제국군 육군 참령	신민회, 한인사회당, 길림군정사, 고려군정의회, 임시정부 군무총장
위원	이청천 (李靑天)	51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대한독립군단, 고려혁명군관학교, 한국독립군,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현익철 (玄益哲)	49	-	서로군정서, 광한단, 통의부, 정의부, 고려혁명당, 국민부
위원	이복원 (李復源)	53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미국 버지니아 군사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위원	김학규 (金學奎)	39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조선혁명군,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학 도서의 편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군사학편수위원이던 김학규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는 “우리가 장사(長沙)에 있는 동안에도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광복군(光復軍) 조직(組織)에 관(關)한 공작(工作)과 군사학(軍事學) 편찬(編纂)에 대(對)한 공작(工作)은 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³⁵⁾ 군사학편수위원들이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전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韓民)』에도 소개되었다. 『한민』은 임시정부와 한국국민당을 비롯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전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군사학편수위원회의 활동 소식도 알린 것이다. 『한민』은 기사에서 “우리 군사위원회에서는 군사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성립하여 임시정부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하는 동시에 군사에 관한 서적들을

35) 김학규, 「白波自叙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596쪽.

출판하여 이를 군대에서 사용케 하는 것이 크게 필요한 것임을 느끼고”라고 언급하며 군사위원회에서 군사학 서적 출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지금 군사위원들이 군사학 중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밤낮으로 이를 편찬하는 중이며, 이미 착수한 것은 보병조건·진중요무령·사격교범·유격전술 등이라는 사실도 전했다.³⁶⁾ 이처럼 임시정부는 전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학 관련 서적을 정리·편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하였다.

4. 한국광복군 창설과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를 떠난 이래 중국대륙 여러 곳으로 정부 소재지를 옮겨 다니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 정착하였다. 중경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중국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하고 있던 도시이다.³⁷⁾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임시정부는 이곳에 머무르며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한국광복군 창설이었다. 그동안 인적·재정적 어려움, 임시정부의 피난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군사정책을 중경에 정착하면서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1940년 9월 17일 중

3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2009, 391쪽. 현재 군사학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교재의 실물은 확인된 것이 없다.

37)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쪽.

경시에 위치한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총사령부만으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은 이청천이 임명되었고, 참모장은 이범석이 맡았다. 창설 당시 인원은 30여명으로,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인물들과 중국의 각종 군관학교를 졸업한 군사간부들이 주축을 이루었다.³⁸⁾

광복군은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병력을 확보하고, 단위부대로 지대를 편성하면서 조직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산서성(山西省)·수원성(綏遠省)·강서성(江西省)·섬서성(陝西省)·안휘성(安徽省) 등지에 병력모집 기구인 징모분처(徵募分處)를 설치하고 초모공작을 펼쳐 병력을 확보하였고, 일본군을 탈출하여 찾아온 한인 청년들도 광복군으로 편입시켰다.³⁹⁾ 뿐만 아니라,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한인무장 세력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와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흡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⁴⁰⁾ 이를 통해 광복군은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중국 관내 한인무장 세력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통일과 함께 정치적 통일도 완성하였다.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하여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인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좌우익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임시정부로 합류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⁴¹⁾ 그 방향

38)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89~93쪽.

3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232~241쪽.

40)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54~155·181~184쪽.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가 되었고,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41) 한시준, 『빈민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144쪽.

은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통합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1941년 12월 김성숙(金星淑)이 이끄는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이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나섰고,⁴²⁾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도 전당대표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로의 참여를 공식 결정하였다.⁴³⁾

이로써 중국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임시정부로 합류하였다. 좌익진영이 참여해 오면서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1942년 10월 제34차 정기의회부터는 좌익진영 의원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⁴⁴⁾

군사적·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임시정부는 정부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좌우연합정부 구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고,⁴⁵⁾ 부주석제가 신설되고 국무위원 수도 증원되었다.⁴⁶⁾ 또 행정부서도 기존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 5부 외에 학무(學務)·교통(交通)·선전(宣傳)·생계(生計) 등 4부를 증설하였다.⁴⁷⁾ 아울러 상임위원회에 8개 분과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어졌다.⁴⁸⁾

이러한 변화는 군사 분야에서도 일어났다. 광복군의 직제와 부대개편이 이루어져 부사령직이 신설되어 김원봉이 임명되었고,⁴⁹⁾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지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2지대, 그리고 징모 제6분처를 제3지대로 편제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1970, 530~534쪽.

4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7, 2009, 45~57쪽.

4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8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2005, 23~116쪽.

4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73쪽.

4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8~34쪽.

4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73쪽.

4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9~270쪽.

4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0~261쪽.

한 것이다.⁵⁰⁾

이와 함께 군사교재 편찬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군사서적발행안(軍事書籍發行案)’의 제정이었다. 임시정부는 1943년 4월 23일 국무위원회에서 군사서적발행안의 시행을 결의하였다. 여러 군사서적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종류를 선택하여 편찬·발행하기로 한 것이다.⁵¹⁾ 이는 광복군이 창설되고 좌익진영의 합류로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군사교재 편찬과 관련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서적발행안이 제정되자, 임시정부는 군사교재 편찬을 전담할 기구 조직에 착수하였다.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찬위원회(軍事學編纂委員會)’를 설치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4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군무부장이 제출한 군사학편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군무부 내에 군사학편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⁵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軍事學編纂委員會條例

第1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軍務部 直轄下에 置함

第2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各種 軍事學 書籍을 編述하며 軍事法規를 起草함

第3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主任 一人, 副主任 一人, 委員 若干人, 幹事 若干人을 置하되 事務의 煩簡을 隨하여 增減함

第4條 主任委員은 軍務部長이 兼任하고 副主任委員과 委員은 軍務部長의 薦報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하고 幹事는 主任委員이 任命함

50)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81~214쪽.

5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90쪽.

5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7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 2007, 451쪽.

第5條 主任委員은 會務를 指揮 監督함

第6條 副主任委員은 主任을 輔佐하며 主任委員이 有故한 時는 其 職務를 代理함

第7條 委員은 主任을 輔佐하며 軍事書籍과 軍事法規를 分擔하여 編述 或 起草함

第8條 幹事는 主任委員의 命을 承하여 文書·會計·庶務·書役 等 事務를 分掌함

第9條 處務規正은 另定함

第10條 本 條例는 公佈日부터 施行함⁵³⁾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목적은 각종 군사학 서적과 군사법규를 편찬·기초하는데 있었다.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에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 또 군사서적발행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그 결과로서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군사교재 편찬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학편찬위원회는 주임 1인, 부주임 1인, 위원 약간인, 간사 약간인으로 이루어졌다. 주임은 군무부장 조성환이 맡았고, 부주임에는 윤기섭이 임명되었다. 편찬위원에는 이복원·이연호(李然皓)·권준(權峻)이 임명되었고, 간사에는 나태섭(羅泰燮)을 선임하였다.⁵⁴⁾ 이들은 모두 군사 분야에 정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특히 이연호·권준·윤기섭의 임명이 주목된다. 이는 좌우세력의 균형과 군사부문의 전문성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

5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10쪽.

5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8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2011, 315쪽.

때문이다. 이연호는 본명이 이상정(李相定)으로, 주로 중국군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중국 국민정부 정규군 소장(少將)으로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였고, 중국 육군참모학교와 유격대훈련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다. 또한 1920~30년대 의열단·민족혁명당과 관계를 맺으며 김원봉과 결을 같이 했던 인물이다.⁵⁵⁾ 권준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활동한 경험을 가졌다. 1926년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여 북벌전(北伐戰)에서 활약하였고, 민족혁명당에 입당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⁵⁶⁾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와 임시정부 임시편집위원회·민족혁명당 등에서 군사학 편찬을 주도한 경험이 있었다. 독립군·중국군·군사학 전문가로 활약하며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를 확립시킬 수 있는 요소였다.



55) 이연호(본명 이상정, 1897~1947)는 남경에 있던 1920년대 후반부터 의열단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1937년 11월 민족혁명당이 남경에서 철수할 때 김원봉과 함께 이동하였다. 또한 1940년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좌익세력의 임시정부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최기영, 「李相定(1897~1947)의 在中獨立運動」, 『歷史學報』 200, 2008, 345~370쪽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참조).

56)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256~258쪽.

(표3)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명단(1944. 2)

직위	성명	연령	선임년월일	경력
주임	조성환 (曹成煥)	70	1944년 2월 8일	신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신민부,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장
부주임	윤기섭 (尹琦燮)	58	1944년 2월 8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회, 임시 정부 군무장,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위원	이복원 (李復源)	59	1944년 2월 8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 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위원	이연호 (李相定)	48	1944년 2월 8일	중국 국민혁명군, 중국 육군참모학교, 유격대훈련학교, 민족혁명당,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
위원	권 준 (權 駿)	50	1944년 2월 8일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민족혁 명당,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
간사	나태섭 (羅泰燮)	44	1944년 2월 8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한국국민당청년단,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원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자, 군무부는 1944년 공작계획대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다. 군무부는 1944년 4월 1일 임시의정원 제36차 회의에서 통과된 군사정책 실시안에 근거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공작사항 13개조와 실시보취(實施步驟) 3개조가 제시된 공작계획대강에는 국외에서 활동 중인 무장단체의 임시정부 편입 추진, 한국광복군9개 행동준승 취소,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실시 등 임시정부가 당면한 군사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각종(各種) 군사서적(軍事書籍)을 편술(編述)하며 군법초안(軍法草案)을 기초(起草)할 것”이라고 하여 군사교재의 편찬과 관련된 사항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관심 속에 추진되었던 군사학편찬위원회는 1944년 9월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편찬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던 이연호·권준·나태섭이 1944년 9월 6일부로 면직되고, 권양무(權揚茂)·박건웅(朴健雄)·이충모(李忠模)가 편찬위원에,

군무부 총무과 과장이던 염온동(廉溫東)이 간사로 임명된 것이다. 기존 편찬위원 중 윤기섭과 이복원만이 유임되었다.⁵⁷⁾ 이렇게 단기간에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인사 개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942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광복군 9개 행동준승 취소를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이 1944년 8월에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른 정책변화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된다.⁵⁸⁾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은 군사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적었다. 박건웅만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과 중국군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권양무·이충모는 군사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는다.⁵⁹⁾ 이전의 구성원들과

5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24쪽.

58) 인사 개편 이후 이연호·권준·나태섭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이연호는 임시의정원의 상임위원회 제4과(군무·교통)에서 김원봉·유동열·이청천·金鐵男과 함께 활동하며 군사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2005, 123쪽). 권준은 내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다가 우한지역 교포선무단 단장과 광복군 제5지대장을 역임하였다(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256~258쪽). 나태섭은 중경 거주 한인들의 생계유지와 식량·보건·아동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생계설계위원회부위원장을 거쳐 화중한교선무단에서 한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썼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18쪽 ;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532~533쪽).

59)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433~437쪽. 임시정부에서 권양무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1944년부터이다.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내무부 차장·경무부 과장·경위대장·義勇警衛團長 등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6쪽). 이충모는 함경남도 흥원군 출신으로, 조선노동총동맹·조선노동당·조선공산당 등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이후 만주와 러시아를 드나들며 활동하였고, 1944년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2006, 312~313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08, 221~224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4, 2009, 288쪽 ;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32(中國篇 7), 2007, 36~38쪽).

비교해서 역량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표4〉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명단(1944. 9)

직위	성명	연령	선임년월일	경력	비고
주임	김원봉 (金元鳳)	47	1944년 9월 6일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황포군관학교,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한국광복군 부사령	신규
부주임	윤기섭 (尹琦燮)	58	1944년 9월 6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회, 임시정부 군무장,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유임
위원	이복원 (李復源)	59	1944년 9월 6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유임
위원	권양무 (權揚武)	미상	1944년 9월 6일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 경무부 과장, 경위대장, 의용경위단장	신규
위원	박건웅 (朴健雄)	39	1944년 9월 6일	황포군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임시의정원 의원	신규
위원	이충모 (李忠模)	미상	1944년 9월 6일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	신규
간사	염온동 (廉溫東)	47	1944년 9월 6일	임시의정원 의원, 한국혁명당, 철혈단, 광복군 총사령부 관리과장, 군무부 총무과장	신규

인적 구성에 변화를 겪었지만 군사학편찬위원회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군무부에서는 공작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알렸다.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이미 보병조건·진중요무령·지형학·측량학·사격교범 등을 편찬하였고 현재는 보병입서(步兵入書)를 번역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⁶⁰⁾ 아마

6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2005, 119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73쪽. 현재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교재의 실물은 확인된 것이 없다.

도 계속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윤기섭과 이복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군사학편찬위원회는 1945년 해방직전까지 유지·운영되었다. 1945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계추인안 제62조와 제67조에 공군설계위원회와 군사학편찬위원회를 각 조례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¹⁾ 이는 여전히 임시정부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설치·운영했던 편찬기구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임시정부는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사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군사간부와 병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군사교재 제작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의 편찬과 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그 시작은 '임시편집부'였다. 임시편집부는 1920년 5월 1일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윤기섭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근하·강영한·오피영·장의주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군사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교재 발간을 위한 법령

6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2005, 131~132쪽.

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임시편집부는 1920년 10월부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교령 제11호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 발표를 계기로 ‘임시편집위원부’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군사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고 편집·발행하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22년 2월에는 교령 제3호로 법령을 개정하여 부위원장직을 증설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였다. 관련 규정의 보강과 인력 증원을 통해 임시편집위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교재 제작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 결과 1924년 5월에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임시정부가 극심한 침체상태에 접어들면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국제정세도 임시정부의 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군사정책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시정부에서 다시 군사교재 편찬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전시체제에 맞는 군사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위원회규정이라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38년 ‘군사학편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군사위원들이 참여하였다. 모두들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실전경험을 가진 군사전문가들로, 군사학 편찬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학 도서의 편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보병조전』·『진중요무령』·『사격교범』·『유격전술』 등의 편찬을 위해 힘썼고, 이들의 활동은 한국국민당 기관지인 『한민』

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운영은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이어졌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여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무장력을 갖추었고, 좌익진영의 합류로 군사적 통일도 이루었다. 1943년 4월에는 ‘군사서적발행안’을 제정하여 군사교재 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 편찬을 전담할 조직인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 또 군사서적발행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그 결과로서 기구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군사교재 편찬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학편찬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인적변화를 겪었지만, 1945년 4월 이후까지 유지·운영되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해방되기 직전까지 군사교재 편찬 기구를 운영하였다. 비록 정식 편제된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유지·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보병조전초안』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발행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總督府, 「上海假政府의 過激派 및 社會主義者와 提携 件, 上海에서 爆彈破裂에 관한 佛國官憲의 의향, 密偵暗殺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 雜件-朝鮮人の 部-鮮人과 過激派 1』, 1920.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32(中國篇 7), 2007.

<http://uci.or.kr//G901:A-0006177731@N2M>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3·6·8·9·19·22·27·31·34·35·37·45, 2005~2011.

<http://uci.or.kr//G901:A-0006106069@N2M>

김병조 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http://uci.or.kr//I012:A+SKT-0004514738@N2M>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7·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202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3787243@N2M>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7·10, 1972~1976.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http://uci.or.kr//G901:A-0008573907@N2M>

2. 단행본

가토 요코 지음·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http://uci.or.kr//G701:C-00073918559@N2M>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김학규, 「白波自叙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http://uci.or.kr//G701:B-00124312234@N2M>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요시카와 요시히로 지음·손승희 옮김, 『중국근현대사』 3, 삼천리, 2018.
- 조필균, 『임시정부 보병조건초안의 현대적 해석』, 선인, 2021.
<http://uci.or.kr//G901:A-0010720657>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http://uci.or.kr//G901:A-0004606989@N2M>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_____,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3. 논문

-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건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군사연구소, 2017.
<http://doi.org/10.17934/jmhs..144.201712.151>
-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UCI : G901:A-0005982705
- 양태석, 「晴簑 曹成煥(1875~1948)의 抗日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UCI : G704-001258.2010..53.001
- 조필균, 「항일무장독립군 군사교범 『보병조건초안』의 현대적 해석과 군사사학적 함의 : 『보병조건』과 『보병조건초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 통권 제14호, 2018.
<http://doi.org/10.34166/rokms.2018.7.2.185>
- 최기영, 「李相定(1897~1947)의 在中獨立運動」, 『歷史學報』 200, 역사학회, 2008.
UCI : G704-000356.2008..200.018
- _____, 「李復源의 유학과 재중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http://doi.org/10.15799/kimos.2012..42.005>

<Abstract>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Min-ho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mpil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military textbooks and the process of their change.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first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20,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in the 1930s,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changes of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in the 1940s were examined.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cognized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as an important activity, and that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activity policy.

First of all, data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ere investigated. Various data collection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ata Collection that can grasp the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re targeted. In addition, the memoir of a participant in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as used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opera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 clarify its activities. Through this examination,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its changes.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until just before its liber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perated a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Although it was not operated consistently as an official organization, it was established fluid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tinued its activities until just before liberation in 1945. In the process, it also achieved the result of Bobbyungjojeonchoan.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sistent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piling military textbooks.

Keyword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The Provisional Editorial Board,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47-182
<https://doi.org/10.29212/mh.2024..131.1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이호준 | 대한민국 해군

목 차

1. 서론
2.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3. 장병의 양성과 교육
4.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5.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의 창설과 발전을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 군사원조의 결합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해군(해운) 관련 유산들이 다수 존재했다. 창설 초기 해군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조선해안경비대는 이를 활용해 조직을 빠르게 확장함과 동시에 부족한 자원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선해안경비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에서 독자적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중 미국의 군사원조는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으나,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했다. 1947년 중반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과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주제어 : 조선해안경비대, 대한민국 해군, 손원일, 미군정, 군사원조



1. 서론

이 연구는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의 창설과 발전을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 군사원조의 결합이라는 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수습하고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국과 건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군사 경력자들에 의한 창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 그중 1945년 11월 11일 손원일(孫元一, 1909~1980) 등의 해군 창군 요원과 미군정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해방병단(海防兵團)은 해군 창설을 목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단체였다.²⁾

창설 초기 해군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해방병단은 일본이 남기고 간 해군 관련 시설과 물자들을 접수해 전국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으며,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Korean Coast Guard)로 정식 명칭³⁾을 부여받고 미국의 지

1) 당시 창군을 목적으로 한 군사단체는 미군정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30여 개에 달했다. 한용원, 『創軍』(서울: 博英社, 1984), p. 26.

2) 1946년 1월 9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42호를 통해 해방병단의 소속을 운수국에서 국방사령부로 변경하고, 이를 정식 군사단체로 승인했다. 이어서 1월 15일에는 진해 군항 내에 해안경비대 사령부를 설치하고 손원일을 해안경비대 사령관에 임명했다. “Ordinance No. 42” (1946. 1.14),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60, XXIV Corps Personalities (2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건 AUS179_01_06C0009_106).

3) 이는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른 것이었다. “Ordinance No. 86-Korean Constabulary

원을 받아 함정 등을 도입하며 해군의 기틀을 다졌다.⁴⁾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승만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1948년 9월 5일 해군을 창설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해안 경비대의 창설과 발전과정에 대한 규명은 이후 등장한 한국 해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⁵⁾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소이어(Robert K. Sawyer)와 허미즈(Walter G. Hermes)의 연구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이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⁶⁾ 한용원의 연구는 조선해안경비대 창설 당

and Korea Coast Guard” (1946. 6.15), Records of the Treasury Department in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Geographic Files: The Far East, 1944-1959, Korea: Official Gazette Ordinances, Vol. I [includes Korean Translation, 1945-194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건 AUS267_01_01C0062_016).

- 4) 본 논문은 해방병단과 조선해안경비대의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하되, 미군정이 점령 초기부터 정규군인 해군(Navy)과 구별되는 준군사(paramilitary) 조직인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육성하려 했다는 점에 착안해 ‘조선해안경비대’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Report of Proceedings of Board of Officers” (1945.11.18),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1939-1948,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06/30/1949 [Entry A1 1256], USAFIK: Tactical,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6, XXIV Corps, Station List, etc. (2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9_01_08C0007_026).
- 5)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에 관해서는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2022), pp. 283-324; 이호준·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2023), pp. 127-162; 이호준,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24).
- 6) Robert K. Sawyer and Walter G. Hermes(ed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62).

시의 인적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조직의 성격을 규명했다.⁷⁾ 신영진과 김주식의 연구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 및 이후의 전력 증강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했다.⁸⁾ 국방부와 해군에서 발간한 공간사(公刊史)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과 발전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 그 역사적·정치적 함의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⁹⁾ 게다가 소이어와 허미즈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 선행연구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과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미국 측의 사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미국 측 사료들까지 포함해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편의 『미국의 대외관계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시리즈,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장 RG 165(전쟁부 일반·특별참모 문서), RG 218(합동참모본부 문서), RG 332(주한 미24군단 정보참모부 문서), RG 338(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 등을 주로 활용했다.

7) 한용원(1984).

8)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제16호(1988), pp. 217-237;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2008), pp. 209-250; 김주식, “6·25전쟁기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과 운용,” 『해양담론』, 제1호(2023), pp. 127-166.

9) 國防部, 『國防史 1, 1945. 8 ~ 1950. 6』(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1篇』(서울: 海軍本部, 檀紀 4287(19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a).

2.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는 과거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건설한 해군 관련 시설이 다수 존재했다.¹⁰⁾ 따라서 해방병단 창설 초기 손원일은 이들이 남기고 간 시설을 활용해 해방병단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중 진해 해군기지는 과거 일제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창설 초기 해방병단이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진해 해군기지의 역사는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직후인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¹⁾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 진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동의를 얻고 1910년 4월부터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특히 일본 해군은 1909년 작성한 극비 문서에서 진해의 위치를 “일본해(日本海)의 인후(咽喉)에 해당”하며, “대륙에 대해서는 일본 해·육군의 확고 불변한 거점으로써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한 바 있었다.¹²⁾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진해 해군기지에 요코스

10) 일본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건설한 해군기지와 해군항공기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파주: 나남, 2014), pp. 17-106, 206-240, 344-348.

11) 진해 해군기지의 역사에 관해서는 고경석, 『鎭海軍港史』(진해: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12) “<극비> 제1호 군항의 성질, 가치 및 필요한 시설 방침(1909),” 김연옥(편역),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한반도 주둔 일본군 사료 총서 3』(서울: 역사공간, 2011), pp. 22-23.

카(橫須賀), 구레(呉), 사세보(佐世保) 및 마이즈루(舞鶴)와 동급인 군항(軍港)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할 진수부(鎭守府)를 설치하고자 했다.¹³⁾

1941년 일본 해군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진해에 경비부(警備府)를 설치해 한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의 모든 해군기지를 지휘하고, 이들 해역의 방어를 담당토록 했다.¹⁴⁾ 이 시기 진해 경비부는 사세보 진수부에 소속되어 소관 구역의 방비, 진수부 소속 함정들에 대한 보급, 시정의 운영 등을 감독했으며, 이를 위해 현대적인 항만 시설을 비롯해 300톤급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대(造船臺), 9,000여 톤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중유조(重油槽),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영 및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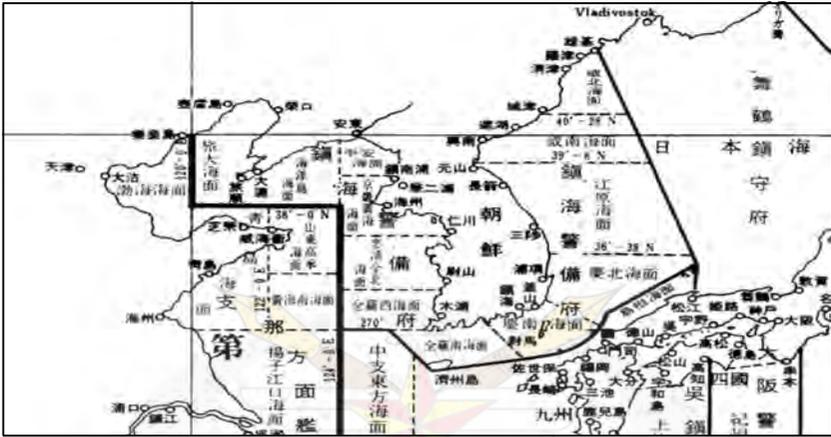
해방병단 창설 당시 손원일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 아닌 진해를 택한 이유도 향후 미군정으로부터 진해 경비부의 시설을 넘겨받아 해방병단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945년 11월 14일 해방병단은 진해 해군기지 내 일본 해군 항무부(港務部) 건물을 미군정으로부터 인계받고, 해방병단

13) 군항과 진수부는 일본 해군의 함대급 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편성된 일본 해군의 핵심기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위협 감소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에 따른 전력 감축 등을 이유로 진해 해군기지를 군항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 요항(要港)으로 지정하고, 요항부(要港府)를 설치했다. 고경석(2016), pp. 83-92.

14)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 해군은 해군기지를 진수부와 경비부 체제로 운영했다. 당시 진수부는 함대의 모항(母港)이었으며, 경비부는 진수부에 소속되었다. 특히 경비부에는 함대가 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조직인 해군공창(海軍工廠)이 없었으며, 각 진수부에서 영출한 함정과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해군의 진해경비부 설치와 한반도 해역 작전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호(2022), p. 214.

15)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 1=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서울: 돌베개, 1988), pp. 482-484.

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미군정과의 교섭을 통해 진해 해군기지의 시설물들을 순차적으로 인수한 해방병단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 기지를 한국 해군의 모항으로 지정했다.



〈그림 1〉 1941년 이후 진해경비부 관할 해역 및 예하 해군기지

* 출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戰史叢書85: 本土方面海軍作戰, 付図 第1海上交通保護担任区域図, http://www.nids.mod.go.jp/military_history_search/SoshoView?kanno=085# (검색일: 2023.10. 3).

한편 해방 이전 일본 해군은 진해경비부 외에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에 5개의 함정 정박시설(인천, 목포, 목호, 군산, 여수)과 7개의 항공기지(진해, 김해, 광주, 제주, 포항, 평택, 여수)를 운용했었다.¹⁶⁾ 그중 함정 정박시설은 민항(民港) 시설의

16) 김해비행장은 한국 공군이 인수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며, 광주비행장은 전쟁으로 파괴된 후 1956년 보수되었다가 부지 협소 문제로 1964년 현재의 광주공항 위치로 이전했다. 제주비행장(알프스 비행장)은 육군이 인수해 1956년까지 제1훈련소로 사용했으며, 포항비행장은 6·25전쟁 발발 이후 미 제5공군이 인수해 K-3 비행장으로 운용했다. 1978년 해군은 포항비행장의 관리권을 인수했다. 평택비행장은 전쟁 이후 미 육군이 인수해 운용하다 1962년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기지는 2000년대 이후 대대적인 확장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접안시설과 유류 저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항공기지는 당시 건설 중이던 3개소(포항, 평택, 여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해군항공대가 주둔했었다.¹⁷⁾ 마지막으로 진해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입체적인 해상작전이 가능토록 수상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지와 항공기를 제작·수리할 수 있는 항공창(航空廠)이 있었다.¹⁸⁾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 해군의 작전기지와 항공기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일본 해군기지 및 항공기지 현황

구 분	기지명	비 고
해군기지	진해	항만시설, 조선대, 중유소 등 보유
함정 정박시설	인천, 목포, 목호, 군산, 여수	진해경비부 소속
	진해, 여수	수상비행기지
항공기지	김해, 광주, 제주, 포항, 평택	항공대 훈련소(김해), 육상폭격기 발진기지

* 출처: 김윤미(2022), pp. 203-243;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2023), pp. 95-126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비롯해 미 제8군과 미 제2사단이 이전했다.

- 17) 여수 해군항공기지의 수상비행장은 길이 210m, 폭 100m의 2,500m²의 면적으로 건설되고 있었으며, 5대의 수상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와 44동의 공장 및 병영이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이 비행장을 폐쇄했다. 신주백,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2009), pp. 266-268.
- 18) 수상비행기 기지는 1936년에 설치되었다. 또한 1941년 일본 해군은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조선에서 맡는 계획을 수립하고, 1942년 8월 진해 행암만 풍호동과 덕산동 일대에 제51해군항공창을 설치했다. 패전 직후 일본 해군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해 항공창에는 청사 5동, 공장 24동, 격납고 1동, 전신소 2동, 병사(病舍) 4동, 창고 16동, 부속 건물 22동, 관사 206동 및 창고 시설로 사용된 대형 지하공장(9,191m²)과 길이 800m, 폭 70m의 활주대(滑走帶)가 있었다. 고경석(2016), pp. 176-177.

1946년 1월 9일 미 합동위원회(Joint Board)가 조선해안경비대의 임무를 38도선 이남 한반도 연안에서의 “해안순찰 및 경찰 기능”으로 규정하자 해군기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했다.¹⁹⁾ 이에 따라 1946년 4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서울의 관문이자 한반도 제2의 항구였던 인천항에 첫 번째 작전기지를 설치하고 6월 7일부터 진해와 인천 근해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시작했다. 이때 진해에서는 마산만과 부산 일대의 불법조업과 밀수선 단속, 조난선박 구조 업무 등을 시행했으며, 인천기지에서는 제대로 된 함정이 없어 훈련을 겸한 항내 초계(哨戒)만 이루어졌다.²⁰⁾ 1947년 8월 29일부터 1948년 5월 10일까지 인천기지사령관을 역임했던 정궁모(鄭兢謨, 1914~1980)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부임 이후) 일본이 물러가면서 모조리 파괴해 버린 항로를 표시하는 일이며, 곳곳에 세워진 등대에다 불을 켜는 일이며 항로에 장애가 없도록 해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해난구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 경비부에는 아직도 군함다운 군함이 없었으므로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었고, 주어진 과업에도 한계가 있었다.²¹⁾

이어서 조선해안경비대는 과거 일본 해군이 한반도 해역을 방

19) 당시 미 합동위원회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주일본연합군사령부(SCAP/GHQ) 최고사령관에게 38도선 이남 한반도에서의 “군대 창설을 연기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해안경비대를 “한국 해군의 중핵(a nucleus of Korean Naval Force)이 아닌, 일상적인 해안순찰 및 경찰 기능(customary inshore patrol and police functions)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 1. 9), *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and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 VI, pp. 1156-1157.*

20) 해군본부(2016a), p. 99.

21) 鄭兢謨, “나의 海岸警備隊 時節: 建軍全夜の 明暗,” 『세대』, 통권 87호(1970년 10월), p. 187.

어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에 기초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목포(1946년 8월 18일), 목호(1946년 8월 22일), 군산(1947년 1월 6일), 포항(1947년 2월 8일), 부산(1947년 9월 24일)에 순차적으로 해군기지를 설치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마산만 일대의 경비와 장병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특설기지(特設基地)로 지정했다.²²⁾

이외에도 조선해안경비대는 해상경비 임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주와 여수에 함정 전진기지 개념인 수영(水營)을 설치하고, 김포와 주문진의 육상 경비를 위한 파견대를 건설했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9월까지 조선해안경비대는 일본 해군의 시설물들을 활용해 6개의 작전기지(인천, 목포, 목호, 군산, 포항, 부산), 2개의 수영(여수, 제주), 2개의 파견대(김포, 주문진) 체제를 구축하고, 38도선 이남에서의 해안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들 해군기지의 시설과 체계는 이후 한국 해군이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

22)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1948. 7. 1),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2 of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9_01_06C0007_004).

〈표 2〉 조선해안경비대 기지 설치 현황 및 담당해역(1948. 8.30)

부대명	창설일자	예하 수영·파견대	담당해역
인천기지	1946. 4.15	김포파견대(1946. 8.16)	경기도 연안
목포기지	1946. 8.18	제주수영(1947. 6.21)	전라남도 연안과 제주도
목호기지	1946. 8.22	주문진파견대(1947. 3.26)	강원도 연안
진해 특설기지	1946.10. 1	-	진해·마산만 일대
군산기지	1947. 1. 6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연안
포항기지	1947. 2. 8	-	경상북도 연안과 울릉도
부산기지	1947. 9.24	여수수영(1947. 7. 1)	경상남도 연안

* 출처: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 관 자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04_25_00C0232).

3. 장병의 양성과 교육

19세기 이후의 국제정치에서 해군은 최첨단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당시 해군을 구성하는 함정, 사관(士官)과 수병(水兵), 조선(造船)과 수리시설, 해군 조직 등은 발달한 과학기술과 국가 제도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해군 사관은 함정 운용에 필수적인 항해술과 운용술, 내연기관에 대한 지식 등 최고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했다.²³⁾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도 양질의 교육훈련 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장교를 양성하고, 해운 전문인력 등을 흡수하고자 했다.

첫째, 해군사관학교(海軍士官學校) 설립을 통한 새로운 장교 양성이다.²⁴⁾ 이 기관은 미국식 군사교리와 사고방식으로 훈련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미 해군사관학교를 모방했다. 특히 손원일은 해방병단 창설 초기부터 해군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미국의 교육제도 도입을 강조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후일 손원일은 해군사관학교 설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사관학교는 1946년 1월에 시작했고, 내가 교장을 겸임하기는 했지만 그때 환경으로 보아서는 사관학교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첫째로 교관도 교재도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 그러나 장차 해군의 기간(基幹)이 될 사관학교를 세운 것은 소시(小時: 젊은 시절)에 선진국 구라파(歐羅巴: 유럽)를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거기서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즉 아는 국민은 살고 모르는 국민은 이 세계 생존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어 심지어는 망국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²⁵⁾

1946년 1월 17일 개교한 해군사관학교는 미국의 교육과정에

23)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향한 부국강병의 길』(서울: 그물, 2014), p. 29.

24) 설립 당시에는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해군병학교는 1946년 6월 15일 해안경비대사관학교(海岸警備隊士官學校),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 1947년 8월 14일 해사대학(海事大學), 1948년 11월 16일 해군대학(海軍大學)으로 개칭했으며, 1949년 1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로 교명을 확정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진해: 해군사관학교, 2016), pp. 32-34. 이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5) 손원일, “해군의 어제,” 『해군』, 제174호(1967.12).

따라 4년제 교육과정을 목표로 했지만, 장교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1기생의 교육 기간을 1년(1946. 1. 8 ~ 1947. 2. 7), 2기생의 교육 기간을 1년 10개월(1946. 2. 7 ~ 1948.12.25), 3기생의 교육 기간을 2년 6개월(1947. 9. 2 ~ 1950. 2.25)로 단축 운영했다.²⁶⁾ 그 결과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해군사관학교는 총 3개 기수 163명의 해군 장교를 양성할 수 있었다.

초창기 해군사관학교는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해군 유산들을 활용했다. 따라서 일본 해군의 내무생활 규정과 훈련 방법 등을 채택했으며, 일본의 해원양성소와 유사한 교과과정으로 사관생도들을 교육했다. 특히 이 시기는 교관 전원이 일본의 해원양성소 출신이었으므로 이 같은 교육방식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다.²⁷⁾ 그러나 장차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할 장교들이 일본의 방식이 아닌 미 해군의 훈련방식과 전술, 군에 대한 사고방식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손원일의 건의를 미군정이 수용함에 따라 1946년 10월부터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이 파견되어 미국식 교육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²⁸⁾ 특히 1947년 1월에는 미군정의 주선으로 김일병(金一秉) 해군사관학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미국에 파견되어 미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6)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pp. 42-43.

27) 해군본부, 『명예·헌신·용기의 귀감, 이성호 제독』(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b), pp. 31-34.

28) 이 시기부터 미 극동해군사령부와 협조,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는 미 구축함에 사관생도들을 파견·교육하기 시작했다. 國防部(1984), p. 277.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절 AUS004_25_00C0232).

당시 김일병 사관학교장은 미국 시찰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1948년 9월에 입교하는 4기생에 적용했다.

당시 개편된 교육체계는 미 해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이를 조선해안경비대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미 해군사관학교의 4년제를 본뜬 3년 6학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교과과정 또한 기존 항해, 기관의 2개 학과에서 물리화학·전기공학, 항해운용, 무기포술, 외국어, 국어·국사 및 정치·경제, 수학, 훈련, 박용기관, 체육 총 9개 학과로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1949년부터는 생도대(生徒隊)가 정비되어 대대장, 부대대장 및 부관, 교육(작전), 통신, 보급관의 참모조직이 구성되고, 예하에 4개 중대, 8개 소대가 편성됨으로써 미 해군사관학교와 유사한 조직과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²⁹⁾

둘째, 특별임관(特任)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特敎隊) 설치이다. 1946년 1월 17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진해에 해군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사관생도 양성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임관해 해군의 중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조선해안경비대원들을 지휘할 장교도 다수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는 군사경력 및 항해경험을 보유한 일반인 중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 장교로 임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946년 2월 1일 특별임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해군 창군 요원의 한 사람으로 선박기관 교육을 담당했던 한갑수(韓甲洙, 1921~2012)는 “해군을 지원하는 우리 진해 (고등해원양성소) 후배 및 동문이 다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선해안경비대 참모회의에서) 해군 인사정책의 문호를 개방하느냐,

29) 그러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시절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수영훈련과 같은 일부 교과과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운영되었다. 해군사관학교(1996), pp. 42-53.

(사관학교를 통해) 후배를 양성하느냐를 두고 격론 끝에 문호를 개방하여 (조선해안경비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로 결론이 났다”고 회고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특별임관 제도는 사관의 시급성을 고려해 장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생략하고, 그간의 경력만을 위주로 급히 선발한 임시방편의 조치였다.³¹⁾

그러나 특별임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증가하는 사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48년 6월 29일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 사관학교 내에 사관후보생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대를 설치했다.³²⁾ 특별교육대는 사관으로 임관을 희망하는 병조장(兵曹長: 현재의 상사 계급)과 고학력 일반인들을 선발해 법무, 경리, 군의, 정훈, 기관, 시설, 병기, 통신, 수로, 기상 등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관을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상선학교와 해원양성소 출신의 해기사를 조선해안경비대로 흡수하는 역할도 병행했다.³³⁾ 이에 따라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특별교육대대는 총 9개 기수, 425명의 장교를 배출했다.³⁴⁾

당시 특별임관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를 통해 배출한 인력들은 대부분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이었다.³⁵⁾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들의 해운계 진출을 꺼렸던 일본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폭증한 해운 수요를 충당하고, 식민지 경영의

30)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 『鎮海高等海員養成所校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鎮海: 鎮海高等海員養成所 同窓會, 2001), p. 269.

31) 이 제도를 통해 일본해군특별지원병 출신 중 일부가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또한 해안경비대 창설 요원들도 특별임관 제도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계급 체계 내로 편입되었다. 해군본부(2016a), pp. 48-49, 76.

32)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鎮海: 海軍士官學校, 1981), pp. 85-86.

3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檀紀4287[1954]), pp. 58-60.

34) 한용원(1984), p. 88.

35) 진해고등해원양성소의 역사에 관해서는 金在勝(2001); 이상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해원양성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1집(2022), pp. 133-164.

효율화를 위해 1919년 인천에 해원양성소를 설립하고 조선인 해기사(海技士)를 양성했다. 그러나 조선인 해기사 양성이 계획되기로 이루어지지 않자,³⁶⁾ 1927년 교사를 진해로 이전하고 조선인 우수 자원 모집을 확대했다. 해방 이전 진해고등해원양성소는 141명의 조선인 고급해기사를 배출했는데, 그중 약 33%인 47명이 특별임관 제도(총 10명)와 특별교육대대(총 37명)를 통해 장교로 임관했다.

이들은 3명의 해군총참모장을 비롯하여 9명의 제독, 9명의 대령, 9명의 중령, 11명의 소령 등을 배출했으며, 함정 인수와 사관생도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³⁷⁾ 이에 대해 한갑수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초기 해군교육을 영국에서 파견한 교관으로부터 받았고, 상선사관으로는 영국인을 고용하였다. 만약 우리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가 없었더라면 만부득 미국인 교관과 상선사관도 외국인을 고용해야 했을 것임을 생각하면,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가 국가에 헌신한 공적에 대해 찬사를 받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³⁸⁾

셋째, 신병교육대와 항해교육대 설치이다. 1946년 2월 15일 해안경비대는 3개월 과정의 신병교육대를 설치하고 수병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시행했다.³⁹⁾ 초기에는 교육대의 편제가 일본 육군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개정이 되어 중대는 분대로, 소대는 교반으로 수정하는 등 차츰 일본 해군식 편제로 개정해 나갔다.⁴⁰⁾ 또한 교육은 일본 해군 체조와 구보, 제식교련, 소단위 부대 전투훈련, 결색(結索: 훗줄 운용), 갑판 소제(掃除: 정비),

36) 인천해원양성소 설립 이후 진해로 이전하기까지 총 64명이 졸업했는데, 그중 조선인은 단 9명에 불과했다. 金在勝(2001), pp. 59-63.

37) 金在勝(2001), pp. 209-226.

38)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2001), p. 270.

39) 『대동신문』(1946년 2월 17일).

40)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군교육사70년사(1946-2015)』(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16), p. 13.

선구(船具)의 정비 및 비치, 단정양강(短艇揚降) 등을 교육하다 점차 미 해군의 편제와 교육과정을 채택했다.⁴¹⁾ 6·25전쟁 이전까지 신병교육대는 16개 기수 총 6,137명의 수병을 배출했다.⁴²⁾

이어서 1947년 1월 20일에는 하사관 양성기관인 항해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창설 초기 항해교육대는 갑판·기관·통신·위생·기술분대로 구성된 특수분대를 편성해 운용하다 9월 1일부터는 이를 항해학교, 기관학교, 공작학교, 통신학교, 위생학교, 주계(主計: 경리)학교 등으로 세분화·전문화했다. 이 시기 하사관에 대한 교육도 신병교육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해군의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후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점차 미국식으로 대체했다. 6·25전쟁 이전까지 항해교육대가 배출한 인원은 총 2,145명이었다.⁴³⁾

초창기 신병교육대와 항해교육대는 일본 해군의 특별지원병과 징집병으로 소집되었던 인적 자원을 상당수 흡수했다.⁴⁴⁾ 1943년 이전 일본 해군은 “소중한 군함에는 절대 확실한 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 만일 조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군함과 함께 전원이 수장된다”는 논리로 조선인의 해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았

41) 이 시기에는 신병교육대 입대 시 입고 온 피복을 그대로 입거나 일본해군이 놓고 간 피복을 입는 등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수병의 복장은 1949년 1월 미 극동함대사령관의 진해 방문 관병식을 계기로 미국식으로 통일되었다. 해군교육사령부(2016), p. 25.

42)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p. 18-19.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p. 361.

44) 해군일화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김환수(당시 20세)는 1946년 3월 5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에 입대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나 함북 청진공립수산학교(5년제) 어로과를 졸업하고,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일본에 극히 불리했던 1944년 12월에 일본해군특별지원병으로 입대해 진해 해병단 제4기생으로 입대, 1945년 4월에 신병과정을 수료하고 [중략] 신병 교육 조교로 근무 중 8·15광복을 맞아 귀향하게 되었다. (이후 김환수는 부산역에서) 해병병단 단원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고, 곧바로 진해로 달려가 해방병단 인사과에서 입대를 지원하였다.”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4집』(논산: 해군본부, 1993), p. 8.

다.⁴⁵⁾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인만으로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43년 5월부터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조선인에 대한 모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종전 직전까지 1만 2,166명의 조선인 지원병이 일본 해군에 입대했으며, 이들은 수병·정비병·기관병·공작병·위생병·주계병 등으로 배치되어 제한적이지만 해군과 관련한 전문기술을 습득했다.⁴⁶⁾ 또한 1944년 5월부터는 해군징병령이 공포되어 6,352명의 조선인이 해군 육전대(陸戰隊)에 배치되기도 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해방 이전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은 총 1만 8,599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인력의 상당수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해병대에 흡수되어 한국 해병대의 원형(原型)을 형성했다.⁴⁷⁾

<표 3> 해방 이전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 현황

구분	해군특별지원병	해군징병	해군예비보습**	해군예비연습***	합계
인원	1만 2,166명	6,352명	53명	28명	1만 8,599명
비율	65.41%	34.15%	0.29%	0.15%	100%

* 출처: 표영수,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호 (2009), p. 301.

** , ***: 해군예비보습생과 예비연습생은 사관후보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으로 실제 장교로 임관하지 못했다.

45) 宮田節子미야다 세츠코, 이형량(역),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서울: 一潮閣, 1997), p. 51.

46) 조건, “일본 해군의 조선인 병력동원 제도 시행과 특징,” 『북아시아론』, 18호(2023), pp. 329-331.

47) 해병대 창설 요원이었던 김성은(金聖恩, 1924~2007)의 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지금 우리 해군에는 일본 육군, 만주군, 일본 해군 육전대 출신 등 많은 인재가 있다. 이들을 해병대로 활용하면 공비토벌, 상륙전, 군함, 기지사령부 경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의 해병대 입대를 독려했다.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前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 125.

4.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1945년 9월 중순 미 제24군단은 행정명령 제19호를 발령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 해군 함정을 보존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향후 창설될 가능성이 큰 한국 해군(혹은 조선해안경비대)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당시 진해경비부의 무장해제를 담당했던 미 해군이 제24군단의 지휘 계통 밖에 있었던 관계로 이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함정이 관리 소홀로 분실 혹은 폐기 처분되었다.⁴⁸⁾

따라서 1946년 1월 초 조선해안경비대가 운용할 수 있었던 함정은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00톤급 이하의 디젤선 2척, 증기선 3척, 상륙용 주정(舟艇) 2척과 1척의 잡역선(雜役船)에 불과했다.⁴⁹⁾ 게다가 이 무렵에는 근대식 해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원도 소수에 불과해 이들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조선해안경비대는 미군정에 함정을 제공하고, 함정 운용을 교육할 고문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⁵⁰⁾

이 무렵 38도선 이남 한반도 연안에서의 쌀 밀수 등을 단속할 여력이 부족했던 미군정도 조선해안경비대에 함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¹⁾ 1946년 3월 4일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패터

48)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1988), pp. 147-148.

49)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檀紀4287(1954)), p. 29.

50) 『자유신문』(1946년 1월 1일).

51) 1946년 5월 9일 주한미육군 정보참모부(G-2)는 “한국인들의 식량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안경비대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Illegal Shipment and Smuggling by Korean to Japan” (1946. 5. 9), RG

슨 미 전쟁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South Korea)과 일본 간 싸의 밀수를 중단하는 것이 (미군정의)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South Korean Coast Guard)에 적절한 함정을 배치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할 요원을 보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정부가 총 121척의 함정(경비함 34척, 보조순찰정 25척, 항만보조정 51척, 기타 11척)을 지원하고, 이를 지휘·감독할 33명의 미 해군고문단(장교 15명과 부사관 18명)을 파견해 한다고 주장했다.⁵²⁾ 특히 맥아더 최고사령관이 요청한 함정에는 전투함(PC급 구잠함 및 SC급 구잠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선해안경비대는 이 계획에 발맞추어 항공대를 조직하는 방안도 추진했다.⁵³⁾

그러나 당시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할 책임이 있던 미 해군은 가용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337만 7,840명의 병력과 1만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던 미 해군의 전력은 1946년 중반 95만 1,930명의 병력과 3,000여 척의 함정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 있었다.⁵⁴⁾ 특히 해군은 전후 7,000여 척에 달했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 (5 of 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9_01_05C0142_076).

52)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그중 “25%의 함정들이 최대한 빨리(soonest) 해안경비대에 제공”되어야 하며, 나머지 함정들도 “4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orean Coast Guard” (1946. 3. 4),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2).

53) 『동아일보』(1946년 4월 8일).

54) George W. Baer,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89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289. 당시 미 해군의 동원해제 과정에 관해서는 George T. Hodermarsky, *Postwar Naval Force Reductions 1945-1950: Impact on the Next War* (Master's thesis, Naval War College, 1990), pp. 16-23.

던 잉여 함정이 대부분 폐기 처분되거나, 미국의 냉전 수행전략에 따라 유럽 등의 우방국에 제공하기로 약속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⁵⁵⁾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1946년 중반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했다.

조선해안경비대를 둘러싼 미국정부 내의 논의는 1946년 중반이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1946년 6월 미군정이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수상경비대가 창설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⁵⁶⁾ 미 합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⁷⁾ 1946년 7월 18일 미 합동위원회는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가 조선해안경비대 육성의 책임을 지는 대신 미 해군은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가 요청한 함정들을 제공하고,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

55) “Joint Logistics Plans Committee, Korean Coast Guard” (1946. 5.11),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3).

56) 1946년 6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서해 수상경비대를 창설했다. 이어서 7월과 8월 사이에는 동해수상경비대도 창설되었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 北韓情報要約』, 2, 1947. 4. 1 ~ 1948. 1. 9. (春川: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89), p. 218. 김선호는 수상경비대가 조선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선호, “북한 해양경비부대 창설과정 연구: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를 중심으로,” 『軍史』, 제108호 (2018), p. 206.

57) 당시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 1909~2000)는 그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제 미국인들은 소련이 한반도의 부동항들(warm water ports)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부동항들을 얻기 위해 지난 50여 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Oliver to Syngman Rhee” (1946. 6),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資料集 28: 李承晩 關係書翰 資料集 1(1944~1948)』(과찬: 國史編纂委員會, 1996), pp. 107-108.

히 미 합동위원회는 소련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 해군이 아닌 해안경비대 고문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⁵⁸⁾

미 합동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설리번(John L. Sullivan, 1899~1982) 미 해군장관 대행은 7월 22일 스나이더(John W. Snyder, 1895~1985)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해안경비대는 (장차) 한국 해군의 중핵으로 육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미국정부가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해군을 구축한다는 소련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⁹⁾ 그리고 조선해안경비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머레이(George D. Murray, 1889~1956)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파견했다.

1946년 7월 29일 조선해안경비대 시찰을 종료한 머레이 제독은 쿡(Charles M. Cooke Jr., 1886~1970) 미 7함대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해안경비대 대원들이 “해군과 관련한 훈련은 사실상 받지 못하고(naval training practically zero)”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도 “매우 제한된 목적으로 해상경비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군정과 조선해안경비대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능력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은 것(not realistic)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45척의 함정(미 해군 17척, 미 육군 28척

58)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1946, 7.18),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7.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4).

59) “From The Secretary of the Navy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1946, 7.22),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등)과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감독할 15명(장교 8명, 부사관 7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파견을 건의했다. 당시 머레이 제독은 조선해안경비대를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는 미군정의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그 지원 규모가 소련을 자극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⁶⁰⁾

머레이 제독의 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미 해군부와 재무부는 조선해안경비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1946년 8월 7일 스나이더 미 재무장관은 설리번 해군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파견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들을 선발하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방침을 통보했다.⁶¹⁾ 이어서 8월 9일 니미츠(Chester W. Nimitz, 1885~1966) 미 해군참모총장도 조선해안경비대에 17척의 함정(대형상륙정, 보조소해정)을 제공하고, 15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장교 8명, 부사관 7명)을 파견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⁶²⁾ 또한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도 과거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함정들을 선별하여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할 준비를 시작했다.

60) 이 보고서는 타워스(John H. Towers, 1885~1955)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쳐 합동위원회와 재무부로 발송되었다. “From Commander, Seventh Fleet to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1946. 7.29),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61)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he Secretary of the Navy” (1946. 8. 7),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62) “Memorandum by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1946. 8. 9),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1946년 9월 2일 미 재무부는 맥케이브(George E. McCabe, 1899~?)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조선해안경비대에 파견했다. 이어서 9월 14일에는 미 해군이 지원하기로 한 2척의 대형상륙정도 부산에 도착해 미국 주도의 조선해안경비대 육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12월까지 미국정부는 조선해안경비대에 6척의 대형상륙정과 11척의 보조소해정, 그리고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1척의 연안소해정 등 총 36척의 함정을 지원했다.⁶³⁾

<표 4> 미군정기 미국의 함정 원조 현황

구분	척수	톤수	비고
대형상륙함	6척	387톤	미 해군 원조
보조소해정	11척	320톤	미 해군 원조
연안소해정	18척	180톤	일본 해군의 연안구잠정을 소해정으로 전용(轉用), 미 육군 원조
소형예인선	5척	-	미 해군 원조
유조정	1척	1,226톤	미 해군 원조

* 출처: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04_25_00C0232).

미국으로부터 함정 인수가 시작되자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은 장교와 하사관을 대상으로 함정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⁶⁴⁾ 통신망 및 항해 장비 설치를 지원

63) 그 외에 미군정이 지원한 71척의 소형주정이 있었다. 해군본부(2016a), p. 105.

64) 조선해안경비대 장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4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관에 의해 함정 운용에 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이 병행되었으며, 하사관들은 갑판과와 기관과로 구분되어 장비 작동과 정비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일일 제독[상]』(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171-172.

했다.⁶⁵⁾ 그 결과 1947년 8월 30일부터 해안경비대는 38도선 이남에서 독자적으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 역량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이들 전력만으로는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전 연안을 경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⁶⁶⁾

이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는 미군정에 함정과 함포 등의 무장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해안경비대에 함정과 고문단을 추가로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며,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 해·공군력의 우세만으로도 (38도선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조선해안경비대의 요구를 거부했다.⁶⁷⁾

이 무렵 미국이 조선해안경비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국의 대한안보정책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에서 한국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원한 후 ‘명예롭게 철수(graceful exit)’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과 관련이 깊었다. 이미 1947년 중반부터 미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소련 봉쇄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며,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⁶⁸⁾ 이 같은 판단

65)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1948, 7. 1),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2 of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9_01_06C0007_004).

66) 해군본부(2016a), pp. 99-100.

67) “Memorandum for the Under Secretary of the Army: South Korean Armed Forces” (1947.10.29),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1952, American-British Conversations Correspondence Relating to Planning and Combat Operations, 1940-1948 [Entry NM84 421], ABC Files, 014 Japan, 014 Japan (13 Apr 44) Sec. 17-E.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023_05_01C0024).

68) 1947년 9월 26일 포레스탈(James V. Forrestal, 1892~1949) 미 국방장관은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이익이

에 따라 1948년 4월 2일 미국은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Korean Constabulary)를 정규군(armed forces)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NSC 8)을 확정했다.⁶⁹⁾

그 결과 1948년 초반부터 조선해안경비대가 보유한 함정들은 정상적인 경비 임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출신의 김달삼(金達三, 1923~1950)이 주도해 일으킨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조선해안경비대는 18척의 함정을 투입해 제주도 전 해안을 봉쇄했지만, 함정의 화력 부족과 기동력 저하 등으로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탈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다.⁷⁰⁾ 이는 1948년 중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 잘 드러난다.

없다”고 평가했다.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Forrestal)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 9,26), *FRUS 1947, Far East, Vol. VI, pp. 817-818.*

- 69) 이 문서에는 “북조선이나 다른 무력 집단의 공공연한 도발 행위를 제외하고, 무엇에 대해서든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조선경비대’를 확대, 훈련, 무장시킨다는 현존 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한다”는 방침이 수록되었다.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ouers) to President Truman*” (1948, 4, 2), *FRU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 pp. 1163-1169.*
- 70) 손경호에 따르면 당시 김달삼이 지휘하는 남로당은 평범한 폭도에 불과했지만 이후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아 중앙집권화(centralized) 및 무장화(militarized)된 게릴라로 변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김달삼은 조선경비대의 토벌로 제주도에서의 게릴라 활동이 제약을 받아 조선해안경비대의 해안봉쇄를 돌파하고 월북해 북조선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Kyengho Son,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1949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8), p. 251.*

현재 조선해안경비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급입니다. 미 해군이 원조한 다수의 함정은 별도의 수리부속이 없는 상태로 조선 해안경비대에 제공되었으며, 일본 해군의 소해정들 역시 여분의 부품과 장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략] 또한 조선해안경비대는 일본제 소총과 권총으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선해안경비대는 함포를 획득하고자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조선해안경비대에 40mm 함포와 20mm 기관포를 시급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장 없이는 밀수 행위를 차단할 수 없으며, 또한 (해상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경고 사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⁷¹⁾

1948년 7월 9일, 딘(William F. Dean, 1899~1981) 미군정 장관은 “상태가 양호하며, 충분한 수리 부속을 탑재한 1척 이상의 호위구축함을 조선해안경비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합참에 피력하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⁷²⁾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출범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71) “Organization and Purpose” (undated),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004_25_00C0232). 1949년 5월 23일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도 “지금 우리 해군은 그 행동 거리에 있어 치명적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적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애로에 부딪혀 있으며, 함정의 방탄 장치가 거의 없으므로 피탄했을 때에는 관통이라는 이중적 손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신문』(1949년 5월 26일).

72) “Request for Destroyer Escort Class Vessel for Korea” (1948. 7. 9), RG 218, Korea (3-19-45), Sec. 16-19, Geographic File, 1948-50, Box 37,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16 (1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5_04_02C0002).

5. 결론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재조명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은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의 군사원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창설 초기 손원일은 해군 창군이 미국의 군사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해방병단의 빠른 조직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유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방병단 본부를 해방 이전 일본 해군이 건설한 최대의 해군기지인 진해에 설치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해방병단의 조직을 빠르게 확충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조선해안경비대로의 개칭 이후 발전 과정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장병의 양성과 교육,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등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우선 조선해안경비대는 해방 이전 일제가 한반도에 건설한 해군기지와 함정 정박시설 등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 목포 등지에 작전기지를 설치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해 미국식 군사교리와 사고방식을 가진 해군 장교를 양성했으며, 특별임관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일제시기 근대적 해운을 경험한 인적 자원들을 대거 흡수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함정과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지원받아 전력을 일시에 확충하기도 했다. 조선해안경비대가 비교적 단기간에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

에서 독자적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둘째, 그중 미국의 군사원조는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지만,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했다. 1947년 중반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과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 결과 1948년 초반부터 조선해안경비대가 보유한 함정들은 정상적인 경비 임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공간사

- 國防部, 『國防史 1, 1945. 8 ~ 1950. 6』, 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資料集 28: 李承晚 關係書翰 資料集 1(1944~1948)』,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 北韓情報要約, 2, 1947. 4. 1 ~ 1948. 1. 9』, 春川: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89.
-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군교육사70년사(1946~2015)』,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16.
-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4집』, 논산: 해군본부, 1993.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a.
- 해군본부, 『명예·헌신·용기의 귀감, 이성호 제독』,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b.
-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1篇』, 서울: 海軍本部, 檀紀4287[1954].
-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鎮海: 海軍士官學校, 1981.
-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2016.
- 『동아일보』, 『대동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 미국의 대외관계(FRUS) 시리즈
-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문서
- Sawyer, Robert K. and Walter G. Hermes(ed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62.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 1 =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서울: 돌베개, 1988.

2. 저서

김연옥(편역),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한반도 주둔 일본군 사
료 총서 3』, 서울: 역사공간, 2011.

金在勝, 『鎮海高等海員養成所校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
鎮海: 鎮海高等海員養成所 同窓會, 2001.

고경석, 『鎮海軍港史』, 진해: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향한 부국강병의 길』,
서울: 그물, 2014.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파주: 나남, 2014.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한용원, 『創軍』, 서울: 博英社, 1984.

Baer, George W.,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89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宮田節子[미야다 세츠코], 이형량(역),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 서울:
一潮閣, 1997.

3. 논문

김명섭 · 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
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2022), DOI:
10.14731/kjir.2022.12.62.4.283.

김선호, “북한 해양경비부대 창설과정 연구: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
를 중심으로,” 『軍史』, 제108호(2018).

-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해군의 진해경비부 설치와 한반도 해역 작전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호(2022).
-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2008).
- 김주식, “6·25전쟁기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과 운용,” 『해양담론』, 제1호(2023).
-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제16호(1988).
- 신주백,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2009).
- 이상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해원양성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1집(2022).
- 이호준·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2023), DOI: 10.14731/kjir.2023.06.63.2.127.
- 이호준,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24).
-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2023).
- 조건, “일본 해군의 조선인 병력동원 제도 시행과 특징,” 『북악사론』, 18호(2023).
- 표영수,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호(2009).
- Hodermarsky, George T., *Postwar Naval Force Reductions 1945-1950: Impact on the Next War*. Master's thesis, Naval War College, 1990.
- Son, Kyengho,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1949*.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8.

4. 회고록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前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서울: 아
이템플 코리아, 2008.

손원일, “해군의 어제,” 『해군』, 제174호(1967.12).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서울: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2006.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 『鎮海高等海員養成所校
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 鎮海: 鎮海高等海員養
成所 同窓會, 2001.

鄭兢謨, “나의 海岸警備隊 時節: 建軍全夜の 明暗,” 『世代』, 통권 87호
(1970년 10월).

5. 인터넷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ds.mod.go.jp/>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Lee, Hojun
(ROK Navy)

This study analyze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uring the United States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combination of Japan's naval legacy left south of the 38th parallel after liberation and U.S. military assistance.

After liberation, an extensive naval legacy was left by Japan in the Korean Peninsula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Korean Coast Guard rapidly expanded its organization by leveraging these resources. At the same time, it sought to alleviate the scarcity of resources by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se endeavors, within a brief time frame the Korean Coast Guard expanded its capabilities to autonomously execute coastal security operations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low the 38th parallel.

The military assistance provided by the U.S. played a crucial role in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However, it also revealed certain constraints and limitations. Mid-year in 1947, the U.S. prep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 and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USAFIK). However the U.S. didn't attempt to transform the Korean Coast Guard into an Armed

Force, due to the extensiv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this conversion, and thus determined that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was more feasible. This passive approach by the U.S. in supporting the Korean Coast Guard persisted even after the 6/25 Communist War in Korea, and contradicted the naval augment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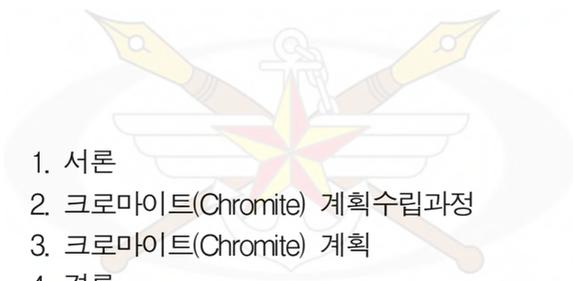
Keywords: Korean Coast Guard, ROK Navy, Won-yil Soh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ilitary Assista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83-224
<https://doi.org/10.29212/mh.2024..131.1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

서치중 | 해병대사령부



목 차

1. 서론
2.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수립과정
3.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4. 결론

초 록 현재까지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연구는 계획수립과정과 계획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제 수행된 작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계획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제 작전수행과정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맥아더는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과 함께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에서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제1해병임시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해 취소되었고,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100-B를 기본으로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한 보조계획인 100-C와 100-D, 그리고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경우, 맥아더가 상륙장소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 100-A 4가지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블루하트(Bluehearts), 맥아더, Operation Plan 100

1. 서론

오늘날 한국의 안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6·25전쟁이 그 계기가 되었고, 6·25전쟁 중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이라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현대전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가장 과감하고 성공적인 상륙작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¹⁾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의 효용성은 물론 상륙작전 교리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작전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된 상륙작전의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제대구역 편성, ‘바다로부터의 작전적기동(OMFTS :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 등 현대 상륙작전 교리의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 인천상륙작전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계획이 수립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으며, 능력이 갖추어진 부대에 의해 실시된 과감한 전략 결과의 표본이 되는 작전이다.³⁾ 당시의 상륙작전 교리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최소한 160일이 요구되었으나, 목표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8월 15일 인

1)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1.

2) Headquarters Marine Corps,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Washington: Marine Corps 1996), p.7.

3)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US Marines Operations in Korea Vol.II, The Inchon-Seoul Operation*(Washington DC: USMC, 1955), p.iii

천상륙작전을 위해 제10군단의 핵심참모들이 편성되어 시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⁴⁾

이처럼 인천상륙작전은 전사 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는 전투 중 하나이지만,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에 대한 연구나 이해없이 실제 수행되었던 전투과정과 전투결과 위주의 편향된 연구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완전한 연구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인 '100-A·B·C·D' 4가지 계획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⁵⁾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4가지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제시하지만, 이 4가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100-B·C·D의 상륙장소만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계획이 각각 어떤 내용이며,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시 시행되었던 100-B조차도 그 계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실제로 실시되었던 전투과정과 결과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계획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하며, 작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전투과정과 결과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Chromite

4)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3.

5) 100-ABCD 계획에 대한 연구는 이상호(2019)의 연구가 있음.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계획의 4가지 100-A·B·C·D에 대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맥아더기념관, 미 육군·해군 및 해병대의 공간사 등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hromite 계획의 계획수립과정과 100-A·B·C·D 계획을 분석하여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을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II장에서는 한강방어선 시찰 이후 맥아더가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과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제 III장에서는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4가지 계획 100-A·B·C·D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4가지 계획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수립과정

가. 상륙작전 구상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작전을 구상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 자료들에서 맥아더가 이미 6월 말경에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맥아더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소 2주 이내에 그의 참모들에게 한국의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으며, 포괄적인 연구를 거쳐 인

천을 상륙지역으로 결정하였다.⁶⁾ 리지웨이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방법을 찾을 때 맥아더는 승리를 계획했다.”고 말했듯이, 대부분 북한의 남진과 부산 방어에 집중할 때, 맥아더는 이미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⁷⁾ 맥아더는 7월 말까지는 인천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7월 4일 동경회담에서 북한군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토의했고, 이 때 다른 지역보다 인천을 선호했다.⁸⁾ 7월 6일 맥아더는 제8군에 상륙작전을 위해 제1기병사단을 준비하고 극동해군사령부에는 제1기병사단의 상륙작전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⁹⁾

7월 4일 동경회담에서 북한군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이 토의되었고, 이 자리에서 맥아더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 Group)을 통해서 이미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인 블루하트(Operation Bluehearts)를 계획했다. 이 계획은 미 해병 임시연대전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 전선에서 공격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고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부대들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투입되었다. 비록 블루하트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는 인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인천에 대한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를 계획하였다.

6)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p.1~2.

7) CSI, *CSI Battlebook 2-D Operation Chromite(Inchon)*(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pp.18~19.

8) CSI, *ibid*, p.19.

9) GHQ, FEC, “APO 500, Operations Instructions No.3”, p.1.

10) CSI, *ibid*, pp.19~20.

미 합참은 많은 자연적 어려움이 있는 인천보다 군산지역을 선호하였지만,¹¹⁾ 맥아더는 군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륙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군을 격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¹²⁾ 서울-인천지역의 확보는 북한군에게 남한 내 서해안의 최대 항구를 제거하고, 남쪽과 동쪽에 대한 주요 도로와 철로,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¹³⁾ 맥아더는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인 이유로 인천 상륙 및 신속한 서울 탈환을 강조하면서 인천은 제8군의 망치(hammer)가 북한군을 격멸시킬 모루(anvil)가 될 것이라 하였다.¹⁴⁾ 서울과 인천을 확보하는 것만이 적으로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⁵⁾ 군산이나 다른 대체지역은 결정적이지도 않고 혹독한 동계작전이 불가피하며,¹⁶⁾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서서히 몰아내기 때문에 장기소모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¹⁷⁾ 8월 23일 미 합참 의장 콜린스 장군과 서면 미 해군참모총장이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을 제안하였고,¹⁸⁾ 미 해군·해병대에서도 서해안에 대한 지형정찰 결과를 토대로 인천에 대한 대안으로 오산·평택 부근의 포승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참모들은 포승면이 중장비 차량을 이동시킬 수

1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1992, p.150

1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p.493

13) “COMNAVFE OP PLAN 108-50, B. Intelligence”,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Tokyo, 20 Aug. 1950, p.B-3.

14) Roy E. Appleman, *ibid*, p.493.

15) James F. Schnabel, *ibid*, p.150

16) Curtis A.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The U.S. Navy in the Modern World Series NO.2*(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20), p.21

17) James F. Schnabel, *op. cit*, p.142

18) James F. Schnabel, *ibid*, p.151.

있는 도로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¹⁹⁾ 8월 24일, 해군해병대를 대표하여 태평양함대 해병대사령관 셰퍼드 장군이 맥아더에게 오산평택 부근의 포승면을 건의했지만 소용없었고, 그 이후 해군해병대는 인천에 집중했다²⁰⁾ 그러나 8월 23일 상륙지역을 최종적으로 인천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미 합참에서는 군산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²¹⁾

나.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 수립과정

6·25전쟁이 발발한 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6월 29일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는 비록 수적으로 열세에 놓일지라도, 전략적 기동방법에 의존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적의 전진을 일단 저지하는 한편, 2개 사단 정도의 후속 병력으로 전선을 보강한다면 전세를 회복하여 반격작전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적어도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²²⁾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상륙전력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한 맥아더는 참모들에게 광범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²³⁾

맥아더는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인천항과 인근의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

19) James F. Schnabel, *ibid*, p.149

20) James F. Schnabel, *ibid*, p.150

21) James F. Schnabel, *ibid*, 1992, pp.149~150.

2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1983, pp.6~7.

23) Charles R. Smith, *U.S. Marines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History Division USMC, 2007), p.73.

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의 핵심 도로와 철도를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낙동강 방어선에서 UN군의 공세를 통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⁴⁾ 맥아더는 가급적이면 인천에 상륙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포위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²⁵⁾ 맥아더는 인천을 최선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인천 북쪽의 해주와 진남포도 대체 상륙해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⁶⁾ 7월 4일 상륙작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회의를 통해 인천에 상륙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포위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격한다는 상륙작전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으로부터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미 제1임시해병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의 윤곽을 그리게 되었다.²⁷⁾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7월 10일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다. 비록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와 JSPOG는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²⁸⁾

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수립과정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이 취소되고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블루하트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24) Cutis A. Utz, *op. cit.*, p.18.

25)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op. cit.*, p.6.

26) James F. Schnabel, *op. cit.*, pp.140~141.

27)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6.

28) James F. Schnabel, *ibid.*, pp.140~141.

맥아더는 인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맥아더는 “UN군의 유일한 희망은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적 후방에 상륙을 감행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제1해병사단이 보여 준 능력을 떠올리면서 “제1해병사단이 지금 다시 자신의 지휘하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인천상륙작전을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해병사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²⁹⁾

맥아더는 블루하트 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제1기병사단을 대체하여 미 본토의 제2사단이나 일본에 주둔 중인 제7사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파병이 계획된 제1임시해병여단을 사단 규모로 확대하여 상륙작전에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맥아더는 가급적 9월 15일 이전에 인천상륙작전에 해병사단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7월 10일 합참에 해병사단을 최초로 요청했다.³⁰⁾ 7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운용할 해병사단과 해병항공부대의 전시병력에 대해 두 번째로 요청하고,³¹⁾ 7월 19일에 세 번째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병대 예비역의 동원에 대한 의회 승인과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고, 우선 미 제1해병사단을 완전편제로 보강하도록 지시되었다.³²⁾

미 제1해병사단의 가용성을 확인한 이후 맥아더는 알몬드 장군, 라이트 장군과 함께 그의 생각을 토의했고, 라이트 장군과 계획수립반은 9월 중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기본 틀을 준비하고 몇 가지 예비계획을 수립하였다. 7월 23일 GHQ 참모부에 인천상륙작전계획(초안)이 배부되었고,³³⁾ 2개 사단이 9월 중순에

29)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0.

30)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0.

31)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8.

32)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op. cit*, p.22.

33) James F. Schnabel, *op. cit*, pp.141~142.

적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기본개념을 설정하게 되었다.³⁴⁾

7월 25일 상륙작전에 제1해병사단의 파견이 승인된 이후 JSPOG에 의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 계획지침 발행을 위해 특별계획참모부가 설치되었다. 8월 12일 상륙돌격부대를 제1해병사단으로 하고, 목표지역을 인천-서울로 하는 작전계획 100-B가 발간되었다.³⁵⁾ 8월 23일에는 미 육군·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인천상륙작전 최종회의에서 상륙일자를 9월 15일로, 상륙장소를 인천으로 하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³⁶⁾ 콜린스 미 합참의장은 제8군이 제10군단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남쪽의 군산을 대체 상륙지역으로 제안하였으며, 서면 해군참모총장 또한 콜린스 합참의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퀘벡전투의 사례를 들면서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³⁷⁾

8월 28일 합참은 인천 또는 남쪽의 유리한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승인하면서, 인천에 대해 제기되었던 세부분제들에 대한 발전과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 준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³⁸⁾ 8월 28일 10군단 작전명령 제1호가 발행되면서 미 제1해병사단의 과업은 해안두보를 확보하고, 김포 비행장을 탈취 확보한 다음 한강 방향으로 진격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의명 서울 인근의 감제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여되

34) CINCFE, "Outgoing Message",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23 July 1950, pp.1~2.

35)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p.2.

36)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p.43~47.

37) Charles R. Smith, *op. cit*, p.86.

38) Charles R. Smith, *ibid*, p.88

었다.³⁹⁾ 8월 30일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제10군단의 지정과 최종 부대할당이 포함된 작전명령 제1호를 시달하였다.⁴⁰⁾ 9월 8일 미 합참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⁴¹⁾

3.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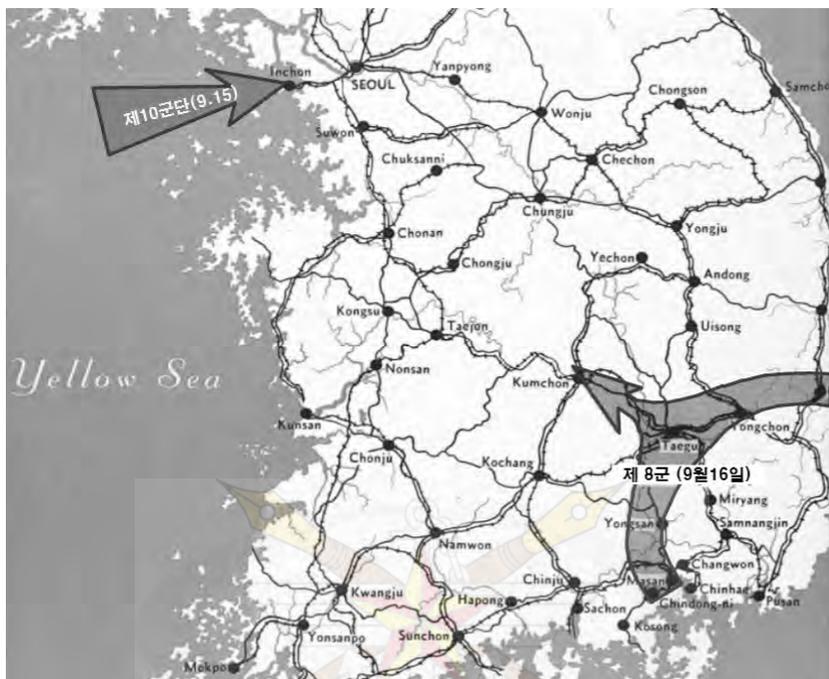
6월 25일 UN 안보리 의결에 따라 미 합참은 극동군 사령관에게 남한을 제거하려는 북한군에 대해 가능한 모든 군사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남한에서 북한군을 패배시켜 축출한 후에도 38도선 이북에 효과적인 북한의 군사력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UN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남한 내에서 북한군을 일소한다는 UN군의 임무에 따라 남한지역에서 북한군을 최대한 격멸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지역으로 깊숙이 공격하여 핵심 병참선을 확보하고 목표지역 이남의 적을 격멸하는 것이었다.⁴²⁾

39) Hq X Corps, "Op O #1", Hq X Corps, 28 Aug. 1950.

40)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p.2.; Major David H. Mamaux, *ibid*, p.19.

41) Charles R. Smith, *op. cit*, p.90.

4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그림 1〉 크로마이트 기본계획

* Lynn Montross, "The Inchon Landing—Victory Over Time and Tide, Our First Year in Korea," 『Marine Corps Gazette(July 1951)』,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Marine Corps, 1951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남한 내에서 아군이 반격을 위해 전력을 증강하는 동안 북한 지상군의 전진은 정지되고, 북한군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군은 증강될 것이며, 작전지역 내에서 아군이 공중 및 해상 우세를 유지하고, 북한군은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대규모 증원을 받지 않고, 북한군의 기본적인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계획이다.⁴³⁾

4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2.

가. 100-A 계획

100-A 계획은 미 합참의 요구에 의해 100-B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다.⁴⁴⁾ 금강 이남에서 북한군을 차단하고 격멸하기 위해 상륙작전부대가 D일 군산에 상륙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8군과 함께 대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⁴⁵⁾ 100-A는 전술한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의 핵심 병참선을 목표로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을 통해 광범위한 포위를 수행하여 미 제8군 전방의 적에 대한 재보급 및 증원을 방지하고 적의 이탈을 차단하는 것이다.⁴⁶⁾ 제한요소로는 기상, 가용부대, 군수지원 고려사항 등이 있다. 기상과 관련해서는 기온과 강우 측면에서 유리한 9~11월에 작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추운 날씨와 비교적 양호한 항공기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용부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가용병력의 제한으로 인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의 제8군이 효과적인 공세를 취하는데 필요한 전력할당으로 인해 해상돌격을 통한 포위를 위한 추가적인 가용병력은 제한된다. 목표지역의 제한적인 항구시설과 열악한 해안의 특성은 군수지원의 제한을 초래하지만,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군수지원 작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⁴⁷⁾

주요 상륙부대로는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특수여단, 제7보

44) James F. Schnabel, *op. cit.*, p.151.

4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p.2.

4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4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p.1~2.

병사단,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제3보병사단(전구예비로 의명 제8군 또는 제10군단 증원)으로 편성된다. 주요 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NAVFCE)는 미 해병 제1사단을 제10군단에 제공하고, 상륙군을 군산지역으로 이동시켜 군산지역의 해안두보를 확보, 점령 및 방어하며, 의명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제3보병사단을 군산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제10군단장에게 육상 통제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상륙기동부대(Attack Force)는 해체하고 해상지원 부대로서 항공, 함포 및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령부(FEAF)는 D-15부터 D-1일까지 목표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의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요청시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차단한다. D일 목표지역 항공구역 해제까지 영상정찰을 계속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목표지역을 고립하고, 목표지역 방공을 위해 최대한의 전투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지역의 긴급요청에 대비한다. 목표지역에서 최대한의 항공폭격을 수행할 준비를 하며,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지정된 투하지역으로 수송, 엄호제공 및 투하할 준비를 하며 공중재보급을 제공한다.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 방향으로 주노력을 수행하고 대전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남쪽에서 공격을 계속한다. 제10군단은 군산지역의 지정된 해안에 상륙하여 대전으로 진출하여 핵심 병참선을 탈취 확보하며, 항공기 운용을 위해 군산과 대전의 비행장을 개발한다.⁴⁸⁾

100-A의 작전개념으로, 남한지역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적이 점령한 지역으로 광범위한 포위는 부산 지역에서 시작되는 광범위한 공세와 함께

4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p.2~4.

이루어져야 한다. 상륙작전으로 시작되는 포위의 목표는 적 주력의 후방에 있는 대전의 주요 병참선이다. 목적은 제8군의 전방에 있는 적의 재보급과 증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의 주요 병참선을 차단하고 적의 이탈을 차단하는 것이다.⁴⁹⁾ D일 이전 폭격은 생략하며 H시 이전 폭격은 기동부대(AF)나 돌격부대의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적이 식별될 경우로 제한한다. 제8군은 D일 또는 D일 이전에 지속적인 공세를 개시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고, 제10군단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진격한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상륙돌격을 통해 제10군단의 차후 작전을 위한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제2공병특수여단은 사단 전투근무지원부대를 후속하여 제10군단 해안단을 지원할 수 있는 합동해안단을 설치하며, 제7사단과 제10군단의 잔여부대들은 설치된 해안두보를 통해 후속 상륙한다. 해안두보 설치 이후 제10군단은 적의 저항에 대비하여 대전 방향으로 약 50마일 내륙으로 진출한다. 대전이 확보되면 제10군단은 제8군과의 연결을 위해 남서방향으로 계속 공격하거나 대전-대구 축선 이남의 적 격멸작전에 참가하거나 북쪽방향으로 대전-서울 축선으로 공격하거나 또다른 대규모 해상돌격을 통한 포위를 위해 재탐재를 준비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의명 제10군단의 상륙 및 후속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지역의 지정된 투하지역에 공중투하를 실시하며,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거나 공중을 통해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으로 이동한다. 제3보병사단은 전구예비로서 극동사령부의 명에 의거 제8군과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탐재하여 부산 또는 군산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⁵⁰⁾

4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5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4.

100-A의 지휘관계로, 맥아더는 UN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CINC: Commander-in-Chief)이며, 제8군사령관은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및 공정작전에 운용되는 부대를 제외한 한국 내 모든 지상군을 지휘한다. 극동해군사령관은 기동부대지휘관을 통해 해안에서의 작전지휘권이 제10군단장에게 이양될 때까지 군산에 상륙하는 모든 부대를 지휘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목표지역으로 이동 간에는 극동공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으며, 공중 투하 및 착륙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총사령관(CINC) 또는 상륙군사령관, 제10군단장에게 통제권이 전환된다. 해안에서의 지휘권을 인수한 이후 제10군단장은 제8군과의 연결이 유효화될 때까지 총사령관(CINC)의 직접 지휘하에 작전한다.⁵¹⁾

100-A 계획에서는 제10군단에 대한 부대할당, 군수·인사·민사 계획 등은 별도의 계획없이 100-B의 계획을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⁵²⁾ 이는 100-A보다 100-B를 우선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 100-B 계획

100-B 계획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이다. 100-B 계획은 D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이남의 북한군을 차단하고 격멸하기 위해 남쪽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격과 함께 서울의 병참선(communication center)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한요소로는 기상과 군수지원요소가 있었다. 기상은 추운 날씨와 양호한 항공기상을 고려하여 9~11월 중에 작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목표지

5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H"-Command Relations", 30 Aug. 1950,

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5.

역 내 군수지원시설의 제한은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군수지원 작전 수행을 요구하였다.⁵³⁾

100-B의 주요 상륙부대로는 100-A와 마찬가지로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특수여단, 제7보병사단,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제3보병사단(전략예비로 선박 가용 시 해상예비(floating reserve)로 유지)로 편성되었다.⁵⁴⁾ 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NAVF)는 D일 인천지역에 해병 제1사단을 이동 및 상륙시킬 수 있는 기동부대를 편성하고, 해안두보 확보 간 상륙군에 대한 항공, 함포 및 군수지원을 제공하며, 후속부대를 인천지역에 상륙시키고 필요시 후속부대에 엄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FEAF)는 D-30일부터 D-4일까지 작전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 내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며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파괴하고, 목표지역에 대한 지역 폭격을 수행한다. D-3일부터 임무해제 시까지는 제8군의 필요소요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표지역을 고립하고 목표지역의 대공방어를 위해 전투기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륙군의 긴급요청에 대비하며, 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 선정된 투하지점에 투하할 수 있도록 수송 및 엄호를 제공하고 항공재보급을 준비한다. 제8군은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예비부대(제1해병사단 제외)를 준비하고 탑재항만으로 이동시키며 그들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며, 낙동강 방어선에서 주노력을 수행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여 북한군을 격멸하고 상륙군과 연결하기 위해 대구-대전-수원 축선을 향해 공격한다. GHQ 예비는⁵⁵⁾ 인천에 해안두보가 설치되면 육상의 작전권을 인수하여 서

5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2.

54) GHQ FEC,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p.5.

55) GHQ예비는 제1해병사단을 포함한 상륙군과 공정TF(제187공정연대전투단), 후속

올로 진격하여 병참선을 탈취 및 확보하고 차후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며, 수송기 및 전투기의 작전을 위해 김포비행장을 개발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D일부터 상륙돌격을 지원하거나 후속작전을 위해 인천-서울 지역의 사전 선정된 투하지역에 공중투하한다.⁵⁶⁾

100-B의 작전개념은 남한지역 내에서 적을 일소한다는 UN군의 임무에 따라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해 목표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병참선을 확보하고 목표지역 이남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⁵⁷⁾

D일 이전 항공 및 해상작전에 의한 목표지역 고립은 실행 가능한 최대로 유지하며 목표지역에 대한 지상 및 공중 정찰을 지속한다. 상륙지역 내 모든 식별 및 추정된 적 위치에 대해 D일 이전 항공 및 함포 폭격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지원작전으로 D일을 전후하여 목표지역을 항공차단으로 고립하며, D일 이전 제8군은 적 지상군을 봉쇄 및 격멸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개시한다. 상륙돌격은 해군 항공 및 함포로 H시 이전에 상륙지역을 무력화하고 상륙돌격을 계속 지원하며, 제1해병사단은 상륙돌격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제2공병특수여단은 해안단을 설치하며, 제7사단과 후속부대는 설치된 해안두보로 상륙을 실시한다. 상륙 이후 상륙부대는 내륙으로 약 50마일 깊숙이 진출하여 목표지역을 확보하고 적의 핵심 병참선을 차단한다. 제3보병사단은 이번 작전의 전략예비로써 선박이 가용할 경우 해상에

제대(제7보병사단 등)으로 편성,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A, Assignment of Forces to GHQ Reserve", 17 Aug. 1950, p.1.

5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12 Aug. 1950, pp.2~4.

5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1.

비(floating reserve)로 유지한다.⁵⁸⁾

100-B의 지휘관계는 100-A와 대동소이하다. 맥아더가 모든 UN군을 지휘하며, 제8군사령관은 인천-서울 지역에 상륙 및 공정작전에 운용되는 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군을 지휘한다. 극동해군사령관은 해안에서의 작전지휘권이 상륙군에게 이양될 때까지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모든 부대를 지휘한다. 상륙군은 해안에 지휘소가 설치되면 목표지역의 모든 지상군을 지휘하며, 제8군과의 연결이 유효화될 때까지 총사령관(CINC)의 직접 통제 하에 작전한다.⁵⁹⁾

다. 100-C 계획

100-C 계획은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군산에 상륙한 이후 대전으로 공격하여 북한군의 배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⁶⁰⁾ 인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100-B의 보조계획이다.⁶¹⁾ 즉, 인천에 상륙작전(100-B)을 실시하되,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하는 미 제8군의 반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에 상륙한 부대 이외의 추가적인 부대(증강된 사단)로 군산에 상륙하여 대전을 확보하고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8군의 반격을 지원하는 것이다. 100-C는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인천-서울 지역의 거점을 확보했으나, 제8군이 김천-대전 축선을

5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p.1~2.

5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H", Command Relations", 12 Aug. 1950, p.1.

60)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참고교범 10-8 상륙전사』, 2008, p.4-16.

61) 보조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발상황 조치계획(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따라 북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여 수립한 계획인 것이다.⁶²⁾ 군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상륙에 운용되는 부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초 상륙 이후 운용될 수 있는 부대가 제한적이며, 적이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해안두보가 넓지 않고 해안두보 외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을 만큼 해안두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제8군 전방의 적을 분산시킴으로써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⁶³⁾

100-C 계획의 주요부대로는 100-B 계획의 주요부대 이외에 군산 상륙을 위해 증강된 사단으로 편성되며, 이 부대는 제8군에서 제공한다.⁶⁴⁾ 주요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는 현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산지역에 증강된 사단을 상륙시키고 해안두보를 탈취, 확보 및 방어하며, 의명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상륙시킨다. 상륙 이후 군산에 상륙한 사단으로 해안 통제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함포 및 초기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령부는 군산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D-15일부터 D-1일까지 목표지역의 항공정찰을 제공하고, 목표지역의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파괴한다. D일에는 제8군의 필수 항공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표지역을 고립하며,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 지정된 투하지점으로 이동, 엄호 및 투하를 준비한다. 제8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제10군단과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주노력을 하면서 공세를 유지한다. 군산 상륙을 위해 증강된

6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p.1.

6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Tokyo, 8 Sept. 1950, p.1.

6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p.4.

사단은 군산지역에 상륙하여 대전의 주요 교통로를 탈취 및 확보하고, 제8군의 전진을 지원하기 위해 차후작전을 준비하며 군산 및 대전의 비행장을 개발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에 투입되지 않으면 극동사령부의 지시에 의거 증강된 사단의 상륙작전이나 후속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 지역의 지정된 지역에 공중투하하며, 증강된 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거나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으로 공중 이동한다.⁶⁵⁾

100-C의 작전개념은 제8군 전방의 적 후방에 해상을 통해 대규모 포위를 하기 위해 부산에서 증강된 1개 사단을 예비로 운용하여 군산에 상륙하는 것이다. 군산의 상륙은 적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으로 제8군 전방의 적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⁶⁶⁾ 이는 미 제8군 통제 하의 1개 사단을 부산으로 이동시켜 미 제8군의 전방에 주둔한 적의 후방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여 제8군 전방에 위치한 적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⁶⁷⁾ 따라서 100-C는 제8군 전방의 적 부대에 대한 주요 병참선과 재보급 및 증원을 차단하고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 주공의 후방에 있는 대전의 병참선을 목표로 한다.⁶⁸⁾ 증강된 사단이 상륙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해안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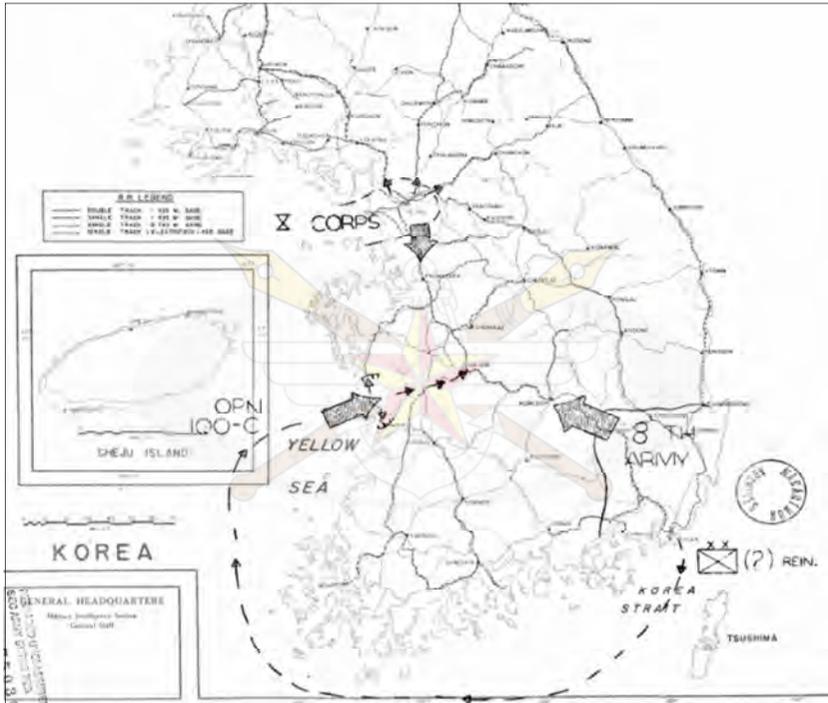
6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p.2~3.

6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3.

6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3.

6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1.

가 설치되면 증강된 사단은 대전을 확보하고,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김천 방향으로 공격하거나, 대전-대구 축선 이남에서 섬멸작전에 참여하거나, 북쪽방향의 대전-서울 축선으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⁶⁹⁾



〈그림 2〉 100-C 기동계획

* 출처: GHQ,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Annex 'C',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상륙 이전 해안의 적 부대 무력화보다 작전적 기습에 우선을 두고 항공 및 해상 작전은 최대한의 범위로 남한 내에서 북한군

6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p.1~3.

을 고립시키고, 공중 및 해안정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D일 이전 폭격은 생략하며 H시 이전 폭격은 수색부대가 확인했거나 공격부대의 접근이나 상륙돌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적 위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⁷⁰⁾

제8군은 제10군단 및 증강된 사단과의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주노력을 수행하면서 남동쪽에서 공세를 계속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제10군단의 연결 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증강된 사단의 상륙작전이나 후속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 축선의 사전 지정된 투하지역으로 공중투하하거나,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여 증강된 사단을 증원하거나 공중으로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에 공중이동하여 증강된 사단을 증원한다.⁷¹⁾

100-C의 부록 중 정보, 항공 및 해상작전 협조는 100-A의 계획을 따르며, 인사, 민사 계획은 100-B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⁷²⁾

라. 100-D 계획

100-D 계획도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00-D 계획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은 주문진에 상륙한 후 강릉과 원주방향으로 공격하여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⁷³⁾ 그러나 100-D 또한 100-C와 마찬가지로 100-B의 우

7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2.

7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p.2~3.

7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4.

73) 해병대사령부, 앞의 책, p.4-16.

발상황에 대한 보조계획이다.⁷⁴⁾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은 성공적이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최소 2개 사단의 TF(한국군 1~2개 사단을 포함)가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하여 인천에 상륙한 부대와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한다는 계획이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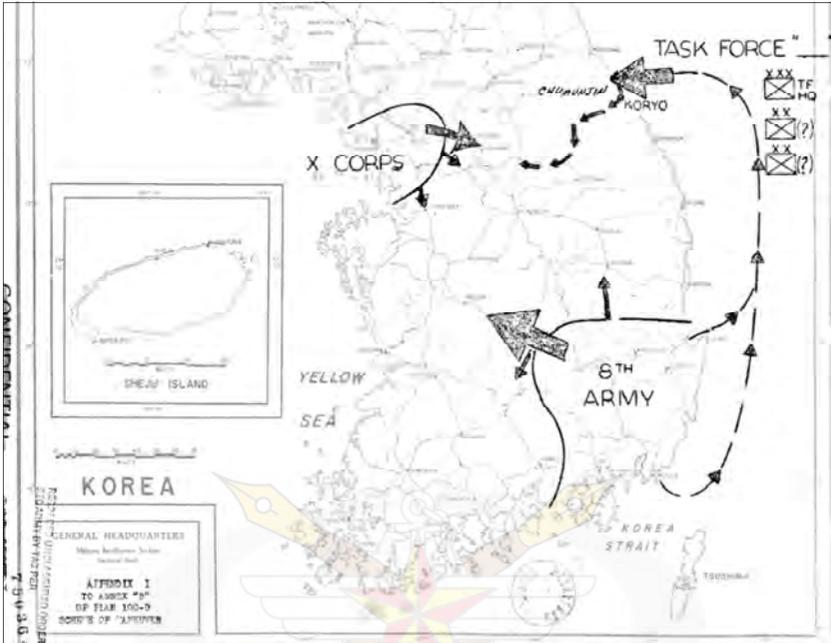
100-D는 인천지역에 대한 제10군단의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은 차단되고, 북한군의 지연작전에 대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제8군의 공격이 진행 중이며, 주보급로의 능력이 제한되고 회복된 지역에서 게릴라작전 수행으로 인해 주노력 부대의 전진 속도는 지체되지만 다른 방향의 제8군은 전진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⁷⁶⁾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있고, 강릉-주문진 부근의 해안도로는 상륙지역에서 남북으로의 진출로를 제공하고 상륙지역 내에서 측면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강릉 부근의 서쪽 도로는 원주 일대의 적 주보급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TF에 포함된 한국 사단은 최소한의 사전계획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⁷⁷⁾

7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2.

7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3.

7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1.

7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1~2.



〈그림 3〉 100-D 기동계획

* 출처: GHQ,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D, Annex 'B',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100-D의 기본개념은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인천-서울로부터 남동방향으로 공격하는 제10군단과 함께 북한군을 포위함으로써 금강 이남의 북한군을 차단 및 격멸하는 것이다.⁷⁸⁾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하고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하며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릉과 주문진 지역에는 최소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상륙군 TF를 상륙시켜 동해안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상륙부대는 제8군

78) Operations Plan Serial No.6-50(Based upon CINCFE Operations Plan No.100D),(1950.9.18.) p.1.

으로부터 최소 2개 사단을 차출하는데 그 중 1개 혹은 2개 사단 모두 한국군을 활용한다. TF는 중부지역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하고, 남으로부터 북상하는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다.⁷⁹⁾

주요 상륙부대로는 인천지역에는 제10군단이 상륙하고, 강릉-주문진 지역에는 제8군으로부터 최소 2개 사단(1~2개 사단은 한국군)을 차출하여 상륙작전에 운용한다.⁸⁰⁾ 주요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는 상륙군 TF를 강릉-주문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강릉-주문진 지역에 해안두보를 탈취, 확보 및 방어하며, 상륙군 TF로 지휘권이 이양된 이후에는 상륙군 TF에 항공, 함포 및 초기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은 강릉-주문진 지역의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D-15~D-1일까지 목표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 내 적 부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차단한다. D일에는 제8군의 필수 항공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지역을 고립한다. 제8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제10군단 및 TF와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주노력을 계속하면서 공세를 유지한다. TF는 강릉-주문진 지역의 지정된 해안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위해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공격한다. 제10군단은 현 임무를 계속하면서 TF와 연결하며, 연결 이후에는 TF의 지휘권을 인수한다.⁸¹⁾

100-D의 기본적인 작전개념으로 제10군단은 인천-서울의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하여 제8군 및 TF와 연결하며,

7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2~3.

8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D", 11 Sept. 1950, p.1.

8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2~5.

TF는 해상돌격으로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강릉-평창-원주 축선을 따라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한다.⁸²⁾

100-D는 연합 화력 및 해상수송 능력을 활용하여 제8군으로부터 2개 이상의 예비사단으로 적의 후방에 대한 해상돌격으로 광범위한 포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해안 및 원주의 북한군의 병참선이 주된 목표이다. TF는 적을 포위 및 격멸하기 위해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여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하며,⁸³⁾ 극동해군사령부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는 TF를 수송, 엄호 및 지원한다. 제8군은 탑재를 위해 TF를 부산 또는/그리고 포항으로 이동시키고,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주노력을 하고 안동-영주방향으로 보조노력을 하면서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목표를 갖고 공세를 계속한다. TF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해안 병참선을 차단한다. 이후 원주의 북한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 연결을 위해 강릉-평창 축선을 따라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한다.⁸⁴⁾

100-D의 지휘관계로 작전준비 간에는 극동해군사령부가 TF를 통제하며, TF가 해안의 지휘권을 인수하면 총사령부가 TF를 통제한다. 제10군단과 연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10군단이 TF를 통제한다.⁸⁵⁾

100-D 계획은 기상, 제8군으로부터의 가용부대, 탑재능력 등

8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Serial No.6-50", 11 Sept. 1950, p.1.

8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No. 6-50", 11 Sept. 1950, p.1.

8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No. 6-50", 11 Sept. 1950, p.2.

8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4.

의 제한요소가 있다. 11월 중순까지 기상은 양호해야 하며, 제3상륙전단의 도착과 제10군단의 이동이 완료되어 초기의 탑재 어려움은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제8군으로부터의 가용부대가 100-D 계획의 핵심으로 북한군의 낙동강 돌파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제8군으로부터 가용 병력을 빼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상륙작전을 위해 제8군에서 차출된 한국 사단의 상륙작전에 대한 훈련 상태였다.⁸⁶⁾

마. 4가지 크로마이트 계획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로마이트 계획은 100-A·B·C·D 4개의 계획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100-A와 100-B 2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100-B 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100-A는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인 100-B 계획에 대한 예비계획(alternative plans)⁸⁷⁾ 즉, 100-A는 인천에 상륙하는 100-B가 실시되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인 것이다.⁸⁸⁾ 100-C(군산)와 100-D(강릉-주문진)는 인천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되,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한 이후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100-B의 보조계획이라 할 수 있다.⁸⁹⁾ 즉, 100-C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상황에 따라 군산에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이고,

8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2.

8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ing Message JCS 89960,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88) Roy E. Appleman, *op. cit.*, p.494.

8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1.

100-D는 동해안의 강릉-주문진 지역에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제8군의 반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트 장군이 계획수립반과 인천상륙에 대한 기본계획과 몇 가지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 23일 인천상륙작전계획(초안) 배부될 때 100-B 뿐만 아니라 군산과 강릉-주문진에 대한 100-C·D계획이 함께 회람되었다는 것에서도 100-B와 100-C·D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⁹⁰⁾ 100-C와 D를 계획한 것은 인천상륙과 더불어 부산 방어선의 안정과 북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제8군의 능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었다.⁹¹⁾

100-A는 미 합참의 요구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하거나 실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된 것이지만,⁹²⁾ JSPOG에서는 합참의 요구보다는 맥아더가 상륙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하였다.⁹³⁾ 100-A와 100-C는 군산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두 계획의 차이는 100-A의 경우 주 상륙지역이 군산이며, 100-C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한 후 제8군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산에 추가 상륙하는 보조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천상륙작전 당시 제8군에서도 100-C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⁹⁴⁾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초기 제8군의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전개되자 100-C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였으나 상황이 다시 호전되어 취소된 바 있다.⁹⁵⁾

또한, 100-A와 100-C의 계획 중 일부 부록들이 100-B의

90) James F. Schnabel, *op. cit.*, pp.141~142.

91) Combat Study Institute, *op. cit.*, p.21.

92) James F. Schnabel, *ibid.*, p.151.

93) Curtis A. Utz, *op. cit.*, p.19.

94) Headquarters Eighth Army, "Operation Plan No.10(2d alternate)", Headquarters Eighth Army APO 301, 6 Sep. 1950.

95) James F. Schnabel, *ibid.*, p.176.

계획을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100-B 계획의 초안이 배부될 때 100-C와 D가 함께 배부되었고, 100-B보다 100-A가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볼 때 100-B가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계획이며, 100-C와 100-D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보조계획이며, 100-A는 100-B가 실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크로마이트 계획 중 100-A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일부는 100-A(군산 상륙)가 제8군의 반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제8군의 상황이 반격하기에 여의치 않아 100-A가 취소되고 100-B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⁹⁶⁾ 그러나 이는 크로마이트 계획 전체를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크로마이트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계획으로 100-C와 100-D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이 바로 부산 방어선의 안정과 제8군의 반격 여건이었고,⁹⁷⁾ 이를 위해 100-C와 100-D가 계획되었던 것이며,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8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8군이 남쪽에서 반격하는 시기를 D일에서 D+1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⁹⁸⁾ 그리고, 실제 인천상륙작전 당시에도 제8군의 반격 여건이 여의치 않자 100-C의 시행을 준비했었다.⁹⁹⁾ 이는 제8군의 상황으로 인해 100-A가 취소되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8군의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으로 100-A가 취소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96) 국방홍보원, “국방TV KFN스페셜 ‘작전명 크로마이트’”, 2016. 9. 13.

97) Combat Study Institute, *op. cit.*, p.21.

98) General Headquarters Fra East Command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UNC”, CINCFE, 5 Sept. 1950.

99) James F. Schnabel, *op. cit.*, p.176.

또 다른 의견으로는 대전이 함락되고 금강 방어선이 붕괴되어 100-A가 제외되었다는 것인데,¹⁰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는 100-A가 제외된 이유가 아니라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된 이유이다.¹⁰¹⁾ 대전이 함락되고 금강방어선이 붕괴되어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될 당시에는 크로마이트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된 이후 크로마이트 계획이 수립되었고, 100-A는 대전 함락과 금강 방어선의 붕괴로 인해 제외된 것이 아니라 8월 30일 100-A 계획이 발행되었으며,¹⁰²⁾ 100-A 계획에서도 JSPOG가 이 계획의 지속적인 개발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¹⁰³⁾ 또한, 100-C 계획의 부록 중 정보, 항공 및 해상작전 협조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100-A 계획의 부록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¹⁰⁴⁾ 따라서, 100-A 계획이 제외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00-A가 적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feint)라는 주장도 있다.¹⁰⁵⁾ 그러나 당시 상륙지역을 속이기 위해 군산뿐만 아니라 해주 등 여러 지역에 다양한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군산지역에 대한 양동작전은 그 중의 일부였던 것이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습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UN군이 군산에 상륙하는 것처럼 북한군을 속이기 위해 항공 폭격 및 함포 포격과¹⁰⁶⁾ 소규모 기습작전 등 다양한 양동작전을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시 상륙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147.

101) James F. Schnabel, *ibid*, pp.140~141

10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10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al Planning", 30 Aug. 1950.

10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4.

105)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376.

106) Curtis A. Utz, *op. cit*, p.24.

실시하였으며,¹⁰⁷⁾ 제7함대에 군산지역에 상륙하는 것처럼 적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을 지시하기도 했다.¹⁰⁸⁾ 또한, 군산의 예비계획에 대한 콜린스 미 합참의장의 요구에 JSPOG와 작전참모 라이트 장군은 군산에 양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천에 상륙작전이 실행되지 않거나 실패한다면 예비계획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¹⁰⁹⁾ 이는 100-B를 위한 다양한 양동작전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100-A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동작전 중에는 군산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곧 100-A는 아닌 것이다.

7월 23일 이후 콜린스 미 합참의장은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예비계획(alternative plan)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산 상륙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¹¹⁰⁾ 8월 23일 콜린스 장군과 셔먼 미 해군참모총장이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을 제안하였다.¹¹¹⁾ 8월 28일에는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미합참이 조건부로 승인하고,¹¹²⁾ 8월 29일 미 합참은 극동군사령부에 보낸 전문에서 군산에 대한 준비를 승인하였다.¹¹³⁾ 또한, JSPOG는 상륙장소에 대한 맥아더의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군산 작전을 준비했다고 하였다.¹¹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100-A

107) Headquarters Special Activities Group GHQ FEC,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 'Plan for Operations of Raider Troops in KUNSAN area'", 6 Sep. 1950.

108) Major David H. Mamaux, "Operation CHROMITE: Operational Art in a Limited War", 1987, p.19.

109) Combat Studies Institute, *op. cit.* p.25.

110) Roy E. Appleman, *op. cit.* p.494.

111) James F. Schnabel, *op. cit.* 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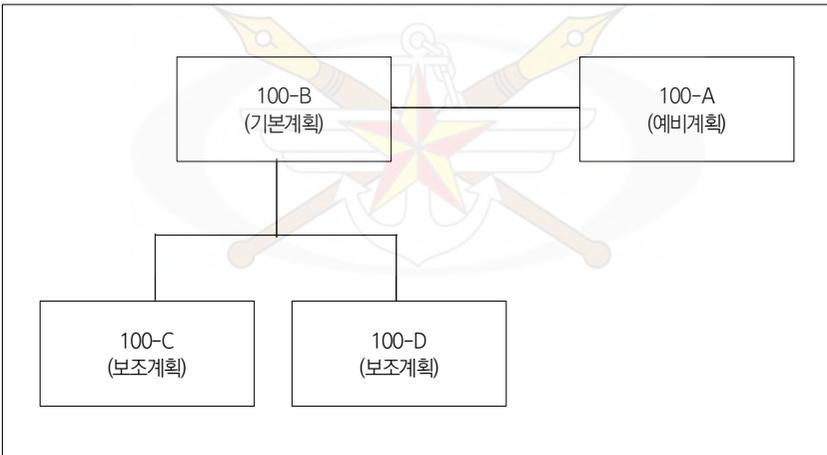
112) Charles R. Smith, *op. cit.* p.88

113)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ing Message JCS 8996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114) Curtis A. Utz, *ibid.* p.19.

는 취소되거나 제외된 것도 아니며, 북한군을 속이기 위한 feint라 할 수 없다. 인천에 대한 예비계획으로써 미 합참의 요구와 맥아더가 상륙장소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로마이트 계획은 기본적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100-B)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조계획(100-A, 100-C)을 수립하였고, 인천상륙작전(100-B)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으로 100-A를 수립했던 것이다.



〈그림 4〉 100-A·B·C·D의 관계

* 출처: 필자가 정리

4. 결론

지금까지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과정과 4가지 크로마이트계획의 내용, 이들 계획들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맥아더는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과 함께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에서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제1해병임시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다. 비록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는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인천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100-B를 기본으로 하며,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보조계획 100-CD, 그리고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경우나 상륙장소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인 100-A의 4가지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크로마이트 계획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 시 실시되었던 전투 과정들에 대한 배경을 연구하여 계획과 전투수행과정을 연계하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4가지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향후 4가지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능별 지원계획과 제10군단 등 관련 부대들의 작전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수행된 전투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CINCFE, “Outgoing Message”,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23 July 1950.

GHQ FEC, “APO 500, Operation Instruction No.3”, 6 July.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H’—Command Relations”,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A’, Assignment of Forces to GHQ Reserve”, 17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H’, Command Relations”,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Tokyo, 11 Sept. 1950.

- _____,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Tokyo, 11 Sept, 1950.
- _____,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UNC”, Tokyo, 5 Sept, 1950.
-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 “Operations Plan No.6-50”, 11 Sept, 1950.
-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s Plan No.5-50, Annex H, Command Relations”, 11 Sept, 1950.
- _____,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ing Message JCS 89960”,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 Headquarters Eighth Army, “Operation Plan No.10(2d alternate)”, Headquarters Eighth Army APO 301, 6 Sep, 1950.
- Headquarters Far East Air Force, “Operations Plan Serial No.5-50 (Based upon CINCFE Operations Plan No.100C)”, 16 Sept, 1950
- _____,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s Plan Serial No.5-50, Annex H, Command Relations”, 20 Sept, 1950
- Headquarters Special Activities Group,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 “Plan for Operations of Raider Troops in KUNSAN area”, 6 Sep, 1950.
-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 Hq X Corps, “Op O #1”, Hq X Corps, 28 Aug, 1950.

_____,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 30 September 1950”,

_____, “Staff Study 2nd Edition”, 24 Aug. 1950.

2. 단행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3.

국방홍보원, “국방TV KFN스페셜 ‘작전명 크로마이트’”, 서울: 국방홍보원,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시 상륙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참고교범 10-8 상륙전사』, 화성: 해병대사령부, 2008.

Charles R. Smith, U.S. Marines in the Korean War(Washington DC: History Division USMC, 2007).

Combat Studies Institute, CSI Battlebook Operation Chromite(Inchon)(CSI,1984).

Cutis A.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2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Lynn Mon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US Marines Operations in Korea Vol.II, The Incheon-Seoul Operation (Washington DC USMC,1955).

Lynn Montross, “The Incheon Landing-Victory Over Time and Tide, Our First Year in Korea,” Marine Corps Gazette(July 1951)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Marine Corps, 1951.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1992).

HQ MC,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Washington:
USMC, 1996).

3. 논문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2019): 359-388.

Major David H. Mamaux, “Operation CHROMITE: Operational
Art in a Limited War”,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Kansas, 1987.



<Abstract>

Planning process and four operational plans for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Operation Chromite)

Seo Chijong

Until now, most studies about the Inchon Landing operation have been focused on the operation process and outcome rather than on the planning of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plans of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and provide a basis for research linking plans with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y studying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contents of 4 Chromites.

MacArthur had become convinced that Amphibious operat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rear of NK forces to end the war early and regain the initiative, and he evaluated that Landing on Inchon would expose the NK forces where they were most vulnerable. It was determined that securing Inchon and Kimpo Airport would enable US and ROK forces to secure Seoul and the enemy's line of communications and enable a decisive attack in conjunction with counter on the Naktong perimeter. Operation Bluehearts had been planned to be an amphibious attack on Inchon by the provisional 1st Marine Brigade and 1st Cavalry Division, but was canceled because US and ROK forces could not halt the advance of the enemy.

Although Operation BlueHearts was canceled, MacArthur drew up a new Amphibious operation. Operation Chromite was based on 100-B, which aimed to destroy NK forces in conjunction with the 8th Army. The plan was published in 4 plans: 100-C and D for the contingencies of the 8th Army countering from the south, and 100-A in case

Amphibious operation was impossible or unsuccessful in Inchon, and in case MacArthur changed the landing site.

Keywords: Inchon Amphibious Operation, Operation Chromite, Operation Bluehearts, Operation Plan 100, MacArthu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225-266
<https://doi.org/10.29212/mh.2024..131.2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 검증

장재규* | 영남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3. 역사적 사실 검증 소요
4. 검증 결과
5.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는 역사적 문헌에 대한 고찰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보완적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검증 소요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강뉴대대(에티오피아 파병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등 4가지였다.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연구 결과, 첫째,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로, 국내 문헌은 일관되게 에티오피아의 집단안보에 역사적 경험과 열정으로 참전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현실주의적 이유를 배제한 기록이다. 즉, 에티오피아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뿐 아니라 유엔에서의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리트리아의 통합을 달성하고, 낙후된 군사와 경제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일부 국내 문헌은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전사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른 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122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은 강뉴부대 제1진 파병부터 유엔사 연락장교단의 철수 시기인 1965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군의 총 파병 인원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6,037명은 그것의 출처와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관련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에티오피아 보훈 외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에티오피아, 6·25전쟁, 강뉴대대, 역사적 사실

1. 서론

필자는 2023년 영남대학교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¹⁾ 연수단에 포함되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에티오피아 연수단의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용사와 그 후손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지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보훈 차원의 공공외교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 지식으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역사를 학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거나 기록이 충돌하여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 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에티오피아 현지의 자료와 현지인 인터뷰 등의 보완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문헌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참전과 관련된 논쟁적 사실을 식별하고 문제를 제기한 연구는 1건 정도 식별하였다. 김도민은 춘천시 소재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의 전시에 관한 연구에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부대(강뉴대대)의 전사자 수와 최종 파병부대의 철수 시기가 문헌마다 다르거나 명

1)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 교류 수요를 식별하고, 이를 한국의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민간 대학 차원의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학교 교직원 20명이 에티오피아를 6박 8일의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 그러나 그의 연구는 문제점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고, 검증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시간적 범위는 에티오피아가 6·25전쟁 파병을 결정한 1950년부터 파병부대를 한국에서 모두 철수시킨 1965년까지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으로 국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 정부가 발간한 6·25전쟁과 관련한 2차 사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고찰에 의존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에티오피아 현지인³⁾의 인터뷰를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으로 구성된 참전협회에서 제작한 2건의 문건과 참전 기념비에 기록된 내용, 기념관의 전시자료, 아디스아바바 트리니티(trinity) 성당의 기록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에티오피아인의 관점에서 제작되거나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자료가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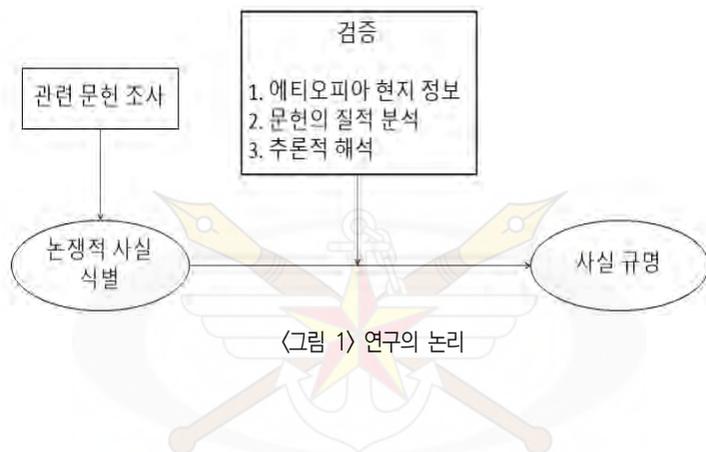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2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첫 번째는 검증 소요를 식별하는 단계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중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상호 충돌하는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2) 김도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향」, 『강원사학』 39, 2023.

3) 에티오피아의 현대사 또는 전쟁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성사시키려고 현지 대사관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위상을 가진 국립대학)을 통해 문의하였으나, 전문가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6·25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을 포함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인터뷰를 하였다.

4) 필자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식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지 대사관의 무관을 통해 에티오피아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필자가 직접 방문한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도서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상황(가뭄과 기아, 국경분쟁, 내전 등)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다. 두 번째는 검증 단계로, 식별된 논쟁적 사실들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획득한 자료와 현지인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3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를 다루며, 4장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가. 참전 결정과 준비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타국의 침략을 허용한 적이 없었지만, 1935년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약 6년간 식민국가로 전락하였다. 이탈리아 침략 당시 에티오피아는 왕정 국가였고,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영국에 망명하였다. 1941년 영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탈리아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에티오피아는 다시 자유화되었다. 에티오피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창립된 국제

연맹의 원년 회원국이었지만, 이탈리아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에티오피아의 노력에 국제연맹은 눈을 감았고, 집단안보체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1945년 국제연합이 창립될 때도 원년 회원국으로 역할을 하였고, 북한의 남침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유엔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⁵⁾

에티오피아는 파병을 결정한 후, 1950년 8월 1개 보병대대(본부중대, 4개의 보병중대로 구성⁶⁾)를 황실근위대(10개 대대로 구성)에서 파병 장병을 선발하여 편성하였고, 영국군 교관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약 8개월간 파병전 훈련을 하였다.⁷⁾ 그리고 1951년 4월 12일 황제는 출병식을 주관하면서 파병부대의 명칭을 강뉴(Kagnew)⁸⁾로 부여하였다.⁹⁾ 강뉴대대와 강뉴대대의 임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된 주한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I*, 1972, 21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VI*, 1977, 173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 참전편』, 1979, 403쪽; 키몬 스크르딜스(Kimon Skordiles),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1954, 송인역 역,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 2010, 76쪽.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182쪽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9~22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3~404쪽;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6~77쪽.

8) 강뉴(Kagnew)는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강뉴는 에티오피아 원어로서 ‘돌파하기 어려운 물체, 또는 상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거나 그를 궤멸시키는 것’을 뜻하며, 셀라시에의 부황인 메넬레크(Menelek) 2세가 그의 애마에게 이 명칭을 부여한 데서 유래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2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4쪽) 둘째, 강뉴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초전 박살’이라는 뜻을 갖는다.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10쪽)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할 때, 강뉴는 에티오피아가 외침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전쟁의 역사에 등장하는 명칭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단결된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여 혼돈의 상황에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9)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7~78쪽.

에티오피아군 사령부¹⁰⁾는 1951년 4월 1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하여 지부티로 이동하였고, 4월 16일 미군 수송선에 탑승하여 약 20일간의 항해 끝에 5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¹¹⁾ 부산항 도착과 동시에 에티오피아군은 미 8군사령부로 배속되었고, 보충대로 이동하여 미군의 전투 장비와 복장을 보급받았다. 이후 약 8주간 미군 무기와 장비의 조작법을 숙달하고, 한국의 작전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7월 6일 부산을 출발, 강뉴대대는 가평으로 이동하여 7월 15일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고, 에티오피아군 사령부는 대구의 미 8군사령부로 이동하였다.¹²⁾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군 사령부와 강뉴대대 외에도 유엔군사령부에 장교 2명으로 편성한 연락반과 에티오피아 부상자 치료를 위해 간호사를 파견하였다.¹³⁾

1951년 5월에 제1진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강뉴대대는 1년 단위로 부대를 교대하였고, 6·25전쟁이 휴전 상태로 전환된 1953년 7월에는 강뉴대대 제3진이 전개된 상태였다. 6·25전쟁 기간에 파병된 강뉴대대 제1, 2, 3진의 파병 기간과 인원은 <표 1>과 같다. 제1진과 제2진은 정상적인 부대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1진의 1개 중대 규모의 후발대가 잔류하여 제2진의 현지 적응훈련을 도왔다.¹⁴⁾ 반면, 제2진과 제3진은 일정한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 정상적 부대교대가 이루어졌다.

10) 에티오피아의 강뉴대대는 직접적인 전투를 위해 편성된 중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대대급 부대이며, 에티오피아군 사령부는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과 부대 교대 등을 위해 미 8군 사령부와 협조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성된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였다.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5쪽.;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78~83쪽.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5쪽.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78~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0쪽.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6쪽.

〈표 1〉 6·25전쟁 기간 중 에티오피아 파병 인원과 기간

부 대	참전 인원	참전 기간
에티오피아군 사령부	32명	1951. 5. 6. ~ 1952. 7. 15. ¹⁵⁾
강뉴대대 제1진	1,153명	1951. 5. 6. ~ 1952. 3. 28.
강뉴대대 제2진	1,094명	1952. 3. 29. ~ 1953. 4. 30.
강뉴대대 제3진	1,271명	1953. 4. 16. ~ 1954.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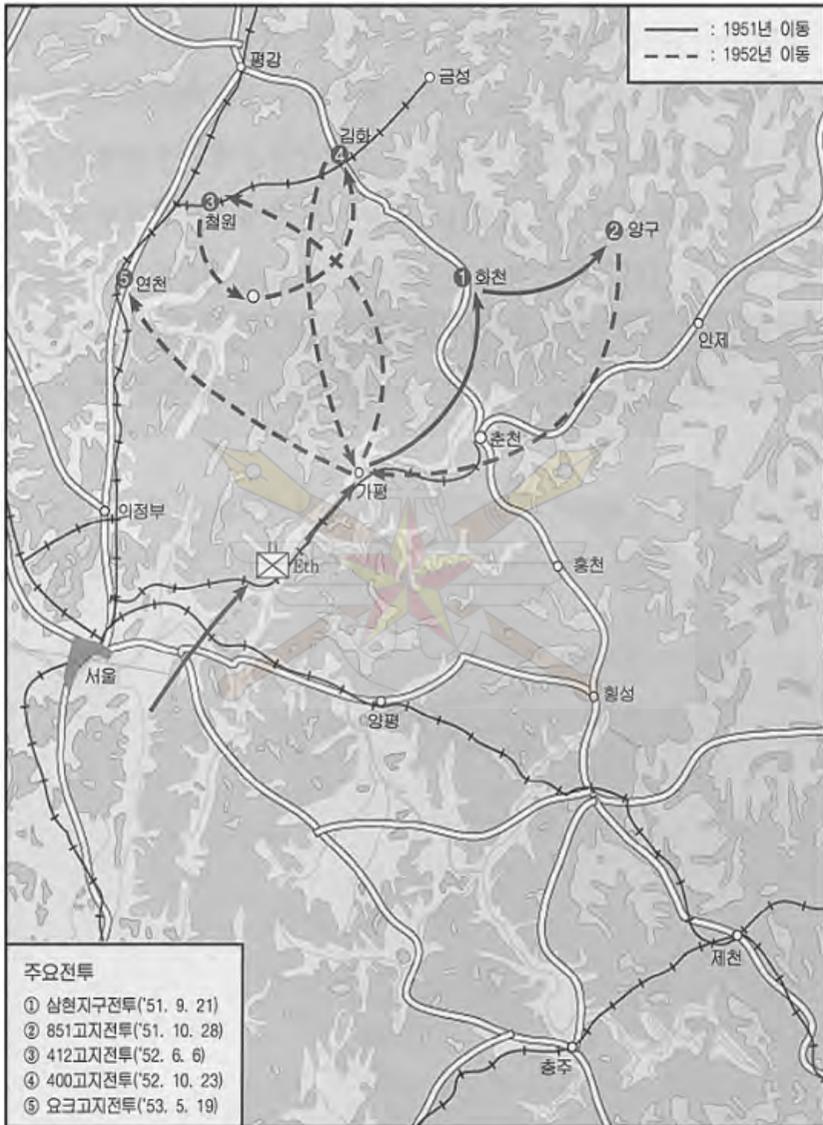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 2015, 341, 350쪽.;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 Army), 2005, 513쪽.

나. 참전 경과

강뉴대대 제1진이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인 1951년 7월의 전쟁 상황은, 유엔군 또는 공산군 어느 일방의 승리가 어려워져 전선은 교착되고, 정전 협상이 막 시작되어 소규모 전투가 주를 이루는 제한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한 강뉴대대 제1, 2, 3진의 주요 전투 임무는 교착된 전선에서의 제한된 전투 행동으로, 고지쟁탈전 형태의 공격과 방어작전, 피아 주저항선 중간지역에서 이루어진 수색, 정찰, 매복 등이었다.

강뉴대대는 일시적으로 지휘관계가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미 7사단 32연대 배속하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뉴대대 제1, 2, 3진이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와 주요 전투를 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2〉과 같다. 강뉴대대 제1진은 화천과 양구 등 한국의 중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제2진은 철원, 연천 등 중부 또는 중서부 전선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3진은 연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 15) 에티오피아군 사령부의 주된 역할이 유엔군사령부 또는 미 8군사령부와의 연락 임무와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임무는 에티오피아 연락단이 수행하였고, 강뉴대대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체계가 미군(미 8군과 미 7사단) 중심으로 구축됨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하여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강뉴대대의 임무 지역과 주요 전투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381쪽.

강뉴대대 제1진이 전방으로 전개한 1951년 7월에 미 7사단은 미 9군단에 소속되어 중동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강뉴대대는 미 7사단의 좌익을 담당한 미 32연대의 예비로 화천 북방의 적근산 일대로 배치되었다(그림 2의 ①). 미 7사단은 강뉴대대의 전투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터라 주방어진지에 배치하지 않았고, 예비로 운용하면서 수색·정찰 임무를 우선 부여하였다.¹⁶⁾ 강뉴대대의 성공적인 수색·정찰 작전은 강뉴대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미 7사단은 강뉴대대의 임무를 예비에서 전환하여 주방어진지 방어 임무를 부여하였다.¹⁷⁾ 이 당시 미 9군단은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Cleaver작전¹⁸⁾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이 작전에서 강뉴대대는 격전 끝에 부여된 공격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군단과 사단으로부터 대대의 역량을 다시금 인정받았고,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¹⁹⁾ 1951년 10월, 미 8군사령부의 부대 조정 명령에 따라 미 7사단은 미 10군단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강뉴대대는 미 2사단이 격전을 벌였던 양구 북방의 단장의 능선 일대로 재배치되었고(그림 2의 ②), 그 지역에서도 수색·정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²⁰⁾ 1952년 1월 7사단의 작전지역이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강뉴대대는 편치볼(양구 해안마을) 서쪽 고지(가칠봉 남쪽)에 배치되어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고, 사단이 미 9군단으로 원복하면서 1952년 2월 가평으로 철수하였다.²¹⁾ 강뉴대대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8쪽.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4쪽.

18) cleaver 작전은 1951.9.21~9.22 2일간 수행된 제한된 공격작전으로 적의 전초기지와 수색기지를 격멸하여 아군의 주저항선 방어를 보강하고 나아가 금성 방향으로 진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9~426쪽.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27~431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2~435쪽.

제1진은 본국의 부대교대 명령에 따라 제2진의 현지 적응을 위해 1개 중대 규모의 후발대를 남기고, 3월 28일 부산항을 떠났다.²²⁾

강뉴대대 제2진도 제1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전개하였고, 제1진 본대가 출발한 하루 뒤인 3월 2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제2진의 현지 적응훈련은 제1진의 8주보다 6주가 단축된 2주간 이루어졌다.²³⁾ 1952년 4월 제2진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고,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에 전념하였다. 이 당시 미 7사단은 미 9군단의 예비로 있다가 군단의 가운데 사단인 미 2사단과 4월 말에 임무를 교대하였고, 제2진이 배속된 미 32연대는 사단의 좌측을 담당하였다.²⁴⁾ 제2진은 현지 훈련을 마무리하고 6월에 연대의 좌측 대대로 현 동송읍 동쪽 한탄강 일대에 배치되었고(그림 2의 ③), 수색·정찰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²⁵⁾ 이후 미 32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전환되었고, 9월 말 사단의 우측 정면을 담당한 미 31연대와 교대함으로써 제2진은 김화 북쪽 성제산 서측 주저항선을 점령하였다(그림 2의 ④). 진지를 점령한 후 제2진은 우기로 인해 약해진 진지를 보수하고, 수색·정찰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⁶⁾ 10월 초 미 7사단에 배속되었던 미 187공정전투단의 배속이 해제됨에 따라 제2진은 미 187공정전투단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였고, 적 전초진지 공격작전과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⁷⁾ 이 당시 미 9군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6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8쪽. 제2진의 실전배치가 6월임을 고려할 때, 현지 적응훈련은 부산의 보충대 훈련보다 전방 전개 후 현지 훈련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8쪽.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39~446쪽.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7~448쪽.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8쪽.

단은 Showdown 공격작전²⁸⁾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최초 공격은 미 7사단 31연대와 국군 2사단이 함께 수행하여 삼각고지의 남단 고지와 상감령을 점령하였지만, 아군의 피해도 막심하였고, 10월 20일 미 32연대가 교체 투입됨으로써 강뉴대대도 삼각고지 일대로 재배치되어 확보한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⁹⁾ Showdown 작전이 종료되면서 작전지역이 조정되어 미 7사단은 국군 2사단에 삼각고지 일대를 인계하였고, 제2진은 성제산 일대의 최초 배치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미 7사단이 미 25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군단 예비로 전환되어 가평 일대로 철수함으로써 제2진도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³⁰⁾ 1952년 12월 말 미 7사단은 미 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고, 군단의 맨 우측을 담당하였던 미 2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진은 연천 서북부 주방어선 일부³¹⁾를 점령하였다(그림 2의 ⑤).³²⁾ 1953년 1월 말 제2진은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으나, 소규모 부대의 수색·정찰 작전은 지속하였다.³³⁾ 이후 2월 말 미 32연대가 사단 예비로 전환되면서 대대의 전투작전은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3월 말 사단의 명령에 따라 미 32연대가 미 17연대 작전지역을 인수함으로써 대대는 연대의 중앙대대로서 야월산³⁴⁾ 북쪽 주저항선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³⁵⁾ 4월 16일 사단 예비로 전환되어 부대교대와

28) 1952년 10.14~10.25 이루어진 작전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오성산을 중심으로 한 적의 위협을 약화하기 위해 계용산 북방의 주요 고지군(삼각고지)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작전이다.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0~454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4~458쪽.

31) 이 지역은 임진강 서안으로서 현재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다.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59쪽.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3쪽.

34) 현 행정구역으로 철원군에 속하고, 백마고지의 서쪽에 있다.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4쪽.

귀국을 준비하였고, 4월 25일 제3진과 부대교대식을 한 후 4월 30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³⁶⁾

강뉴대대 제3진의 파병 준비와 한국으로의 이동은 제1, 2진과 유사하였지만, 제1진의 파병 복귀가 제3진의 파병준비 훈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강뉴대대 제1진이 한국에서 사용하였던 미군의 장비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기 때문에 제1, 2진보다는 효과적인 파병 준비훈련이 이루어졌다.³⁷⁾ 이로 인해 1953년 4월 16일 부산항에 도착한 제3진은 3일간의 짧은 현지 적응훈련을 하였다.³⁸⁾ 제2진과 교대식을 가진 후 약 2주간의 현지 훈련을 미 32연대의 통제하에 수행하였고, 5월 11일 미 32연대 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연천 대광리 서북쪽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³⁹⁾ 제3진은 6월 30일까지 Yoke-Uncle고지 방어전⁴⁰⁾을 포함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7월 1일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다.⁴¹⁾ 이후 7월 15일 제3진은 미 17연대 3대대 작전지역을 인수하였고,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수색·정찰 활동을 지속하였다.⁴²⁾ 정전협정 후 제3진은 미 7사단에 배속되어 경계 작전과 훈련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제4진과 교대 후 1954년 7월 10일 한국에서 철수하였다.⁴³⁾

강뉴대대 제1, 2, 3진은 6·25전쟁 중후반 교착기 약 2년간 한국에 파병되어 중동부 및 중부 전선에서 미 7사단 32연대에 배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7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8쪽.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8쪽.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9쪽.

40) 1953. 5.19~20 이루어진 작전으로, 강뉴대대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인 Yoke고지와 Uncle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69~486쪽.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87~489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8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14, 382쪽.

속되어 공격, 방어, 수색, 정찰, 매복 등 대소 25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전 기간 중 강뉴대대는 전사자 121명(또는 122명), 부상자 536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투(또는 모든 전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었고, 적에게 포로로 잡힌 인원이 한 명도 없는 놀라운 전과를 만들었다.⁴⁴⁾

3. 역사적 사실 검증 소요

에티오피아군의 6·25전쟁 참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중 검증이 요구되는 것은, 진위에 의심이 드는 기록과 문헌마다 내용이 달라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식별된 검증 소요는 4가지이며, 이 중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와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등 2가지는 진위에 의심이 가는 역사적 사실이며,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와 파병 기간과 인원 등 2가지는 문헌의 기록들이 충돌한다. 4가지의 논쟁적 역사 기록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6·25전쟁 참전 동기

에티오피아군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표 2>와 같이 대부분 기록에서는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국제정치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으로, 셀라시에 황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적 집단안보 체제 형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0쪽.

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보 추구는 역사적으로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도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에만 기초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는 설명은 합리적 의심을 만든다. 또한, 6·25전쟁 후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상호 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한 사실이나⁴⁵⁾, 유엔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파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⁴⁶⁾ 등은 에티오피아의 참전이 현실주의적 국가 이익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암시한다.

〈표 2〉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문헌 또는 출처	내용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⁴⁷⁾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7)	에티오피아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 ⁴⁸⁾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황제의 신념과 열정 ⁴⁹⁾
UN군지원사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⁰⁾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황제의 신념과 열정 ⁵¹⁾
통계로 본 6·25전쟁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²⁾
6·25전쟁과 유엔군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 ⁵³⁾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7쪽.

4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94쪽.;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서 한국전쟁(상)』, 1990, 133쪽.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의 참전 동기는 입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즉,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만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하였는가? 아니면, 현실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강뉴대대는 25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1972년 국방부에서 영문으로 발간한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에서 제시된⁵⁴⁾ 이후 다른 문헌에서도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53회의 전투는 대대·중대급 규모의 공격 및 방어작전뿐 아니라, 분소대급의 정찰, 매복, 수색 등의 소규모 작전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문헌에서는 강뉴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장병들의 용맹함과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강뉴대대가 수행한 253회의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취’, ‘대부분 성공적 임무수행’, ‘253전 무패’, ‘253전 253승’ 등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4년 발간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18쪽.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7, 173쪽.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03쪽.

50)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8, 394쪽.

51) 키몬 스키프딜스, 앞의 책, 2010, 52~68쪽.

5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78쪽.

5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39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강뉴대대는 약 2년간의 참전 기간 중 현지 적응 훈련과 전방 전개 등의 전투 준비 시간을 제외하면, 약 8~9개월 기간 동안 전투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작전은 수색과 정찰, 매복 등 소규모 부대의 단기작전이었다. 따라서 253회의 전투는 이러한 소규모의 전투를 모두 포함하는 총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된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253전 253승’에 가깝게 평가하였다.

“진지를 지킴에 있어서 열정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신중하게 공격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항상 완벽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그래서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발도 물리치지 않았고 한번 장악한 땅은 한 뼨도 다시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전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⁵⁵⁾

반면, 1972년 발간된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는 용맹하고 탁월한 성취(the bravery and outstanding achievement)로 표현하였고,⁵⁶⁾ 1977년 발간한 동일 제목의 문헌과 1979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UN군지원사』는 전투 결과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문헌들의 내용에서는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가 대부분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0년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를 번역 발간한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는 ‘253전 253승’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⁵⁷⁾ 또한, 201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과 유엔군』은 강뉴대대가 250여 차례에 달하는 전투를 수행하여 대부분 승리하는 전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⁵⁸⁾ 202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일보가 함께 발간한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에서는 ‘253전 253

55)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29쪽. 이 책은 2010년에 번역되어 발간되었으나, 원서는 1954년에 발행되었다.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1쪽.

57)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11쪽.

5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40쪽.; 국가보훈처, 『영월한 동반자, 한 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51~53쪽.

승 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⁵⁹⁾ 문헌들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에 대한 기록

문헌	내용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키몬 스코르딜스, 1954)	항상 완벽하게 목적 수행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탁월한 성취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송인엽, 2010)	253전 253승
6·25전쟁과 유엔군(2015)	대부분 승리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2023)	253전 253승, 무패 신화

따라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강뉴대대는 정말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것인가? 아니면 확대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다.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문헌과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인엽 역의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부록의 전사자 명단에는 124명의 전사자 명단이 등장한다.⁶⁰⁾ 그러나 1972년, 1977년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1979년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 1998년 『UN군지원사』에는 전사자가 121명으로 명시되어 있다.⁶¹⁾ 반면, 2014년 『통계로 본 6·25전쟁』, 2015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일보,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 2023, 18쪽.

60) 키몬 스코르딜스, 앞의 책, 2010, 300~301쪽.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년 『6·25전쟁과 유엔군』, 2023년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에는 전사/사망자로 122명을 기록하고 있다.⁶²⁾ 과거 기록과 비교할 때, 이 기록은 전사자는 121명이고 사망자가 1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출처로,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⁶³⁾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비는 12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⁶⁴⁾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는 전사자를 121명으로, 전시실의 추모 비석에는 12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⁶⁵⁾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에티오피아 6·25전쟁 전사자

문헌 또는 출처	기록
에티오피아 전사자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2010)	124명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1968 건립)	121명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1977)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참전편(1978)	
UN군지원사(1998)	

1977, 19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92쪽.;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8, 402쪽.

6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82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350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국방일보, 앞의 책, 2023, 18쪽. 앞의 문헌들은 전사자와 사망자를 각각 구분하지 않았다.

63) 재한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티오피아), https://www.unmck.or.kr/kor/04_memento/?mcode=0404040000&mode=1&nation=ETHIOPIA&page=5(검색일: 2024.1.26.)

64)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https://blog.naver.com/blass46/222140117336>(검색일: 2024.1.26.)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전사자 명비를 찍은 사진을 올린 블로그를 참고하였다.

65)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2~13쪽.

통계로 본 6·25전쟁(2014)	122명 (전사/사망)
6·25전쟁과 유엔군(2015)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2023)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	122명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추모비석(2007)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따라서 6·25전쟁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의 전사자 숫자는 검증이 필요하다. 전사자는 121명인가? 122명인가? 아니면 124명인가?

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에티오피아군의 한국 파병 기간과 인원 관련 기록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은 에티오피아군이 한국에 최초 전개한 시점부터 최종 철수한 시점까지이며, 파병 인원은 한국으로 전개한 총인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병 기간과 인원은 전쟁 기간뿐 아니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기간과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 1977년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2014년 『통계로 본 6·25전쟁』은 파병 인원 관련 기록은 없고, 파병 기간은 1965년 1월 3일로 기록하였다.⁶⁶⁾ 2010년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는 파병 인원을 6,037명으로 명시하였고, 파병 기간은 강능대대 제5진의 철수한 시점인 1956년 4월로 기록하였다.⁶⁷⁾ 2015년 『6·25전쟁과 유엔군』은 철수 시점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2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7, 190쪽.;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80, 382쪽.

을 1965년 3월 3일로 기록하였고, 1955년 6월 28일 전개한 강뉴부대 제5진이 최종 철수 시점까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명시하였다.⁶⁸⁾ 다른 출처로는,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의 자료는 총 파병 인원을 1954년 12월 기준으로 6,037명으로 기록하였고, 파병 종료를 1965년 3월 1일로 명시하였다.⁶⁹⁾ 또한,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에서는 에티오피아 부대가 1965년 1월에 최종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⁰⁾ 2012년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는 파병 기간을 1965년까지로 명시하였고, 강뉴부대 제5진의 철수는 1956년 3월로 기록하였다.⁷¹⁾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67)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9쪽.

6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5, 445쪽.;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2013, 84쪽.

69)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9쪽.

70) 유엔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unc.mil/History/Post-1953-Evolution-of-UNC/>(검색일: 2024.1.26.)

71) 국가보훈처, 앞의 책, 2012, 170쪽.

〈표 5〉 에티오피아군 파병 인원과 기간

문헌 또는 출처	파병 인원	철수 시점(부대)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2)	.	.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1977)	.	1965.1.3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2007)	6,037명	1965.3.1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2010)		1956.4(제5진)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2012)	.	1965
통계로 본 6·25전쟁(2014)	.	1965.1.3
6·25전쟁과 유엔군(2015)	.	1965.3.3.(제5진)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	.	1965.1

파병 인원이 2개의 문헌 또는 출처에서 6,037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숫자의 도출 논리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강뉴부대 또는 에티오피아군의 최종 철수 시점이 문헌마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4. 검증 결과

가. 6·25전쟁 참전 동기

6·25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규군으로 10개 보병대대의 황실근위대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1개 보병대대를 차출하여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의 한국으로 파병하

는 것은 매우 이례적 국가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문헌들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에티오피아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만 설명하였다. 반면, 필자가 직접 방문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참전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아래의 문구와 같이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 또는 당시 황제의 특별한 신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1950년 7월 14일 UN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지지를 표시한 53개 회원국 정부에 지상군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전쟁에 파병을 지원한 국가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에티오피아도 이들 중 하나였다.⁷²⁾

당시 에티오피아의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비교적 복잡하였다. 이탈리아의 침공과 식민 통치를 당한 에티오피아는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일부인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균정을 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레아 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석유 매장지로 평가되었던 에티오피아의 오가덴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양국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을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였고, 미국

72)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참전 배경은 영문과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병기된 영문 표현은 다음과 같다. On July 14, 1950, UN Secretary General disclosed a comprehensive message that asked 53 member states which supported the UN Resolution for additional supply of ground forces. Thi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countries that sent forces to the Korean War, and Ethiopian was one of them.

역시 아프리카에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여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1945년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회담에서 에티오피아 황제가 높은 관심을 드러낸 아래의 4가지 사항은 당시 에티오피아가 무엇을 국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① 유엔 헌장 초안 작성에 역할을 하고 추축국과의 평화 문제에 참여 ② 영국의 오가덴 반환과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간 철도에 대한 통제력 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양보 ③ 무기, 운송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긴급한 필요성 ④ 에티오피아의 바다로의 안전한 접근(에리트레아의 반환)⁷³⁾

에티오피아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자이면서, 이탈리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직접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등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4가지 국가 이익은 국제사회(유엔)와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다. 비밀이 해제된 미 국무부의 문서에 의하면,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는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에티오피아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함께 요청하였다고 한다.⁷⁴⁾ 미국이

73) Paul B. Henze, *The United States and the Horn of Africa: History and Current Challenge*, RAND Note, 1990, 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Ethiopia's desire to play a role in drafting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participate in the peace conferences with Axis powers; ② return of the Ogaden by Britain and concessions by France that would give Ethiopia greater control over the railway from Djibouti; ③ Ethiopia's urgent needs for arm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last but not least ④ Ethiopia's need for secure access to the sea, which meant return of Eritrea.

74) U.S. DOS Office of Historia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the

이를 수용하여 1953년 양국은 상호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군사고문단 지원으로 10개 대대 규모의 황실근위대를 1956년까지 3개 사단 규모의 정규군으로 현대화하였다.⁷⁵⁾ 미국의 경제원조 규모도 6·25전쟁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⁷⁶⁾ 또한, 에티오피아의 최대 관심사였던 에리트레아 통합은 1950년 말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1952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연방이 창설됨으로써 에리트레아 통합을 위한 에티오피아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얻었다.⁷⁷⁾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요 직위자의 자서전과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6·25전쟁 전투부대 파병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리트레아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⁷⁸⁾

국내 문헌, 에티오피아 현지 자료, 미국-에티오피아 외교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은 집단안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경험과 셀라시에 황제의 집단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이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강뉴대대의 출정식에서 한 황제의 훈시 내용을

near east and Africa, volume V,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 195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5/d698> (검색일: 2024.1.26.)

75)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2쪽.; wikipedia, 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 https://en.wikipedia.org/wiki/Ethiopian_National_Defense_Force(검색일: 2024.1.27.)

76)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1쪽.

77) Paul B. Henze, 앞의 책, 1990, 11쪽.

78) Neha Banka(June 26, 2020), “70 years of the Korean War: Why Ethiopia jumped into a distant war and remained unvanquished”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research/70-years-of-korean-war-why-ethiopia-jumped-into-a-distant-war-and-remained-unvanquished-6473991/>(검색일: 2024.1.27.)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⁷⁹⁾ 나아가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고 파병 장병에게 참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전 동기의 한쪽 면만을 설명한 것이고, 에티오피아의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참전의 다른 면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유엔(국제사회)에서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통합을 촉진하고 낙후된 에티오피아의 군사 및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79)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29쪽.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라는 이 신성한 세계정책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귀 장병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6·25전쟁 기간 에티오피아의 강뉴대대는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였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모든 문헌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 등장하는 253전 253승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승리는 사전적으로 상대에게 이김을 말하며, 군사적으로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적을 격멸하거나 격퇴하여 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군사적 승리는 성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승리의 기준이 적의 격멸이니 격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또는 전술적 목적 달성이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비록 군사적 작전과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전략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면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는 결국 패배하였지만, 시나이반도를 반환받아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사례⁸⁰⁾나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미국과의 개별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베트남 통일에 성공한 사례⁸¹⁾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전술적 수준의 승리는 사상자의 수, 포로의 수, 확보한 지역 등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⁸²⁾ 그러나 전술적 승리도 개별 작전과 전투의 목적 달성이 승리의 기준이 된다. 작전과 전투에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단위 작전과 전투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을 아군이 원하는 장소

80) Bartholomees, J. Boone, "Theory of Victory" *Parameters*, summer 2008, 30쪽.

81) Bartholomees, J. Boone, 앞의 논문, 2008, 27쪽.

82) Bartholomees, J. Boone, 앞의 논문, 2008, 27쪽.

에서 격멸하기 위해서는 적의 위치와 약점을 찾기 위한 수색 및 정찰 활동, 적을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철수하는 활동, 공중기동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활동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부대는 요구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한 문헌은 승리의 기준을 적의 격멸이 아닌 작전의 성공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강뉴대대의 253회 전투는 공격, 방어, 수색, 매복, 정찰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강뉴대대가 모든 공격작전 시 공격 목표를 확보하였고, 모든 방어작전 시 방어진지를 고수하였으며, 모든 수색, 매복, 정찰 활동 시 그것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였다면, 253전 253승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강뉴대대의 전투기록을 보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전투 사례가 존재한다.

<사례 #1> 1951년 9월 12일 소부대 공격 전투

“강뉴대대는 소대 병력을 차출해 적의 주방어선 근처에 있는 악마 고지를 공격하여 적군을 사살하고 점령하는 명령을 받았다. 테파라 중대장은 ~. 이읍 소대장이 밤이 이속하여 적의 진지로 출동한 후 2시간 만에 적과 조우했다. 중공군도 ~. 에티오피아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접전 끝에 ~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고지 뒷면에 숨어 있던 중공군이 ~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던 중공군 ~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치열한 공방전 중에 ~. 적은 에티오피아군을 ~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레마 병사 ~ 모두 생환했다. 퇴로를 만든 레마 병사만 제외하고.”⁸³⁾

83)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9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17~418쪽

<사례 #2> 1952년 7월 24일 소부대 공격 전투

“티라이에 중위는 철통 요새로 알려진 적의 358고지를 공격해 점령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저녁 10시 반 부대를 출발해 적진으로 향했다. 358고지에 소리 없이 오르자 ~ 포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티라이에 중위와 대원들은 ~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을 밀어붙이던 티라이에 중위와 선임하사가 동시에 쓰러졌다. 지휘자를 잃은 ~ 베르하누 상병의 지휘하에 ~ 각개전투를 벌였다. 전사들은 무서운 투혼으로 밤새 싸워 적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후 사망한 전우의 시체를 수습하고 부상자를 부축해~ 인근 은신처로 이동했다. 그들은 계속된 적의 박격포와 자주포의 포탄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본진에 귀환했다.”⁸⁴⁾

사례 #1과 #2는 강뉴대대 장병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 소부대 공격 전투를 수행한 강뉴대대 작전부대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용맹함과 단결력으로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부대 복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부대 복귀를 두 전투 사례에서 승리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사례 #1의 이윤 소대장과 사례 #2의 티라이에 중위에게 부여된 임무는 지정된 목표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전투 사례는 실패한 작전이라고 가혹하게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승리한 전투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승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뉴대대의 놀라운 전투 결과를 가장 자랑스러워할

84) 키몬 스크르딜스, 앞의 책, 2010, 130~13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445~446쪽

당사자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후손들이 제작한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음도 참고되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다.⁸⁵⁾ 따라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는 253전 253승이 아닌, 대부분 전투에서 임무 달성(승리)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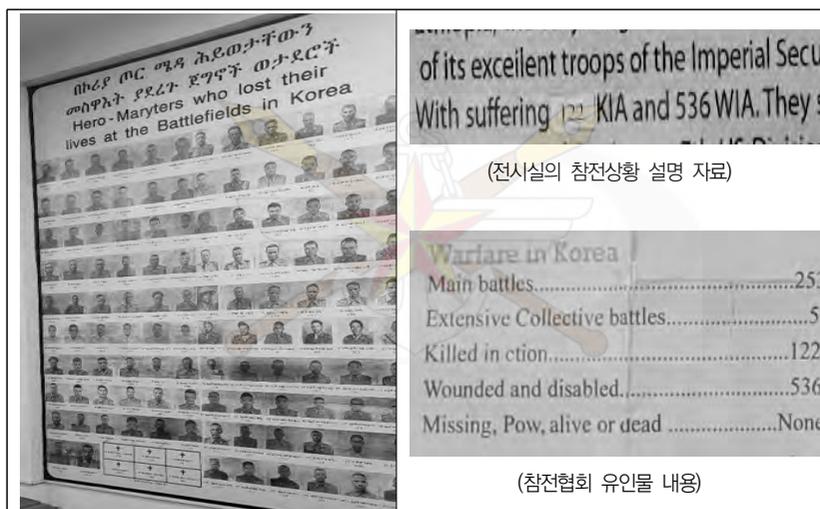
국내 문헌과 출처는 강뉴대대의 전사자를 124명, 122명, 12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필자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아디스아바바 한국전쟁 참전공원에 건립된 참전 기념탑에는 <그림 3>의 사진 자료와 같이 전사자를 122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1968년 춘천에 세워진 동일 형태의 기념탑 기록(전사자 122명)과 다른 내용이다. 게다가 현지의 기념탑 앞에는 122개의 추모석이 놓여 있어 전사자별로 추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3> 기념탑과 추모석

85)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후손으로 구성된 참전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 전시된 자료, 참전 협회에서 제작한 2건의 문서가 있다.

둘째, 기념탑에 인접해 있는 강뉴부대 박물관(참전기념관) 전시실의 전사자 현황에는 <그림 4>의 사진 자료와 같이 122명의 전사자 얼굴, 이름, 군번이 제시되어 있었고, 참전상황을 설명하는 전시자료에도 전사자는 122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된 흔적이 있어서 최초 만들어진 전시자료에는 다른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⁸⁶⁾ 또한,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협회가 제작한 유인물에도 전사자는 122명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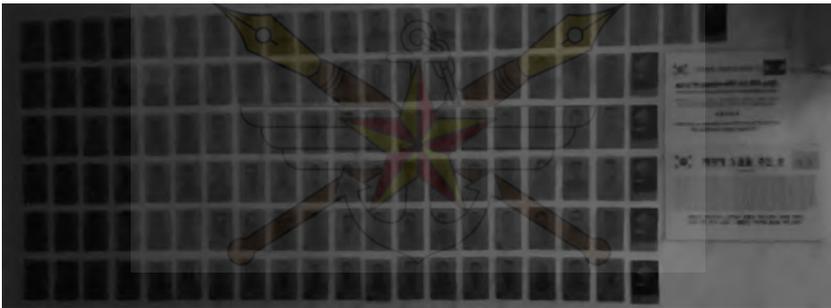


<그림 4> 박물관의 전사자 현황, 전시자료, 유인물 내용

셋째, 아디스아바바의 트리니티 성당에는 에티오피아의 황제와 총리를 포함한 주요 인사의 시신이 안장된 장소이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6·25전쟁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에티오피아 장병들의 시신도 함께 있다. 필자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시

86) 박물관 내부의 전시자료는 대부분 한국에서 제작되어 이곳으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최초 전시자료는 한국 춘천의 참전기념관 전시자료와 같은 내용의 121명 전사자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에 트리니티 성당은 전사자가 위치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현장 확인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지 무관이 그전에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전사자의 숫자를 점검할 수 있었다. 성당 지하의 공간에 보관된 전사자의 시신 수는 모두 122구였으며, 이를 나타내는 현황이 <그림 5>의 사진 자료와 같이 지하 시설 한쪽 벽면에 기록되어 있다.⁸⁷⁾ 이처럼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의 전사자를 122명으로 통일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트리니티 성당 지하의 전사자 명부

한국의 문헌 자료와 에티오피아 현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은 전사자를 121명으로, 에티오피아는 122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후의 한국 문헌에서 122명의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전사 또는 사망자로 표시하여 여전히 전사자는 121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⁸⁾ 결

87) <그림 5>는 현지 무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캡처한 것이다. 지하 공간에는 조 명시설이 없어서 동영상이 전반적으로 어둡게 촬영되었다.

88) 다만,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은 전사자에 대한 기록을 121명과 122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국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에서 121명의 전사자는 공동으로 인정하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한국은 사망자로 간주하고, 에티오피아는 전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망자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⁸⁹⁾

여기서 전사자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전사자(KIA, killed in action)는 전투에서 사망한 인원을 말하며,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자(DOW, died of wounds)와 구분한다. 반면, NATO에서는 전투에서 얻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도 전사자에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 문헌의 전사자 집계는 미 국방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에티오피아는 NATO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사자 124명의 기록은 전투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자(비전투 손실)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사자를 121명 또는 122명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적용기준의 차이이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교적 차원에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티오피아 외교 관계에서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은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며, 에티오피아군의 전사자 수는 전쟁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사실이므로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에티오피아가 122명의 전사자 시신을 트리니티 성당 지하 공간에 안치하고 있고, 한국의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도 전사자를 122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사자의 수는 122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89)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4쪽.

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인원과 기간

에티오피아군 파병 인원 6,037명은 6·25전쟁 참전 인원 3,518명과 구분되는 숫자이다. 이 숫자에는 3,518명 외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에 지속 주둔한 에티오피아군의 숫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037은 직접적인 전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에티오피아의 기여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때 필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는 한국-에티오피아 간 외교적 행사에 자주 등장한다.

필자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6,037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집계된 것인지 그 근거를 찾기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협회가 제작한 유인물⁹⁰⁾에도 전체 숫자만 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의 도출 경위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참전협회 담당자는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필자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총 파병 인원은 총 파병 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파병 기간이 길수록 파병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문헌에서는 파병 기간을 1956년 또는 1965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는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은 1956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기록은 참전협회의 유인물 자료로서, 자료에는 1956년까지 5년간

90) 유인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엔 현장에 따라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이 1951년부터 1956년까지 5년간 파견되었다. 강능대대 제1, 2, 3진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였고, 강능대대 제4진과 제5진 강능중대는 정전협정 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파병하였고, 총 파병 인원이 6,03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은 기념관 전시실의 파병부대 지휘관 현황으로, 이 자료도 파병 기간을 제5진, 1956년까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자료 모두 강뉴대대는 제1진부터 제4진까지는 대대급 규모였고, 마지막 제5진은 중대급 부대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현지 기록의 문제는 제1진부터 제5진까지의 인원을 합했을 때, 전체 인원이 6,037명으로 집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록상 제3진까지의 인원이 3,518명이고, 제4진은 1,270명이며, 제1진과 파병되었다가 1952년에 철수한 에티오피아군 사령부 인원 35명을 합하면, 총 4,823명이다. 따라서 제5진까지의 총 파병 인원이 6,037명이 되려면 제5진의 파병 인원은 1,214명이 되어야 하지만, 중대급 규모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파병 인원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제5진 강뉴중대의 병력 현황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강뉴부대의 파병은 1956년까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강뉴부대의 총 파병 인원은 6,037명보다 작다고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군의 한반도 파병은 강뉴부대 파병과 강뉴부대 철수 후 잔류한 인원을 포함한 파병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 한국전쟁 참전협회는 강뉴부대 파병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뉴부대뿐 아니라 유엔사 연락반과 간호사들도 함께 파견하였고, 유엔사 연락반 요원은 1965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국내 언론은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철수를 보도하였고, 1960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뉴부대 철수

후에도 에티오피아 연락반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¹⁾ 따라서 1965년 에티오피아군의 최종 철수는 연락반 철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 연락반 철수는 1975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⁹²⁾ 이 문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문헌 정보, 에티오피아 현지 정보, 국내 언론 정보, 정부의 외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강뉴부대는 1956년까지 5년 동안 제1진부터 제5진까지 약 5,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강뉴부대 철수 이후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지만, 1965년까지 파견한 인원과 1975년까지 파견한 인원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1975년까지 유엔사 연락반 요원은 지속 파견되었으나, 1965년까지는 별도의 소규모 부대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6,037명의 숫자는 강뉴부대를 포함하여 정전협정 이후에 파견된 모든 에티오피아군을 포함한 숫자임이 분명하다. 에티오피아군의 총 파병 인원과 기간에 관한 사실은 위의 정리처럼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검증이 필요하다.

91)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1쪽; 조선일보, 1956년 7월 13일. “에티오피아 부대 약 1개 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경향신문, 1960년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 휘하에는 한국, 미국, 토이기(터키 인용자), 태국군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전란 때 유엔군의 일익을 맡았던 영국, 불란서, 에티오피아, 희랍,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사령부에 각각 연락장교단을 파견하고 있다”

92) 김도민, 앞의 논문, 2023, 12쪽; 외교사료관, 「주한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 문제」, 생산년도 1975, 생산과 동부아프리카, 분류 729.54, 공개년도 2006, 등록번호 8356. “1975년 6월 14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은 최종 철수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과 자료 수집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통해 식별한 검증 소요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 에티오피아군의 파병 기간과 인원 등 4가지였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며, 현실주의적 관점을 포함하는 설명이 바람직하다. 즉,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 동기는 집단안보에 대한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유엔(국제사회)에서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통합을 촉진하고 낙후된 에티오피아의 군사 및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를 253전 253승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승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강뉴대대의 전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25전쟁에서 강뉴대대의 전투 결과는 ‘253전 253승’이 아닌, ‘대부분 전투에서 임무 달성(승리)’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강뉴대대의 전사자 수는 전사자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따라 121명 또는 122명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사자 수는 외교적 차원에서 122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가 전사자

수를 122명으로 공식화하였고, 한국의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 에티오피아의 전사자를 122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에티오피아의 파병 기간과 인원 에 대한 검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4가지 검증 소요에 대한 해답을 현지 방문과 현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필자를 이를 위해 한국 전쟁 참전협회가 운영하는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하고 현지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대학 등 현지 교육 기관을 방문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 대사관과 KOICA 등 한국의 정부 조직을 방문하였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민간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결국 검증 소요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필자의 자료 수집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빈곤과 내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향후 에티오피아의 내정이 안정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역사를 연구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후속하여 향후 연구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에 관한 한-에티오피아 공동 연구, 그리고 강뉴대대의 놀라운 전투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전자는 군사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보훈 외교적 차원에서도 함의를 가질 수 있고, 후자는 한국군의 정신전력 연구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0권 유엔군 참전편』, 197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I, 197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VI, 197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99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 201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일보, 『한 눈으로 보는 유엔 참전군』, 2023.
- 김도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향』, 『강원사학』 39(2023) DOI:http://dx.doi.org/10.31097/KHR.2022.39.01
- 키몬 스크드딜스(Kimon Skordiles), Hi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s in Korea KAGNEW, 1954, 송인역 역,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 2010.
- Bartholomees, J. Boone, “Theory of Victory” Parameters, summer 2008.
- James F. Schnabel·Robert J. Wal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 Paul B. Henze, The United States and the Horn of Africa: History and Current Challenge, RAND Note, 1990.
-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2013.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 Army), 2005.
- 경향신문, 1960년 7월 24일
- 조선일보, 1956년 7월 13일

외교사료관, “65378;주한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 문제”, 생산년도 1975, 생산과 동부아프리카, 분류 729.54, 공개년도 2006, 등록번호 8356.

재한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에티오피아), https://www.unmck.or.kr/kor/04_memory/?mcode=0404040000&mode=1&nation=ETHIOPIA&page=5 (검색일: 2024.1.26.)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https://blog.naver.com/blclass46/222140117336> (검색일: 2024.1.26.)

Neha Banka(June 26, 2020), “70 years of the Korean War: Why Ethiopia jumped into a distant war and remained unvanquished”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research/70-years-of-korean-war-why-ethiopia-jumped-into-a-distant-war-and-remained-unvanquished-6473991/>(검색일: 2024.1.27.)

U.S. DOS Office of Historia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the near east and Africa, volume V,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 195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5/d698>

wikipedia, 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 https://en.wikipedia.org/wiki/Ethiopian_National_Defense_Force(검색일: 2024.1.27.)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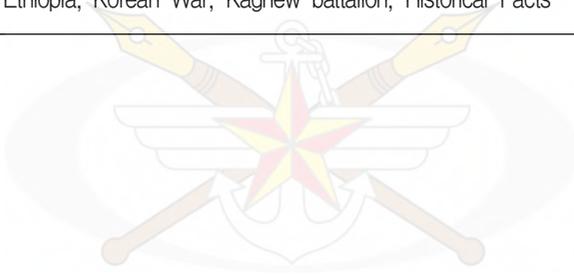
Verifying the Historical Facts of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Jang Jae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controversial historical facts related to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There were four verification needs ident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Ethiopia'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KIA(Killed In Actions) in the Kagnew Battalion, the results of the battle of the Kagnew Battalion, and the length and number of troops dispatched by the Ethiopian army. The research method applied for verification was based on a review of historical literature, and interview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mplementarily applied through field visits to Ethiopia. As a result of studying the four verification needs, first, the records of Ethiopia'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needed to be revised. Korean literature consistently explains Ethiopia'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the war with historical experience and enthusiasm in Ethiopia's collective security, but this was evaluated as a record that excluded realistic reasons that Ethiopia must consider at the time. Second, recent Korean literature records the results of the Kagnew Battalion's battle as 253 wins out of 253 battles, which needed to be revised. This is because there are cases of the Kagnew Battalion's battle that do not meet this standard even if the meaning of military victory is broadly interpreted. Third, if Korea and Ethiopia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KIA, the records of the number of Kagnew Battalion's KIA may differ. However,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number of KIA at the diplomatic level. Fourth, it is reasonable to organize Ethiopia's dispatch period until 1956 for the Kagnew Unit and 1965 for the Ethiopian liaison officers of the UNC. However, the source and evidence for the total number of troops dispatched by the Ethiopian army of 6,037 need to be further verified.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erms of verifying ambiguous or conflicting historical facts related to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can also be helpful for ROK–Ethiopia veterans' diplomacy.

Keywords: Ethiopia, Korean War, Kagnew battalion, Historical Fact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267-308
<https://doi.org/10.29212/mh.2024..131.2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딜레마

김경민 |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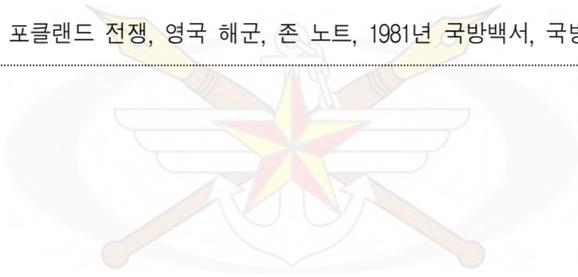
목 차

1. 들어가며
2. 1981년 국방백서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해군력 감축 계획
3. 포클랜드 전쟁의 경과와 전쟁 양상
4. 포클랜드 전쟁으로 본 영국 해군 전력에 관한 분석
5. 나가며

초 록 그동안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들은 군사, 역사, 외교, 정치,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본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포클랜드 전쟁의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원정 작전으로 본질적으로 해전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따라서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해군의 전력에 대한 이해는 전쟁의 성격과

영국 국방정책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국방부장관 존 노트에 의해 발간된 국방백서 『영국 국방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계획된 해군력 감축 문제로 온전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본 논문은 1981년 국방백서의 내용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전력을 분석하여, 그 전쟁의 양상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방백서에 언급된 해군력 감축 내용과 영국의 국방계획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포클랜드 전쟁 경과를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전쟁 이후 드러난 영국 해군 전력의 문제점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 고찰한다.

주제어 : 포클랜드 전쟁, 영국 해군, 존 노트, 1981년 국방백서, 국방정책



1. 들어가며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포클랜드 제도(Falklands Islands)¹⁾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the Falklands War/Guerra de las Malvinas)’²⁾이 벌어졌다.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이곳을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 점령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6월 14일 최종적으로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포클랜드 전쟁은 20세기 후반 영국이 원거리 작전 지역에서 단독으로 대규모의 전방위적인 군사 행동을 전개한 무력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은 물론 현대 전쟁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포클랜드는 유럽의 해외 식민지 경쟁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16세기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간의 사소한 분쟁의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영토 분쟁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포클랜드 제도를 대서양 남부 해협과 케이프 혼으로 통하는 주요 접근 지점으로 간주했다.³⁾ 프랑스는 동포클랜드를 최초로 식민지화했지만 1767년 이 섬을 장악한 스페인의 항의와 보상 끝에 결국 철수했고, 영국은 1760년대

1)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북서쪽으로 480km 떨어져 있는 제도로 주요섬인 이스트포클랜드(East Falklands)·웨스트포클랜드(West Falklands) 섬과 200여 개의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남미권에서는 포클랜드 제도를 말비나스로 지칭하며 따라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명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클랜드 전쟁으로 통일한다.

3) Jorge O. Laucirica, "Lessons From Failure: The Falklands/Malvinas Conflict," *Seton Hall Journa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2000): 79-80.

중반에 서포클랜드와 인근 섬을 점령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오랜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포클랜드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이 아르헨티나로 계승되어 자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입장인 반면,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 이전 400년 동안 섬을 점령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 1982년 기준으로 약 150년 이전부터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 아르헨티나는 1965년 이 문제를 유엔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포클랜드 전쟁 전까지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다.⁴⁾

아르헨티나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포클랜드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것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기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전 대통령 후안 페론(Juan Perón)의 미망인이었던 이사벨 페론(Isabel Perón) 대통령이 1976년 군부에 의해 축출되면서 군부정권으로 교체되었고, 포클랜드 전쟁 직전인 1981년 12월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갈티에리 정권은 산업 생산량 감소, 임금 하락, 실업률 상승,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통치에 실패하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다. 군부는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갈티에리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폭 하락하면서 내정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갈티에리는 국내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말비나스 침공을 결정하게 되었다.⁵⁾

4) Steven G. Stransky,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40 (2012): 474-476.

5) 아르헨티나 전쟁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Stransky,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이 전쟁은 1982년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다. 당시 영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국제관계의 핵심은 서방 진영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냉전 상황에 있었다.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세계가 양분된 20세기 말의 냉전 상황에서, 포클랜드 전쟁의 당사국인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서방측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 주었다.⁶⁾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쟁은 당시 영국 국방전략의 핵심에서 벗어난 영역이었다. 영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의 전략을 중심으로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 Organization)’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 국방에 있어 최우선 과제였다. 1982년 당시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영국 또한 장기간 지속된 냉전 상황 속에서 동서 대결이라는 전략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미국과 나토 대 소비에트 연방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명료한 이분법적 대결 구도는 오히려 그 외 다른 세계가 안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었다.⁷⁾

영국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포클랜드 제도를 탈환하며 승전의 기쁨을 누렸지만, 대처 내각은 냉전 구도에서 벗어난 이 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전후 일부 수정된 국방전략 등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483-501.

6) Sophie Thérèse Ambler, Thomas C.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11-12.

7) 1998년 Strategic Defence Review는 이분법적 냉전구도가 잠재적인 안보 위협성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The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8/91, *The Strategic Defence Review White Paper 1998*, 14.

포클랜드 전쟁 전반에 관해 야당인 노동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기존 국방전략을 고수했고, 그 결과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의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전후 인과관계로 따질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그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은 군사적으로 영국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

그동안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들은 군사, 역사, 외교, 정치,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본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포클랜드 전쟁의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원정 작전으로 본질적으로 해전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따라서 포클랜드 전쟁 전후 영국 해군의 전력에 대한 이해는 전쟁의 성격과 영국 국방정책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국방부장관 존 노트(John Nott)에 의해 발간된 국방백서 『영국 국방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에 계획된 해군력 감축 문제로 온전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본 논문은 1981년 국방백서의 내용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전력을 분석하여, 전쟁이 영국 해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전쟁의 양상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방백서에 언급된 해군력 감축 내용과 영국의 국방계획을

8) Ambler,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7-13.

분석하고, 3장에서는 포클랜드 전쟁 경과를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전쟁 이후 드러난 영국 해군 전력의 문제점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 고찰한다.

2. 1981년 국방백서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의 해군력 감축 계획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논쟁에서 단연 핵심이 되는 것은 전쟁 발발 직전 해인 1981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인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내용이었다. 총리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국방부장관 존 노트(John Nott)의 주도하에 작성된 이 국방백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나토 임무에의 집중과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이었다.⁹⁾ 이 중 국방예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보 측면에서 자원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방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9)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Cmnd 8288 (London: HMSO, 1981), 3.

4. 첫째, 우리가 할당할 계획인 자원이 증가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군 구조와 개선 계획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비용 증가, 특히 장비의 증가입니다. ...

5. 첫 번째 이유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변화의 이유는 프로그램 내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국방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장거리에서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현대 무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기나 수상함 등 주요 플랫폼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려면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하여 실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국방 노력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최선의 관점에서 반영하는 새로운 병력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¹⁰⁾

노트는 국방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비용증가로 인해 전 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국방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곧 국방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절감 혹은 폐지할 것임을 의미했다. 특히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한다는 것은 노트에게 최신 무기에 보다 더 집중한다는 것이었고, 국방예산 집행의 그러한 효율성 추구는 삼군 중 해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트는 플랫폼보다 최신 무기 보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해군에게 있어 이러한 무게중심의 이동은 수상함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10)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4.

21. 정부의 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영국의 해양 기여의 미래 형태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22.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해양전의 모든 주요 무기 플랫폼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과 비용은 대칭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적의 개발 능력에 맞춰 최고 수준의 모든 유형의 플랫폼을 대량으로 유지할 여력이 없는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강조점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간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규모의 수상함대를 유지함과 동시에, 소련의 최신 공중 발사 및 해상 발사 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독자 작전에서 방어에 필요한 고가의 정교한 함정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¹¹⁾

당시 영국 국방계획의 우선순위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 임무에 있었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었고, 1981년 이전부터 영국이 고수했던 국방 기조였다.¹²⁾ 영국은 1956년 ‘수에즈 위기(The Suez Crisis)’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1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영국군 감축을 결정했고, 1975년에는 3개의 공수여단과 낙하산 여단을 해체하기로 하며 나토 역외 지역에서의 역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³⁾ 이는 영국 국방력의 주요 전개 범위를 영국 본토와 유럽, 동대서양 정도로 한정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1981년 국방백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⁴⁾

11)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8.

12) Peter M. Jones, “British Defence Policy: The Breakdown of Inter-party Consensu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1987): 111-114.

13) Simon C. Smith, “Britain’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Persian Gulf: A Pattern Not a Puzzle,” *Journal of Imperial & Commonwealth History*, vol. 44 (2016): 328-351.

14)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5.

영국 국방계획의 핵심이 소련으로부터의 유럽 방어와 소련의 핵잠수함 대응에 있었던 만큼, 노트에게 영국 해군 재래식 전력의 핵심 요소였던 함포를 장착한 전함과 상륙함과 같은 기존 수상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트는 다가오는 시대의 해군 전력을 동대서양에서 대잠전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SSN)의 운용 및 육상에서 발진하는 해상초계기, 최소한의 수상 호위함으로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백서 도입부터 강조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영국 해군의 해상 원정 전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노트는 해병대 폐지까지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인트레피드 함(HMS Intrepid)과 피어리스 함(HMS Fearless)과 같은 상륙수송함(Landing platform dock, LPD)만 폐하기로 결정했다.¹⁵⁾ 원정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건조 및 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항공모함도 감축 대상이 되었다. 노트는 당시 영국이 보유한 구형 항공모함이었던 헤르메스 함(HMS Hermes)¹⁶⁾과 3척의 인빈시블급 경항모 중 한 척을 매각하기로 했다. 호위함과 구축함 또한 기존 65척에서 50척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8척은 예비함으로 남겨두기로 했다.¹⁷⁾

1981년 노트의 국방백서에서 드러난 향후 계획들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감축의 대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군이 바

15) A. Dorman, "Back to the Future: the Royal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A. Dorman, M. Smith and M. Uttley (eds),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Basingstoke: Macmillan, 1999, p. 172. 상세한 결정과정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ndrew Dorman,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vol. 15 (2001): 107-108.

16) 헤르메스는 1986년 인도에 매각되었다.

17)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10.

로 해군이라는 점이었다. 당연하게도 영국 해군 내에서 뿐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반발과 심각한 우려가 표출되었다.¹⁸⁾ 노트의 이러한 국방정책 기조는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비판받았는데, 비판의 가장 큰 근거는 그가 국방 문제를 오직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노트와 국방부 참모들은 냉전이라는 큰 틀에서 군사, 외교, 정치, 경제의 모든 측면들을 고려했겠지만, 그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한정된 재원으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 예산의 문제는 노트에게 있어 소련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확실하다.

사실 대처는 1979년까지만 해도 국방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198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의 전체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영국의 경제 부흥 계획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국방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대처가 전임자인 프랜시스 핼(Francis Pym)을 노트로 교체한 것은 바로 노트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할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¹⁹⁾ 노트는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그가 보기에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국방예산의 확충안과 지출 구조를 수정하는 데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노트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운영분석국(Defence Operational Analysis Establishment, 현재는 Defence Operational Analysis Centre로 변경)의 연구 결과를 크게 신뢰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동대서양에서 소련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18) 일레로 국방부 정부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이었던 키스 스피드(Keith Speed)는 노트의 국방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질되었다. 스피드는 이후 보수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의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데 선두에 섰다.

19) Edward Hampshire, “Strategic and Budgetary Necessity, or Decision-making ‘Along the Grain’? The Royal Navy and the 1981 Defence Review,”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2016): 959.

서는 수상함보다 해상초계기와 핵공격잠수함이 훨씬 더 효율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이를 해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트에게 이러한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이 연구를 받아들이면 군함수를 줄일 수 있고, 군함수가 줄어들면 교체 주기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⁰⁾ 따라서 노트는 상륙함을 비롯한 수상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미사일에 취약한 수상함을 다수 운영하는 것보다 미사일과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해군은 노트의 이러한 분석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방부와 재무부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 그 결과 노트의 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 2월 영국은 항공모함 인빈서블(HMS Invincible)을 1억 7,500만 파운드에 호주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고, 상륙함을 교체 없이 폐기하기로 한 결정도 번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82년 3월 포클랜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20) Dorman,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102-103.

3. 포클랜드 전쟁의 경과와 전쟁 양상

〈표 1〉 전쟁 경과²¹⁾

1982년 3월 19일	아르헨티나 고철 노동자들이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하여 아르헨티나 국기를 게양
3월 22일	영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공식 항의서를 보냄.
3월 26일	아르헨티나 해병대가 쇄빙선 바히아 파라이스(Bahia Paraíso)를 타고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
3월 30일	아르헨티나 항공모함, 호위함 및 수륙양용 부대가 바다로 출동
4월 2일	아르헨티나 특공대가 스탠리 근처에 상륙하고 대규모 상륙군이 뒤따라 상륙, 정부 청사 포위 공격 후 영국 주둔군 항복
4월 3일	영국 정부는 필요 시 포클랜드 제도 탈환을 위한 기동부대 출항을 발표
4월 5일	영국 기동부대 남대서양으로 출발
4월 12일	영국이 포클랜드 주변 200마일을 해상제한구역(Maritime Exclusion Zone, MEZ) ²²⁾ 으로 선포, 4월 30일에는 전면제한구역(Total Exclusion Zone, TEZ)이 됨.
4월 21-25일	영국군 사우스조지아 섬 탈환
4월 29일	영국 기동부대 MEZ 도달
5월 2일	영국 핵잠수함 컨커러(HMS Conqueror)의 어뢰에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너럴 벨 그라노 호(General Belgrano) 침몰
5월 4일	셰필드 함(HMS Sheffield)이 아르헨티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엑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침몰
5월 20일	유엔(UN)에서 마지막 실질적 평화회담 결렬

21) Edward Hampshire, *The Falklands Naval Campaign 1982: War in the South Atlantic* (Oxford: Osprey Publishing, 2021), Chronology.

5월 21일	영국군 산 카를로스(San Carlos) 상륙작전 시작
5월 21-25일	산 카를로스 워터 전투(Battle of San Carlos Water).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공습으로 아덴트함(HMS Ardent), 엔테로프함(HMS Antelope), 코벤트리함(HMS Coventry), 대형 수송선 애틀랜틱 컨베이어(Atlantic Conveyor)가 침몰, 이외 다수 함정들도 피해를 입음. 상륙군과 군수물자가 무사히 상륙
5월 28-29일	구스 그린 전투(Battle of Goose Green)
5월 29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공습, 영국 측 피격된 함선 없음.
6월 11-14일	스탠리 전투(Battle for Stanley), 영국군 마운트 해리엇(Mount Harriet), 투 시스터즈(Two Sisters), 롱던 산(Mount Longdon)에 대한 공격에 이어 와이어리스릿지(Wireless Ridge)와 텀블다운(Tumbledown) 공격
6월 12일	글러모건함(HMS Glamorgan)이 엑조세에 피격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 항복, 포클랜드 전쟁 종료

포클랜드 전쟁은 1982년 3월 19일 사우스조지아 섬에 허가 없이 상륙한 아르헨티나 고철 상인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게양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포클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영국 남극탐사대(British Antarctic Survey)의 기지였고 포클랜드 제도에 종속된 섬이었다. 3월 26일 아르헨티나는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격시켰다. 3월 말이 되어서야 영국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에 없었던 이 남대서양에서의 사건이 중대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월 31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로 관심을 돌렸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점령할 의도로 상당

22) MEZ는 20세기 초부터 교전 당사국들이 무력충돌 시 광범위한 해양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전장관리를 위해 설정한 해양 구역 개념으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역의 적법성은 주로 구역의 기능과 교전국이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하는 집행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Raul Pedrozo,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9 (2022): 527-528.

한 규모의 기동부대를 파견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²³⁾ 영국은 뒤늦게 미국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침공을 중단시키려는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아르헨티나 기동부대는 4월 1일 야간에 포클랜드 제도의 포트 스탠리(Port Stanley)에 도착하여 포클랜드 점령 작전인 ‘로사리오 작전(Operation Rosario)’을 개시했다. 4월 2일 아르헨티나군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여 한 개 소대만 남아있었던 영국 해병대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3일에는 사우스조지아 섬을 점령하며 사실상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게 된다.

당시 포클랜드에는 경무장한 쇄빙초계선인 인듀런스(HMS Endurance)와 수도인 스탠리에 주둔한 해병대 한 소대(해병 68명, 해군 소속 수로학자 11명) 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에 대한 수적 열세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노트의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나듯, 영국군의 우선순위는 소련에 대한 대응이었고 해외 주둔군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냉전시대 그 어떠한 전략적 이점도 없었던 포클랜드는 영국 국방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해외 기지였다. 이에 해군에 대한 감축까지 더해져 포클랜드 주둔군은 축소된 상태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침공 당시 유일한 영국 함정이었던 인듀런스는 전투용 함정이 아니었고 1982년에 교체 없이 퇴역시킬 예정이었던 배였다.

영국에 부정적인 또 다른 요소는 포클랜드 제도의 지리적 위치였다.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동쪽으로 400마일 정도 떨어진 데 반해, 영국에서는 남서쪽으로 무려 8,00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다. 이는 영국이 자국의 육상 기반 방공망에서 벗어나 바다를 통한 장거리 원정을 감행해야 한다는

23) Lawrence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New York: Routledge, 2005), xvii.

것을 의미했다. 당시 포클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군사 시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벨리즈(Belize,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시)와 어센션 섬(Ascension Island, 남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에 있었고, 이러한 시설은 긴급 작전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8,000마일 거리, 배로 약 3주가 걸리는 영국 본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²⁴⁾ 따라서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해상전이 될 것이었고, 영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에 상륙군을 상륙시키고 이후 육상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영국은 4월 2일 날아온 이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당황했으나, 대처 정부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쟁이라는 강경한 대응책을 선택하여 바로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한 기동부대(Task Force)를 구성했다. 4월 5일, 포츠머스에서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원정 기동부대가 출동하면서 작전명 ‘코퍼레이트 작전(Operation Corporate)’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중해, 대서양에서도 전투·지원함정들이 합세하면서 영국은 총 44척의 전투함정, 22척의 군수지원함, 약 200대의 항공기, 그리고 9,500여명의 지상 및 상륙부대 병력을 포클랜드에 투입했다. 또한 영국은 59척의 민간 선박을 징발, 개조하여 각종 무기와 탄약, 연료, 식량 등의 수송에 동원했다.²⁵⁾

24) 게다가 남반구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하고 영국에 적대적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대서양 원정 시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미국 또한 당시 레이건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영국과 포클랜드 사이에는 전쟁 지원을 위한 적절한 기지가 없었다. Kenneth L. Privratsky, *Logistics in the Falklands War*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4), 5-7.

25)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영국 전력의 상세한 목록과 함선의 제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오. David Brown,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London: Guild, 1987), 358-370.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군사적 목표는 포클랜드 제도의 탈환이었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사우스조지아 섬이었다.²⁶⁾ 전쟁 초반에는 영국의 특수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륙을 위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 4월 21일 영국 특수부대 SAS(Special Air Service)와 SBS(Special Boat Service)가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로 실패했고, 25일 다시 특수부대, 해병대가 포함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하여 사우스조지아 섬을 탈환했다.²⁷⁾ 4월 29일에는 영국 기동부대가 출항 24일 만에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다음날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200마일을 '전면제한구역(Total Exclusion Zone, TEZ)'으로 선포하고, 영국 국방부의 허가없이 이 해역에 들어오는 군함, 항공기를 국적 불문 공격할 것임을 밝혔다.²⁸⁾

5월 1일, 영국은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포트 스탠리 비행장과 구스그린(Goose Green, 동포클랜드의 정착지)을 공습했다. 아르헨티나 또한 잠수함을 이용해 영국의 수상함을 공격했다. 이때까지 양측은 서로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5월 2일 영국의 핵추진잠수함(SSN) 킨커러(HMS Conquerer)가 포클랜드 남서쪽에서 기동중이던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 9,500톤)를

26) 영국이 포클랜드 본토가 아닌 사우스조지아 섬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것은 포클랜드 작전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Robert Redding, Anna Beier-Pedrazzi, Gina Salvia, Stefanie Mitchell, and James George,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 Journal*, vol. 6 (2020): 23.

27) Redding,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23-25.

28) Pedrozo,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529.

어뢰 공격으로 격침시키면서 국면이 전환되었다.²⁹⁾ 이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해군은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진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대잠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육지 기반 방공망을 벗어난 해역에서 전투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포클랜드에서 철수했다.³⁰⁾ 이후 아르헨티나 해군의 수상함들은 자국 연안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에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5월 4일 아르헨티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프랑스제 대함 미사일 엑조세(Exocet)에 영국의 Type 42 구축함인 셰필드(배수량 4,800톤)가 피격당하면서 침몰했다.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화재로 셰필드는 피격 6일 후 침몰했다. 이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치열한 공대공, 함대공 전투를 이어갔다.

영국은 포클랜드 탈환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지상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새벽, 포클랜드 본토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상륙지점을 산 카를로스(San Carlos)로 잡고 영국 상륙함 피어리스와 인트레피드가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제3해병여단 중심의 영국군 병력 4,500여 명이 수상함의 함포 사격과 해리어

29) 이 공격으로 제너럴 벨그라노가 침몰하면서 아르헨티나군 약 350여명이 전사했다. 이 숫자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포클랜드 전쟁 중 사망한 아르헨티나군의 절반 이상이 이 벨그라노 침몰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함선은 TEZ 밖 30해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영국의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한 350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 수는 국제법과는 별개로 도덕적으로 전쟁의 과잉 공격의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Saad Gul, "The Bells of Hell: An Assessment of the Sinking of ANR General Belgrano in the Context of the Falklands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8 (2005): 81-120; Thomas Eason, Oliver Daddow, and Rory Cormac, "From Secrecy to Accountability: The Politics of Exposure in the Belgrano Affair,"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2020): 542-560.

30)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253-254.

전투기의 엄호 아래 포클랜드 동부 북서쪽의 산 카를로스에 상륙했다. 아르헨티나는 5월 21-25일 사이에 다수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영국군 상륙 지점에 대한 필사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해군의 Type 21(배수량 3,200톤) 호위함 2척인 앤텔로프(HMS Antelope)와 아던트(HMS Ardent), Type 42 구축함 코벤트리(HMS Coventry), 대형 수송선 애틀랜틱 컨베이어 (Atlantic Conveyor)가 격침되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산 카를로스 주변 16km 이내의 주요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5월 27일, 이제 영국군은 포클랜드에서의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5월 28-29일 영국군 공수대대가 다윈(Darwin), 구스그린을 점령했다. 이는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 스탠리로 향하는 진격로의 측·후방을 엄호하고, 다윈과 구스그린의 항만, 비행장을 확보하여 아르헨티나군의 병력 증원 및 군수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육군 제5여단도 합세하면서 영국군은 6월 11일부터 켄트 산(Mount Kent), 롱던 산(Mount Longdon), 텀블다운 산(Mount Tumbledown) 등의

31) 이 애틀랜틱 컨베이어의 침몰은 당시 영국 상륙군에 큰 타격이었다. 마이클 클랩 준장의 참모로 상륙함 피어리스에 탑승했던 마이클 앰블러 중령(Lieutenant Commander Michael Ambler, 2009년 작고)은 포클랜드 전쟁에 관한 미공개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5월 25일)우리는 항공모함이 엑조세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애틀랜틱 컨베이어가 피격되었다는 소식을 고주파 회로를 통해 들었다. [이 선박은] 스탠리 공격에 필요한 치누크 전투기 대부분과 막대한 양의 물자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았다. [애틀랜틱 컨베이어는] 그날 저녁 산 카를로스 들어와 하역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매우 침울한 분위기였고....” 그 결과 전후 대처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원정을 위한 능력에서 이견 없이 개선한 부분이 바로 대규모 군수물자 수송 라인인 확대였다. 중요한 물자가 한 척의 취약한 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의 위험성을 포클랜드 작전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Helen Parr, “COMAW Staff and HMS Fearless 1982,”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38.

전방 500-1,000m 고지에서 최종 목표인 포트 스탠리 탈환을 위해 아르헨티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영국군은 6월 14일 새벽 6시에 아르헨티나군의 마지막 요새를 함락 시켰고, 3시간 후 아르헨티나군은 영국군에 항복했다.³²⁾

포클랜드 전쟁은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 측 전사자는 민간인 5명을 포함하여 255명으로 집계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약 746명으로 추산되었다. 영국은 전술한 수상함 이외에도 헬리콥터 24대와 고정익 항공기인 해리어 전투기 10대를 잃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물질적 피해는 더 막대했다.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거의 모든 무기와 장비가 손실 및 손상되었다. 순양함 벨그라노 외에도 여러 척의 소형 함정이 침몰했으며, 100대 이상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가 격추되거나 추락했다. 작전 중 격추된 항공기의 수는 약 70대로 추정되었다.³³⁾

포클랜드 전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해상전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전력이 전쟁 승패에 핵심 요소였다. 따라서 1982년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평가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특히 영국 의회에서는 직전 해에 발간된 1981년 노트의 국방백서과 관련하여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가 노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있는 해군 전력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즉,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가 기존 영국 해군 전력의 유효성을 증명한 것인지, 아니면 노트의 국방개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포

32) 지상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Michael Clapp,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468-563.

33) Charles Maisonneuve,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in *The Falklands War*, Martin Middlebrook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2), 170-171.

클랜드의 교훈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영국의 국방계획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는 영국의 국방정책과 해군 전력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근거를 제공했을까?

4. 포클랜드 전쟁으로 본 영국 해군 전력에 관한 분석

1982년 12월 발간된 『포클랜드 작전: 교훈』(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이하 『교훈』)은 영국 정부가 포클랜드 전쟁을 자체 평가한 최초의 백서였다.³⁴⁾ 포클랜드 전쟁의 결정부터 승리까지 모두 대처 정부의 결정이고 뒤흔이었기 때문에 『교훈』에서 드러난 당시 영국 국방력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었고, 논란의 1981년 국방백서 또한 포클랜드 전쟁 승리에 일조한, 즉 ‘효율적이고 유연한’ 군사력을 갖추게 한 적절한 정책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훈』은 영국군의 승리에 기여한 국방 자산을 치켜세우고, 정책 수정 혹은 방향 전환이 아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군은 준비 상태, 전투력, 지도부의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상대였다. 영국 해군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몇몇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1981년 국방백서에서 축소하려고 했던 일부 해군 전력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34) 『교훈』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포클랜드 제도 탈환 작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 2부는 이 작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에 관한 분석, 3부는 향후 나토와 그 밖의 역외 지역에서 영국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London: HMSO, 1982.

밝혀졌다.

가. 방공과 상륙전의 중요성

포클랜드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는 영국 해군의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아르헨티나 공군, 해군의 항공기 사이에서 벌어졌다. 두 국가 사이의 함대공, 공대공 전투는 양측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전쟁의 중요한 국면이었던 만큼 영국의 방공 능력은 포클랜드 작전 분석의 중요한 주제였다. 8대의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격추한 영국 구축함에 장착된 대공 중거리 미사일인 시 다투(Sea Dart)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나, 영국의 수상 전력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적의 공대함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련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도록 맞춰진 영국 함대의 미사일 시스템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저고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특정 방향에서 100m 이상의 고도로 접근해오는 소수의 대공 표적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해수면에 근접하는 10m 이하의 저고도 비행(sea-skimming)이 가능한 고성능 대함미사일이나 고속 비행능력을 갖춘 다수의 항공기를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³⁵⁾ 그 결과 영국 수상전투함 2척이 아르헨티나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10척은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에 피격되었다.³⁶⁾ 그리고 3장에서 언급된

35) Graham Thomas, "The Falklands Campaign: Early Lessons," *British Army Review*, No. 173 (2018): 33-34

36) 영국 수상함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투하된 450kg의 단순 폭탄으로 인해 발생했고, 아르헨티나군의 쉬페르 에탕다르(Super Etendard) 전투기와 엑조세 미사일의 조합은 영국 해군 함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Alastair Filan,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London: Frank Cass, 2004), 54-55.

바와 같이 이들 가운데 4척이 침몰했다.

영국의 방공 능력은 무기 뿐 아니라 항공모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포클랜드 작전에서 영국은 헤르메스와 인빈서블 두 척의 항공모함을 출격시켰는데, 이들은 2만 톤 전후의 경항모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지휘통제함과 방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인빈서블은 신형 함정으로 영국은 이를 포함해 세 척의 인빈서블급 항모를 운용중이었고, 포클랜드 작전은 이 신형 경항모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장이었다. 물론 이들은 항공모함의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했으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가장 취약점을 드러냈던 함대 방공 능력은 영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는 평가 또한 받았다.³⁷⁾ 전후 분석에 따르면, 영국 해군의 항모 전단은 2척의 소형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3척의 측량선(survey ship), 2척의 구형 강습함, 8척의 구축함, 15척의 호위함, 2척의 연안 순찰함, 5척의 기뢰대응 트롤선(mine-countermeasure trawler), 1척의 쇄빙초계함 등 35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은 공중조기경보기(airborne early warning, AEW)가 부족하고, 방공 항공기가 28대의 시 해리어(Sea Harriers)와 14대의 RAF GR3 해리어에 불과하며,³⁸⁾ 근거리 대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호위함이 있는 등 많은 미흡한 점이 드러난 소규모 함대였다.³⁹⁾

즉 경항모의 적재량 한계로 영국군은 전체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항공기를 탑재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국 전투기의 종류와

37) 1982년 기준으로 영국의 마지막 재래식 대형 항공모함이었던 아크 로얄(HMS Ark Royal)은 이미 1979년에 퇴역한 상태였다.

38)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19.

39) Filan,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70.

수, 속도를 제한했고 특히 조기경보기(AEW)의 부재가 전후 영국군의 방공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장거리 공중 레이더(AWACS)의 대폭적인 강화, 근접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천후 전투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⁴⁰⁾ 전쟁 직후, 캐스퍼 와인버거(Casper Weinberger) 미 국방부 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알린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 중 하나로 다음을 언급했다.

해상/상륙 작전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은 제한된 수의 시 해리어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소형 항공모함을 사용했지만, 작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형 항공모함은 소량의 공중 공격과 방어만 제공했습니다. 사실 장거리 항공경보시스템과 공중공격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⁴¹⁾

한편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작전상의 중요한 부분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상륙전의 성공이었다. 산 카를로스 상륙전을 비롯한 포클랜드 지상 작전들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군의 역할은 전쟁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영국 정부는 『교훈』에서 해병대와 상륙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으나, 상륙군에 대한 결론은 역외 작전에서의 향후 역할의 중요성이 아닌 나토 내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처 정부의 국방 정책 우선순위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트 국방장관은 1982년 12월 14일 『교훈』의 내용에

40)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41) Reagan Library, Simi Valley, CA: Falkland Islands Box 103: “Military Lessons of the Falklands”, Weinberger memorandum for Reagan, 19 July 1982.

관한 하원에서의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포클랜드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이 나토 내에서 영국의 네 가지 주요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현대화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⁴²⁾ 이는 해병대의 축소와 상륙함의 추가 운용이 없을 것임을 밝힌 1981년 국방백서의 입장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대처 정부는 나토 방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영국군이 역외 전쟁이었던 포클랜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노트의 정책을 군의 유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즉, 나토 방어에 최적화된 영국군이 포클랜드 승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무력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것이다. 상륙부대 축소와 더불어 불거진 쟁점은 이 상륙전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상함의 함포에 관한 것이었다.

나. 수상함과 함포전 유용성의 재확인

수상함 함포의 유용성은 포클랜드 전쟁이 보여준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정익 항공기의 발달과 다양한 미사일 체계와 같은 첨단화된 무기로 인해 전통적인 해전 무기인 함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중요성이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해군 화력 지원(naval gunfire support, 이하 NGS)’으로 명명되는 이 무기체계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유용한 전력으로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면 영

42)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cc128-139.

국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NGS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혀 유용하지 않은 무기체계란 인식이 확산되었다.⁴³⁾ 특히 미사일의 발달은 방공과 수상작전 모두에서 함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서 함포가 아예 없거나 하나만 장착된 함정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은 NGS가 여전히 중요한 전력임을 보여 주었다. 특히 날씨가 불안정하여 근거리에서 공중 엄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남대서양에서의 상륙전에서 NGS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 우선 NGS는 영국군의 상륙지점을 적이 예측할 수 없도록 산 카를로스 이외의 지점에서도 포격을 가했다. 상륙작전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마이클 클랩 준장(Commodore Michael Clapp)은 “우리의 목표는 단 한 번의 쿠데타로 스탠리에 직접 또는 아주 가까운 곳에 미 해병대 방식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확실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⁴⁴⁾ 이는 산 카를로스 뿐 아니라 최종 목표인 스탠리와 더 가까운 지점에서도 NGS를 사용하여 적을 기만하고 영국군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특히 해군의 포격이 핵심이었다. 약 100-200발의 포탄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비대칭적인 패턴으로 발사되어 적에게 혼란을 야기했다.⁴⁵⁾

43) 이러한 인식은 영국의 주요 활동 영역이 태평양이 아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적의 전력을 마비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발성 집중 포격이 사용되었지만, 태평양에서는 상륙 작전에 앞서 적의 방어를 압도하고 파괴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포격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Christopher Yung, *Gators of Neptune: Naval Amphibious Planning for the Normandy Invasion*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6), p. 79.

44) Michael Clapp and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Barnsley, 2007), p. 100.

45) Steven Paget,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War in History*, vol. 24 (2017): 218(DOI: 10.1177/096834

NGS의 파괴력과 적의 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중화기가 부족했던 영국 상륙군을 엄호하고 적의 시설을 무력화하면서 코퍼레이트 작전 성공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1982년 5월 21일, 산 카를로스에 상륙이 시작되었을 때, 산 카를로스 인근에 있었던 패닝 헤드(Fanning Head)에 약 60명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의 소규모 부대가 있었고 이들은 영국 상륙군을 저지할 수 있는 위협 요소였다. 이 때 영국 해군은 특수부대와 함께 아르헨티나군이 산 카를로스 섬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다.⁴⁶⁾ 맥매너스 대위(Captain McManners)는 5월 26일 폭스 베이(Fox Bay) 공습 당시 NGS가 서 포클랜드 주둔지를 봉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⁴⁷⁾ 지상군의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지원은 지상전을 직접 지원하는 NGS의 화력이었다. NGS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국군에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다.

6월 11일과 12일에 있었던 낙하산 연대 제3대대의 룡던 산 공격이 대표적인 예였다. 이 대대는 룡던 산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병과 어벤저함(HMS Avenger)의 NGS 지원을 받았다. 룡던 산 전투는 밤새도록 격렬한 전투로 이어졌고,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었다. 공격은 초반에 성공을 거두었고 낙하산 제3대대는 빠르게 1차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지만 적의 방어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화력 지원, 특히 어벤저가 발사한 165발의 중화기 포탄은 공격 성공

4515603744journals.sagepub.com/home/wih).

46) Robert S. Bolia, "The Battle of Darwin-Goose Green," *Military Review*, v ol. 85 (2005): p. 50.

47) Paget,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224.

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⁴⁸⁾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NGS는 지상군 공격에 앞서 적의 진지를 약화시키고 적의 공격 및 반격 능력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었다.⁴⁹⁾ 수륙양용전의 특성과 중포의 부재, 다른 형태의 화력을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결합되어 NGS는 영국이 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NGS의 한계도 드러났다. 제3특공여단 사령관이었던 줄리안 톰슨(Brigadier Julian Thompson)에 따르면 당시 영국 해군 NGS의 파괴력에는 한계 또한 존재했다. “[지상군의] 경포나 NGS 4.5인치 주포 모두 고정 방어 진지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일부 포격으로 적의 일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포탄이 실제로 떨어지는 동안 적을 제압하는 데에만 의존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4.5인치 포가 효과적이기는 했으나 큰 목표물을 파괴하기에는 부족했고, 5인치 포였다면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후 등장했다. 또한 영국 해군의 함정들은 NGS 제공 외에도 대함 공격, 대공 유도탄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또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함정이 사격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격 적시성이 지상 포병의 대응에 비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으며, 수상함은 공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 시 NGS를 주간이 아닌 어두운 야간에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함포의 중요성이 이미 낮아진 시대에 건조

48) Sandy Woodward, *One Hundred Days: The Memoirs of the Falklands Battle Group Commander* (Annapolis: Harper Press, 1992), p. 326.

49) 애로우(HMS Arrow), 어벤저, 글러모건, 야머스(HMS Yarmouth)와 같은 전함은 NGS를 수행했다.

50) Clapp and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p. 262.

된 전함에서 나타났다. 포클랜드 작전에 투입된 신형 Type 42 구축함과 Type 21 호위함에는 각각 4.5인치 주포가 하나씩만 장착된 반면, 구형 카운티급 구축함과 Type 12 호위함에는 두 개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중 신형 함선들에는 최신식 주포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주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비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할 수 없었다. 구스 그린에서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호위함 Type 21이었던 애로우의 주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장시간 사격 지원 시 단일 포신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후속 함정인 리안더급(Leander-Class) 호위함의 배치 II 및 III(Batch II and III)과 신형 Type 22 호위함에서 배의 길이를 줄이고 엑조세 미사일 발사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포 무장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⁵¹⁾

이처럼 함포를 축소하고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함포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었던 당시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는 플랫폼보다 최신 무기를 중요시 여기는 노트의 1981년 국방백서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지점은 전후 전쟁의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상함의 규모와 함포 수 축소는 해군의 수상 전력에 관한 노트의 정책이 과연 옳았던 것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정밀유도무기의 발달로 함포의 역할은 과거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은 NGS의 활용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NGS의 다양한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종합해 보면, 포클랜드에서 영국의 승리는 1981년 국방백서에

51) Ian Speller, "Delayed Reaction: UK Maritime Expeditionary Capabilities and the Lessons of the Falklands Conflict,"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18 (2002): 370.

서 나토 방어를 위해 제외되거나 감축된 구형 플랫폼들이 1982년에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신형 인빈서블(배수량 19,500톤)보다 퇴역 예정이었던 구형 항공모함인 헤르메스(배수량 28,700톤)가 적재량이 더 커 해리어 전투기를 두 배나 많이 탑재 할 수 있었다. 포클랜드 작전에서 헤르메스에는 15척의 시 해리어와 6척의 RAF GR3 해리어, 9대의 헬기, HMS 인빈서블에는 10척의 시 해리어와 10대의 헬기가 탑재되었다.⁵²⁾ 또한 1960년대에 건조되어 교체 없이 퇴역 예정이었던 구형 상륙함 피어리스와 인트레피드와 같은 특수 상륙함이 없었다면 포클랜드 작전의 핵심이었던 상륙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안 스펬러(Ian Speller)는 “영국군은 포클랜드 분쟁에서 놀라운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전 역량의 노후화된 유산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⁵³⁾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노트의 국방백서와 여기서 파생된 해군에 대한 군비 삭감 및 해군 전력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 직후 영국 정계에서는 당시 영국 해군의 전력 구성이 포클랜드 작전에 얼마나 적합했는지, 전쟁에서 드러난 취약점에 국방부 장관인 노트의 국방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⁵⁴⁾

보수당 의원 패트릭 메이휴(Patrick Mayhew, Baron Mayhew of Twysden)는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전쟁 역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52) Brown,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358.

53) Speller, “Delayed Reaction,” 370.

54) 이 논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답음을 참고하십시오.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17 January 1983.

발언했다.

그러나 저는 포클랜드 제도의 가장 큰 교훈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싸울 의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전 세계와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오래되고 비참한 영국의 실패입니다. 1914년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했을 때,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우리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포클랜드 제도가 보여주었듯이, 가장 위험한 길은 영국의 의도가 불확실한 회색 지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⁵⁵⁾

하지만 전쟁 역지력에 대한 『교훈』의 문제의식이 너무 안이하며 대처와 노트의 정책적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군 제독 출신 피터 힐-노튼(Peter Hill-Norton)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몇 가지 놀라운 누락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합리적인 국방 정책의 핵심에 있어야 하는 역지력의 명백한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실패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전략적 교훈이며, 존 노트 경은 지난달 다른 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981년 국방백서에 포함된 여러 결정이 이러한 역지력 실패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중 일부는 다행히도 지금은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인빈서블을 매각하려는 의도를 언급하며, 여러분 모두 이 백서 112항을 보셨으리라 확신하며, 이 백서에서 그녀[인빈서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침략의 실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인듀런스

55)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17 January 1983, column 1206.

를 처분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 두 척의 공격함이 없었다면 원정작전이 전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⁵⁶⁾

노트의 국방백서와 포클랜드 전쟁 사이의 괴리는 노트가 축소하거나 버리고자 했던 패였던 항공모함, 수상전함, 상륙함이 포클랜드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국방장관 노트는 ‘변화’가 아닌 1981년 계획의 ‘지속’과 ‘일부 개선’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대처 정부와 보수당의 정치적 결정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노트는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 해군이 해양 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는 야당 의원의 날선 비판에 대해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에서 꽤 잘해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자신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재래식 해군에 이전 노동당 정부보다 7억 파운드를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해군 함정 건조는 지난 19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삭감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우리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⁵⁷⁾

결과적으로 대처 정부는 포클랜드 전쟁이 나토 임무에 집중되어 있는 현 영국군의 전력으로도 나토 역외 지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결론지으며, 이후의 개선점 또한 상당 부분 이미 1981년 국방백서에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조치에는 공중급유를 위

56)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column 1208.

57)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한 유류지원함 구매,⁵⁸⁾ 포트 스탠리에 배치된 항공기를 대체할 팬텀 F-4J 전투기 추가 도입, 항공모함, 시 해리어와 치누크 중형 헬기 추가 도입, 상륙수송함(LPD) 및 해군의 모든 Type 42 방공구축함에 대한 새로운 점 방어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쟁 억지력 약화에 일조했다고 비판받은 인빈서블의 매각을 취소한 것이었다. 정부는 인빈서블급 항모 3척을 유지하고 이 중 2척은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전방 호위함과 구축함의 숫자를 1981년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42척에서 약 55척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다. 조기경보기 부재의 문제는 여러 대의 시킹 헬기를 개조하여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상륙돌격장갑차, 최신 구축함에 미국의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 CWIS)인 Phalanx(레이더로 유도되는 20mm 속사포)를 신속하게 도입했다. 중기적 조치로 해상 스키밍 미사일로부터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형 지대공 미사일인 아스터(Aster) 개발에 영국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⁵⁹⁾

이러한 전력 증강 및 보강은 전후 국방부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항모 매각의 철회와 함정의 대공 방어를 강화한 것을 제외하면 대처 정부는 기존의 나토 중심의 국방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항모 매각을 취소했음에도 3척의 항모 전단이 아닌 2척의 항모 전단만을 유지한 것과 역외 작전의 핵심이었던 상륙함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끝내 보충하지 않았던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수상함정에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장착한 것과 같은 조치는 전략적 재평가의 결과가 아닌 미사일 공격에 대한

58) 영국 정부가 역외 지역 작전을 위해 추가할 부분으로 인정한 분야는 군수 물자 지원 분야로 장거리 항공 수송의 가치와 강력한 공대공 재공급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9) Maisonneuve,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138-139.

군함의 취약성 개선이라는 전술적 교훈을 실행하는 데 그친 것이었다. 영국 해군은 여전히 유럽 방어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1982년 이후에도 영국의 유럽 외 지역 관심사는 남대서양이 아닌 인도양과 동아시아 지역이었다. 영국 국방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1990년 이후였다.

5. 나가며

영국 정부와 의회는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는 별개로 대처 정부의 공과(功過)와 노트의 1981년 국방전략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이것이 포클랜드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노트와 정부는 일부 개선점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영국의 가장 큰 위협은 소련으로 나토 중심의 국방전략은 변치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노트와 노트의 지지자들은 당대의 상황에서 영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며, 원정 작전이 발생해도 나토의 우산 아래 다국적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이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았으나, 포클랜드 전쟁의 여파는 해군력 감축 논란으로 노트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결국 노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부의 국방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1983년 선거 전인 1월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양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화한다. 이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국가들은 무력분쟁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처하고 미래 전쟁

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군이 21세기 테러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육군 특수부대를 감축하고 정규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또한 최근의 전장을 반영한 결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전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연달아 터지면서 대규모의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정규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⁶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 대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제 소수의 특수부대에 의한 작전이 아닌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지상전을 대비하게 된 것이다.⁶¹⁾ 노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포클랜드 전쟁이 당시 국제관계에서 예외적인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노트의 나토 중심 국방전략은 사실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포클랜드 이후 영국은 해외에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미국과 함께 ISIS, 탈레반과 같은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대테러전에 집중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전쟁은 현대 해전사에 방공과 상륙전, 원정수송능력, 전함의 함포 지원, 항공기, 핵잠수함과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 등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클랜드 전쟁이 남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전쟁이 영

60) Mike Glen, "Army cutting thousands of positions over increased focus on China and Russia", *Washington Times*(2024.2.28.),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4/feb/28/army-cutting-thousands-of-positions-over-increased/>.(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Lolota Baldor, "US Army is slashing thousands of posts in major revamp to prepare for future wars", *AP News*(2024년 2월 28일), <https://apnews.com/article/army-cuts-soldiers-recruiting-shortfall-9f2f41cbe512f6330ce6008709e3435b>.(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61) 김동현, "미 육군, 5년 내 정원 2만4천명 감축...특수부대 줄이고 방공 강화", 『연합뉴스』(2024년 2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1170071>.(접속날짜 2024년 3월 5일).

국 국방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처럼 국가의 국방전략에 예외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와 같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를 남겼다.

이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의 승패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포클랜드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영국 해군력이 1982년 시점에서 역외 분쟁에 적합한 상태였는지를 분석하고, 전쟁의 결과가 해군과 관련한 영국 국방정책과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예외적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자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1982년 이후 영국 국방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연구 자료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Cmnd 8288. London: HMSO, 1981.
The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cc128–139.

The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Reagan Library, Simi Valley, CA: Falkland Islands Box 103: “Military Lessons of the Falklands.” Weinberger memorandum for Reagan, 19 July 1982.

The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8/91. The Strategic Defence Review White Paper 1998.

2. 저서

Brown, David,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London: Guild, 1987.

Clapp, Michael,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Dorman, A. “Back to the Future: the Royal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Edited by A. Dorman, M. Smith and M. Uttley. Basingstoke: Macmillan, 1999.

Filan, Alastair.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London: Frank Cass, 2004.

Freedman, Lawrence.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New York: Routledge, 2005.

Hampshire, Edward. *The Falklands Naval Campaign 1982: War in the South Atlantic*. Oxford: Osprey Publishing, 2021.

Maisonneuve, Charles.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In *The Falklands War*. Edited by Martin Middlebrook.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2.

Privratsky, Kenneth L. *Logistics in the Falklands War*.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4.

Woodward, Sandy. *One Hundred Days: The Memoirs of the Falklands Battle Group Commander*. Annapolis: Harper Press, 1992.

Yung, Christopher. *Gators of Neptune: Naval Amphibious Planning for the Normandy Invasion*.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6.

3. 학술지 논문

Ambler, Sophie Thérèse, Thomas C.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7–13,

<http://doi.org/10.1163/24683302-43010002>

Bolia, Robert S. "The Battle of Darwin–Goose Green." *Military Review*, vol. 85 (2005): 45–50,

<https://www.proquest.com/docview/225316923?accountid=15179&sourcecetype=Trade%20Journals>

Dorman, Andrew.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vol. 15 (2001): 98–120,

<https://doi.org/10.1080/713999409>

Eason, Thomas, Oliver Daddow, and Rory Cormac. "From Secrecy to Accountability: The Politics of Exposure in the Belgrano Affair."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2020): 542–560,

[10.1177/1369148120930588journals.sagepub.com/home/bpi](https://doi.org/10.1177/1369148120930588journals.sagepub.com/home/bpi)

Gul, Saad. “The Bells of Hell: An Assessment of the Sinking of ANR General Belgrano in the Context of the Falklands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8 (2005): 81–120,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nwykinllw18&div=12&collection=journals>

Hampshire, Edward “Strategic and Budgetary Necessity, or Decision-making ‘Along the Grain’? The Royal Navy and the 1981 Defence Review.”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2016): 956–978,

<https://doi.org/10.1080/01402390.2016.1220365>

Jones, Peter M. “British Defence Policy: The Breakdown of Inter-party Consensu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1987): 111–131,

<https://www.jstor.org/stable/20097107>

Laucirica, Jorge O. “Lessons From Failure: The Falklands/Malvinas Conflict.” *Seton Hall Journa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2000): 79–9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whith1&div=16&collection=journals>

Paget, Steven.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War in History*, vol. 24 (2017): 217–235,

<http://doi.org/10.1177/0968344515603744>

Parr, Helen. “COMAW Staff and HMS Fearless 1982.”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14–44,
<http://doi.org/10.1163/24683302-43010003>

Pedrozo, Raul.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9 (2022): 526–53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intyb/ilsusnwc0099&div=23&collection=journals>

Redding, Robert, Anna Beier-Pedrazzi, Gina Salvia, Stefanie Mitchell,
and James George.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 Journal, vol. 6 (2020): 18–34,
<https://doi.org/10.1080/23296151.2020.1731267>

Smith, Simon C. “Britain’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Persian
Gulf: A Pattern Not a Puzzle.” Journal of Imperial & Commonwealth
History, vol. 44 (2016): 328–351,
<http://dx.doi.org/10.1080/03086534.2015.1123541>

Speller, Ian. “Delayed Reaction: UK Maritime Expeditionary
Capabilities and the Lessons of the Falklands Conflict.”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18 (2002): 363–378,
<https://doi.org/10.1080/1475179022000024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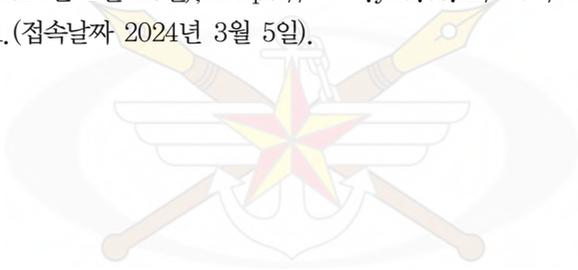
Stransky, Steven G.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40 (2012): 473–52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gjicl40&div=19&collection=journals>

4. 신문기사

Baldor, Lolota. “US Army is slashing thousands of posts in major revamp to prepare for future wars.” AP News(2024년 2월 28일), <https://apnews.com/article/army-cuts-soldiers-recruiting-shortfall-9f2f41cbe512f6330ce6008709e3435b>.(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Glen, Mike. “Army cutting thousands of positions over increased focus on China and Russia.” Washington Times(2024.2.28.),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4/feb/28/army-cutting-thousands-of-positions-over-increased/>.(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김동현. “미 육군, 5년 내 정원 2만4천명 감축…특수부대 줄이고 방공 강화.” 『연합뉴스』(2024년 2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11700071>.(접속날짜 2024년 3월 5일).



<Abstract>

The Response and Dilemma to Potential Threats Reviewed through the Falklands War

Kim, Kyungmin

This essay will examine the military aspects of the Falklands War as a first step in understanding its multifaceted nature. The Falklands War was an expeditionary operation and was essentially a naval war, and the Royal Navy was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war.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ower of the Royal Navy before and after the Falklands War is a crucial factor in analyzing the nature of the war and British defense policy. Although the UK won the war, it did not enjoy a full victory lap due to the reductions in naval power envisioned in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published by Defense Secretary John Nott. This essay analyzes the content of the 1981 Defense White Paper and the Royal Navy's performance in the Falklands War and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war and the 1981 defence review. To do so, Chapter 2 will analyze the naval force reductions and the UK's defense plans outlined in the White Paper, while Chapter 3 will examine the nature of the Falklands War through its progression. Chapter 4 considers how the problems with British naval power that have emerged since the war relate to the 1981 defence review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m.

Keywords: Falklands War, Royal Navy, John Nott, 1981 defence review, defence strateg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09-323
<https://doi.org/10.29212/mh.2024..131.3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6·25전쟁 기간 실시된 상륙작전을 집대성한 결정판

- 박종상 지음, 「6·25전쟁 시 상륙작전」(군사편찬연구소, 2023) -

임명수*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종상)에서 2023년 10월에 출간한 「6·25전쟁 시 상륙작전」에 대한 서평이다. 이 책은 71년 전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정전협정 체결 전까지 6·25전쟁 기간에 실시된 상륙작전에 대해 저자가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각 군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돼 온 상륙작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펴냈다는 점에서 전쟁사적인 연구성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1. 끝나지 않은 6·25전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중동전쟁도 1년을 향해 가고 있

* 이화여자대학교 안보학 특임교수

지만,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도 전쟁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전쟁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올해 연초부터 대남 위협 발언과 함께 각종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전쟁 당사자들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든지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나,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전쟁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전쟁과 한미동맹을 재조명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6·25전쟁이 잊혀져 가고 있음에도 그 당시 전개됐던 상륙작전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을 새로운 눈으로 연구·분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평가된다.

일반인들에게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이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상대로 전투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중에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해군작전의 하나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이런 국민의 기억을 방증하듯 대부분의 국내외 6·25전쟁 관련 출판물에도 지상 전투 내용이 대부분이고, 상륙

작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6·25전쟁에서 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천착한 연구물이 없었다.

심지어 상륙작전과 가장 밀접한 군이라 할 수 있는 해군이나 해병대에서조차도 매년 실시하는 현대적 상륙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6·25전쟁 기간 중 실시된 상륙작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발전된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의 연구와 현행작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군 관계자들이 전쟁사(戰爭史)를 단지 특정 시기에 발생해서 진행된 오래된 전쟁의 기록이나 역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전쟁사를 연구하고 기록물을 생산하는 부서와 현행 및 장차 작전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부서 간 상호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오늘날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의 보수교육기관에서 6·25전쟁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부분 제한된 복기 수준으로 진행될 뿐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라 하겠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물 중에서 6·25전쟁 기간 실시한 상륙작전만을 별도로 연구하여 책으로 출간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종상 선임연구원이 잊혀지고 주목하지 않는 분야인 상륙작전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찾고 종합·분석하여 「6·25전쟁 시 상륙작전」으로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은 학술적으로나 전쟁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전사를 통해 본 상륙작전

상륙작전의 개념은 저자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륙작전부대가 함정 및 주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상륙군을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작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의 무대인 바다에서 상륙군을 육상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이다.

이러한 상륙작전의 목적에 대해 저자는 합참에서 발간한 「합동상륙작전」 교범 내용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적의 작전적 또는 전술적 중심을 파괴하기 위하여 취약점과 결정적 지점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한 번의 신속한 타격으로 전역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전승의 호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상륙작전은 해·공군의 전진기지 확보 또는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의 설치나 차후 지상작전을 수행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륙작전부대는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다정면 대응 및 전투력의 분산을 강요하여 아군의 통제지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상륙작전은 다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의 지역 또는 시설의 사용을 거부한다. 또한, 적의 측·후방을 타격하여 적 부대를 고착하거나 전방의 고착된 전선을 타개하고 적이 주의를 전환시킴으로써 지상군의 공격 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위 3가지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즉,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지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박탈하고, 동시에 적의 공격 탄력성을 약화하여

작전 지속능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를 기회로 아군은 반격작전을 강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전략적 제2전선’ 형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상륙작전은 적의 전투력의 두 축인 정신적·물질적 전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반격의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전에 있어서 히든카드로 활용돼 온 점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전쟁의 형태는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왔다. 그리스, 로마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전쟁은 적대적 두 세력이 창과 칼, 방패 등으로 무장한 보병이 밀집대형 즉, 방진(方陣)을 형성하여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전이 주를 이루었다. 해전(海戰)은 화공(火攻)이나 적 함선에 올라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해전(海戰)의 육전화(陸戰化)’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B.C. 480년 페르시아 원정대와 그리스 연합함대 간의 ‘살라미스해전’과 B.C. 264년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들 수 있다. 중세의 전쟁은 기병을 중심으로 지상전이 주를 이루었고, 중세 말기 총과 포가 등장하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근대의 전쟁은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포위·섬멸전을 수행하는 근대적 전투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동·서부전선에서 진지전(陣地戰) 형태의 방어전 성격이 강했고, 급기야 프랑스는 ‘방어제일주의’에 입각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서부전선)에 350km에 이르는 구간에 요새와 포대, 병커 등으로 거대한 장벽인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피해 프랑스 북부 아르덴(Ardenes) 지역을 기습하면서 프랑스는 파리를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략적 제2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갈리폴리 상륙작전(Gallipoli campaign)

등이 있었으나 전세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대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시된 노르망디(Normandy) 상륙작전이 대표적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규모 면에서 해군력, 항공전력, 상륙전력, 상륙작전과 상륙 이후 필요한 군수물자 등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규모의 작전으로 꼽힌다. 이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구비할 요소는 첫째, 상륙군과 전쟁물자를 이송할 해상 수송수단이다. 둘째, 적 해안의 방어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항공전력이다. 이때 항공전력은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도 포함한다. 셋째, 적 해안의 위협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상전투력이다. 이는 D-DAY를 전후로 적 상륙해안에 위치한 적 포대 등 지상 위협물을 제거하기 위한 함포사격과 적 해안의 기뢰를 제거하는 기뢰함 등의 전력이 필요하다. 넷째, 적 해안에 투입할 상륙전력(병력, 장비)이 필요하다. 이때 상륙군은 지상군을 단순히 이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에서 내려와 상륙단정을 타고 상륙해안에 접안 후 돌격하는 단계까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섯째, 상륙군이 상륙 이후 내륙의 교통망과 연결하는 제반 수단들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략적 상륙작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복잡하고 지·해·공 전력이 혼합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군대만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상륙작전으로 기록되는 이유도 바로 대규모 병력과 전투력, 군수물자 등을 준비하고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미군이 주도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3. 책의 구성 및 내용

이 책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6·25전쟁 시 수행된 상륙작전들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해 계획되고 시행된 작전이었음에도 인천상륙작전 외에 연구가 부족했던 다른 상륙작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 외의 상륙작전에 대한 심층연구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저자는 “상륙작전은 지·해·공군 단독작전과 달리 미국과 한국, 유엔군과 국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여러 국가와 군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연구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6·25전쟁 중 실시됐던 모든 상륙작전에 대해 전투사적 측면에서 추진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과정,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 및 탑재 등 준비, 상륙작전 전개과정, 상륙작전 제한사항, 상륙작전의 결과 및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망라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자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투영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상륙작전 연구가 인천상륙작전 위주의 군사교리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전쟁사적인 연구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저자가 지적하는 각 상륙작전에 대한 미흡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항상륙작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에 간략하게 기술된 수준이고, 최근 포항지역

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서가 출간된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통영상륙작전은 이 작전에 참가한 해군, 해병대, 공군 등에서 자군 위주로 기록된 수준이고 합동작전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셋째, 장사상륙작전은 1차 사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참전자들의 증언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육군, 해군에서 일부 진행돼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 넷째, 인천상륙작전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상륙작전계획 부분의 연구가 부족하였고 6·25전쟁의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원산·이월상륙작전은 그동안 미 해병 제1사단에 의해 실시된 원산상륙작전과 소해작전 위주로 제한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 이월상륙작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원산상륙작전이 맥아더 사령관의 실패한 작전으로 인식된 점을 원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2인천상륙작전은 해군에서 해군 단독작전 위주로 기술돼 있어 미 제8군사령관의 선더볼트 작전과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지시와 협조, 그리고 미 제8군의 서울 재탈환에 기여한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위와 같은 6·25전쟁 시 실시된 각 상륙작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연구 및 분석을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 기록물과 문헌,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과 맥아더기념관 보관자료, 상륙작전 참전자들의 회고록과 증언록, 기타 상륙전사와 관련된 연구서와 연구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시 실시된 상륙작전 전반에 대한 완결성을 높였다.

제2장 ‘포항상륙작전’편에서 저자는 포항상륙작전의 배경 및 계획, 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

자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상륙작전을 구상했고, 일본으로 복귀하여 참모장 알몬드 소장에게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그 후 합동전략기획작전단에서 ‘블루하츠(Operation Bluehearts)’라는 작전명으로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빠른 남진으로 7월 10일 이 계획은 무효화 되고, 부산지역 방어를 위해 부산에서 가까운 포항을 상륙지역으로 공식화하여 ‘레드하츠(Operation Redhearts)’로 작전명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상륙부대는 7월 10일부터 미 제1기병사단, 제5·제8기병연대, 3개 포병대대 및 소규모 배속부대로 편성되어 이틀에 걸쳐 승선을 완료하고,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포항에 상륙하여 중부전선으로 이동해 미 제24사단과 교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포항상륙작전은 적군의 무저항하에 실시된 행정상륙이었지만 아군의 전선을 보강해 포항과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저지하였으며, 단기간에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미 해군·해병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장 ‘통영상륙작전’편에서는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1950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 제7사단 예하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교전 끝에 통영시가지를 탈환한 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전에서 상륙군인 김성은 부대는 해군 YMS-512정과 FS 평택호에 탑승하여 통영 시내에 진입하였으며,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 PC-703함, AKL-901정, YMS-504·512정, JMS-302·307정 및 FS 평택호 등을 통합 지휘하여 이들의 엄호하에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통영상륙작전은 통영을 점령하고 거제도도 우회하여 부산을 위협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한국 해군과 해병대로 편성된 병력으로 저지함으로써 부

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상륙작전이다. 이 상륙작전에는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 외에도 한국 공군 F-51D 전투기의 대지공격, T-6 항공기의 기총사격을 통해 아군의 상륙작전을 도왔다. 이는 6·25전쟁 시 국군 최초의 해·공군·해병대의 합동작전으로 기록될 만하다.

제4장 ‘장사상륙작전’편에서는 포항으로 남진을 시도하는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가 1950년 9월 15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해안에서 실시한 상륙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 위커 중장의 요청으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해 대한해운공사 소속 문산호를 타고 실시됐으나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문산호가 해안에 접안하지 못한채 상륙작전이 시작돼 철수할 때까지 전사 139명, 포로 3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사상륙작전 종료 후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이 작전이 문산호의 손실을 초래, 많은 유격대원의 사상자 발생 등은 상륙작전 준비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연구를 통해 장사상륙작전의 실패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려던 일부 함정이 장사동 해안으로 화력지원을 해야 함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초기 해상 화력지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륙작전은 실행 전까지 철저한 계획과 제 전력 간 협조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장사상륙작전을 통해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는 북한군의 주 보급로인 포항·영천 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차단해 북한군의 후방활동을 지연시켰으며, 포항·경주방면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 방면으로 유인하여 북한군 전선을 교란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5장 ‘인천상륙작전’편에서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 제10군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한군의 후방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공세를 꺾어 아군의 총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 계획 초안은 1950년 7월 23일 완성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으로 명명되었다. 이 작전은 9월 9일 미 합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8월 26일 상륙작전을 담당할 상륙부대로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을 주축으로 미 제10군단을 창설하였다.

이후 9월 5일부터 평양에서부터 인천, 군산 등 서해안 상륙작전 가능지역에 공중폭격을 실시하였으며, 9월 12일부터는 군산에 대해 양동작전을 실시하고, 9월 14일과 15일에는 강원도 삼척 일대에 함포사격을 가해 기만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9월 12일부터 인천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을 시작으로 유엔군 261척의 함정과 상륙군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상륙군은 9월 15일 02:00시에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9월 21일 18:00시에 상륙작전이 종료되고 서울 탈환작전이 개시되었다.

제6장 ‘원산·이원 상륙작전’편에서는 유엔군이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상륙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이 상륙군으로 편성돼 진행됐으나 적군이 원산에 기뢰를 다수 부설하여 제거작전이 지연돼 미 해병 제1사단은 10월 26일 원산으로, 미 제7사단은 10월 29일부터 원산 동북방 이원에 각각 상륙하였다. 상륙군은 기뢰제거 작전이 지연됨에 따라 황금같은 2주간의 시간을 해상에서 보내야 했고, 미 제8군단과 제10군단이 동·서로 분리돼 북상함으로써 중공군의 공격에 상호 지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 제8군에 대한 보급에 차질이 발생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원산·이원상륙작전은 10월 10일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원산항을 비롯한 원산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군이 소멸된 가운데 진행된 행정상륙이었음에도 원산항에 설치된 기뢰제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최초 계획된 10월 20일에 상륙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북상속도가 늦어져 차후 작전에 결정적 실패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7장 ‘제2차 인천상륙작전’ 편에서는 1951년 2월 10일 우리 해군 및 해병대가 1951년 1·4후퇴 이후 다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인천시에 상륙하여 재탈환한 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항 재탈환은 포화상태인 부산항의 군수물자 양륙을 인천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격작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1·4후퇴 이후 서울 재탈환을 위한 ‘선더볼트작전’을 계획하고 상륙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인천항 재탈환작전을 계획하였다. 결국, 제1차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인천항을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 여건을 마련해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및 성과

저자는 제8장 결론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항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이 저자가 이번 연구에서 거둔 차별성과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포항상륙작전의 작전명이 ‘블루하츠’가 아니라 ‘레드하츠’ 작전이라는 점을 밝혔다. 저자는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초기계획의 작전명 ‘블루하츠’가 포항상륙작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맥아더 기념관 소장자료에서 포항상륙작전에 ‘레드 하츠’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저자는 그동안 통영상륙작전은 해군작전으로 기록돼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의 지시로 해병대 김성은 대령이 인근 해군전력을 통합지휘하여 실시한 상륙작전임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장사상륙작전은 그동안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기만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요청으로 다수의 학도병으로 편성된 육군 독립 제1유격대에 의해 실시된 상륙작전이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저자는 미 해군 자료 및 미 국립문서관리기록청 자료에서 이 작전의 실패로 인천상륙작전의 기만작전을 위해 실시된 동해안 일대의 해상지원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그동안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한국 육군 제17연대는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

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는 관련 자료를 통해 국군 제17연대는 인천상륙작전이 종료되고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고 있던 9월 24일 인천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탈환작전에만 참가한 것으로 밝혔다. 다섯째, 원산·이원상륙작전은 그동안 원산상륙작전으로 알려져 왔는데, 저자는 미 제10군단의 ‘War Diary’에서 원산·이원상륙작전으로 기록돼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원산상륙작전은 원산지역에 상륙한 미 해병 제1사단만의 상륙작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원지역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의 상륙작전을 포함해 미 제10군단에서 부여한 ‘원산·이원상륙작전’으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감이가 가는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한미간 정밀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 번째, 제2차 인천상륙작전은 부산항에 집중된 군수물자를 분산 양륙할 인천항 확보 필요에 따라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워커 장군 후임으로 부임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계획한 기만작전의 일환이었으나 이 작전이 취소된 후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제95기동부대 사령관인 스미스 제독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당시 덕적도에 주둔하던 해병대가 초기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해군에서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부대를 집결시키지 못해 만조 시간을 고려해 함정탐승이 불가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의 장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저자의 군 경험과 연구성과를 녹여낸 점이다. 저자는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상륙작전 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개념과 작전용어, 작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 따라서 각 상륙작전마다 전개과정이 자연스럽게 쉬운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6·25전쟁 시 실시됐던 여섯 차례 상륙작전에 대해 시기별, 상황(배경)별 작전계획, 부대편성 등 복잡한 준비과정, 상륙부대 편성, 상륙전 기만작전으로 공습 및 함포사격, 상륙 및 작전 결과,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6·25전쟁 당시 실시됐던 상륙작전 관련 국내외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6·25전쟁 당시 상륙작전 관련 연구나 기록물은 해군본부에서 생산한 출판물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한미 해군 자료와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인터뷰를 활용하여 단편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에 비해 이 책은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NARA)과 맥아더기념관(MA)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상륙작전 계획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다수 확인함으로써 상륙작전 전반에 대한 입체적 조망과 사실에 기반한 작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문성과 열정, 노력의 연구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 필자는 제2 6·25전쟁에 대비해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 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 추가 확보, 주요 항만 보호대책, 한미 해군·해병대를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실무부대 간 정기적인 상륙작전 교육훈련 및 토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륙작전은 해군 함정과 해병대만 투입되는 작전이 아니라 항공전력, 상륙군 등 제 전력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작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차후 한반도에서 유사한 안보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육·해·공·해병대 장병을 비롯해 군사, 안보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귀한 사료 및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일독을 권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25-346
<https://doi.org/10.29212/mh.2024..131.3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더글러스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박종래 | 군사유물 수집가

1.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추적 과정

태극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최고 등급¹⁾ 훈장이며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²⁾이다. 이런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다룬 최초의 법률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 제385호 '무공훈장령'인데 이후 4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 '상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훈·포장령이 통폐합되었는데 무공훈장령 또한 대상이었지만 관련 규정의 큰 틀은 현행 유지되고 있다.

1) 무공훈장의 등급은 각각 태극(1등급), 을지(2등급), 충무(3등급), 화랑(4등급), 인현(5등급)으로 구분.

2) 법률 제16765호 상훈법 제13조에 언급된 무공훈장의 수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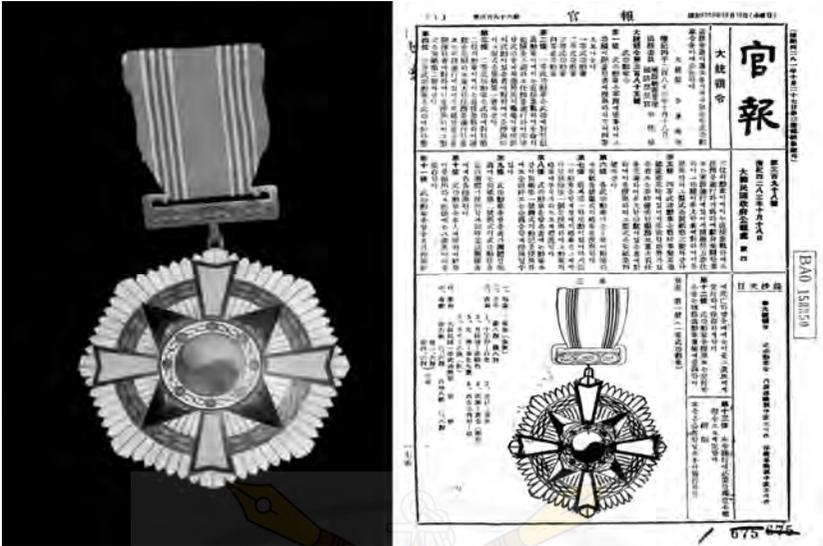


〈그림 1〉 브라이언 장군의 태극무공훈장(1951년 8월 제식)

* 출처: 본인 개인 소장품

사실 서두에 언급한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처음 수집 취미를 하던 시점부터 관심 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2017년 하반기 때의 일이다. 나는 6·25전쟁 당시에 미육군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1900~1977) 장군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운 좋게 입수했다. 이후 태극무공훈장에 관한 지역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 대한민국 전체 무공훈장이자 태극무공훈장의 최초 수훈자인 미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의 훈장 실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6·25전쟁기 무공훈장의 제식은 현재의 무공훈장 제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1950년 10월, 최초 법률 제정 이후 전쟁 기간 중 제식 변경에 관한 개정이 2차례 있었는데 각각 1951년 5월 24일 및 동년 8월 19일이다. 1951년 5월 개정 시 1950년 10월 제식에서 수(綬)의 색상만 변경되었고, 동년 8월에는 각 등급별 훈장의 정장(正章) 형태 및 명칭³⁾이 변경되었다.



〈그림 2〉 1950년 10월 제식의 일등무공훈장(현 태극무공훈장)⁴⁾

* 출처: (좌) 개인 수집 자료⁵⁾ 및 (우) 국가기록원 자료를 편집
(우 : <http://archive.history.go.kr/> 관리번호 BA0158850 검색)

미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이하 맥아더)의 경우 1950년 9월 29일에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는데 당시에는 무공훈장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실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제정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1950년 10월 제식이 제작되어 수여되어야 하는 인물이다.

현재 6·25전쟁기에 제작된 태극무공훈장의 잔존 실물은 1951년 5월 및 8월 제식만 남아있고 1950년 10월 제식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이 유일한 1950년

3) 등급별 훈장의 변경된 명칭 : 일등→태극, 이등→을지, 삼등→충무, 사등→화랑
4) 〈그림 2〉의 좌측 사진은 1951년 5월 제식 실물 사진에 1950년 10월 제식의 수형 태처럼 채색한 재현 사진.
5) Cyril Vugts, *De Orde voor Militaire Verdiensten en de Oorlogsmedaille van de Republiek Korea*, *Albelli fotoboeken*, 2018, p17

10월 제식의 잔존 실물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림 3〉 1950년 9월 29일,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 당시 모습

* 출처 : (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우) 국가기록원

(좌 : <http://archive.history.go.kr/> 등록번호 IM0000111587 검색)

(우 :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CET0047918 검색)

이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사진을 찾아봤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이 거행된 그 날, 중앙청에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元帥)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1등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때는 미처 훈장

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훈장증(勳章證)만 수여했다가 나중에 태극무공훈장을 제작하여 일본 도쿄의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줬다.⁶⁾

이후 나는 언급된 내용의 출처를 알고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에 연락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980년대 언론사 기사⁷⁾들 중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을 다룬 기사는 찾을 수 있었다.

2018년 1월 초, 행정안전부에 훈장 전달에 관한 당시 공식 정부 기록과 증서 사본의 존재 유무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몇 주 후 상훈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민원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고 답변 받았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의문점⁸⁾으로 남았지만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1950년 9월 29일 수도 환도식 때는 증서만 수여됐고 이후에 실물 훈장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재(實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훈장을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바로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이었다. 나는 해당 기관의 아키비스트인 제임스 조벨(James Zobel)에게 맥아더의 훈장 실물과 증서 사진을 문의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당자에게 관련 답변을 받았다.

6) “[빨치산 토벌대상 차일혁의 삶과 꿈 동북아 비극 시대에 민중의 지팡이가 되다], 『아주경제』(2017년 2월 6일), <https://www.ajunews.com/view/20170206162130912> (2024년 4월 2일)

7) 1982년 3월 18일 동아일보 기사, 중앙청 영육 56년 건립에서 「박물관 계획」까지 <중>

8) 이후 2022년경에 관련 내용의 출처가 궁금해져서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1971년 5월 26일, 중앙일보 연재 기사 「민족의 증언」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로 해당 기사의 경우 맥아더 훈장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사이며 비록 1982년 및 2017년 기사에서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2018년 1월 25일, 당시 담당자가 보내준 전시된 훈장 사진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러나 담당자가 받은 훈장 사진은 태극무공훈장이 아닌 건국 공로훈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1964년에 사후 수여한 건국 공로훈장이라고 설명했고 1950년 당시에 수여된 태극무공훈장 실물과 증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에 담당자로부터 흥미로운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아래는 당시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 내용이다.

“일등무공훈장(현 태극무공훈장) 증서 원본을 찾았고 내일 사진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맥아더)가 실물 훈장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1950년 9월에 훈장 수여가 되었다고 하지만 1950년 및 1951년 육군성 서신에는 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80년 초, 우리 측 학예연구사가 기념관 소장품을 확인해 보니 일등무공훈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1984년에 우리 측 전입 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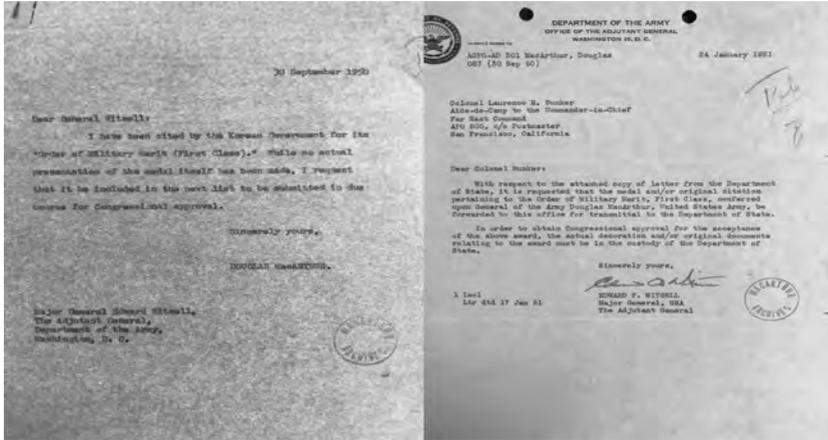
중 한 명이 한국 대사관에 이런 점을 문의해 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림 5〉 일등무공훈장 증서(국문) 원본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공훈장령 제정 시점과 맥아더가 무공훈장을 수여받을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답변으로 회신했고 얼마 안 지나서 요청한 증서의 사진을 받았다. 또한, 이후에 담당자가 얘기한 1950년 및 1951년 육군성 서신도 보내줄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6> 1950년 9월 30일자 및 1951년 1월 24일자 서신 원본과 내용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림 6>의 좌측 서신 내용
 친애하는 위첼 장군께:
 한국 정부가 본인에게 '일등무공훈장'을 표창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훈장이 제작되지 않아 훈장을 받지 못하였기에 (외국훈장 패용을 위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니 본 사항을 다음 의제에 포함될 수 있게 요청해주시시오.

더글러스 맥아더

<그림 6>의 우측 서신 내용
 병커 대령에게:
 첨부된 국무부 서신 사본과 본 부서로 발송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및/또는 일등무공훈장 표훈장 원본을 국무부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등무공훈장 패용을 위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훈장 및/또는 일등무공훈장 표훈장 원본은 국무부에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F. 위첼 소장, 미국 부관감

담당자가 보내준 서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태극무공훈장 실물은 없고 1950년 9월에 수여된 증서만 존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과거 국내 기록은 없을까?

바로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인 과거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정보가 담긴 훈기부⁹⁾이며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맥아더의 훈기부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7〉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훈기부 내 상세 내역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839371 검색)

그렇게 수령 받은 훈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무공훈장이 제작되지 않아 건국공로훈장 1등급을 수여하고 추후에 훈장을 제작하면 교환하기로 함. 4283년(1950년) 9월 20일’이 언급된 특이 사항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맥아더가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9) 1950년부터 1980년 이내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정보가 기록된 사료이며 공개 유형은 ‘부분 공개’다.

2. 과거 맥아더가 받은 대한민국 훈장의 수여 과정

1) 태극무공훈장(증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6·25전쟁이 발발했다. 개전 초기 북한군 전력에 비해 국군 전력은 열악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전황은 악화되어 개전 후 약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년 9월 14일에 시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전황이 수세적 위치에서 공세적 위치로 전환했고 동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 이후 동년 9월 29일, 서울 중앙청에서 수도 환도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증언록에서 확인된 서울 환도식과 증서 수여 과정을 주요 내용만 편집한 글이다.

1950년 9월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지사 양성봉(梁聖奉, 1900~1963) 관저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재하에 임시국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 사유는 서울 탈환에 따른 내각의 수도 환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 대통령의 비밀 엄수 전제하에 동년 동월 29일 오전 8시, 이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은 부산 수영비행장에서 항공편을 통해 오전 10시경 김포비행장에 도착했고 맥아더 원수와 함께 20여 대의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서울 중앙청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12시, 서울 환도식이 중앙청 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

되었다. 행사 말미, 맥아더 원수의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를 끝으로 수도 환도식이 종료되었다. 이후 동년 12월 23일, 체신부장관 장기영이 정식 훈장을 전달하러 도쿄로 향했다.¹⁰⁾

다만, 앞에서 다룬 증언 내용 중 ‘12월 23일 훈장 전달 건’의 경우 진위가 의심된다. 그 이유로는 맥아더의 내한 이력과 태극무공훈장 수여 사례 등을 들고자 한다.

먼저 맥아더의 내한 이력, 맥아더는 1951년 4월 11일 해임되기 전까지 몇 차례 내한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맥아더의 내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1951년 4월 3일, 양양에서 촬영된 맥아더의 사진

* 출처: alamy

(<https://www.alamy.com/stock-photo/general-macarthur-1951.html?sortBy=relevant>)

1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3권』, 1983, 122-126쪽

〈표 1〉 사료로 확인한 맥아더의 내한 사례

내한 일자	내한 내역	자료 등록번호
1950년 11월 24일	대규모 공세에 따른 회의 참석	IM0000130551
1950년 12월 11일	김포비행장 도착	IM0000114193
1951년 1월 ¹¹⁾	수원 유엔군본부 방문	IM0000124245
1951년 2월 20일	맥아더의 11번째 전방 시찰	IM0000130517
1951년 3월 7일	맥아더의 12번째 전방 시찰	IM0000111875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기재된 등록번호로 사례 확인 가능

보다시피 상기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맥아더가 1950년 9월 29일 이후부터 1951년 4월 11일 해임되기 전까지 몇 차례 내한했기 때문에 굳이 훈장 실물 전달을 위해 대리인을 도쿄로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또한, 무공훈장령 제정 이후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여는 매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며 특히 이승만과 맥아더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대리인을 통해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전달했을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11) 해당 사료의 경우 촬영일자가 연도 및 월까지만 표기되어 있다.



〈그림 9〉 1951년 10월 31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김홍일 장군 사진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CET0025564 검색)

하지만 이런 의문점만으로는 해당 증언의 진위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증언을 한 인물과 증언에서 언급된 인물 간의 진위 검증이 불가능하다. 해당 증언을 한 인물은 제2대 외무부장관(1948~1951) 임병직이며 그가 언급한 훈장을 전달한 인물은 제2대 체신부장관(1949~1952) 장기영이다.

앞에서 다룬 증언의 출처는 1983년에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한 『민족의 증언 3권』이긴 하나 원류는 1971년 5월 26일, 중앙일보의 연재 기사¹²⁾이다. 현재 기준으로 두 인물 다 고인이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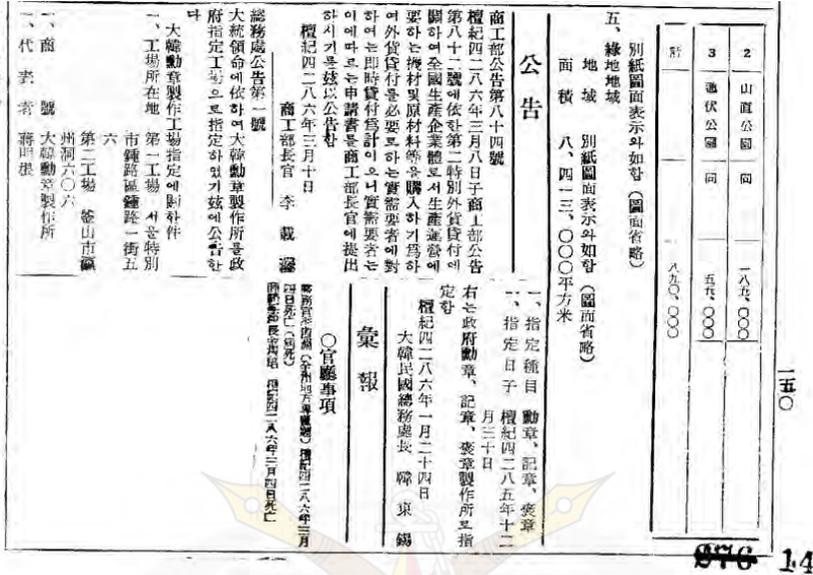
12) “(180)서울수복(5)환도”, 『중앙일보』(1971년 5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92803> (2024년 4월 2일)

이 불가능하지만 1971년 당시에는 두 인물 모두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971년 당시, 증언에 대한 진위 검증 후 기사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당 증언을 한 인물들의 경우 당시 정부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정보의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위 검증을 안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쩌면 정부에서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전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정보가 대중이나 기관에 일반화되었기 때문 아닐까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마지막 이유는 이 증언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정부 기록이 제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만약 해당 증언이 진실이었다면 맥아더기념관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된 당시 사례를 근거로 해당 증언을 한 인물의 기억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림 10〉 1953년 3월 11일, 제151호 정부 지정 훈장 제조업체 공고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185620 검색)

그럼 해당 증언을 아예 배제하더라도 전쟁 기간 내내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수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문이다. 그 이유는 1950년 9월 29일 당시에는 훈장 제작이 불가능했겠지만 이후 전황이 타개되어 훈장 제작 여건이 마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부터 훈장 및 포장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민간 업체가 서울 종로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6·25전쟁으로 인해 설비를 챙겨 부산으로 피난¹³⁾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훈장 한 점을 제작

13) 이무경, “금빛으로 아로새긴 53년 ‘영육’ 장대군”, 『경향신문』(2001년 4월 15일),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0104151835501> (2024년 4월 2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맥아더가 1951년 4월 해임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내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훈장 수여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문은 모르겠으나 결국 맥아더 생전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은 수여되지 않았다.

2) 건국공로훈장

맥아더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마지막 훈장은 사후에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이다. 수여받은 훈장의 등급은 중장이며 현재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동일 훈격이다. 참고로 맥아더 생전에 건국공로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6·25전쟁 당시인 1950년 9월에 태극무공훈장의 교환용 훈장인 일등건국공로훈장(건국공로훈장 중장의 이전 명칭)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건 훈기부 기록만 존재할 뿐 훈장의 실재는 확인된 바가 없다.

두 번째, 1957년 맥아더 동상 건립 제막식 참여 건이다. 1957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이 결정된다.¹⁴⁾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 이기붕(1896~1960)은 방미 후 맥아더에게 동상 제막식 참석을 위한 내한을 요청했고 그는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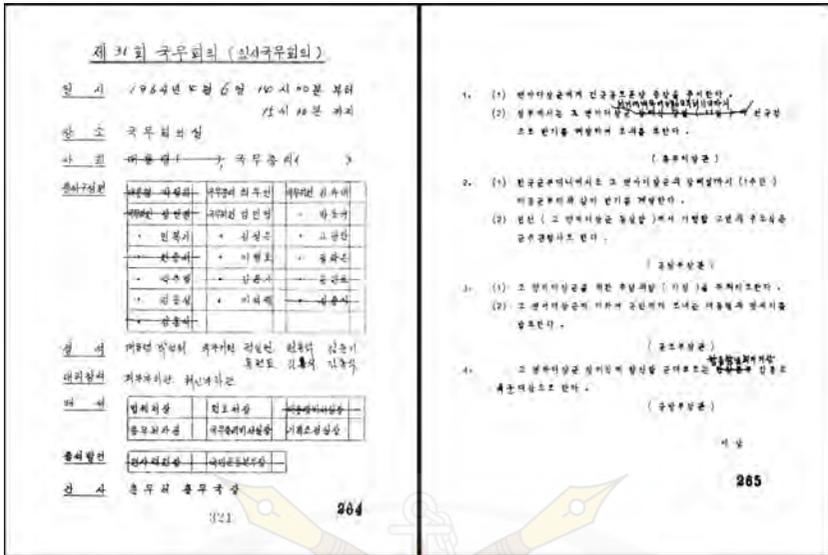
이에, 맥아더 내한에 맞춰 9월 9일에 일등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할 예정¹⁶⁾이었다. 그러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의견을 밝힌 맥아더는 9월 1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¹⁷⁾했다.

14) 1957년 4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맥장군동상건립 국무회의서 의결

15) 1957년 5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맥장군 내한

16) 1957년 5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일등건국공로훈장

17) 1957년 9월 2일 조선일보 기사, 형편에 의해 불참



〈그림 11〉 1964년 4월 6일, 제31회 국무회의(임시국무회의) 기록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08524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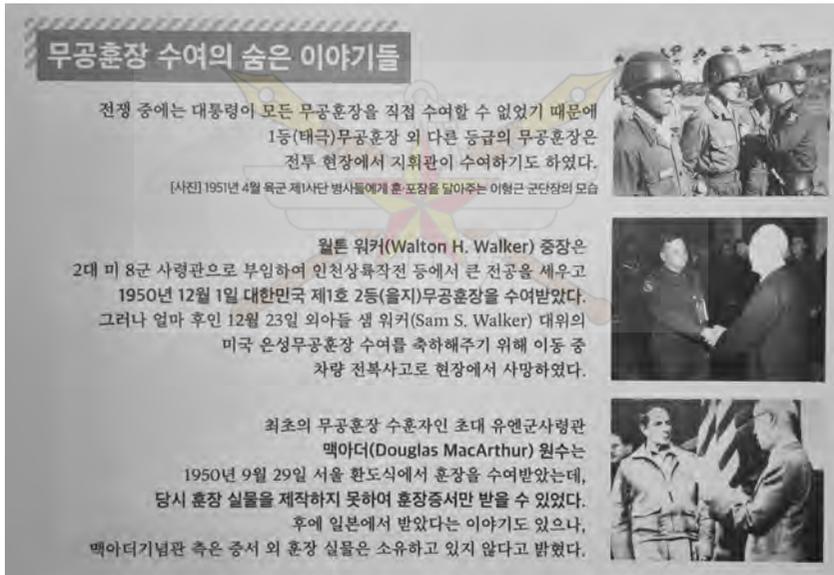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인해 건국공로훈장 또한 생전 수여가 무산되었으며 이후 1964년 4월 5일, 맥아더는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럼 현재 맥아더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건국공로훈장은 언제 수여가 결정된 것일까?

바로 사망 다음날인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예우 방안 중 하나였다. 훈장 수여가 결정된 후 훈장 전달이 된 시점은 동년 9월 15일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서 거행된 추념식에서 당시 주미대사인 김정렬(1917~1992)이 노퍽시장 로이 B. 마틴(Roy B. Martin Jr, 1921~2002)에게 훈장이 전달¹⁸⁾되었다.

18) 1964년 9월 17일 경향신문 기사, 한국건국공로훈장 고 「매」 원수에 수여

3.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 전달

제1장에서 다뤘던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추적 과정은 2018년 1월부터 2월 초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내 경험담을 주변의 일부 지인에게 알려주곤 했다.



〈그림 12〉 무공훈장 관련 전시물

* 출처: 본인 촬영

이후 3년이 지난 2021년 초, 당시 박물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무공훈장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존재 유무 또한 알려줬는데 그 내용이 전시물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예전 경험에 떠올라서 기록 목적으로 개인 SNS에 글을 작성¹⁹⁾하게 되었는데 나름 글 말미에는 ‘지금이라도 훈장 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사견도 남겼다.

그러나 당시에 글만 작성했을 뿐, 정부 기관에 시정 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고 혹시나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행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행동을 안 했고 점점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2023년 5월경, 정말 우연히 내 글을 접한 일면식 없는 분이 글 작성 이후에 확인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해왔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없다면 내 글을 근거로 정부 기관에 민원 제기를 하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이에 대해 나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

약 한 달 후, 국방부에서 태극무공훈장 실물 미수여 문제에 공감하여 실물 수여 추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동년 8월경 실물 수여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현재는 훈장 전달 방식에 관해 논의 중인 상태라고 전달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분과 나는 9월경에 국방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다만 감사장을 받은 이후 연말이 된 시점까지도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방부 관계자에게 몇 번 연락을 해서 문의해 봤지만 아직 수여 시점이 논의되지 않았다고만 전달받았다.

19)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ison/222359427932>)



〈그림 13〉 2024년 1월 26일, 맥아더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행사에 관한 뉴스

* 출처: KBS News (YouTube 채널)

이후 또 한 해가 지나 2024년 1월 26일 오전경이었다. 업무 중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에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에서 태극무공훈장 전달 행사가 예정되었다고 전달받았다.

예정대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방부 보도자료가 배포²⁰⁾되었고 관련 국내 언론 보도가 일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초순, 2018년 1월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존재 유무를 알려준 맥아더기념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2018년 당시에 나는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이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려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20)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실물) 전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26>)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훈장 실물 전달 이후 변경된 현재 전시실 모습이 궁금했기에 연락하게 된 것이다.



〈그림 14〉 현재 맥아더기념관 내 전시실 사진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며칠 후 담당자에게 전시실 사진을 받았는데 2018년 당시에 받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전시실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는 1950년 9월,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된 지 약 74년이 지났고 나에게는 2018년 1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1950년형

태극무공훈장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시작은 매우 지엽적이었지만 끝은 의도치 않게 또 하나의 역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여운이 남는다.

또한, 비록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작든 크든 간에 잊힌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일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번 경험이 그러한 예시라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어느 또 다른 누군가’가 주목받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여 주변에 상기시켜주는 일이 또다시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 사료로 본 한미동맹 성립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부 • 신국판(반양장) • 2024. 4. 29. 	<p>이 책은 미국 국무부의 인터넷 공개 사료인 <i>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 XV</i>에 수록된 한미동맹 성립과정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그 해제(解題)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한미동맹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출간하였다.</p> <p>이 책을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과 관료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려고 대립과 협력을 반복했던 한미동맹 성립과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군 단독 북진(北進) 통일의 필요성을 주창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의 한반도 정전(停戰) 원칙을 고수했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대립은 그 절정이었다.</p>

구 분	내 용
<div data-bbox="207 567 382 796"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184 831 402 895">한눈에 보는 유엔참전국(영문판)</p> <ul data-bbox="175 915 340 1026"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부 • 10절 • 2024. 3. 31. 	<p data-bbox="433 614 979 979">6·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을 소개하는 책자이다. 유엔 회원국 중 전투파병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기타 물자지원국 38개국에 관한 간단한 소개글, 인포그래픽, 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외 독자들이 보기 쉽게 제작되었다. 총 60개국이 어떻게 한국을 도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p>

구 분	내 용
<div data-bbox="207 593 382 82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189 845 401 875">한국근대 군사교범</p> <ul data-bbox="175 892 342 1001"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4. 5. 31. 	<p data-bbox="433 569 980 744">이 책은 대한제국, 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했던 군사교범들의 편찬배경과 내용,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교양총서이다.</p> <p data-bbox="433 757 980 1026">이 책을 통해 19세기 후반부터 편찬되었던 군사교육의 단계적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가주권이 위협받던 시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굳은 의지가 근대 군사교범의 편찬이라는 결실을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 전사적지 답사
 - 일자/장소: 2024. 5. 8.(수) / 강화도 일원
 - 참석: 연구소 직원



○ 군사사전문가 초청강연

- 일자/장소 : 2024. 5. 28.(화) / 회의실
- 강사 :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용 : 전쟁과 평화 - 6·25전쟁과 정전체제



○2024년 군사사 시민강좌

- 1강 : 고대 세계전쟁이란(춘추전국시대의 전쟁)
 - 권중달(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2024. 5. 29.(수) / 전쟁기념관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 2강 :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 이상훈(육군사관학교 교수)
 - 2024. 6. 5.(수) / 전쟁기념관 문화아카데미홀
- 3강 : 전쟁의 재현(고려는 최강대국 거란을 어떻게 물리쳤나)
 - 길승수(역사소설가)
 - 2024. 6. 12.(수) / 전쟁기념관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2024년 6·25전쟁 학술회의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3:00~17:30
- 장소: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2024년 1차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

-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14:00~16:30
- 장소: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문헌정보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1(김경록)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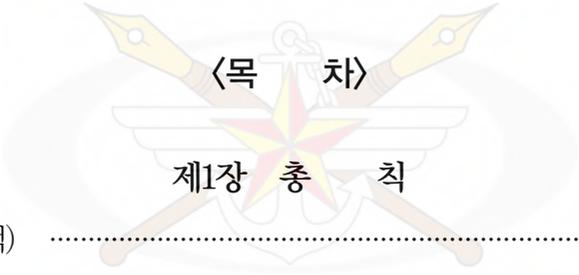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제1조(목적) 361
 제2조(적용대상) 361
 제3조(적용범위) 361
 제4조(용어의 정의) 361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362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363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64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365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365

제7조의 4 (중복계재)	366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366
제7조의 6 (공동연구)	367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367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367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367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368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368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369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369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369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370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371
제16조(판정)	371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371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72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372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372
부 칙	3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 0 세상

정예연진 강군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류한수(상명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신성재(해군사관학교)
심호섭(육군사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형식(고려대학교)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황수현(군사편찬연구소)
한동훈(군사편찬연구소)	윤시원(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4/6(第131號)

2024년 6월 8일 印刷

2024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1 FAX : 02-748-1638

發行人_ 吳成大

印刷處_ 국방출판지원단 (M24060350)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31. 2024. 6.

- Choi, hyeong guk The Gangmu(講武) in King Sejong's Era & Its historical content use plan in the Cheorwon(鐵原)
- Lee, Gyeong-seok The reality of Fo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yoryongsanseong Fortress (蛟龍山城) in the late Joseon Dynasty
- Noh, DaeHwan Manufacturing and deployment of Bulanggi cannon(佛狼機砲) in the late Joseon Dynasty
- Kim, Min-ho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Lee, Hojun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Seo, Chijong Planning process and four operational plans for the Incheon Amphibious Operation(Operation Chromite)
- Jang, Jaekyu Verifying the Historical Facts of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 Kim, Kyungmin The Response and Dilemma to Potential Threats Reviewed through the Falklands War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